

공정한 세계화: 모두를 위한 기회창출

A Fair Globalization: Creating Opportunities for All

세계화의 사회적 차원에 관한 세계위원회

본 번역서는 국제노동기구(ILO, 제네바)에 의해 출판된 *A Fair Globalization. Creating Opportunities for All* (판권 소유(원본): Copyright © 2004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내용을 한국노동연구원이 국제노동기구로부터 공식 번역출판 허가(판권 소유(한글번역본): Copyright © 2004 Korea Labor Institute)를 받아 번역한 것이다.

국제노동기구의 출판물들에 사용되는 명칭이나 호칭들은 국제연합(UN)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을 따르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게재된 내용들은 어떤 국가나 영토의 주권 및 법적 지위 혹은 통치의 경계와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 차원에서의 어떤 의견도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여기에 밝힌다.

국제노동기구에서 출판된 저작물들이나 연구보고서 등에 나타난 의견이나 주장들은 전적으로 저작자 개인의 의견이나 주장이며 출판행위 자체가 해당 출판물에 표현된 의견이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그러한 의견이나 주장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는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밝힌다.

특정 기업이나 그 생산물 혹은 생산 과정이 출판물의 내용에 언급되어 있더라도 이는 국제노동기구에 의한 어떤 형태의 지지 의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거꾸로 특정 기업이나 그 생산물 혹은 생산 과정이 언급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또한 그에 대한 국제노동기구의 반대 의견을 나타내는 것은 아님을 밝힌다.

세계화의 사회적 차원에 관한 세계위원회
(World Commission on the Social Dimension of Globalization)

공동 의장: H.E. Tarja Halonen,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Finland
H.E. Benjamin William Mkapa, President of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위 원: Giuliano Amato
Ruth Cardoso
Heba Handoussa
Eveline Herfkens
Ann McLaughlin Korologos
Lu Mai
Valentina Matvienko
Deepak Nayyar
Taizo Nishimuro
François Perigot
Surin Pitsuwan
Julio Maria Sanguinetti
Hernando de Soto
Joseph Stiglitz
John J. Sweeney
Victoria Tauli-Corpuz
Aminata D. Traoré
Zwelinzima Vavi
Ernst Ulrich von Weizsaecker

당연직 위원: Bill Brett
Eui-yong Chung
Daniel Funes de Rioja
Juan Somavia
Alain Ludovic Tou

책머리에

‘세계화(globalization)’란 용어가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십여 년 전에 불과하다. 다국적기업의 해외생산, 자유무역지대의 확산, 노동력의 이동 등 세계화는 주로 시장자본주의의 이념에 입각한 개방경제를 의미하며 선진국에 의해 주도되었다. 세계화는 각국의 시장의 문을 열어 자유로운 경쟁으로부터 얻어지는 혜택을 공유한다는 긍정적 이미지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장관회의,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 등 각국의 경제 전문가들의 정기적인 회의 때마다 세계사회포럼(WSF) 등 반세계화 집회나 시위가 격렬하게 진행되는 것은,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세계화의 긍정적인 면뿐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에 관해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빈부격차, 사회적 배제 등 각국의 개인 및 사회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세계화의 영향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특히 현재의 세계화가 단지 무역자유화를 넘어서 생산과 투자 요소의 전세계적인 이동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양질의 노동을 확보하는 문제는 각국 안에서 기본권과 병행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세계화의 진행은 물론 국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세계화를 모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국제노동기구(ILO)는 세계화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기조의 보고서를 지난 2월 말에 발표하였다. 『공정한 세계화: 모두를 위한 기

회창출(A Fair Globalization: Creating Opportunities for All)』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세계화의 사회적 차원에 관한 세계위원회 (World Commission on the Social Dimension of Globalization)」가 지난 2년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세계화의 잠재적 이득을 인정하는 한편, 부패, 빈부격차 등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화의 과정에 대한 우려도 강력히 표명함으로써 전세계 특히 모든 지도자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지난 연말 세계화위원회의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던 즈음, 보고서의 한국어판을 출간하기로 세계위원회와 합의하고 번역을 진행하였다. 이 보고서가 이제 한국어로 번역되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하며, 세계 고위 지도자를 비롯하여 노조 및 기업 대표, 학자 및 정부 자문 등 각계각층의 위원들이 여러 차례 토론을 거쳐 제시한 세계화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불어, 이 책의 한국어 번역에 대해 전문적인 용어 감수는 물론 비전문가가 읽기에도 무리가 없도록 세심히 검토해 준 고려대 강수돌 교수에게 특별히 감사드린다. ‘Decent Work’에 대한 번역으로는 ‘양호한 일자리’, ‘양질의 고용’, ‘인간적 고용/노동’ 등 국내에서 다양하게 변형되어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원어 문맥을 가장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양질의 노동’으로 통일하였음을 이 자리를 빌려 알려드린다. 마지막으로, 지난 연말부터 ILO 및 세계위원회와의 연락은 물론 감수된 번역본을 원문에 비추어 재확인하는 작업에 이루기까지 보고서의 한국어판 발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준 국제협력실의 양윤정 연구원과 최종 편집 및 교열에 심혈을 기울여 준 출판실 박찬영 팀장 이하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04년 5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이 원 덕

세계위원회 보고서 한국어판 발간을 축하하며

세계화는 지구상의 모든 인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근본적인 변화의 과정이다. 기술발전과 개방정책 등으로 인하여 전세계는 긴밀히 상호 연계되어 있는 거대한 하나의 사회로 바뀌고 있다. 국가는 물론 집단과 개인 간에 있어서도 무역, 투자, 금융 및 생산체제에 있어서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사회, 문화 및 정치적 상호 작용도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세계화가 인류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은 지대하다고 생각되나, 세계화 과정이 부자와 빈자 간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이들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문제를 노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ILO 통계에 의하면 지난 40년간 못사는 나라의 평균소득은 250달러 수준에서 거의 변화가 없었던 것에 반해 잘사는 나라의 소득은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다. 또한, 최근에는 세계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22개 선진국이 세계 무역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세계화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적절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세계화의 사회적 차원에 관한 세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전세계가 거대한 하나의 세계로 통합하는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는 국제기구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ILO는 다른 국제기구와는 달리 노사정 3자(Tripartite)로 구성되어 있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적절히 수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화 관련 논의를 주도하게 되었다. 동 위원회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국가 지도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등 경제학자, 노조

간부, 사용자, 시민단체 대표 등 총 2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핀란드와 탄자니아의 두 현직 대통령이 공동 의장을 맡고 있다. 필자는 ILO 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동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세계위원회는 6차례의 본회의와 20여 회의 국가 및 지역 토론회, 수차례에 걸친 소그룹 회의 등을 통하여 작년 말에 최종 보고서 작성을 종료하였고 지난 2월 24일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출간하였다.

세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위원들 대부분은 세계화 과정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세계화가 모든 인류에게 보다 공평하면서 모두를 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에 논의의 초점을 두었다. 그리하여, 위원회는 세계 전체 인류의 인권 보장, 민주적 참여, 문화적 정체성 및 물질적 번영 등 이른바,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에 관한 희망과 우려를 분석함으로써 21세기의 전체 인류가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 모색에 중점을 두었다.

세계화에 관한 논의는 세계화를 보는 고정된 이념에 따라 양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과 집단이 처한 이해관계에 따른 다양한 요구에 의해서도 각기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금번에 발간된 세계화위원회 보고서도 세계화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적인 처방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논의 과정에서 서로 다른 견해들이 지속적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각 위원들은 세계화 과정에서 배제되어 열악한 상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는 세계화에 대한 기대와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논의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지난 3월 폐막된 제288차 ILO 이사회에서는 이틀에 걸쳐 세계위원회 보고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다.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노사는 물론 정부 그룹들도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세계위원회 보고서에 대해 다소 상이한 입장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세계위원회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동 보고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였다. 향후 ILO 사무총장은 지난 3월 이사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계위원회가 제시한 정책대안들 중 ILO가 추진해야 할 사안들을 중점적으로 정리하여 금년 6월 개최되는 ILO 총회에 제출하게 된다. 그 외 ILO가 다른 국제기구의 협조하에 추진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ILO 사

서 문

무총장이 다른 국제기구의 수장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구체적 추진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동 세계위원회 보고서 출간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세계화에 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와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화 과정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길이라는 것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의 세계화 관련 논의 등에 다소 무관심한 것은 아닌지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금번 세계위원회가 제시한 정책대안들은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 무역, 투자, 금융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다루고 있으므로 향후 WTO, IMF, IBRD 등 대부분의 국제기구에서도 세계화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는 눈을 밖으로 돌려 세계화에 관한 국제사회의 공론이 우리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결실을 맺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중간자적인 특수한 위치 때문에 우리와의 대화와 협력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가 선진국과 개도국 간 협력 확대에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 만큼 우리는 그동안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잘사는 지구촌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에 동참하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금번 한국노동연구원이 「세계화의 사회적 차원에 관한 세계위원회」 보고서를 한국어로 번역 출간하게 된 것은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대안들을 우리가 직접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세계화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 추세를 가늠하고 우리의 대안을 모색해 보는 데에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 자리를 빌려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장 및 관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에서의 세계화 관련 논의의 초석이 되어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04년 5월

ILO 집행이사회

의장 정 의 용

서 문

코피 아난(Kofi Annan) 유엔 사무총장은 2003년 9월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유엔(world body)은 현재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짚막하게 경고하였다. 세계화의 사회적 차원에 관한 세계위원회 공동 의장은 세계가 역사적인 결정의 순간에 놓여 있다고 믿는다.

우리 위원회는 이 갈림길에 놓인 세계가 직면하는 몇 가지 도전을 다루기 위해 구성되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올바른 길로 들어설 힘이 부여되었으며, 이를 통해 세계는 한 국가내 또는 몇몇 국가간의 소수를 위해서가 아닌 다수를 위해 보다 안정되고, 공정하고, 윤리적이며, 포괄적이며, 번영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같은 힘으로 인해, 도로 표지를 보고도 이를 묵인 또는 무시하여, 우리가 공유하는 세계를 더욱더 정치적 혼란과 갈등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할 수도 있다.

우리는 본 보고서 안에 각국 및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설득되어 바른 길로 접어들게 하는 논리가 충분히 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세계화라는 주제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거의 이에 대해서는 서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비생산적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미래, 그리고 우리 지구의 운명을 고려할 때, 우리 모두는 세계화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보고서는 시의적절하다. 담론이 달라지고 있다. 옛 신념과 이념은 경험을 통해 검증되고 여러 사례를 통해 변화되었다.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시작에 마음이 열려 있다. 지금이야말로 승산 없는 담론에서 긍정적인 행동으로 옮겨가도록 이끌어 줄 리더십이 필요한 때이다.

이 보고서에서 우리는 각자의 소속을 초월하여, 세계화를 향해 우리

가 공유하는 인류의 대표 집단의 희망과 두려움을 성실히 포착하면서 사람들(people)의 눈을 통해 세계화를 바라보았다고 생각한다. 많은 이들은 세계화가 제시하는 보다 나은 삶에 대한 기회를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희망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세계화가 모든 차원에서 보다 나은 통치구조를 따를 때만이 가능하다.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세계화라는 기차를 놓치기 싫어한다. 한편 그들은, 그 기차의 행선지는 물론 그 기차가 존속가능한(survivable) 속도로 달리는지 확실히 알고 싶어한다.

세계화를 모든 사람과 국가를 위한 긍정적인 힘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신이 우리의 작업에 큰 원동력이 되었다. 우리는 만병통치약이나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을 제안한다.

우리는 세계화를 지배하는 관점이 시장이라는 협의의 영역에서 사람이라는 광의의 영역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화는 임원 회의실이나 각료 회의실 등의 고상한 원탁에서 내려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의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 세계화의 사회적 차원은 일자리, 보건 및 교육에 관한 것이나, 이들 영역을 훨씬 초월한다. 이는 바로 사람들이 일상생활과 직장에서 경험하는 세계화의 측면에 관한 것, 즉 민주적 참여 및 물질적 번영에 대한 그들의 열망의 총체이다. 보다 나은 세계화는 21세기에 모든 곳의 사람들이 보다 나은, 그리고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한 관건이다.

우리는 또한 보다 나은 지역사회(local community)에서부터 개선되고 보다 책임있는 국가 통치구조, 공정하게 적용되는 공정한 세계 규칙, 그리고 사람을 보다 더 위하는(pro-people) 국제기구(global institution)에 이르기까지 모든 차원에서 그러한 관점이 실현되는 그런 과정을 제안한다.

우리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을 제안하는바, 각각 그 자체는 규모가 작지만, 함께 취할 경우 사람과 아이디어의 네트워크는 물론 세계화 그 자체의 경제 및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시작하도록 할 것이다.

위원회에서 활동한 우리의 경험으로 미루어, 우리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다. 위원회는 현실세계의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의견과 이해

관계와 관점을 대변하는 소우주다. 우리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출신도 있고 부자 나라 출신도 있다. 우리는 노조 및 기업 지도자, 의원 및 대통령, 토착민 지도자 및 여성 운동가, 학자 및 정부 자문 등으로 구성되었다. 우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얼마나 좁혀질 수 있고 또한 어떻게 공동의 이해가 대화를 통해 공동의 행동으로 이르게 되는지를 볼 수 있었다.

위원회는 ILO가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보고서에 대해 전적인, 그리고 단독으로 책임을 지며, 위원들은 개인 자격(individual capacity)으로 참여하고 있다. 각 위원회 위원은 보고서 내용을 일일이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하고 포괄적인 세계화를 장려하는 보다 넓은 공공 대화와 공동 노력을 위한 과정을 자극한다는 의미에서 보고서 전체를 지지한다.

공동 의장으로서 우리는 이렇듯 훌륭하고, 헌신적이며 열성적인 세계 시민집단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함께 일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풍부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한다. 위원들의 헌신, 공헌, 그리고 협조에 깊이 감사드린다. 우리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은 훌륭한 사무국에게도 감사드린다.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결정을 내리고 위원회의 의장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광스럽고도 역사적인 책임을 부여해 준 ILO에게 감사드린다.

우리는 세계에게, 특히 모든 정치 및 기업 지도자들에게 보다 나은 세계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다 나은 미래의 방향을 제시해 줄 조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Tarja Halonen

핀란드 공화국 대통령;
공동 의장

Benjamin William Mkapa

탄자니아 공화국 대통령;
공동 의장

요 약

◆ 소개

우리의 과제인 세계화의 사회적 차원(Social Dimension of Globalization)은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우리 위원회는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하고도 서로 경쟁하는 행위자(actor)와 이해(interest)를 대변하는 소우주였다. 각각 선진국과 후진국(North and South)의 국가 수반인 1명의 여성과 1명의 남성이 공동 의장직을 맡은 위원회의 위원들은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발전 단계도 다양한 국가에서 선임되었다. 소속도 정부기관, 정계, 의회, 사업체 및 다국적기업, 노조,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우리는 공동 목표라는 정신을 통해 여기에 제시하고 있는 공동의 이해에 도달하였다. 이것은 공동 보고서(collective document)로서, 우리가 각자 개별적으로 작성했을 다른 보고서들과는 상당히 다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변화를 위한 도구로서 대화의 가치와 힘을 증명하였다. 우리는 다양한 견해와 이해를 인내심과 존경심을 갖고 경청함으로써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었다.

공정하고 포괄적인 세계화 과정을 구축하는 행동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우리에게 자극을 주었다. 이는 실천적 행동 방안(course of action)에 대한 광범위한 행위자들간의 새 협약을 통해 향후에 점진적으로 실현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 넓고 크게 확산되어 행동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는 대화의 공간을 확대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 변화를 위한 비전

세계화에 대한 공공의 논의는 난국에 직면해 있다. 의견들은 각자의 입장에 대한 이념적 확실성 속에 동결되어 있으며, 다양한 특수 이익 속에 흩어져 있다. 합의의 의지는 약하다. 주요 국제협상들은 난관에 봉착했으며 국제 개발에 대한 공약은 대부분 이행되지 않는다.

본 보고서는 놀랍거나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는 사람들의 우려와 염원, 그리고 세계화 자체의 잠재성을 잘 활용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현재의 난국을 벗어나는 데 도움을 주려는 시도이다.

우리는 현재의 세계화 경로를 변화하기 위한 결정적이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낸다. 우리는 세계화의 혜택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고 국가간 그리고 국가 내에서 보다 잘 공유될 수 있고, 또 세계화의 방향에 있어 보다 많은 목소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다. 필요한 자원과 수단은 준비되어 있다. 우리의 제안은 야심적이지만 실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보다 나은 세상이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보편적 가치(universally shared values), 그리고 인권과 개인의 존엄성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강력한 사회적 차원을 내포한, 공정하고 포괄적이며 민주적으로 통치되고 모든 국가와 사람에 기회와 가시적 혜택을 제공하는 세계화 과정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다음을 요구한다:

- 인간에 초점 맞추기: 보다 공정한 세계화의 초석은 모든 인간의 요구(demand)를 충족하는 데 있다. 즉 이는 인간의 권리, 문화적 정체성 및 자원에 대한 존중과 양질의 노동,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자치권을 부여(empowerment)하는 것에 대한 요구이다. 남녀평등 또한 필수적이다.

- 민주적이고 효과적인 국가(State): 국가는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며, 사회적 및 경제적 기회와 안정을 제공해야 한다.
-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공정한 세계화를 추구하는 노력은 환경의 지속가능성과 전지구적인 목표로서 양질의 노동(decent work)의 채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생산적이며 공평한 시장: 이를 위해 잘 작동하고 있는 시장경제(well-functioning market economy) 안에서 기회와 생산 조직을 장려하기 위한 건전한 제도가 필요하다.
- 공정한 규칙: 세계화된 경제의 규칙은 모든 국가에게 공평한 기회와 접근을 제공하고 국가 역량 및 개발 수요의 다양성을 인식해야 한다.
- 공동체적 연대감(solidarity)을 갖춘 세계화: 세계화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당한 국가들과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공동의 책임이 존재한다. 세계화는 국가 내에서, 그리고 국가간의 불평등을 극복하고 빈곤을 퇴치하는 데 공헌해야 한다.
- 인간에 대한 보다 큰 책임(accountability): 세계화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단계의 모든 공공 및 민간 행위자들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정책과 취하는 행동에 대해 민주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약을 이행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면서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 보다 강도 높은 파트너십: 국제기구, 정부 및 의회, 기업 및 노동계, 시민사회, 그리고 기타 많은 행위자들이 세계의 사회 및 경제적 목표를 실현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 이들간의 대화와 파트너십은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민주화 도구이다.
- 효과적인 유엔(UN):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다자(多者)체제는 세계화를 위한 민주적·합법적, 그리고 일관된 틀을 형성

하기 위한 필수적 도구이다.

◆ 세계화와 그 영향

세계화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변화 과정을 추동하고 있다. 보다 개방된 정책의 지원하에 신기술(new technology)은 세계를 그 어느 때보다 서로 연결시켜 놓았다. 이는 무역, 투자, 금융 및 생산의 글로벌화 등 경제적 관계에서 상호 의존의 증가 뿐 아니라 전세계 조직 및 개인의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상호 작용까지 포괄한다.

효익(good)의 잠재성은 엄청나다. 전세계 사람들간 상호연결이 증가하며, 이는 우리 모두가 세계 공동체의 일부라는 인식을 촉진한다. 이렇게 전세계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초기적 상호 의존성,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공약 및 연대감 등의 방향을 잘 설정하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세계 통치구조(global governance)를 구축해야 한다. 세계화된 시장경제는 거대한 생산능력을 보여주었다. 이를 현명하게 관리하면, 전례 없는 물질적 진전을 유발하고 모두에게 보다 생산적이고 개선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계의 빈곤을 감소시키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런 잠재성을 실현하는 데 얼마나 많은 점들이 부족한가도 알고 있다. 현재의 세계화 과정은 국가내 그리고 국가간 불균형을 유발하고 있다. 부(富)는 창출되지만 너무나 많은 국가와 사람들이 그것의 혜택을 나누어 갖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그 과정을 형성하는 데 있어 지극히 조그마한 목소리만을 내거나 또는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 남녀의 눈을 통해 본 세계화는 아직도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그들의 간단하고도 정당한

열망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많은 이들이 공식적인 권리 없이 비공식 경제(informal economy)의 주변에서, 그리고 세계경제의 주변부에서 불안정하게 존재하는 빈곤 국가에서 살고 있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국가에서도 어떤 노동자들과 지역사회는 세계화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한편, 세계의 커뮤니케이션 혁명으로 인해 이러한 불균형에 대한 인식은 강화되고 있다.

◆ 변화를 위한 전략

이러한 세계적 불균형은 도덕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하고 정치적으로도 지속될 수 없다.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유토피아적 청사진을 단번에 실현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계 경제 체제의 각 부분을 개혁하는 것에서부터 지역 차원의 지배 구조 강화에 이르는 광범위한 전선에서 일련의 조정된 변화(coordinated change)가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이 개방경제, 그리고 개방사회의 맥락에서 달성되어야 하고 또 달성될 수 있다. 비록 이해관계는 다르더라도, 공정하고 포괄적인 세계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의견이 점점 모아진다고 우리는 믿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광범위한 일련의 권고를 만들었다.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지연된 다자간 협상 및 정책그룹(circle)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몇몇 무역 및 금융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이슈에 대해 요구되는 행동방안은 분명하지만 몇몇 주요 행위자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시급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제안될 사항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주창(advocacy)과 보다 강력한 여론(public opinion)이 필수적이다. 새로운 쟁점을 고려하기 위한 기초 형성의 과정 또한 중요할 것이

다. 그런데, 국경간 인력이동을 위한 다자 체제 개발 또는 국제기구의 책임성 등 새로운 이슈에 있어서는 국가 그리고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 간의 광범위한 대화가 주요 결정을 위한 수단이 된다. 이를 통해 어떤 조치를 어떻게, 그리고 누가 취해야 할지에 대해 합의와 결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 세계화의 지배구조

우리가 파악한 문제들은 세계화 그 자체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의 지배구조(governance)의 결함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세계시장은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이의 원활하고 형평성 있는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제 및 사회 제도는 이와 병행하여 발전하지 못하였다. 이와 동시에, 무역과 금융에 관한 세계적 수준의 핵심 규칙의 불공정성과 이러한 규칙이 빈국과 부국에 대해 미치는 비대칭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또다른 우려는 현 국제정책들이 세계화가 제시하는 도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개방 조치, 그리고 금융 및 경제적 고려사항이 사회적 고려사항보다 우선한다.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경우, 심지어 새천년 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고 또 증가하는 세계적 수준의 문제를 다루는 데 필요한 최소 투입량에도 훨씬 못 미친다. 국제정책을 설계하고 이행하는 책임을 갖는 다자 체제 또한 기대 이하의 성과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볼 때,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민주성·투명성·책임성이 충분하지 못하다.

이러한 규칙과 정책은 주로 강력한 국가, 그리고 강력한 행위자에 의해 형성된 세계 지배구조 체제의 결과다. 체제 심장부에는 심각한 민주주의의 결함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개도국은 아직도 규칙에 대한 국제협상과 주요 금융 및 경제 제도 관련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제한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마찬가지로,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은 이러한 지배구조 과정에 목소리를 거의 또는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

◆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시작(Beginning at home)

국제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들이 광범위하게 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 세계 지배구조는 고상하고 분리된 영역이 아니다. 이는 단지 지역 차원에서 더 상위의 차원으로 연장되는 지배구조의 망(web)의 정상부일 뿐이다. 글로벌 행위자로서 주권국가의 행동은 세계 지배구조의 질을 결정하는 필수 요인이다. 다자주의, 보편적 가치, 그리고 공동 목표에 대한 그들의 공약 정도, 그들의 정책이 어떤 국제적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민감성 정도, 그리고 세계의 연대(solidarity)에 대해 그들이 부여하는 중요도는 세계 지배구조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이와 동시에, 국가들이 그들의 내무(internal affairs) 행정을 어떻게 하는가는 사람들이 세계화를 통해 얻는 혜택과 세계화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계화에 대한 대응은 국내에서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이 국가 안에서 지역적으로(locally) 살아간다는 간단하고도 중요한 사실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분석을 개별 국가적 차원에 맞추고 있다. 물론 우리는 세계의 극히 다양한 모든 국가에 대해 구체적인 권고를 감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는 정책을 인도해 주는 광범위한 목표와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을 이행하는 데 있어 각국의 수요와 특수 상황을 고려해야 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 속도와 정도는 국가마다 다르겠지

만, 모든 국가의 국내 지배구조가 개선되어야 함이 명백하다. 우리 모두가 시급히 추구해야 할 필수적인 요인에 대해 아래와 같은 광범위한 국제적 합의가 존재한다.

- 민주적 정치 체제, 인권 존중, 법치, 그리고 사회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양질의 정치적 통치구조(good political governance)
- 높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보장하고, 공공재(public goods)와 사회보장을 제공하며, 교육 및 기타 사회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통해 국민의 역량을 향상시키며, 남녀평등을 장려하는 효과적인 국가
-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의해 강화되어 있고 모든 다양한 관점과 이해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활력 있는 시민사회, 공익, 가난한 자, 그리고 기타 약자 집단을 대변하는 조직, 또한 참여적이고 사회적으로 공정한 지배구조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 근로자 및 사용자의 강력한 대표 조직이 사회적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관건이다.

양호한 노동에 대한 남녀 모두의 집중적인 열망을 충족시키고, 비공식 경제의 생산성을 개선하여 경제적 주류에 통합시키며, 기업과 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에 최대 역점을 두어야 한다.

정책은 사람들이 살고 일하는 곳에서 그들의 수요를 충족하는 데 정확히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권력과 자원의 이양과 지방 경제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과 토착민 및 부족민의 권리를 존중함으로써 지방 공동체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민족국가는 개발 및 세계화의 지배(governance)에 있어 보다 강력한 목소리를 위한 주요 도구로서 지역적 및 소지역적(sub-regional)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지역 통합의 사회적

측면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세계 차원의 개혁(Reform at the global level)

세계 차원에 대해 우리는 보다 더 구체적인 권고를 한다. 주요 권고사항은 아래에 제시되는 바와 같다.

무역 및 금융 관련 국제규칙 및 정책은 개도국의 정책적 자율에 대한 여지를 보다 많이 남겨야 한다. 이는 개도국의 발전 수준과 특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정책과 제도적 장치를 개발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농업의 발전 및 산업화를 가속화하고 금융 및 경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개도국의 정책대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기존 규칙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규칙 또한 이러한 요건을 존중해야 한다. 국제기구 및 기부국(donor country)의 정책도 외부 조건에 영향을 받는 정책으로부터 국가의 독자적인 정책(national ownership of policy)으로 단호히 그 방향을 바꿔야 할 것이다. 앞서 발전한 국가의 역량과 동일한 역량을 갖고 있지 않은 국가를 우대하는 차별보상조치(affirmative action provision)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역 및 자본 흐름에 대한 공정한 규칙은 인력의 국경간 이동에 대한 공정한 규칙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 인구이동 압력이 증가했으며, 불법적인 인신매매 및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심화되었다. 인력의 국경간 이동을 위한 통일되고 투명한 규칙을 제공하고 이주자 자신과 그의 고국(country of origin) 및 이주 대상국(destination) 모두의 이해를 균형 있게 하는 다자 체제를 구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착취적인 관행을 제거할 수 있는 정연하고 잘 관리된 국제이주 과정(process of international migration)이 마련되면 모든 국가가 이로부터 혜택을 입을 것이다.

글로벌 생산체제(global production system)가 급증했으며, 이로

인해 외국인직접투자(FDI), 그리고 경쟁에 대한 새로운 규칙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포럼에서 협상되는 FDI에 대한 균형 있는 다자체제는 FDI 흐름을 장려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흐름의 혜택을 감소시키는 인센티브 경쟁(incentive competition)의 문제를 제한함으로써 모든 국가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체제는 민간, 공공, 그리고 노동자의 이해를 균형 있게 해야 하고 그들의 권리와 책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국가간 경쟁 정책에 대한 협력은 세계시장을 보다 투명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정의한 핵심노동기준(core labor standards)은 세계경제 속에서 노동에 대한 일련의 최소 글로벌 규칙을 제시하며, 모든 국가는 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수출가공지역(export processing zones) 또는 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글로벌 생산체제 내에서 핵심노동기준에 대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행동이 요구된다. 관련된 모든 국제기구들은 이러한 기준을 장려하며 그들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어떠한 측면도 이러한 권리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다자간 무역체제(multilateral trading system)는 특히 섬유, 의류, 그리고 농산물 등 개도국이 비교우위를 갖는 상품의 시장 접근에 대한 불공정한 장벽을 상당히 줄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출 잠재력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 및 특혜 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를 통해 저개발국의 이해관계가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실업자의 적응에 대한 지원(adjustment assistance) 등 실업자 개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최소 수준의 사회보호는 이의 없이 인정되어야 한다. 공여자(donor) 및 금융기관들은 개도국내 사회보호체제를 강화하는 데 공헌해야 할 것이다.

시장에의 접근을 더 확대하는 것이 만병통치약이 되지는 않는

다. 세계경제에서 높은 유효수요 수준을 유지하는 책임을 국가간에 균형 있게 나누는 것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세계 성장과 완전고용에 대해 보다 균형잡힌 전략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국가간 미시경제정책의 보다 개선된 조정(coordination)이 주요 요건이다. 성공적인 세계 성장전략은 국가간 경제적 긴장을 완화하고 개도국의 시장 접근을 쉽게 달성하게 해 준다.

모두를 위한 양질의 노동(decent work)이 세계적 목표가 되어야 하며, 이는 다자체제 안에서 일관된 정책을 통해 추구해야 한다. 이는 모든 국가내 주요 정치적 수요에 대응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창조적인 해결책을 찾는 다자체제의 역할을 보여줄 것이다.

국제금융체제는 지속가능한 세계 성장을 보다 더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국경간 재정 흐름은 크게 성장하였으나, 체제 자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불안정하다. 나아가 이의 대부분은 가난한 국가와 자본 부족 국가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다 큰 안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금융체제의 개혁이 단행되지 않는 한 무역과 FDI 영역에서의 이익을 충분히 실현시키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도국은 자본 자유화(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에 대한 신중하고 점진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위기에 대응하는 데 있어 보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조정조치(adjustment measure)를 순차적으로 채택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새천년 개발 목표 등 주요 세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제자원을 동원하려는 보다 큰 노력이 요구된다. 공적개발원조(ODA)의 목표인 GNP 대비 0.7% 수준을 달성해야 하고 이 목표를 초과하는 새로운 자금조달원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개발해야 한다.

국제경제 및 사회정책의 개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적인 정치적 지지, 세계의 주요 행위자들의 공약, 그리고 세계적 제도

(global institution)의 강화가 요구된다. 유엔 다자체제는 전지구적 지배구조의 핵심을 구성하며 개혁 과정의 선두에 설 수 있는 특별한 역량을 갖고 있다. 유엔 다자체제가 세계화 과정에 현존하는 혹은 향후 도래하는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히 민주적 대표(democratic representation) 및 의사결정, 대중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 등에 있어 그 체제의 효과성을 강화하고 지배구조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우리는 선진국들이 유엔체제에 지급하는 의무 기부금(mandated contribution)에 대해 0%의 명목 성장률을 유지하는 결정을 다시 고려하도록 요구한다. 국제사회가 다자체제에 대한 재정 기부를 증가하는 데 합의하고, 의무 기부금을 희생시키면서 자발적 기부금을 모금하는 경향을 반전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각국 정상들은 국제무대에서 자국이 추구하는 정책이 일관되고 국민의 복리에 초점이 맞추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 차원에서의 다자체제에 대한 의회의 감독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경제, 사회 및 환경정책 간의 일관성과 통합성과 관련된 의회단(Parliamentary Group)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며, 이는 주요 국제기구에 대한 통합된 감독 사항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보다 나은 전지구적 지배구조를 위한 중요한 요건은 유엔기구를 포함한 모든 기구가 그들이 추구하는 정책에 있어 일반대중에 대해 보다 진지한 책임감을 갖는 것이다. 각국의 의회는 이들 국제기구에서 자국에 대표가 이행한 결정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이 과정에 공헌할 수 있다.

브레턴-우즈(Bretton Woods) 체제내 의사결정에 있어 개도국의 대표성이 보다 확대되어야 하며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도국이 충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 특히 가난한 사람을 대표하는

조직들에게 보다 큰 목소리가 허락되어야 한다.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에 있어 기업, 노조,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각종 목소리 단체(지식인 및 주창자 그룹)의 참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책임 있는 언론은 보다 공정하고 포괄적인 세계화를 향한 움직임을 촉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제기된 쟁점을 일반대중이 충분히 인식하게 된다면, 바람직한 변화는 보다 쉽게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정책들은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의 흐름을 촉진하고 그 다양성을 장려해야 한다.

◆ 변화를 위한 행동 촉진

우리의 권고, 특히 현재 전지구적 의제(global agenda)로서 논의되고 있지 않는 이슈에 대한 권고의 광범위한 대화는 변화를 위한 행동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 첫 단계라 믿는다. 그런 대화는 필요한 합의와 정치적 의지의 기초를 구축하기 위해 각국 차원(national level)에서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동시에, 세계 차원에서 개혁을 전진시키는 데 있어 다자체제가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기구간 서로의 임무수행과 정책 이행이 상호 관련을 갖고 있는 경우, 그 이슈에 관해 정책 조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운영 도구(operational tool)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보다 공정하고 포괄적인 세계화를 달성하기 위해 보다 균형 있는 정책을 개발하려면 관련 국제기구들이 ‘정책 일관성 이니셔티브(Policy Coherence Initiatives)’를 출범시켜야 할 것이다. 이의 목표는 특정 이슈에 대해 경제·사회, 그리고 환경적 고려사항을 적절하고 균형 있게 하는 통합된 정책 제안을 점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첫 번째 제안은 세계

성장(global growth), 투자 및 고용창출을 다루어야 할 것이고, 관련 유엔기관,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가 참여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우선순위 분야로는 남녀평등과 여권신장, 교육, 보건, 식량안보, 그리고 인간 정주(human settlement) 등이 있다.

국경간 인력이동을 위한 다자체제, FDI를 위한 개발체제, 세계경제 안에서 사회보장 강화, 그리고 국제기구의 새로운 형태의 책임(accountability) 등과 같은 새로운 정책 제안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개발하기 위해 관련 국제기구들은 일련의 다자간 정책개발협상(a series of multi-stakeholder Policy Development Dialogue)을 조직해야 한다.

유엔 및 산하 전문기구는 세계화의 사회적 영향을 정기적 및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세계화 정책포럼(Globalization Policy Forum)을 개최해야 할 것이다. 참여하는 기구들은 정기적으로 ‘세계화 현황 보고서(State of Globalization Report)’를 작성할 수 있다.

우리의 제안은 보다 많은 사람들과 국가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과정에 보다 광범위하고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제안은 또한 정부, 의회, 기업, 노동자, 시민사회 및 국제기구 등 결정에 대한 역량과 권한을 갖는 당사자들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생산적인 세계 공동체를 장려하는 공동의 책임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약어

AIDS	후천성면역결핍증(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PEC	아태경제협력체(Asia and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U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BIT	양자간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CSO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COSOC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PZ	수출가공지역(Export Processing Zone)
EU	유럽연합(European Union)
FAO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DI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SA	금융부문 평가(Financial Sector Assessment)
G7	선진 7개국(Group of 7)
G8	선진 8개국(Group of 8)
G10	선진 10개국(Group of 10)
G77	77개 개발도상국 그룹(Group of 77)
GATS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and Services)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VI	세계백신면역연합(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

공정한 세계화: 모두를 위한 기회창출

GDLN	글로벌 원격교육 네트워크(Global Distance Learning Network)
GDP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SP	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HIPC	채무과다빈곤국을 위한 부채탕감 이니셔티브(Debt Initiative for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V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AIDS 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ICC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FTU	국제자유노련(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
ICT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FAD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F	국제금융기금(International Financing Facility)
IFIs	국제금융기관(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MF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LO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ffice)
IOE	국제사용자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Employers)
IOM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PRs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U	국제의회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
IT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U	국제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LDCs	저개발국(Least Developed Countries)
MAI	다자간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MDGs	새천년 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ercosur	남미공동시장(Southern Cone Common Market)
MNEs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s)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EPAD	아프리카 발전을 위한 신��파트너십(New Partnership for

약 어

	African Development)
NGO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IE	신흥공업경제(Newly Industrializing Economy)
ODA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HCHR	유엔인권고등판무관(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PRSP	빈곤감축전략서(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s)
R&D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ROSC	기준 및 규범 검토(Review of Standards and Codes)
SADC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CM	보조금 및 상계조치(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DRs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SMEs	중소기업(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RI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TPRM	무역정책 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TRIMs	무역관련 투자조치(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TRIPs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N	유엔(United Nations)
UNCTAD	유엔무역 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DP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EP	유엔환경 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SC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HCR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공정한 세계화: 모두를 위한 기회창출

UNIDO	유엔공업개발기구(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FEM	유엔여성개발기금(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
UNODC	유엔 마약 및 범죄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WCL	세계노동총연맹(World Confederation of Labour)
WHO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TO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목 차

제 I 부: 사람을 위한 세계화: 변화를 위한 비전 1

- ◆ 우리의 현 주소 5
- ◆ 우리의 목적지 8
- ◆ 목적지 도달 방법 9
- ◆ 보다 강력한 윤리적 틀 13
- ◆ 세계 공동체를 향해: 생산적 대화를 위한 통치구조의 강화... 16

제 II 부: 세계화와 그 영향 19

- II.1 견해와 인식 21
 - ◆ 공동의 장 22
 - ◆ 아프리카 26
 - ◆ 아랍세계 28
 - ◆ 아시아 29
 - ◆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 30
 - ◆ 유럽과 중앙아시아의 체제전환국 32
 - ◆ 서유럽 및 북미 34
 - ◆ 사용자, 노동자 및 시민사회 36

- II.2 세계화: 그 본질과 영향 40
 - ◆ 서론 40

◆ 세계화의 주요 특성	41
◆ 상호관계	49
◆ 정책환경	50
◆ 제도적 배경	51
◆ 세계화의 영향	55

제Ⅲ부: 세계화의 지배구조 77

◆ 서론	79
------------	----

Ⅲ.1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시작 82

◆ 국가 역량 및 정책	83
◆ 지방 차원으로의 권한 부여	103
◆ 디딤돌로서의 지역 통합	110

Ⅲ.2 전지구적 지배구조의 개혁 117

Ⅲ.2.1 분석 기반 117

◆ 세계화와 지배구조	117
◆ 현대의 전지구적 지배구조의 주요 결함	118
◆ 불안정한 결과	123

Ⅲ.2.2 공정한 규칙 125

◆ 서론	125
◆ 국가 개발을 위한 공간	125
◆ 무역을 위한 다자 규칙	128
◆ 글로벌 생산체제를 위한 규칙	135
◆ 금융체제의 개혁	139
◆ 세계화된 경제 속의 노동	144

Ⅲ.2.3 개선된 국제정책	159
◆ 서론	159
◆ 전지구적 목표를 위한 자원	159
◆ 주요 목표 달성	170
◆ 양질의 노동을 전지구적 목표로 정하기	177
◆ 경제 및 사회적 목표의 통합	184

Ⅲ.2.4 보다 책임있는 제도	185
◆ 다자체제의 강화	186
◆ 민족국가	193
◆ 의회	195
◆ 기업	196
◆ 노동조합	200
◆ 글로벌 생산체제 안에서의 사회적 대화	201
◆ 시민사회	202
◆ 커뮤니케이션과 대중매체	205
◆ 네트워크화 된 지배구조	206

제Ⅳ부: 변화를 위한 행동의 촉진	209
--------------------------	-----

◆ 서론	211
◆ 국가 차원에서의 사후관리	214
◆ 다자체제	215
◆ 보다 나은 정책개발	220
◆ 연구지원	223
◆ 제도적인 지원	225

부속서	227
-----------	-----

부속서 1: 제안 및 권고 지침	229
부속서 2: 세계위원회: 배경 및 구성	239
부속서 3: 위원회 회의, 협의, 연구	250
찾아보기	259

그림 목차

[그림 1] GDP 중 무역 및 순 FDI 유입 비중: 1970~2001	42
[그림 2] 지역별 평균 관세율: 1980~1989	42
[그림 3] 개발도상국의 제조품 수출 분포: 1990년대	43
[그림 4] FDI 유입, 개발도상국: 1985~2002	44
[그림 5] FDI에 대한 국내 규제 변화 추이: 1991~2000	44
[그림 6] 개발도상국으로의 FDI 유입 분포: 1990년대	45
[그림 7] 미지불 국제채권: 1982~2002	47
[그림 8] 추정 인터넷 접속률: 1997~2002	48
[그림 9] 미국 발신 국제전화 비용 및 통화량: 1960~2000	49
[그림 10] 세계 1인당 GDP 성장률: 1961~2003	56
[그림 11] 최빈국과 최부국의 1인당 GDP: 1960~1962 및 2000~2002	58
[그림 12] EU와 OECD의 평균 법인세율: 1996~2003	63
[그림 13] 세계 각 지역별 완전실업률: 1990~2002	64
[그림 14]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 지역의 국가별 위기 전후 실업률	65
[그림 15] 비농업 부문의 자기고용: 1980/1989 및 1990/2000	65
[그림 16] 최저소득자 10% 대비 최고소득자 10%의 비중: 1980년대 중반	67
[그림 17] 선진국별 국민총생산 중 상위 1% 소득자의 비중: 1975~2000	67
[그림 18] 73개국 내 소득불평등의 변화: 1960~1990년대	68

[그림 19]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 1990/2000	69
[그림 20] 교육에 대한 정부지출: 1992~2000	73
[그림 21] 개발원조위원회 국가가 개발도상국 및 다국적기구에 제공한 순공적개발원조: 1970~2002	161

제I부 사람을 위한 세계화: 변화를 위한 비전

- 우리의 현주소
- 우리의 목적지
- 목적지의 도달 방법
- 보다 강력한 윤리적 틀
- 세계 공동체를 향해: 생산적 대화를 위한 통치구조의 강화

I. 사람을 위한 세계화: 변화를 위한 비전

우리의 현주소

우리의 목적지

목적지의 도달방법

보다 강력한 윤리적 틀

세계 공동체를 향해: 생산적 대화를 위한 통치구조의 강화

1. 현재의 세계화 경로는 변해야 한다. 세계화의 혜택을 입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계화를 설계하는 데 있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 과정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한다.
2. 세계화의 결과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세계화의 결과는 그 방향을 지배하는 정책, 규칙 및 제도, 그 행위자들을 움직이게 하는 가치, 그리고 세계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들의 역량 등에 의존한다.
3. 세계위원회 위원들은 세계화에 대한 공공 논의에 있어 자주 분열되는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의견과 이해를 대표한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를 위한 기회를 창출하는 공정한 세계화라는 공동의 목표에 대해 합의하였다. 우리는 세계화를 인간의 안녕과 자유를 확대하고 민주주의와 개발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local community)로 전달해 주는 수단으로 만들기를 희망한다. 우리의 목표는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 행동에 대한 합의를 구축하고 국가, 국제기구, 사용자, 노동자 및 시민사회 등 행위자들이 이 비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장려하는 것이다.
4. 우리는 결정적이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낸다. 우리는 세계화의 혜택이 확대될 수 있고, 그 결과가 보다 잘 공유되며, 그에 따른 문제

점 중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필요한 자원과 수단은 준비되어 있다. 우리의 제안은 야심적이지만 실현 가능하다. 우리는 보다 나은 세계가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5. 우리는 공정하면서 양질의 삶을 위한 선택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필요한 권리, 기회 및 능력을 모든 남녀에게 제공하는 과정을 추구한다.

6. 우리는 보편적 가치의 소중함, 그리고 세계화의 통치구조를 인도하고 그의 행위자의 책임을 정의하는 데 있어 인권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7. 우리는 경제성장을 사회발전 및 환경의 지속 가능성에 보다 잘 연계하는 정책을 가진, 보다 응집력 있는 세계화의 통치구조를 요구한다.

8. 우리는 현실적이어야 한다. 세계화에는 여러 측면이 있지만, 우리에게 위임된 과제는 그것의 사회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대화 및 이니셔티브를 인식하며, 이들을 장려하고 뒷받침하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

9. 세계화는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에 의해 평가된다. 빈곤, 양질의 노동의 부족, 인권 부인(denial of human rights) 등 오늘날 세계의 많은 병폐들은 현재의 세계화 단계 훨씬 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세계의 특정 지역에서는 배제와 결핍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 많은 이들에게 있어 세계화는 전통적 생계와 지역사회에 혼란을 야기시켰고 환경의 지속 가능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위협한다. 현재의 국경간 상호 작용 및 상호 연결의 과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간 불균형뿐 아니라 국가내 불균형, 그리고 그것이 사람, 가족 및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계속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사는 정치의 심장부에 위치한다. 세계화에 대한 논의는 빠른 속도로 세계화된 경제 속에서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에 관해 화제가 집중되고 있다.

10. 우리는 물론 세계화가 많은 혜택의 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것은 개방사회 및 개방경제를 촉진하고 상품, 아이디어 및 지식의 보다 자유로운 교환을 장려했다. 세계의 많은 곳에서는 혁신, 창

조성 및 기업가 정신이 번성하였다. 동아시아에서는 성장을 통해 단 10년 안에 2억 명이 빈곤을 탈출하였다. 보다 나은 커뮤니케이션은 권리와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켰으며 사회운동이 여론을 동원하고 민주적 책임성을 강화시킬 수 있게 해주었다. 그 결과 빈곤의 불평등, 성차별, 아동노동 및 환경 파괴 등이 어디에서 발생하든지 간에 이에 대해 민감한, 진정으로 세계화된 양심(conscience)이 부상하기 시작했다.

11. 그러나 현재의 세계화의 진행 방향에 대한 우려 또한 확산되고 있다. 세계화의 이익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멀리 있는 반면, 그의 위험은 너무나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그의 변동은 장기적으로 빈부모두를 위협한다. 엄청난 부가 만들어진다. 그러나 빈곤, 배제 및 불평등의 근본적인 문제들은 지속된다. 부패는 만연하다. 개방된 사회는 세계의 테러 행위에 의해 위협받고 있으며, 개방시장의 미래에 대해 의문이 계속 제기된다. 전지구적 지배구조는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는 중대한 시점에 와 있으며, 결국 우리는 우리의 현 정책과 제도를 시급히 재고해 보아야 한다.

◆ 우리의 현주소

12. 현재 세계화된 경제의 작용에는 윤리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하고 정치적으로도 지속이 불가능한 고질적이고 지속적인 불균형이 존재한다. 이는 경제, 사회 및 정치 간에 근본적인 불균형 때문에 발생한다. 경제는 점점 더 세계화되는 반면, 사회 및 정치 제도는 그 대부분이 지방(local), 국가(national) 및 지역(regional) 차원에 머문다. 기존의 세계제도(global institution) 중 그 어느 것도 세계시장에 대해 민주적인 감독을 적절히 하지 않으며 국가간 기본적 불균형을 시정하지 않는다. 세계화의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나은 제도적 틀과 정책이 필요하다.

13. 경제와 사회 간의 불균형은 사회 정의를 파괴한다.

- 대부분의 사회에서 공식적 세계경제와(그 규모가 확대되는) 비공식 지역경제 사이의 격차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비공식 경제 내에서 살고 일하는 세계의 대다수 사람들은 시장 및 세계화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고 평등하게 참여하지 못하도록 계속 배제되고 있다. 그들은 생산적인 경제 거래 영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권 및 기타 권리 그리고 능력 및 자산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 세계화의 혜택은 국가내 그리고 국가간에도 불균등하게 배포되었다. 승자와 패자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부국과 빈국 간의 격차는 더욱 커졌다. 1990년대 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빈곤층이 1990년대 초와 비교하여 증가하였다.
- 세계의 규칙(global rule)간에도 불균형이 존재한다. 경제 관련 규칙 및 제도가 사회 관련 규칙 및 제도에 비해 우세한 반면, 이미 존재하는 규칙과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현 세계의 실상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제조 분야의 무역은 자유화된 반면, 농업 분야는 여전히 보호된다. 상품과 자본이 사람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국경을 이동한다. 위기 발생시 선진국은 거시경제정책에 있어 보다 폭 넓은 대안을 갖고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은 구조조정에 대한 요구에 의해 너무 자주 제약을 받는다. 너무나 많은 경우, 국제정책은 국가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실행된다. 오늘날 세계무역의 규칙은 그것이 국가가 되었건, 기업 또는 공동체가 되었건 간에 부자와 권력이 있는 자에게 유리하고 빈자와 약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변화와 조정에 대해 적절히 사회적 및 경제적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구조적 변화는 선진국과 후진국 등 모든 곳에 있는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불확실성과 불안정을 가져다 주었다. 여성, 토착민, 그리고, 자산 및 기술이 없는 빈곤한 노동자 등이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다. 실업 및 불완전 고용은 대부분 세계 인구에게 있어 난제로 남아 있다.

14. 경제와 정치 간의 불균형은 민주주의적 책임성을 저해한다.

15. 오늘날, 지배구조에 대한 국가 또는 국제 제도(institution)는 대표성(representation)이나 참여성(voice) 측면에서 사람들과 국가들의 새로운 요구를 적절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 세계화는 여론 자체를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만들었다. 이제 여론은 국가와 정당에서부터 국제기구 등에 이르는 모든 기존 정치 체도를 강하게 압박하여 대리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 간에 새로운 긴장을 형성하였다. 특히 유엔(UN), 브레턴-우즈(Bretton Woods) 체제 및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들은 보다 공정한 의사결정과 보다 큰 공적 책임성과 관련한 압력을 계속 받고 있다. 세계 의사결정(global decision-making)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상당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 세계시장에 있어서는 공공 감독(public supervision)을 위한 제도가 부족한데, 공공 감독은 많은 국가의 국내 시장에 있어 적법성과 안전성을 제공해 준다. 현 세계화 과정은 민주주의와 시장 간의 균형을 유지해 주는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
- 많은 국가에서는 국제시장에 대한 의무(compulsion) 때문에 국내 경제에서 취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의 범위가 좁아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로 인해 국가가 주권을 빼앗기고 권력이 그들이 선출한 정부로부터 다국적기업과 국제금융기관으로 이전된다고 생각한다.

16. 모든 곳에서 기대보다는 기회가 더 적었고, 희망은 분노로 돌변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동시에, 사람들은 세계화의 현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과정을 중단시키거나 역행하려고 하는 이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디어, 지식,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국경간 교류에 찬성한다. 남녀 모두 추구하는 것은 그들의 존엄성과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존중이다. 그들은 양질의 생계(decent living)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요구한다. 그들은 세계화가 그들의 일

상생활에 가시적인 혜택을 가져오고 그들의 자손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할 것을 기대한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경제와 공동체의 세계시장에 대한 통합의 정도 및 본질 등을 포함하여 세계화 과정의 지배구조 안에서 목소리를 내고 세계화의 결과에 보다 공정하게 참여하길 희망한다.

17. 우리는 이러한 열망에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세계화의 잠재성은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 우리의 목적지

18. 우리의 비전은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는 세계화의 과정이다.

19. 우리는 공정하면서도 보다 많은 사람과 국가에게 혜택과 실질적인 기회를 가져오며 보다 더 민주적으로 관리되는 세계화 과정을 추구한다.

20. 우리는 인간의 가치를 유지하고 자유, 번영 및 안전의 측면에서 사람들의 안녕을 장려하는 사회적 차원을 가진 세계화를 추구한다. 남녀의 눈을 통해 세계화를 보면, 양질의 노동을 보장하고 식량, 물, 보건, 교육 및 주거 등 그들의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또한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기회의 측면에서 보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차원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은 세계화를, 전에 존재하였던 지배 및 착취의 새로운 형태로 간주할 것이다.

21. 이러한 사회적 차원의 필수요인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국가, 국제기구, 기업, 노동자, 시민사회, 언론 등 모든 행위자가 각자의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화 과정. 이는 국제법에 따른 의무와 책임에 대한 존중을 요구한다. 그리고 또한 경제개발이 인권 존중에 기반할 것을 요구한다.
-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Rights)에 명시된 바

와 같이, 모든 사람의 인간 존엄성을 위한 기본 물질 및 기타 요구 사항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공약. 빈곤 퇴치와 새천년 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달성은 세계화된 경제를 위한 사회·경제적 ‘기초’를 다지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 모든 이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생계 및 고용을 확대하고, 남녀평등을 장려하며, 국가간 그리고 사람간의 불균형을 감소시키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경로. 이는 경제·사회 및 환경정책들 간의 보다 강화된 일관성을 요구한다.
- 보다 많은 목소리와 참여를 허용하고 책임성을 보장하면서 대의민주주 기관의 권한과 법치를 존중하는 보다 민주적인 세계화의 통치구조.

22. 이는 실현 가능한 비전이다. 빈곤, 질병 및 교육 등 가장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존재한다.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했다 :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만, 모든 사람의 탐욕을 채우기에는 결코 충분할 수 없다.”

◆ 목적지 도달 방법

23. 세계화된 행동을 취하기 위해 필수적인 유엔이라는 다자체제가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다. 최근의 사건들을 통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유엔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9·11 테러 및 지구상에서 발생한 기타 테러 사건들은 우리 현실의 공통적인 취약성, 그리고 통일된 행동의 필요에 대해 실감하게 하였다. 질병과 내란에 의한 조직사회의 침식,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의 지배구조의 붕괴는 다자간의 협력과 공동 행동(collection action)의 필요성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세계의 세계화 및 상호 의존성의 배경과는 별도로 추구될 수 없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24. 세계화는 다자주의를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만든다. 유엔의 다자체

제 및 유엔 관련 기구들은 개발, 무역, 금융 및 국제평화 및 안보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 및 기술 분야 등에서 필요로 하는 글로벌 정책을 위한 기초를 제공해 준다. 이 기구들의 선언 및 규약은 보편적 가치를 반영하며, 보편적 참여(universal participation)는 아무리 강력한 국가가 있다 하더라도 개별 국가가 결코 따라갈 수 없는 세계적 정당성을 다자 체제에게 부여한다. 그들은 또한 국제적 법치(international rule of law)에 따라 세계화 과정을 인도할(오랜 경험에 의해 검증받은) 일정한 틀을 제공해 준다.

25. 상호 의존의 세계에서는 사람들의 욕구와 열망에 대응할 수 있는 항구적인 대안이 없다. 다자주의는 투명성을 보장하고, 비록 부적절할지라도 국제사회에서 권력이나 영향력의 비대칭에 대항하는 보호막을 제공해 준다. 그러나 세계화는 점점 더 다자주의를 부자와 강자에게만 소중한 자산으로 만들고 있다. 그것은 그들의 번영과 안전에 필수적이 되었다. 경제력의 중심지가 부상하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소비자의 수요가 방대하게 존재하는 세계에서는, 균형 잡힌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다자 체제가 세계시장의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확장을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불안정한 세계에서 그러한 체제는, 양국간의 경제 갈등이 양국간의 정치 갈등으로 쉽사리 이어지지 않도록 보장해 준다. 그리고 세계 안보에 대한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다자간 협력은 최대 강국을 포함한 모든 이에게 있어 필수적이다.

26. 그러나 가장 필요한 시점에서 다자주의는 도전을 받고 있다. 중동 지역내 갈등, 그리고 지속적인 세계 빈곤 및 불평등 문제 등은 현대의 국가 권력과 여론을 평화와 개발을 위한 지속적 동맹 상태로 결합시키는 일이 시급히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27. 유엔체제와 유엔회원국들은 세계화되는 세계에 적응해야 한다. 현재의 다자체제의 구조나 작용은 제2차 세계대전 후 회원국 사이에 정립된 세력 균형(balance of power)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는 경제 및 정치 권력의 근원적인 구성을 변화시키고 있고, 그에 따른

긴장 상태를 유엔체제에서 느낄 수 있다. 다자체제는 또한 의사결정에서 보다 큰 역할을 주장하는 개발도상국의 요구는 물론, 보다 큰 목소리와 투명성을 주장하는 시민사회의 요구 등을 수용해야 한다. 많은 긴장 상태들은 그동안 계속 쌓여 왔었다. 세계화가 가속화됨으로써 그것들이 표면으로 노출되어 국제협상을 결렬시켰으며, 이로 인해 모든 당사자들이 분노 및 좌절하게 되었고, 국제기구의 효력이 감소되었다.

28. 이러한 상황을 시정해야 한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말했듯이, “우리는 공동으로 도달한 결정에 대해 보다 더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며, 이러한 결정을 성실히 이행시키려는 결의를 더 크게 다져야 하고 나아가 이를 위해 더욱 강력한 국제적 연대감 및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필연적으로, 국가와 개인에게 더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권할 것인지, 그리고 기존의 국제 제도를 급진적으로 개혁하는 일도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내 견해는, 적어도 회원국들이 이미 존재하는 국제 제도의 ‘구조(architecture)’를 정밀히 검토하고, 이것이 우리 앞에 제시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지에 대해 자문을 해야 한다고 본다.”¹⁾ 우리는 이러한 유엔 사무총장의 견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29. 세계화의 지배구조, 그리고 다자체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보다 나은 도구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보다 일관된 국제정책 및 제도적 개혁을 위한 구체적 제안사항은 뒤의 제III부와 제IV부에 소개된다.

30. 보다 공정한 세계화는 생산적이고 공평한 글로벌 경제체제 위에 구축되어야 한다.

31. 일반적으로, 오늘날 개방시장경제는 개발, 성장 및 생산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로 인식된다. 오늘날, 그 어느 국가도 세계경제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 결국 성장, 개발 및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계시장과의 상호 작용을 잘 관리하는 것이 과제다. 이는 일자리, 부(富), 그리고

1) UN,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General Assembly, A/58/323, 2003).

혁신을 창출함은 물론, 공공 자원에 공헌할 수 있는 성공적이고 책임있는 기업뿐 아니라 지속가능 성장과 성장 결과의 공평한 분배를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노동자 및 사용자 대표 조직을 필요로 한다.

32. 효율적인 시장은 효과적 국가를 필요로 한다. 어떤 사회(country)가 세계화의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공평한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제도들을 유능하게 개발할 수 있는 국가(State)가 필요하다.

33. 세계화의 보다 나은 통치구조는 기업발전, 고용창출, 빈곤 감소 및 남녀평등을 촉진할 국가정책을 위한 공간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는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를 강화하고 기능과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는 비공식성, 불평등, 그리고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을 지원해야 한다. 이는 또한 각 국가와 공동체가 각자의 성장 및 개발경로를 정의하고 각자의 사회 및 경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세계화의 보다 나은 통치구조는 경제 및 사회정책들 간의 보다 큰 일관성을 요구한다.

34. 법치, 민주주의, 인권 및 사회적 평등 등 사회 모든 차원에 걸친, 모범적 통치구조(good governance)는 공정하고 생산적인 세계화 과정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는 국가 및 민간 행위자들의 공공 책임성(public accountability)과 시장의 효율성을 보장한다. 부국이든 빈국이든, 그리고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지 간에 그 어느 국가도 모범적 통치구조를 독점할 수 없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특별한 제도적 모델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35. 우리는 세계 정부라는 유토피아적인 피난처를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권력과 불평등의 현실을 인식한다. 그러나 자신들의 운명에 대해 더 큰 통제권을 행사하려는 오늘날 남녀 모든 사람들의 결의,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 주는 보다 공정하고 포괄적인 세계화의 잠재성은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다.

36.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인가?

◆ 보다 강력한 윤리적 틀

37. 세계화의 통치구조는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가치와 인권 존중에 기초해야 한다. 세계화는 시장에서의 성패가 궁극적인 행동의 기준이 되고 ‘승자 독점’의 태도가 공동체 및 사회의 조직을 약화시키는 윤리적 공백 속에서 발전해 왔다.

38. 보다 ‘윤리적인 세계화’에 대한 요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날 공공 생활(public life) 안에서 기본 윤리 가치를 재확인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뿌리깊은 열망이 존재한다. 또한, 이런 가치는 아동노동의 근절에서 지뢰금지에 이르는 보편적 정당성을 위한 많은 공공 캠페인의 원동력이 된다.

39. 단결된 사회는 민간 및 공공 행동을 위한 도덕적 및 윤리적 틀을 형성하는 공유된 가치를 중심으로 구축된다. 세계화는 아직 세계화된 사회를 형성하지는 않았지만, 사람과 국가 간에 증가된 상호 작용은 공동의 윤리적 준거 기준이 시급히 필요함을 강하게 인식시켜 주었다.

40.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틀은 유엔 다자체제의 선언이나 조약들에 이미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그것은 유엔헌장(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Rights), 그리고 최근에 채택된 유엔 새천년선언(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 안에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보편적 가치와 원칙들은 세계의 종교적, 그리고 세속적 신념들의 공통된 바탕을 나타낸다. 그것들은 세계화 과정을 위한 기초를 제공해야 한다. 그것들은 세계화된 경제의 규칙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고, 국제기구들은 이 규칙에 따라 그들의 위임 과제(mandate)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41. 이러한 보편적 가치와 원칙의 특정 단면들은 세계화에 대한 공공 논의 안에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들은 큰 변화와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사람들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 남녀평등을 포함한 인권 및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 이는 국제 사회가 이미 공약한 사항의 핵심이다.
- 보편적 원칙을 전적으로 존중하면서 문화, 종교, 정치 및 사회적 견해의 다양성의 존중
- 공정성. 공정성은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깊이 실감하고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세계화와 그에 따른 혜택의 공평한 분배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의의 기준이다.
- 연대감은 공동 인류 및 세계 시민정신에 대한 인식이고, 이에 동반되는 책임의 자발적 수용이다. 이것은 국가내, 그리고 국가간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의식적인 약속이다. 이는 상호 의존의 세계에서는 한 곳에서의 빈곤 또는 탄압이 다른 모든 곳의 번영과 안정을 위협한다는 인식을 기초로 한다.
- 자연에 대한 존중은 세계화가 지구상 자연의 생명 다양성과 지구 생태계의 생존 능력(viability)을 존중하고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등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해야 함을 요구한다.

42. 보편적 가치와 원칙은 세계화의 민주적 통치구조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책임성, 이니셔티브, 법 존중, 정직함, 그리고 투명성 등 개방적이고 효과적인 시장경제를 위해 필수적인 가치가 포함된다.

43. 보다 공정하고 번영하는 세계는 보다 안전한 세계를 위한 관건이다. 테러는 흔히 대중으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빈곤, 불의, 그리고 절망 등을 이용한다. 이러한 상황의 존재는 테러 행위에 대항하는데 있어 장애가 된다.

44. 문제는 원칙과 실천 간의 격차를 줄이는 데 있다. 국제사회는 실제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공약을 한다. 특히 세계의 최빈국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의 기록에서 선언과 실천 간의 격차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45. 세계경제에서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 가능하려면 개별 행위자는 물론 모든 수준의 제도와 기구들이(institutions) 모두 해야

한다.

46. 국가, 시민사회, 기업, 노조, 국제기구, 개인 등 세계화의 행위자들은 이러한 가치에 고무되어 자신들의 책임을 수용해야 하고, 그들의 모든 상호 행동(transaction)에 있어 그것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국가이든 기업이든, 부자와 권력 있는 자들은, 그들의 행동이 세계복지에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별한 책임을 갖는다.

47. 강화되어야 할 자발적 이니셔티브는 다양하다. 여기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소비자와 투자자의 윤리적 관심을 동원하는 운동, 노동기준 장려를 위한 노조의 캠페인, 그리고 다양한 공공 이슈를 알리고 이에 대한 여론을 동원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캠페인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48. 유엔체제의 다자 제도는 국제 규범과 정책을 제시하고 촉진하기 때문에 특별한 역할을 해야 한다. 보편적 가치 및 법치가 국제적 참여(engagement)의 조건과 국가 및 전지구적 지배구조의 체제를 인도해야 한다.

49. 우리는 세계화가 보편적 가치에 대한 보다 나은 국제 대화를 긴요하게 만들었다고 믿는다. 세계화의 역동성으로 인해 많은 정치적 협상에서는 가치가 더욱 중요시되었다. 구조조정(structural adjustment)은 다른 국가들도 동일한 윤리 규칙을 따르는지에 대한 긴장과 의구심을 국내에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현상은 예를 들어, 무역, 금융, 인권 및 개발원조 등에 관한 국제 토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긴장은 부국과 빈국 간의 연대감을 약화시킨다.

50. 문화는 정체성과 소속감의 중요한 상징이다. 세계화는 동질화(homogenization), 바람직하지 않은 통합(undesired integration), 또는 정적인 보존(static preservation) 등이 아닌 다문화적 다양성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세계 및 지방의 전통, 그리고 생활방식들이 결합하여 모든 차원에서 새로운 형태의 전통과 양식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재구성 과정이어야 한다.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창조적 활동(endeavours)을 수행하도록 자신감과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려면 다양

한 국가 및 지방의 문화들을 조심스레 보전하고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

51. 궁극적으로, 공정하고 포괄적인 세계화에 대한 공동의 공약은 인류와 지구를 공유한다는 공동 인식에 기초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은 안정적인 국내 공동체 및 국가의 기본 전제이다. 경제는 점점 세계화되고 있으나 세계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그러나 이미 그 사이에 어떤 긍정적인 요소들이 부상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는 이를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 세계 공동체를 향해: 생산적 대화를 위한 통치구조의 강화

52. 전후 세계 질서는 국가들의 국제 공동체를 기초로 정립되었다. 1919년부터 ILO 내에서 사용자 및 노동자 등 비국가 행위자가 대표되었지만, 그 당시 주요 행위자는 국가였다.

53. 오늘날에는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를 포함한 수많은 행위자들이 세계화의 진화를 구체화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엔체제하의 기구들 외에도 의회 및 지방정부, 다국적기업, 노조, 사용자단체, 협동조합, 종교단체, 학계, 경제 및 사회 관련 협의회, 기금 및 자선단체, 지방활동단체, 비정부기구(NGO), 언론 등이 포함된다. 세계 네트워크는 청년 및 소비자단체, 농민, 과학자, 교사, 변호사, 의사, 여성 및 토착민 등의 다양한 집단들을 모이게 한다.

54. 이렇듯 발전하는 각 네트워크는 공동의 이해나 신념의 결속을 통해 상호협력을 증가시킨다.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많은 이니셔티브가 착수되었다. 여기에는 인터넷 관리, 남녀평등, 이주, 보건 및 인간 안보 등을 다루는 이니셔티브들이 포함된다.

55. 우리는 이미 이 과정들의 두드러진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과정들은 보통 특정 이유에 따라 정의된다. 여기에는 국가 및 비국가 등 많은 행위자들이 참여하여 지방 차원에서부터 세계 차원에 이르기까지 상호

작용을 한다. 모든 경우, 이들은 공공 대화 및 공공 참여 증가라는 특성을 갖는다. 그들이 지원하는 새로운 기술과 네트워크는 확장적이고 혁신적인 형태의 상호 작용을 위한 조건을 조성한다.

56. 이렇듯 다양한 행위자가 모였다고 해서 이를 세계 공동체라 칭하기엔 너무 이르다. 단일화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다. 권력 및 영향력에 있어서 큰 불균형이 존재한다. 또한 의견이나 이해가 폭발적으로 다양하다. 이는 겨우 생존을 유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절되고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

57. 그러나 인간의 상호 작용은 급증하고, 네트워크는 더욱 밀도가 높아진다. 이러한 과정은 세계화 그 자체, 무역 및 생산의 통합 심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여행 및 아이디어 교류 증가 등에 의해 추진되는 진화 과정이다.

58. 오늘날 전지구적 통치구조가 보다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체제로 발전할 잠재성은 세계 정부에 대한 청사진이나 제도적 리엔지니어링보다는 증가하는 사람 및 제도 관련 네트워크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달려 있다. 이들 네트워크는 기존 국제기구 체제를 보완할 뿐 아니라 초월한다. 그것들은 공유되는 이해와 공동의 목표를 갖는 미래의 세계 공동체의 온상이 될 수 있다.

59. 이렇듯 부상하는 특정 영역에서의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의 네트워크 내에서 그리고 네트워크 간에 보다 체계적인 대화를 격려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다. 이러한 대화는 참여를 확대하고 합의를 구축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들의 관점에서 욕구를 파악하게 해 준다. 이는 경제 전환 및 세계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긴장 상태를 중재하는 데 도움을 주며 공동 목표를 선정하고 개별 책임을 확정함으로써 가치를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수단을 제공한다. 이러한 대화는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경제성장과 사회 진보를 연계하는 보다 일관된 행동의 기초가 된다.

60. 이 보고서는 미래의 진정한 세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초석인 개방

적 대화에 기초한 행동을 요구한다. 이해는 흔히 서로 상충될 수 있지만, 우리는 보다 공정하고 포괄적인 세계화의 필요성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의견이 수렴되어 간다고 믿는다. 이러한 수렴은 우리의 상호 의존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우리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날, 가공할 만한 위험에 대한 인식의 증대에 기초한다. 이러한 인식은 세계화 자체에 의해 보다 확대 및 강화된다. 미래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이러한 현실의 힘에 기초한다.

61. 우리가 제안하는 권고사항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채택된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화는 상당히 개선될 것이며, 보다 많은 사람과 국가에게 혜택과 안정을 가져다줄 것이다.

제II부 세계화와 그 영향

II.1. 견해와 인식

- 공동의 장
- 아프리카
- 아랍세계
- 아시아
-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
- 유럽과 중앙아시아의 체제전환국
- 서유럽 및 북미
- 사용자, 노동자 및 시민사회

II.2. 세계화: 그 본질과 영향

- 서론
- 세계화의 주요 특성
- 제도적 배경
- 세계화의 영향

II.1 견해와 인식

공동의 장

아프리카

아랍세계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

유럽과 중앙아시아의 체제전환국

서유럽 및 북미

사용자, 노동자 및 시민사회

62. 세계위원회의 우선순위 과제는 전세계 각 지역의 광범위한 관점에서 세계화를 바라보는 것이었다. 즉 세계화가 사람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어떤 희망, 두려움 및 우려를 낳았으며, 또 세계화에 따른 기회를 확대하고 불안정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지 등을 고려했다.

63. 이를 위해, 우리는 국가, 지역 그리고 세계 차원에서 광범위한 대화와 협의 프로그램을 착수했다. 정부의 장관 및 청장, 지방 정치가 및 의원, 전국 노동자 및 사용자협회 지도자, 시민사회 대표, 종교 지도자, 여성 및 토착민 조직 대표, 학자 및 언론인 등 의사결정자 및 사회적 행위자 2,000명 이상이 참여하였다.²⁾ 대화는 참석자들이 상호 작용하도록

2) 총 26개의 국가 및 지역 대화가 개최되었다. 아프리카, 아랍국가, 아시아, 유럽 및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에서 개최된 지역협의 외에도 다음 국가에서 국가 대화 및 협의가 개최되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중국, 코스타리카, 이집트, 핀란드, 독일, 인도, 멕시코, 필리핀, 폴란드, 러시아, 세네갈, 남아프리카 공화국, 탄자니아, 태국, 우간다, 미국, 우루과이. 국제 사용자, 노동자 및 시민사회단체의 견해를 듣기 위해 9개의 특별 협의가 개최되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본 보고서 부속서에 명기되어 있다. 이 정보를 보충하기 위해, 우리는 다른 조직에서 시행한 몇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검토하였다.

설계되었으며, 참여자들은 서로간에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위원회 위원들과도 의견을 나누었다.

64. 비록 참석자들이 전체 여론을 대표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대화는 우리가 세계화를 ‘사람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도와주었다.³⁾ 세계화의 혜택은 전반적으로 인정되었지만, 대화 내용에는 비판적 의견이 분명히 파악되었다. 우리가 대화를 요약하여 여기에 제시한 이유는 언급된 내용 모두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 물론 참석자의 의견도 다양했고 서로 이견이 상충하는 경우도 있었다 — 어떤 질문이 제기되고, 어떤 우려가 표명되며, 어떤 이해관계가 있으며, 사람들이 어떤 가치와 목표를 지지하는지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들은 보다 공정한 세계화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간의 보다 나은 대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 공동의 장

65. 사람들의 견해와 인식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 사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소유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대화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 속에서도 공동의 의견도 많았다.

66. 거의 모든 곳에서 기술, 경제 혹은 정치에 의해 기동되는 세계화의 힘을 느끼고 있었다. “해변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큰 파도가 몰아닥쳤다”라고 이집트에서 개최된 대화의 참석자가 말했다. 세계화는 개인의 관점에 따라 두렵거나, 활기차거나, 압도적이거나 창조적일 수 있다.

67. 불안정성과 불안감이 팽배했다. 코스타리카 대화에서 한 참석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화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더욱 커진다. 즉 보통 사람들, 국가 그리고 지역 등은 자신들이 연약하다는 느낌이 점점 커진다”. 불

3) 대화에 관한 정식보고서는 www.ilo.org/wcsdg/consulta/index.htm에서 읽을 수 있다.

안정한 세계금융체제는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다. 세계 모든 곳에서 사회 보호 및 소득보장에 관한 보다 강력한 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68. 또 다른 공동의 관심사는 문화 및 정체성에 대한 세계화의 영향이다. 몇몇 사람들은 세계화가 “가정이나 학교와 같은 전통적 제도를 위협”하거나 전체 공동체의 생활방식을 위협한다고 보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전통방식 대신 현대적 태도 개발에 따른 혜택을 언급하였다.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을 포함하여, 남녀평등에 대한 시사점이 언급되었다.

69. 매번 두드러지게 제기되었던 이슈는 고용과 생계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회들간의 더 큰 개방과 상호연계에 찬성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일자리와 소득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덜 긍정적인 대답을 한다.⁴⁾ 필리핀 개최 대화 참석자는 이렇게 말했다. “아이의 신발 가격을 낮추어 주지만, 그 아이 아버지의 일자리를 희생시키는 세계화는 무의미하다.” 또한, 대부분의 일자리는 소기업에서 창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기업들이 세계화를 이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는 언급이 자주 있었다. 농촌 및 비공식 경제는 주변부에 머물고, 이는 지속적 빈곤의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경쟁적 세계시장 속에서 산업 구조조정의 결과로 인한 실업 그리고 유럽, 북미, 중간 발전수준 국가 및 체제전환국에서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 권리의 하락 압력 등에 대해 우려하였다.

4) 여러 국가에 거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나왔다. 예를 들어, Environics International이 7개국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 중 평균 48%가 세계화는 삶의 질과 경제발전에 있어 유익하다고 응답했으나, 세계화가 일자리와 노동자 권리에 있어 유익하다고 한 응답자는 38%에 불과했다(조사의 정식 보고서는 *Global Issues Monitor 2004*, Toronto, Environics International, May 2002). 또 다른 다국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국제무역, 세계 커뮤니케이션 및 국제 대중문화가 그들 자신 및 가족에게 유익하게 보고 있는 반면, 이와 동시에 세계화의 영향을 받은 부분을 포함하여 그들 삶의 많은 부분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좋은 보상이 지급되는 일자리도 포함된다(*Views of a changing world*, Washington DC, the Pew Research Center for the People and the Press, June 2003, p.10 참조).

70. 세계화는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화는 사회에서 시장의 역할은 물론,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이 요구와 열망을 어떻게 표출하고 충족하는지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토론을 유발하였다. 세계화된 경제의 불공정한 규칙이 인간적 진보를 방해한다고 많은 이들이 주장하였다. 이러한 불공정 규칙은 부자와 권력자에게 편파적으로 유리하며 경제정책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어떤 경우, 세계 다른 곳에서 발생한 부정적 영향들은 놀랍게도 너무나 흡사하였다. 예를 들어, 브라질과 탄자니아의 각 대화에서는 농업보조금으로 인한 피해를 설명하는 데 제기되는 불평이 동일하였다. 즉 유럽에서 수입한 분유 때문에 국내 생산 우유의 수요가 떨어졌을 뿐 아니라 질 나쁜 상품이 국내 시장으로 들어온다는 것이다.

71. 그러나 공정한 규칙이 저절로 공정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보다 불리한 입장에 놓인 이들이 ‘발전의 흐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의 의제는 너무나 무역과 투자에 집중되었고, 인권이나 환경에 대한 논의는 충분치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는 국제적 차원의 ‘민주성 결핍(democratic deficit)’이 그 일부 원인이 될 수 있다.

72. 법치 및 민주적 제도를 기반으로 다른 사회 행위자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이루며 일하는 국가의 새로운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 광범하게 동의하였다.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국가(all-embracing State)의 개념의 신뢰성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세계화는 국가를 너무 약화시켰다. 세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는 국가 역량을 개발하고, 경제활동을 규제하고, 공평성과 공정성을 장려하고, 필수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협상에 효과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73. 세계화의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국가가 교육, 기능 및 기술 역량 등에 전면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언급되었다. 교육체제는 개혁이 필요하고 문맹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74. 이주자들의 고국과 이주 대상국 모두 이주 문제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였다. 많은 저소득국에서는 선진국으로의 광범위한 이주(broad-based migration) 관련 장벽이 높음에 대해 비판하고 동시에(국가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두뇌 유출’(brain drain) 문제에 대해 우려했다. 모든 지역의 이주자들, 특히 여성은 이주 대상국 내 불법경제로 내몰리고 착취당하기 쉬워진다. 인력이동에 관한 보다 공정한 틀이 필수적이었으며, 유럽 지역 대화에서는 이런 주장까지 나왔다. “모든 규제정책은 무역 자유화 및 개발협력정책과 연계되어야 한다.”

75. 세계 모든 곳에서는 지역 통합이 보다 공정하고 포괄적인 세계화를 위한 길이라고 간주되었다. 국가들은 서로 같이 협력함으로써 세계화의 사회적 및 경제적 도전을 보다 잘 관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 통합 과정에서 사회 및 경제정책이 보다 잘 통합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유럽연합(EU),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SADC),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의 목표였다.

76. 세계화의 도전에 가장 잘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유엔 및 다자체제가 중요하다고 지지하는 의견이 자주 나왔다.

77. 마지막 공동 의견은 이렇다. 대부분의 대화 참석자들은 해결책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으며, 많은 이들이 이미 적극적으로 그것을 추구 또는 장려하고 있었다. 현재 세계화 모델의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는 현실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외부 세계는 우리 없이 살 수 있지만 우리는 세계 없이 살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고 찾아야만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폴란드 대화의 한 참석자는 활용할 수 있는 힘에 대해 좋은 비유를 해주었다. “세계화가 만약 강물이면, 우리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 댐을 건설해야 한다.”

78. 공동의 우려와 신념이 있는가 하면, 차별성과 다양성도 존재하였다. 대화 내용이 풍부함을 다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세계 각 지역의 다양한 관점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 아프리카

79. 세계화가 진행된 지난 20년 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 아프리카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에 대해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프리카가 겪는 문제와 관련하여 세계화가 어느 정도까지 원인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좋게 말하면 세계화는 아프리카를 우회하여 진행되었고, 나쁘게 말하면 아프리카는 이용당하거나 굴욕을 당했다.

80. 극단적인 발언을 보면, 한 세네갈 대화 참석자는 이를 “우리 국가들의 재식민화”라고 비유했다. 아프리카에서의 세계화는 불필요한 것, 외부의 것, 그리고 강제되는 것이었다.

81. 세네갈 대화의 다른 참석자는 세계화의 아프리카 비즈니스에 대한 영향은 “확실히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평등한 전쟁”이라고 말했다. 한 시민사회 지도자는, 아프리카가 ‘거지 국가’ 신분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세계화에 대해 “저항의 문화를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82. 다른 국가의 경우, 우간다 대화 참석자들은 세계화가 민주주의, 교육 그리고 고용을 확대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지역 대화에서 명확히 볼 수 있듯이, 세계화가 아프리카 대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간에, 아프리카가 이 세계화 과정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면 발전할 수 없다고 사람들은 믿었다.

83. 전체적으로 보면, 대화에서는 세계화에 대한 강력한 비판적 감정이 대세를 이루었는데, 이는 참석자들이 제시한, 현 세계화의 부정적 결과라고 일컬어지는 긴 항목들에서 잘 엿볼 수 있다. 명단의 상단을 차지하는 항목은 부국(富國)의 농업 및 관세 정책에 대한 것이었다. 말리의 경우, 몇 안 되는 경쟁력 있는 수출품목인 목화가 보조금(선진국 내 보조금을 의미함: 편집자 주) 때문에 가격 하락을 겪어야 했을 때 무역 규칙을 존중할 이유가 없었다. 서방세계의 관세가 계속해서 상품

의 국내 가공에 대해 차별을 하기 때문에, 생산자는 원자재의 가격 하락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 미가공 커피의 가격은 역사상 최저였지만, 뉴욕, 동경 또는 제네바에서 커피 한 잔의 값이 내려가진 않았다고 탄자니아 대화 참석자가 말했다.

84. 선진 국제기구의 정책에 대한 불만이 공통의 주제로 나타났다. 아프리카 협상가들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그들의 이해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자원이나 정보를 갖추지 못했다. 세계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에 대해서는, 그들이 거만하고, 현지 상황에 대해 무지하고,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정책(‘one-size-fits-all’ policy)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구들은 교육과 사회 분야의 지출 기금을 삭감하는 긴축 재정정책을 강요했다. 자유화 이후 외국인 투자가 들어온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거의 실현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심지어 최상의 행정을 하는 정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채 과잉은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

85. 에이즈, 빈곤, 이주 등이 아프리카 대화에서 중요한 주제였다. 특별히 관심을 보인 내용은 에이즈와 다른 질병 관련 특허 의약품에 관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이주 및 에이즈는 이미 부족한 아프리카의 숙련된 노동자를 더욱 적게 만든다.

86. 그러나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들의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비난만 하지 않았다. 그들은 무역 활성화, 다른 경제와의 통합, 그리고 세계화의 긍정적 측면으로부터 혜택을 받으려는 노력에 실패한 것에 대해 책임도 느꼈다. 그들은 경기후퇴가 외부 요인만큼이나 부실한 지배구조에 기인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부족한 재정자원은 군사력 증강이나 파괴적인 전투에 낭비되고 있었다. 많은 무역 및 기타 지역협력 협정이 문서상 존재하였지만, 이를 이행시킬 정치적 의지나 물리적 인프라가 부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통합이 아프리카를 세계경제로 통합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매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했다. 지방 차원의 이니셔티브와 ‘아프리카 문제를 위한 아프리카 해결책’이 최선의 방

법이였다. 그러나 아프리카가 세계화 과정에 동참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매우 중요했다.

◆ 아랍세계

87. 아랍세계에서는 세계화에 대한 인식이, 전쟁 그리고 지속되는 아랍-이스라엘 갈등의 그림자에 의해 가려졌다. 인식은 두 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았다. 하나는 석유 수출과 이주 등으로 지배되는 아랍권과 나머지 세계와의 현실적 통합 양상이고, 다른 요인은 세계화가 문화 정체성과 지역 전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두려움이다.

88. 석유는 장단점 양면이 다 있는 천혜로 간주된다. 석유 생산이 인프라 사업의 재정을 지원하고 개인 및 공공 소비의 증가의 결과를 가져왔지만, 국내 산업과 농업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아랍 전지역의 국가내 그리고 국가간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부국은 아랍권내 그리고 세계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이주노동자들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석유의 중요도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아랍권 외부로부터 정치적 개입이 초래되었다.

89. 아랍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세계화를 외부 세력이 그들의 경제 및 정치에 침입하여 그들의 주권을 저해하고 낭비적인 군사 지출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어떤 이들은 또한 서방의 이해 당사자들이 아랍 지역의 민주화를 적절히 지원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정치적 이슬람(political Islam) 세력의 인기가 두려워서이거나 석유 부문에서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간주되고 있었다. 이러한 감정은 팔레스타인 민족이 겪는 곤경 그리고 서방세계의 언론이나 서방의 가치가 현지 사회에 끼칠 영향에 대한 우려에 의해 더욱 심화되었다. 또한 무역 및 투자 자유화 그리고 저임금 개발도상국과의 경쟁 등의 결과로 일자리가 없어질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만연했다.

90. 반면, 다른 사람들은 세계화를 통한 경제적 현대화는 더 큰 힘을 키우고 외세에 대한 의존을 종식시키는 경로라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랍국가들간 그리고 유럽과의 지역 통합을 지지하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이 세계화의 혜택을 수확하고 아시아의 저비용 생산자로부터의 경쟁에 대항하는 길이 될 수 있다.

◆ 아시아

91. 아시아 대화에서는 이 지역의 다양성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참석자는 세계화가 선택적으로 가동된다고 보고 있었다. 즉 어떤 사람과 국가한테는 혜택을 주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가장 두드러진 이익은 중국과 인도의 개방에 따른 빈곤 감소다. 그러나 이 지역의 약 10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다. 세계화를 보다 포괄적으로 만들기 위해 그 과정을 잘 관리해야 한다.

92. 중국 대화에서는 세계화의 기회와 혜택이 위험을 능가한다고 강조되었다. 세계화는 경제성장과 산업생산성을 유발하였고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과제인 고용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농업 분야의 전통적 생계를 저해하고, 전통적 사회복지 체제를 변화시켰으며 도농간 그리고 지역내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어떤 다국적기업의 투자사업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환경을 악화시키고 보다 값싸고 유연한 노동력에 대한 압력을 발생시켰다. 소비자로서 중국 사람들은 값싸고 질 좋은 상품 및 서비스를 높이 평가하였으나, 근로자로서 그들은 보다 양질의 그리고 안정적인 고용 기회를 원하고 있었다.

93. 인도 참석자들은 보다 혼합된 메시지를 전달했다. 승자도 있었고 패자도 있었다. 교육수준이 높고 부자인 사람들의 삶은 세계화로 인해 더욱 풍성해졌다. 특히 IT 산업이 큰 수혜자다. 그러나 그러한 혜택은 대다수에게 채 미치지 못했으며, 패자인 사회적 약자와 농촌 빈곤층에게 새로운 위험이 생겼다.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일한 비영구 빈곤층(non-perennial poor)조차 이제 그들의 기대가 별로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대화 참석자들은 세계화가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같은 가치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력은 국민이 선출

한 국가 기관으로부터 무책임한 다국적 기관으로 이전되고 있었다. 세계언론을 지배하는 서방의 관점은 국내 관점과 일치하지 않았다. 그것은 극빈 상황 중에 소비를 조장하고 문화와 언어의 다양성을 위협했다.

94. 다른 곳의 대화를 보면, 필리핀에서는 세계화 경험을 이렇게 강조했다. “시장에 대한 얘기는 많지만 실제적 시장 접근 가능성은 거의 없고, 고용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지만 다른 곳에서 창출되고,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얘기도 많지만 다른 사람들의 삶에 적용된다.” 이것의 주요 원인은 공정한 경쟁기반의 부재로서 선진국들의 보호주의가 그들이 발전할 수 있었던 바로 그 경로를 다른 국가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외국인직접투자(FDI)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참석자들은 이 또한 위협으로 인식하였다. 반면, 중국 대화 참석자들은 중국이 ‘하향 경주(race to the bottom)’를 선도한다는 인식을 부인했다. 필리핀 대화에서 토착민들은 채광산업 투자 자유화로 인해 채광기업과 토착민 사회 간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95. 지역 대화에서는 세계화를 추진하는 국가의 경제적 변동성이 주요 이슈가 되었다.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자본이 급격히 빠져나간 것에 대해 “잘못에 비해 상대적으로 벌이 너무 무겁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의 개혁이 필요했지만, 자유화의 순서를 신중하게 정하고 사회보호도 적절해야 했다. 일본 참석자는 무역 및 금융 부문에서 지역협력(아시아 내: 편집자 주)은 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96. 증가하는 국경간 인력이동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진보적인 체제가 필요했다.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는 가장 심각한 인권유린이며 이에 대한 공동의 행동이 요구된다.

◆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

97. 라틴아메리카 대화는 아르헨티나의 경제 문제가 인근 국가로 파급되었던 위기의 시기에 개최되었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증대된 세계

무역 및 상호 작용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98. 그러나 전반적으로 대화들은 약간의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사람들의 욕구를 고려하기 위해 세계화의 개혁이 필요하지만, 세계화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라틴아메리카 지역도 개혁이 필요했다. 이 지역의 사람들과 사회는 보다 ‘인도적인’ 세계화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의 중심에 서야 한다. 브라질 대화에서는 지금까지 강조되었던 무역, 금융 및 기술의 측면과 균형을 이루게 하기 위해 기아 퇴치, 보편적 교육 그리고 양질의 노동을 세계화의 새로운 의제로 강조했다.

99. 세계화의 도전을 포착해야 했다. 긍정적인 면은 역내 민주화의 전과 그리고 성차별 해소 등 인권, 지속가능 발전 등의 이슈에 대한 대중 인식의 증가가 세계화와 관련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더 작아진’ 세계는 아이디어의 상호교류 및 순환을 매우 용이하게 해주었다. 칠레 대화 참석자들이 말했듯이, 이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와 원칙에 기초한 새로운 세계 윤리의 형성을 돕고 있었다. 이제 과제는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 권리와 관련된 의제를 어떻게 실행으로 옮기느냐이다.

100. 많은 이들에게 있어, 세계화는 그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특히 양질의 노동에 있어서 그렇다.⁵⁾ “매일 비공식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복지가 감소하고 강압적인 직장문화가 정착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현재의 세계화 모델을 거의 신뢰할 수 없다”고 한 노조 지도자가 말했다. 그리고 코스타리카와 같이 성공한 국가에서도 대화 참석자들은 소득수준이나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국민 대다수는 세계화와 관련하여 기회보다는 위협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다고

5) Latinobarómetro(Santiago, Chile)가 2002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의 사람들의 40% 이상이 실업,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또는 저임금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평가하였다. 동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대다수가 문제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기인한다고 응답했고, 22%는 세계화 그리고 23%는 국제통화기금의 탓으로 돌렸다(Latinobarómetro survey의 특별 도표 www.latinobarometro.org 참조).

느꼈다. 특히 불안정한 세계 금융시장은 지역내 많은 국가에게 비참한 사회적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각국 정부의 부적합한 정책뿐 아니라 IMF 및 외국은행이 국내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다.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중산층이 특히 큰 타격을 받았다.

101. 많은 곳에서 국가 역할의 혁신을 요구하였다. 카리브 국가들의 대화에서 바베이도스 총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사람 중심의 개발을 시장 기능의 힘이 우연히 해줄 것이라고 맡겨 둘 수 없다. 국가는 후퇴하기보다 민간부문과 시민사회 제도와 현명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리마의 지역 대화에서 다시 언급되었다. 이는 보다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뿐 아니라, 부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당사자로서의 민간부문과 경쟁적 환경을 장려하는 당사자로서의 공공부문간의 조화로운 관계 성립을 포함시켰다. 경쟁력은 임금삭감이나 보호주의적 관세 인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투자와 인적자본개발을 통해 촉진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이 지역은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정책과 경제의 비공식화를 억제하는 정책이 특히 필요했다.

102. 근로자 다섯 명 중 한 명이 외국에서 거주하는 멕시코에서부터, 숙련된 기술을 가진 많은 젊은이들이 그들의 조부모들이 부(富)를 찾아 떠났던 국가로 이주하는 아르헨티나에 이르기까지, 라틴아메리카 전 지역에 걸쳐 이주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103. 사회 및 정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로로 지역 통합(중남미내: 편집자 주)에 대해 큰 희망을 걸고 있었다. 특히, Mercosur를 심화시킬 수 있다. 광범위한 지역 제도가 카리브 지역에 이미 정착되어 있고,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적 연대감은 지역 전체가 세계화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 유럽과 중앙아시아의 체제전환국

104. 구소련 및 동유럽이 공산주의로부터 전환하는 과정에서 겪은 고통스러운 사회 격변은 세계화 자체에 그 탓을 돌리지 않았다. 대화 참

석자들은 세계화의 뒷에 대해 경계하고 있었으나, 과거의 폐쇄된 체제로 다시 돌아가기는 꺼렸다. 특히 과거 사회안전망이 폐지되는 상태에서 이를 대체할 새로운 사회안전망이 없는 경우의 어려움 등, 변화를 통해 치르는 대가에 대해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105. 폴란드만큼 세계화된 세계의 가능성을 잘 이용한 국가도 거의 없을 것이다. 폴란드가 점진적으로 유럽연합으로 다가갔던 것은 지역 협력이 세계경제로의 유익한 통합의 길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폴란드 재정장관에 따르면, “우리가 세계화의 주류에 아무리 깊게 참여하고 있다 하여도, 국내 사회경제 개발정책을 추진할 기회와 의무는 항상 존재한다.” 과거 공산주의 국가였던 폴란드는 사회에 대한 국가의 의무감이 강하다. 변화에 따른 혜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속되는 높은 실업률과 전통 산업과 대형 농장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폴란드의 최대 섬유제조 중심지인 Lodz에서는 아시아와의 경쟁으로 인해 주로 여성 노동자들이 포함된 약 10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106. 러시아에서의 대화는 세계화의 기회와 도전이 강조되었다. 투자자본 흐름의 증가, 수출시장의 확대, 그리고 더 높은 성장의 달성 및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많은 조정이 여전히 필요했고, 개혁에 따른 비용과 혜택의 공정한 분배도 중요했다. 러시아의 WTO 가입에 따른 사회비용도 최소화해야 했고 노동법의 개선 및 집행, 더 큰 고용의 창출 그리고 교육체제의 개혁이 필요했다.

107. 민족문화 및 다양성도 세계화로부터 보호되어야 했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다국적기업이 법과 노동기준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었다. 노동자 이주 또한 심각한 문제였다. 여기에는 국내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숙련노동자의 이주뿐 아니라 불법이주도 포함된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은 세계화에 동참하는 것이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보다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 서유럽 및 북미

108. 무역 및 자본 자유화에 의한 국제경쟁의 증가가 선진국내 소득불균형 심화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이는 특히 일자리가 저임금 국가로 이전되어 버린, 최초의 산업인 구산업(older industry)의 비숙련 노동자들에게 부담을 주었다. 그러나 세계화로 인한 일자리의 수출은 실업 문제의 여러 원인 중 하나에 불과했다. 독일 대화 참석자들은 자본이동의 재정정책에 대한 영향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국제 조세 경쟁은 복지국가의 재정에 심각한 제약을 준다는 주장이 나왔다.⁶⁾

109. 유럽 전역에 걸쳐 이주 문제는 심각한 이슈였다. 사람들은 강력한 반응을 보였으며, 이는 흔히 예측하지 못한 정치적 결과를 동반했다. 그러나 이 이슈는 유럽의 인구 고령화 그리고 유럽 사회체제의 핵심인 사회적 유대감(social cohesion)의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했다.

110. 유럽은 그들 나름의 사회적 모델을 구축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들은 이 모델이 유럽 외 다른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믿었다. 핀란드 대화에서는 통합된 경제 및 사회정책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는 접근방식이 현대적 그리고 경쟁적인 정보사회를 구축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사례가 제시되었다. 유럽연합의 건설 자체가 그런 동일한 모델의 표현이며, 이와 동시에 세계화의 압력에 대한 대응이었다. 유럽 통합은 독특한 역사적 과정이지만, 그 안에는 세계경제를 보다 잘 그리고 포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

111. 유럽 대화는 유럽인들이 현재의 세계화 양상에 대한 많은 개발도상국의 불평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조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세계화의 규칙은 선진국이 정했고, 세계화가 보다 포괄적이 되려면 개발도상국들이 더 큰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인정했다. 가난한 국가들에 대한 개발

6)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에 관한 네덜란드위원회의 보고서에도 유사한 우려가 명시되어 있다. www.ilo.org/wcsdg/consulta/flemish/index.htm 참조.

원조 확대의 중요성을 대체적으로 인식하였다. 어떤 이들은 유럽연합의 공동 농업정책이 개발도상국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지만, 이를 개혁하는 데 있어 정책적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음이 명백했다.

112. 미국이 인지하는 세계화의 영향에 대해 엄청난 양의 정보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결과가 상충된다. 최근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세계화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고용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다. 최근 연구 조사에 의하면, 상당수의 미국 유권자들은 국가가 세계화에 더 이상 노출되는 것을 반대한다.⁷⁾ 이 연구에 따르면, 교육수준과 기능수준이 높을수록 세계화에 대한 인식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13. 위원회는 또한 미국에서 제한적으로 그룹토의(focus group)를 개최하였다. 참석자들은 지난 20년 동안 세계경제가 급변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를 두지 않았다. 세계화는 기업들에게 보다 경쟁력을 갖추고, 임금을 삭감하고, 기업 합병을 하도록 새로운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 어떤 국내 일자리는 다른 국가로 이전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세계화 과정은 보다 큰 부(富)와 안녕을 도모하고 있었다. 미국 자체가 세계화의 주요 동인으로 고려되었으며, 이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세계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 여기에는 환경에 미친 영향과 세계화에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 아프리카 및 중동 국가들의 주변화 등이 포함된다.

114. 세계화가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현재 부상하는 민족주의가 이를 방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공식 또는 기타 다른 형태의 국제기구들이 그 세계화 과정을 인도해 줄 필요성이 있었다. 여기에는 IMF, 유엔,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 국제노동기구 및 기타 전문 기

7) Kenneth F. Scheve, and Matthew J. Slaughter, *Globalization and the Perceptions of American Workers*(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March 2001).

구뿐 아니라 기업, 노조, 종교 및 NGO 등이 포함된다. 또한 모든 차원에서 보나 나은 통치구조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 사용자, 노동자 및 시민사회

115. 위원회와 사용자의 대화의 경우, 최고경영자(CEO)들은 기업을 세계화의 주요 동인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그들에 의하면, 기업은 세계화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반응한다. 어떤 기업에 있어, 그 과정은 특히 어려웠다. 가난한 국가의 기업이나 모든 국가의 소기업은 공적 지원 없이는 세계 경쟁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보다 큰 규모 기업의 경우, 세계 환경에서 ‘효과성(effectiveness)의 관건’은 시장, 공급업체 및 노동력 등의 ‘다양성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가에 있다.’

116. 기업 리더들은 또한 전세계에 위치한 그들의 사업장에서 동일한 모델을 적용한다는 생각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 참석자는, “우리가 더 글로벌하게 사업을 할수록 운영은 현지 방식으로 한다”라고 말했다. 기업은 심지어 양 방향 터널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후진국으로 신기술을 이전시켜 주고 본국에는 개발도상국의 문제와 우려를 인식시켜 줄 수 있다.

117. 이들에게 세계화의 사회적 차원과 관련한 주요 이슈는 FDI를 보다 잘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는 장기적 사업 약속을 장려할, 안정적이고 부패가 전무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했다.

118. 시장이 잘 작용하기 위해서는 예측가능한 규칙 그리고 가치에 대한 합의된 틀이 필수적이었다. 합의된 규칙의 준종을 보장하기 위한 전반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었다. 그러나 시장이 자동적으로 여러 교란요인을 수정할 수 있을 경우, 과도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되었다. “우리는 행동에 있어서 보다 많은 대화와 변화를 필요로 하지, 더 많은 규칙과 규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가치 존중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진보적인 기업은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을 더 강력하게 주창한다. 기업의

올바른 사회의식(good corporate citizenship)은 기업 발전에 점점 더 중요해졌다.

119. 그러나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한 위원회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과의 대화에서 기업에 대한 신뢰가 기업 관련 스캔들로 인해 하락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세계화의 역행이나 그의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표명되었다. 또한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과의 대화가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120. 위원회가 만난 노조와의 대화 참석자들은 개발도상국의 경제기반이 선진국, 국제금융기관(IFI)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의 정책들로 인해 계속 침식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정책방향이 빈곤을 악화시키는 수도, 전기, 보건서비스 등 공익사업의 민영화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들은 또한 수출가공지역(EPZs) 내에서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착취가 극적으로 확대되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는 저임금 문제는 물론, 노동조합을 구성하려는 근로자에 대한 탄압, 폭력 및 성희롱 등이 포함된다.

121. 세계화된 경제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기준을 존중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특히 중요했다. 노조 지도자들은 국제노동기구(ILO)가 국제금융기관들 및 세계무역기구 등 다른 국제기구, 각국 정부, 사용자 및 근로자단체 등과의 협조를 강화함으로써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122. 선진국의 노조 지도자들은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불만이 위험 수준까지 도달하였다고 주장했다. ‘기업을 자신으로부터 보호해 줄 시점이다’. 규제 완화 및 주주 가치에 대한 강조는 도를 지나쳤다. 세계적 경쟁의 심화는 사용자에게 ‘노동방식에 있어 근로자를 농락하도록’ 장려하였다. 여기에는 양질의 노동을 불안정, 비공식, 임시 및 계약 고용으로 대체하는 것이 포함된다. 많은 기업에 있어, 기업의 자발적 사회적 책임이란, 사업 운영의 주류에는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실한 기업 이미지를 고치기 위한 대외 홍보 노력’에 불과했다.

123. 세계노동협의회, 기업의 사회적 감시, 그리고 다국적기업이 채택한 윤리 규범의 이행을 모니터하고 확인하는 메커니즘 등을 포함한 세계적 시스템의 노사관계가 필요했다.

124. 마찬가지로, 시민사회단체도 기업 및 금융 관련 이해가 세계화의 양상을 지배하고 책임성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채취산업이 토착민은 물론 지역사회 및 환경에 대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공통의 주제였다. 또 다른 공통된 주제는 토착 지식(indigenous knowledge)을 사유화(privatization)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 규칙의 부정적 영향이었다. 언론의 민간 소유화가 눈에 띄게 이루어지는 등 기업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비난하였다.

125. 이는 넓은 의미에서, 특히 국제금융기관이 융자조건으로 국가들에게 강요하는 경제 모델을 비난하는 것이다. 이 모델은 약자가 강자와 경쟁을 해야 하는 경쟁 패러다임을 장려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잘 나타난다. “고양이와 쥐 사이의 대화는 대화가 아니다.” 이로 인해 사회 및 환경 차원의 목표가 간과되었으며, 이는 사람과 지역사회에 높은 비용을 부과시킨 비지속적 성장 패턴으로 이어졌다. 한 참석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매우 비민주적이며 아래로부터의 권력을 빼앗아 가는(disempowering) 체제이다.”

126. 시민사회단체들은 이해, 행동 그리고 그들의 분노 수준과 대상이 각기 다르다. 그러나 ‘보다 상호 연계된 세계’라는 아이디어 자체를 거부하는 단체는 거의 없다. 많은 이들에게 있어 목표는 세계경제를 작동하는 원칙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세계사회포럼의 슬로건은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이다.

127.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인권 그리고 공정성, 연대성 및 남녀평등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크게 강조한다. 그들의 여러 세계행위자들의 말과 행동 사이에 격차가 존재하여 이중잣대가 많이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이들의 정책제안은 국제기구의 모든 행동을 보편적 인권의 원

칙과 부합하는지 사전 검토하는 것이다. 또 이들은, 가능하면 간단한 부채 탕감을 통해 외채 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128. 최근 몇 십년 동안 유엔포럼에서 회원국들이 공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표출됐다. 어떤 이들은 경제적 정의, 평화 및 개발 관련 이슈에 대해 유엔이 체계적으로 무시당했으며, 따라서 유엔이 국제경제 및 기타 정책에 대해 보다 큰 권한을 부여받을 것을 요구했다. 그들은 세계화의 문제에 대해 다자간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다자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노력이 약해진다고 우려했고, 이러한 우려는 다른 대화에서도 많이 제기되었었다.

129. 많은 이들이 주장하길, 해결방안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향력이 없는 자에게 영향력을 갖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지방, 국가, 세계 등 모든 차원에서 보다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틀이 필요했다. 대부분 의사결정기관에서 여성이 여전히 과소 대표되는 실정이다.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공정책 및 경제체제가 현지의 요구와 현지의 결정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동시에, 특히 브레턴-우즈(Bretton Woods) 기구와 세계 무역기구(WTO) 등의 다자체제의 기능이 더 민주적이어야 한다.

* * * * *

130. 종합적으로, 우리는 각 지역에서 개최한 대화 및 협의를 통해 우리 일에 대해 많은 격려를 받았다. 견해의 차이가 있었지만, 세계화가 모든 곳의 사람 및 공동체의 요구와 열망을 충족할 수 있고 또 충족해야 한다는 믿음이 공유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 국가 및 국제 차원의 수정 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 한 참석자의 말을 빌리면, “우리는 현재 최상과 최악이 극적으로 균형을 이룬 상황에 놓여 있고, 둘 중 하나는 향후 몇 십년 후 실현된다.” 대화들은 세계 공동체로서 우리가 공동의 운명에 놓여 있음을 강조했고, 이 운명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II.2 세계화 : 그 본질과 영향

서론

세계화의 주요 특성

제도적 배경

세계화의 영향

◆ 서론

131. 세계화는 폭 넓은 영향을 미친 복잡한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화’라는 용어는 감정적 함의를 갖게 되었고, 현재 정치적 담론에서 가장 격렬히 논의되는 이슈이다. 한 쪽에서는 세계화를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경제적 번영을 가져오는 불가항력이자 선량한 힘으로 보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현대의 모든 병폐의 원천을 세계화라 비난한다.⁸⁾

132.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의 주요 특성이 국제무역의 자유화, FDI 증대, 그리고 국경간 대규모 자본 흐름이라는 것이 널리 인정된다. 이로 인해 세계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었다. 또한 두 개의 요인이 함께 기초가 되어 세계화가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도 널리 인정된다. 그 두 요인은 첫째로, 국제경제거래에 대한 국가의 장벽을 줄이는 정책결정, 그리고 둘째로, 특히 정보통신분야 등 신기술의 영향이다. 이러한 상황 전개로 인해 세계화가 출현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

8) 세계라는 용어는 1990년이 되기 전에는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 독일연방 의회의 연구위원회의 최종보고서 *Globalization of the World Economy: Challenges and Answers*(2002년 6월, 제14차 회기)에는 독일의 주요 일간지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에서 세계화라는 단어가 등장한 횟수가 1993년 34회에서 2001년에는 1,136회로 증가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133. 과거 유사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신기술의 영향은 현 세계화 과정이 독특한 특성을 갖게 했다. 시간과 공간의 자연적 장벽은 상당히 급감되었다. 정보, 사람, 상품, 자본 등을 세계 곳곳으로 이동시키는 비용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저렴하고 빠른 국제통신은 더욱 그러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경제거래의 가능성을 크게 확대하였다. 시장은 이제 규모 면에서 세계적이 될 수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상품 및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134. 현 세계화 과정의 다른 특성은 무언가가 확실하게 빠져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대규모 국경간 이동의 특성을 가진 과거의 세계화 사례와는 달리, 현재의 세계화 과정은 이를 상당 부분 배제한다. 즉 상품, 기업, 돈 등이 자유로이 국경을 넘나드는 데 반해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135. 이 섹션에서는 세계화 진화의 두드러진 특성을 강조하고, 이를 지배하는 신흥 제도적 틀을 설명한 다음, 마지막으로 이 과정이 국가와 사람에게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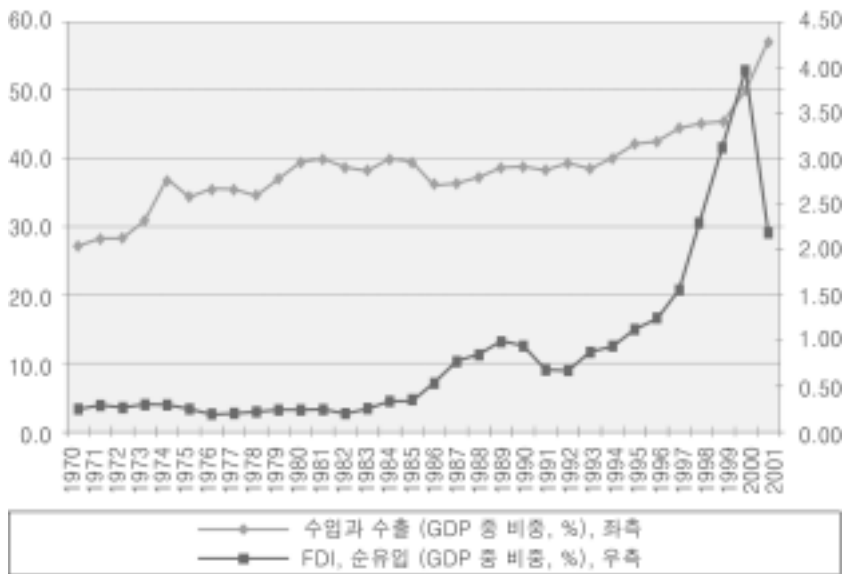
◆ 세계화의 주요 특성

136. 세계무역, FDI, 재정 흐름 및 기술의 기본 동향은 [그림 1]에서부터 [그림 9]까지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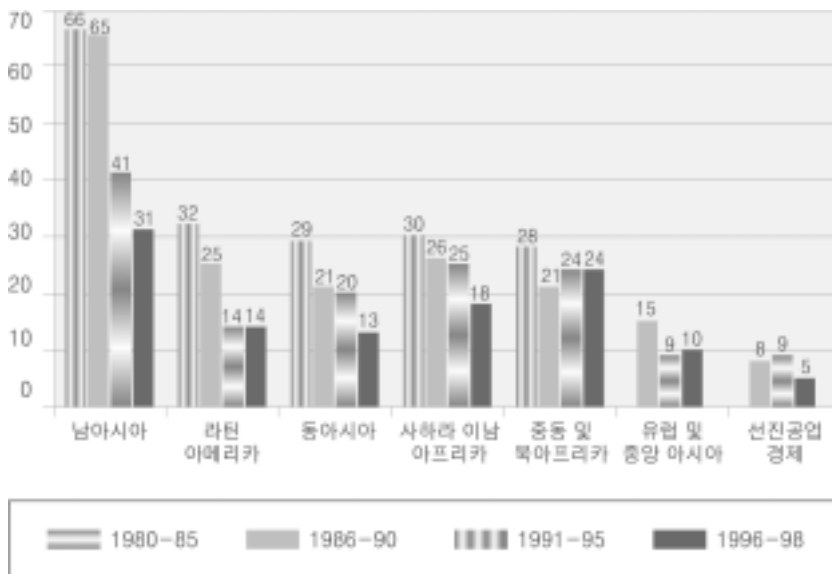
무역

137. 지난 20년 동안 세계무역은 급격히 증가했다. 1986년 이후 세계무역은 세계 국내총생산(GDP)보다 일관되게 훨씬 빠르게 성장했다(그림 1). 1970년대에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틀 안에서의 무역 자유화는 규모가 크지 않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여기에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보다 훨씬 많이 참여했다. 그러나 1980년대 초 이후부터 특히,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무역 자유화의 정도가 가속화하였다(그림 2).

〔그림 1〕 GDP 중 무역 및 순 FDI 유입 비중: 1970~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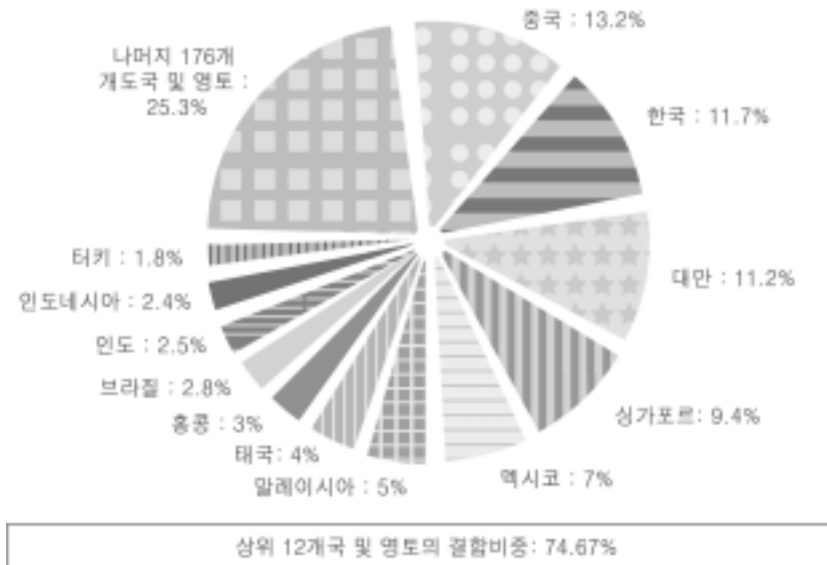
출처: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3*(online version)

〔그림 2〕 지역별 평균 관세율: 1980~98(%)

출처: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2001*(background presentation)

138. 무역 확대는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았고, 선진국과 12개 개발도상국에서 대부분 일어났다. 반면, 대다수의 개발도상국은 상당한 무역 확대를 경험하지 못했다(그림 3). 물론, 대부분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가 포함된 저개발국(LDC)의 경우, 이들 중 많은 국가가 무역 자유화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시장 점유율이 비례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3] 개발도상국의 제조품 수출 분포: 199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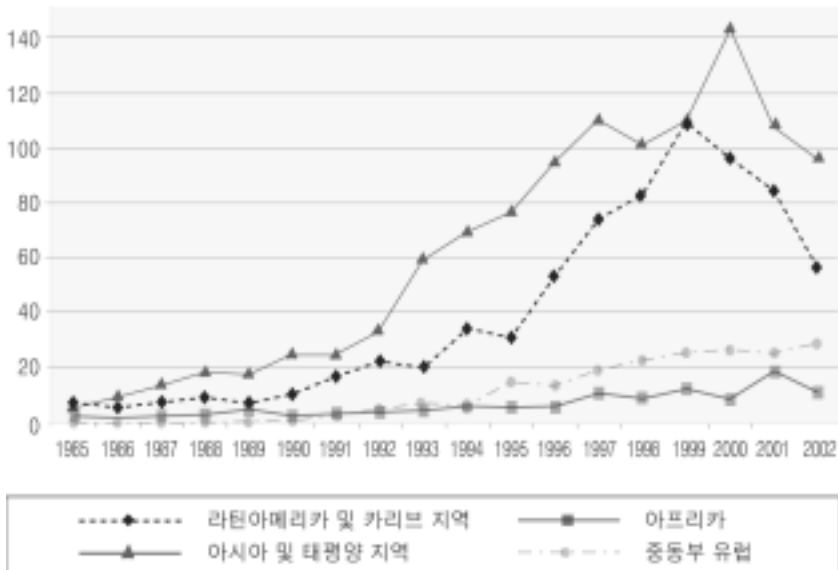


출처: Based on UNCTAD, *Handbook of Statistics 2002*(on CD-ROM)

외국인직접투자(F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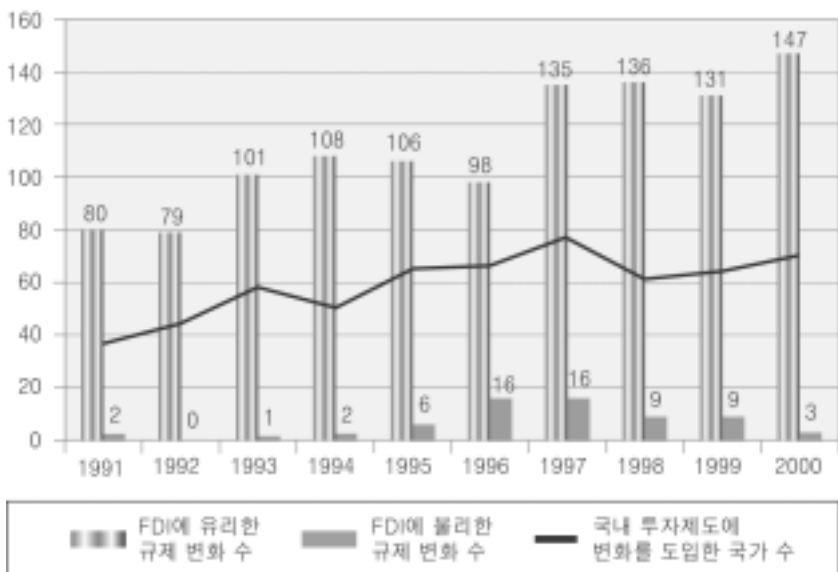
139. 1980년대 초 FDI가 절대적인 규모 면에서뿐 아니라 GDP의 비중 면에서도 급증하였다(그림 1과 그림 4). 1980년 이후, 전세계의 정책환경은 FDI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2000년에는 100개 국 이상이 FDI와 관련하여 상당한 자유화 조치를 채택하였다(그림 5). 물론, FDI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지 않는 국가는 거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 중 많은 것들은 실현되지 않았다. 개발도상국으로의 FDI 유입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여전히 약 10개 국에만 집중되어 있다(그림 6).

〔그림 4〕 FDI 유입, 개발도상국: 1985-2002(10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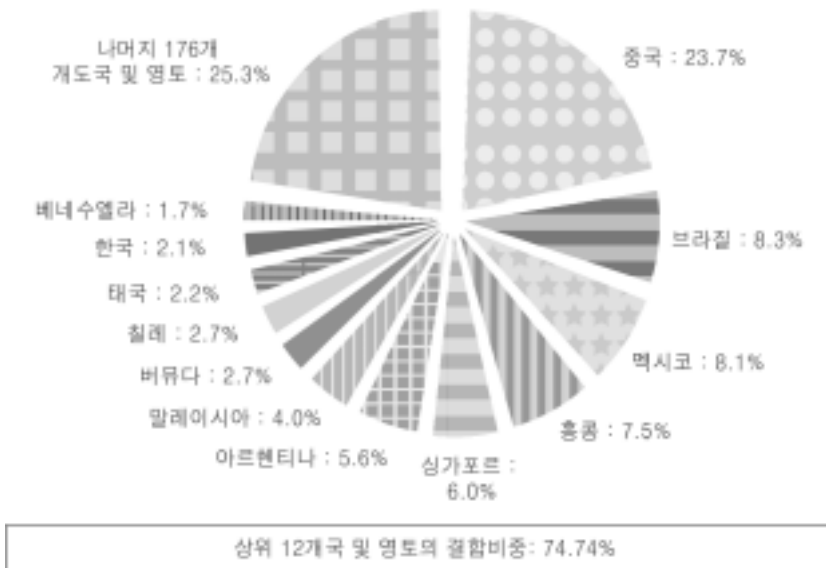
출처: UNCTAD, *Handbook of Statistics 2002*(on CD-ROM) and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3*.

〔그림 5〕 FDI에 대한 국내 규제 변화 추이: 1991-2000



출처: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1*.

〔그림 6〕 개발도상국으로의 FDI 유입 분포: 1990



출처: UNCTAD, *Handbook of Statistics 2002*(on CD-ROM).

140. FDI 유입의 규모가 성장한 것뿐 아니라 투자 성격 또한 변했다. 정보통신기술(ICT) 혁명과 운송비의 하락으로 인해 기술적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서로 떨어진 여러 국가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생산 공정을 분산하여 각 공정을 세계 곳곳에 위치한 공장에서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비용 차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 요인의 활용 가능성(factor availability) 및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컴포넌트와 부품은 원하는 세계 어느 곳으로든지 운송하여 조립할 수 있다. 통신혁명 은 이런 분산생산 시스템의 조정 및 관리를 가능케 해 주었다.

자본 흐름

141. 지난 20년 동안 세계화의 가장 극적인 요소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통합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브레턴-우즈(Bretton Woods)

체제는 폐쇄된 자본계정과 고정환율에 기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 자유화가 추진된 무역 및 FDI 부문과는 달리, 그 당시 금융부문의 세계화는 정책 의제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세계는 개별 국가의 금융 시장이 별도로 존재하는 체제하에 있었다.

142. 이런 상황은 1973년 브레턴-우즈 체제가 무너지면서 변했다. 그러나 자본자유화를 위한 급격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빠른 조치는 1980년대 초 선진국들에 의해 추진되었고, 그 후 이들 국가간 자본 흐름이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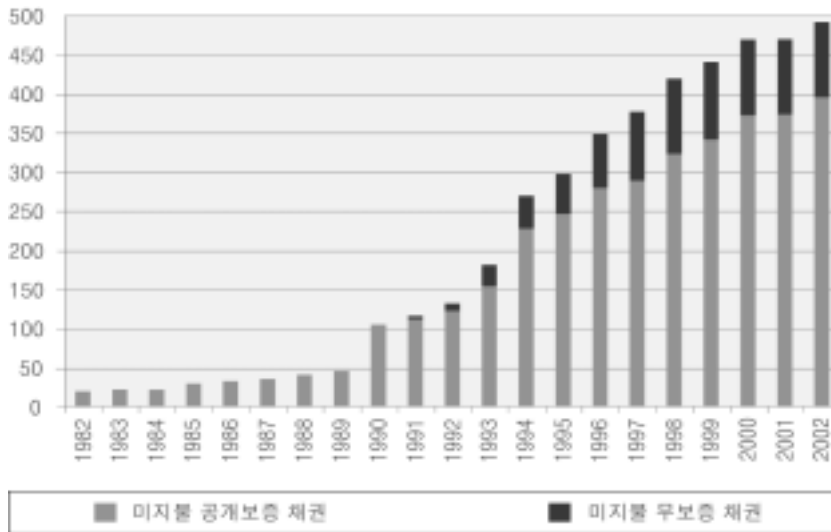
143. 지적된 바와 같이 ‘세계 통화 제도는 규제완화, 국제화 및 혁신이라는 세 가지 변화를 동시에 겪었다.’⁹⁾ 금융 자유화를 통해 자본이동의 확대를 위한 정책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자본 흐름의 증가는 정보통신기술 혁명에 의해 가속화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외국 시장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보다 빠르게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전세계로 24시간 가능함’ 금융거래가 개발되었으며, 파생금융상품을 포함한 새로운 금융상품이 소개되었다.

144. 1980년대 말부터 금융 자유화가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그 범위는 환율 통합 그리고 국내 시장의 신용 할당에 대한 통제 제거 등의 간단한 조치에서부터 자본계정의 개방을 포함한 금융 부문의 완전 자유화에 이른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후자 유형의 개혁은 초기에는 채권시장 및 주식시장을 포함하여 금융중개제도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중간 소득 개발도상국에 국한되었다.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유입된 사적 재정 흐름의 폭발적 성장은 이들 ‘신흥시장’에 집중되었다.

145. 이들 재정 흐름의 구성요인에는 이들 국가의 주식시장에 투자기금이 투자하는 사례(대부분 연기금을 대신하여 투자함), 은행이 기업부문에 대출하는 사례, 그리고 특히 통화시장으로의 단기 투기성 흐름

9) Philip Turner, “Capital Flows in the 1980s: A Survey of Major Trends”, *BIS Economic Papers No. 30*(Basl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April 1991).

(그림 7) 미지불 국제채권: 1982-2002(모든 개발도상국, 10억 달러)



출처: World Bank, *Global Development Finance 2003*(on CD-ROM).

의 사례 등이 포함된다. 국제채권시장을 통한 대출도 금융 세계화 이후인 1990년대에 증가하였다(그림 7).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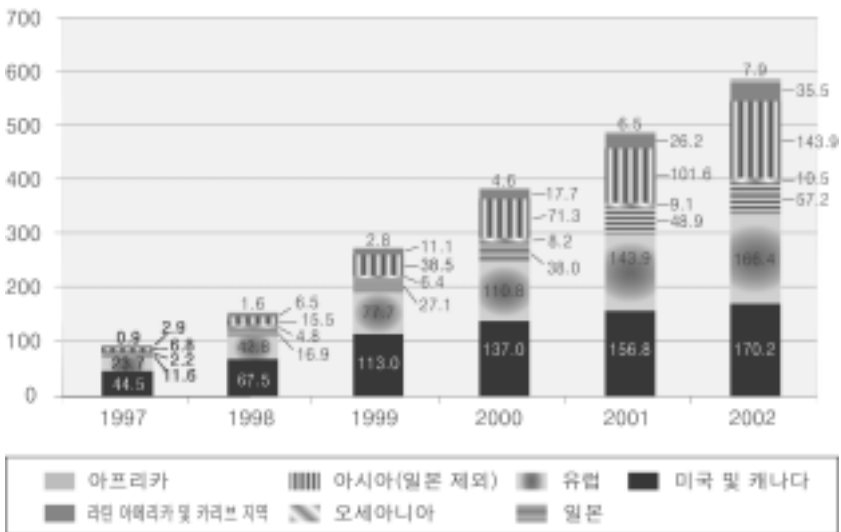
146. 세계화를 촉진한 기술혁명의 원천이 선진국이였지만, 그 혁명은 나머지의 세계경제에도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한편에서는, 신기술은 지식을 생산의 중요한 요인으로 만듦으로써 국제비교 우위를 변화시켰다. 세계화된 경제에서 지식집약적 산업과 첨단산업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국가가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이들 산업 부문에 진출하여 경쟁해야 한다. 이는 국가가 교육, 훈련 및 지식 보급에 대한 투자를 강조해야 함을 시사한다.

147. 이런 신기술이 개발도상국으로 보급되면서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는, 주로 다국적기업(MNE)의 활동으로 인해 이루어졌으나,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무역 및 FDI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식

및 기술에 대한 접근에 있어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거의 대부분의 신기술은 연구 및 개발 활동이 지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선진국에서 만들어진다. 이는 다국적기업이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개발도상국 정부와 협상을 할 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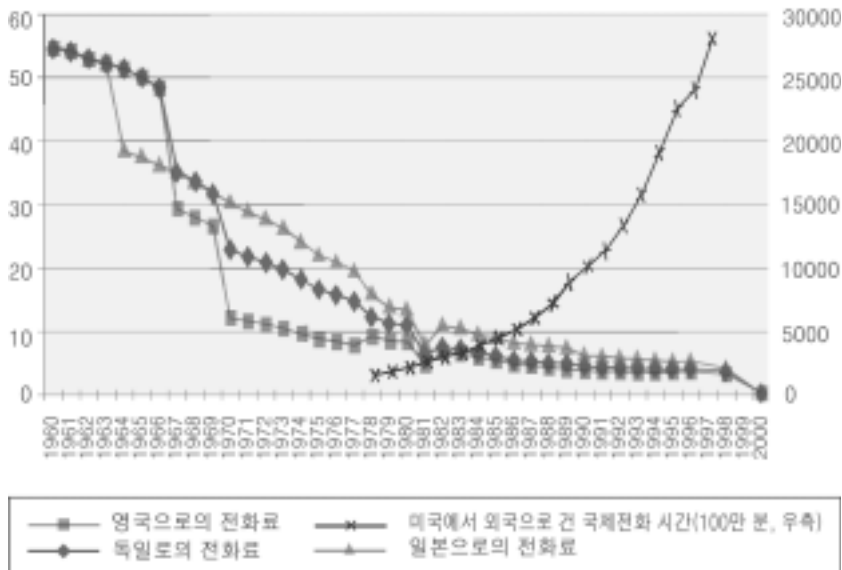
148. 경제의 영역이 현재 많이 늘어났지만, 이 신기술의 영향은 경제의 영역을 훨씬 뛰어넘었다. 급격한 경제 세계화를 가능하게 한 바로 그 기술이 정부, 시민사회 및 개인 등 일반용으로 활용되었다. 인터넷, 이메일, 저가의 국제전화 서비스, 휴대폰 및 화상 회의의 보급으로 인해 세계의 상호연계는 더욱 심화되었다(그림 8과 그림 9). 과학에서 퀴즈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많은 정보로의 접근이 인터넷을 통해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보는 쉽게 전송하고, 이에 대해 토론도 할 수 있다. 동시에, 위성 TV와 전자저널 등은 진정한 세계의 제4계급(global fourth estate: 즉 언론계를 의미함: 편집자 주)을 형성하였다.

(그림 8) 추정 인터넷 접속률: 1997-2002(인터넷 사용자 100만명)



출처: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ITU).

(그림 9) 미국 발신 국제전화 비용 및 통화량: 1960-2000(1995년 미국 달러 불변가 기준 3분당 비용, 최고율)



출처: Based on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Trends in the U.S.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Industry 1997*; OECD, *Communications Outlook*(various years) and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3*(online version).

◆ 상호관계

149. 이러한 무역, FDI, 재정 흐름 및 기술 보급상의 변화는 새로운 체계적인 구조의 일부이다. 이 모든 요소들이 경제 개방의 증가 및 글로벌 시장 기능의 영향력 증가라는 배경하에서 필연적으로 변했다는 것이 저변에 존재하는 논리다. 이는 매우 심오한 변화로서 국가의 역할과 경제 행위자(agent)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150. 특히, 기업내 부품 무역(intra-firm trade)이 급증하면서 글로벌 생산체제가 무역패턴 형성에 점점 더 큰 역할을 함에 따라 무역과 FDI는 서로 더 밀접하게 얽히게 되었다. 다국적기업이 세계무역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다국적기업과 그 계열사 간의 기업내 무역은 세계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동시에, 부품과 중간재의 무

역이 증가했다. 특히 부품 및 중간재의 무역 증가를 포함하는 세계무역의 질적 변화가 아마도 무역의 양적 증가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간접 금융투자(portfolio investment) 및 기타 재정 흐름이 실질경제(real economy)에서 무역 및 투자 패턴을 형성하는 거시경제환경의 중요 결정요인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신기술의 전파는 비교우위, 기업경쟁력, 노동력 수요 및 업무 편성 그리고 근로계약의 본질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 정책환경

151. 세계화를 가속화시킨 저변 요인 중 하나는 경제와 관련된 사고(思考)의 변화였는데, 이는 1980년대부터 두드러졌다. 선진국들이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겪고 있을 때, 상당수의 개발도상국은 외채위기에 빠져들었고 사회경제적 후퇴(retrogression)를 경험하였다. 이에 따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는 당시 지배적인 경제모델에 대해 재고를 하게 되었다. 개발도상국에서 사고가 변하게 된 요인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수입대체 정책과 관련이 있다. 이는 동아시아 신흥공업국(NIEs)의 수출주도 산업정책의 성공과는 확연하게 대조되었다.

152. 1980년대 초 외채위기 이후 채무 개발도상국들이 브레턴-우즈 기관으로부터 구조조정 차관을 지원받았고, 이는 무역 및 산업 전략의 재정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차관을 지원받는 조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역과 FDI에 대한 정책을 자유화하는 것이다. 이는 그 당시 부상하는 시장 우호적 경제학설(pro-market economic doctrine)과 일치했다. 이러한 구조조정 프로그램하에서 개발도상국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사례가 급증하였다.

153. 앞 섹션의 세계화에 대한 관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많은 노조 및 시민사회단체, 몇몇 정책분석가 및 개발도상국 정부는 국제금융기관이 개발도상국에게 과도한 조건을 강요했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볼 때, 그것은 개발도상국들을 부적절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속박하고 그들에게 무거운 사회비용을 부담시킨다는 측면에서 유해로운 것이었다.

154. 지난 20년간 부상한 시장 우호적 경제학설은 세계화 형성에 기초를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89~90년 유럽에서 공산주의의 붕괴가 커다란 전환점이었다. 총 4억 인구의 전 공산주의 국가 30개 국가 세계 자유시장 경제에 순식간에 합류했다.

155. 어떤 분석가들은 양극 구조의 세계가 종식되면 시장경제에 대한 체제적 대안도 없어질 것이라는 견해를 가졌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그 결과로써 자유시장의 세계화가 1990년 출범했다. 우연히도, 이는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시기로서 세계화 과정에 행운의 기술적 지원을 해주었다.

◆ 제도적 배경

다자무역체제

156. 한편, 국제경제 관계를 위한 제도적 배경(institutional context) 또한 변하기 시작했다. 1986년 출범된 새로운 라운드의 다자무역협정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로 변모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 주요 변화는 무역협상의 의제가 GATT의 범주인 관세 인하 및 기타 무역장벽을 초월하여 그 범위가 더 넓어진 것이다. 서비스, 지적재산권(IPR), 투자조치 및 경쟁정책(즉 ‘국내’ 이슈) 등 과거에는 무역 이슈가 아니라고 간주되었던 주제들이 무역협상의 범주 안에서 논의되었다.

157. 이의 근거는, 그러한 조치들이 상품 및 서비스의 국경간 자유로운 흐름을 저해한다는 것이었다. 세계무역의 보다 심화된 자유화를 위해서는 이 분야와 관련된 국내 정책을 조화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고려되었다. 특히, 자유무역 논의 대상의 범주가 확장되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무역과 관련된 우려사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 및 규제의 다른 부분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주 안에 ‘국내’ 이슈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

에 대해 갈등이 계속 존재해 왔다.

158. 우루과이 라운드가 끝난 후, 많은 개발도상국 정부들은 그 결과가 균형을 이루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물론 몇몇 개발도상국에게는 이익이 되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이 비우호적인 거래의 핵심은 그들이 새로운 다자무역 규칙에 자신들을 구속하여 큰 비용을 치른 대가로 선진국으로부터는 매우 제한적인 시장 접근의 양허만을 받아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글로벌 생산체제

159. FDI의 흐름을 증가시킨 글로벌 생산체제의 등장은 개발도상국 내 새로운 성장 및 산업화의 기회를 창출하였다. 약 85만 개의 외국 제휴사를 가진 약 6만 5,000개의 다국적기업이 이 글로벌 생산체제의 주요 행위자다. 이들은 심지어 공식적인 공장 시스템 내에서 작업하지 않고 가내노동자에게 외주하는 국내 하청업체를 포함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글로벌 공급 사슬(supply chain)을 통제한다.¹⁰⁾

160. 이러한 글로벌 생산체제의 성장은 첨단산업(전자, 반도체 등)과 노동집약 소비재 부문(섬유, 의류 및 신발)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또한 기술진보가 소프트웨어 개발, 금융서비스 및 콜센터 등의 서비스들이 세계 각국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서비스 부문에서도 현저해졌다. 첨단산업은 빠른 성장을 경험했으며, 개발도상국의 제조수출품 중 단일 구성품목으로는 가장 크다.¹¹⁾ 이들 산업의 경우, 컴포넌트와 부품은 개발도상국에 위치한 다국적기업의 자회사들이 생산

10) 세계위원회에 제출한 다음 기초 보고서 참조. Marilyn Carr and Martha Chen, "Globalization, social exclusion and work: with special reference to informal employment and gender", World Commission, Geneva, 2003.

11) S. Lall, *The employment impact of globaliz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ILO mimeo(Geneva, October 2002)

한다. 대부분의 연구 및 개발(R&D) 그리고 기타 기술집약 기능은 선진국에서 수행된다.

161. 노동집약적 소비재 산업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다국적기업이 제품을 디자인하고 품질 등을 명세한 다음, 그것의 생산은 개발도상국의 국내 기업으로 외주한다. 다국적기업은 또한 생산의 품질과 일정을 통제하는데, 흔히 이것은 디자인 및 물량에 따라 변하게 된다. 여기서의 원동력은 최소의 재고 비용을 유지하면서 소비자 요구의 변화에 유연하고 시의적절하게 적응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글로벌 적시(just-in-time) 생산체제다. 다국적기업은 또한 제품의 마케팅을 통제한다. 브랜드나 로고는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의 중요한 원천이자 큰 수익원이다.

162. 이러한 글로벌 생산체제의 성장의 두드러진 특징은 그것의 주요 요인인 FDI를 지배하는 다자간 규칙이 동시에 발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의 우려가 표면화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III부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세계금융체제

163. 세계금융체제의 지배구조 또한 변했다. 사적금융 흐름의 규모가 공적금융 흐름의 규모보다 커짐에 따라 은행, 헤지펀드(hedge fund), 주식투자펀드(equity fund) 및 신용평가기관(rating agency) 등 민간 행위자의 역할과 영향력이 상당히 증대하였다. 그 결과, 이런 사적금융기관들은 특히, 신흥시장 경제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경제정책에 대해 막강한 힘을 행사한다. 신용평가기관들은 국가가 국가 차관(sovereign borrowing)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고, 또 그럴 경우 그 비용도 결정한다. 주식시장 분석가의 평가 결과는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의 규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헤지펀드 매니저의 결정은 흔히 국내 통화에 영향을 미친다.

164. 완벽한 시장 논리에 따르면, 이러한 발전 상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세계금융체제에서 민간 행위자의 영향력의 증가는 전세계 금융자원의 배분을 훨씬 효과적으로 만들고 개발도상국 정부에게 필요한 시장 규율을 더 크게 적용시킬 수 있는 혜택이 있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것을 포함한 금융시장은 일반적으로 가장 불완전한 시장 형태이다. 특히, 정보비대칭 등 정보 장애(information failure)의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

165. 이런 문제들은 국제 채권자들이 국내 채무자에 대한 제한적 그리고 불량한 정보를 갖게 될 수도 있는 세계금융시장의 단계에서 더 확대된다. 예를 들어, 헤지펀드와 신용평가기관의 운영에 대해 그리고 최근 발생한 기업 스캔들로 인해 대형 국제투자기관의 도덕성(probity)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정보로 인해 부실한 국내 은행 및 기업에게 융자 대출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환율의 고정 및 구제금융의 제공 등에 대한 묵시적인 보장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이러한 문제의 과정을 더 심화시킨다.

166. 세계금융시장의 다른 실패 요인은 국가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 차원의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효과적인 제도가 없다는 것이다.

167. 그렇기 때문에 세계금융체제는 항상 금융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그 위기의 빈도와 정도는 증가하고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부정적 영향은 몇 년에 걸쳐 이루어 놓은 경제발전을 통해 얻는 이익을 단번에 없애버리고 실업 및 빈곤을 심화시킴으로써 무거운 사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거의 파괴적인 수준이다.

168. 그러나 단지 소수의 개발도상국만이 이 새로운 세계금융체제에 동참하고 있다. FDI의 경우처럼 사적금융 흐름은 신흥시장에만 집중되어 왔다. 그러므로 거의 모든 저개발국(LDC)을 포함한 대다수의 개발도상국은 사적재정 흐름을 거의 받지 못했다.

169. 대부분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인 국제원조에 의존하는

저소득 국가들은 금융시장으로부터 주변화되었으며, 이는 공적개발원조(ODA) 격감에 따르는 영향을 완화시킬 수단을 박탈당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이들 중 많은 국가들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1980년대 초 빠져들었던 외채의 올가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세계화의 영향

170. 무역, FDI, 금융 및 기술에서 이러한 발달 상황의 혼합적 그리고 상호연계적 영향은 다양한 경제 부문, 기업 유형, 노동자집단 그리고 사회단체에 심오하고도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이 섹션에서는 광범위하게 발생한 변화를 요약한다.

주요 관심사

171. 우리는 세계화의 영향을 평가하는 관점을 제시하면서 출발하고자 한다. 우리의 주요 관심사항은 세계화가 모든 국가에 혜택을 주고 전세계 모든 사람들의 복지를 향상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화가 가난한 국가의 경제성장률을 향상시키고 세계의 빈곤을 감소시키며, 반면에 불평등을 증대시키지 말고 국가내 사회경제적 안보를 저해하지 말아야 함을 시사한다.

172. 그러므로 세계화가 발전을 얼마나 가속화했는지, 그것이 얼마나 세계의 절대빈곤 감소에 공헌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경제적·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지 등은 현 세계화 과정을 평가하는 척도로 널리 인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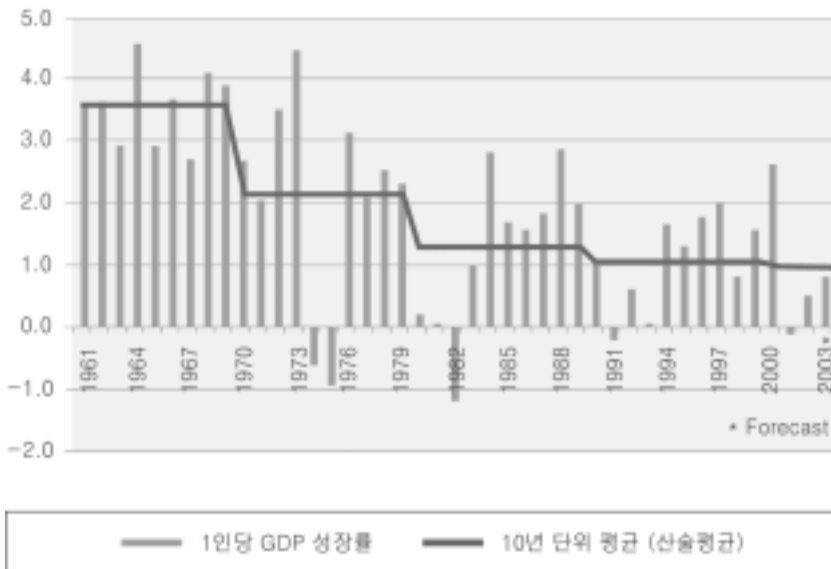
173. 세계화의 사회적 영향은, 그 과정으로부터 주변화된 국가나 세계화된 경제로의 통합이 그다지 성공을 거두지 못한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성공을 거둔 국가조차도 전환조정비용의 형태로 상당한 사회비용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중국은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환기 실업(transitional unemployment) 문제에 직면

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국영기업의 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심화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볼 수 있듯이, 놀라운 경제성과를 이룩한 국가도 무거운 사회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

174. 세계화의 영향을 평가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단계는 세계 그리고 각국의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세계 GDP 성장이 1990년 이후 둔화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세계화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었던 시기이다(그림 10). 적어도 이 결과에 대해서는 세계화가 성장을 촉진한다는 긍정적인 예측과는 모순을 이룬다.

[그림 10] 세계 1인당 GDP 성장률: 1961-2003(연간 변화율, %)



출처: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3*(online version) and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2004*.

175. 성장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등 국가간에 불공평하게 분배되었다. 1인당 국민소득 성장의 경우, 1985년과 2000년 사이에 연간 성장률이 3% 이상인 개발도상국은 단지 26개 국뿐이었다(표 1). 반면, 55개 개발도상국은 연간 성장률이 2% 이하였고, 이 중 23개 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표 1〉 개발도상국(성장성과별로 그룹화함)과 선진국 및 체제전환국의 경제성과 비교

	선진국	개발도상국(1인당 GDP 성장률로 구분)						체제 전환국 ¹⁾
		← > 3% ²⁾	→ 2-3%	1-2%	0-1%	< 0%		
국가 수	22	16	(14)	12	20	14	23	17
세계인구 중 비중(%)(2001) ³⁾	13.8	44.7	(7.1)	5.6	10.3	7.5	4.8	5.3
GDP 성장률(%), 1985~2001	2.5	7.3	(6.2)	4.2	3.4	2.3	1.8	-1.1
인구성장률(%), 1985~2001	0.65	1.5	(1.6)	2.0	2.2	2.1	2.6	-0.3
세계무역 중 비중 (체제전환국 포함)								
1991	53.9	18.5	(10.3)	3.2	6.6	3.1	4.7	10.0
2001	48.4	26.6	(11.3)	2.9	6.7	3.0	3.6	8.9
세계 FDI 중 비중(%)(체제전환국 포함)								
1991	54.4	24.6	(13.68)	2.2	10.2	3.0	2.9	2.7
2001	52.9	22.2	(2.7)	2.0	5.8	6.9	4.3	5.8

주: 1) 체제전환국의 성장률은 1991~2002년의 기간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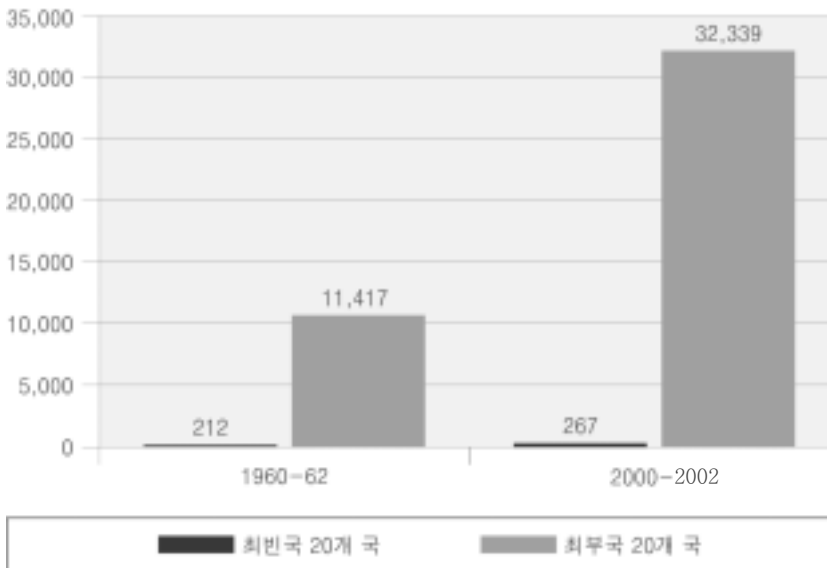
2) 두 번째 행에서 중국과 인도가 제외됨.

3) 표본에 포함된 124개 국은 2001년 기준 추정 세계인구 61.29억 명의 92%에 해당함.

출처: 기초 데이터는 세계은행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CD-ROM, 2003) 인용.

176. 이와 동시에, 최부국과 최빈국 사이의 소득격차가 상당히 커졌다(그림 11).

〔그림 11〕 최빈국과 최부국의 1인당 GDP: 1960-62 및 2000-2002



출처: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3*(online version)에서 1960~2002년간 지속적인 시계열 자료가 있는 94개 국 및 영토에 기초

177. 이러한 불균형적인 성장 패턴이 새로운 세계경제의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지난 20년 동안의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인도의 점진적이기도 상당한 경제성장인데, 이 두 국가의 인구는 세계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국가간 불평등한 영향

178. 중국과 인도의 부상은 중요한 의미를 갖기는 하나, 이는 국가간 세계화의 혜택이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보다 큰 그림의 한 부분을 보여줄 뿐이다. 반면에, 처음부터 강력한 경제적 기반, 풍부한 자본과 기술 그리고 기술적 선도 역량을 갖춘 선진국은 세계경제가 점점 더 세계화됨에 따라 상당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179. 상품과 서비스를 위한 세계시장의 확장은 선진국의 수출품의 새로

은 판로를 제공해 주었고, 글로벌 생산체제의 부상과 투자규칙의 자유화는 선진국의 다국적기업들이 세계에 대한 영향력(global reach) 확대 및 시장 지배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마찬가지로, 세계금융시장의 성장은 신흥시장에서의 고수익의 투자 기회를 확대시켜 주었다. 또한 선도 기술을 보유한 다국적기업은 WTO를 통한 지적재산권(IPR)과 관련한 국제규칙의 강화로 인해 기술 사용료(royalty) 및 특허 사용권(license)을 통해 수입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다른 근로자에게 손실을 발생시킨 내부적 조정 문제로 인해 부분적으로 상쇄되었다.

180. 세계화 과정에서 상당한 혜택을 수확한 다른 그룹은 수출을 증대하고 FDI를 유치하는 데 크게 성공한 몇몇 개발도상국이다. 이 그룹의 선두는 동아시아의 초기 신흥공업국(NIEs)으로서, 이들은 현재 선진국 수준의 소득과 경제구조에 도달했다. 아시아의 다른 중간소득 국가, 유럽연합 회원국(EU accession countries) 그리고 멕시코와 칠레 등과 같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도 이러한 성공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정상 궤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181. 대부분의 경우, 이들 국가들은 전산업화(prior-industrialization), 인적자원개발 수준, 교통 및 통신 인프라 그리고 경제적 및 사회적 제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초기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모두 다 동일한 발전전략을 추진하지 않았다. 특히, 큰 내수시장을 보유한 중국, 인도 및 베트남은 정통적 자유화 전략을 추진하지 않은 반면, 한국은 산업발전의 시동을 걸기 위해 강력한 정부 개입에 의존했다.

182. 다른 극단에서는, 대부분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가 포함되는 저개발국(LDC)이 세계화의 혜택에서 배제된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저개발국들은 빈곤 및 문맹, 내전, 불리한 지리적 여건, 부실한 통치구조, 주로 단일상품에 크게 의존하는 경직된 경제 등을 포함한 여러 장애 요인들이 결합된 악순환 속에 갇혀 있다. 또한 이 중 많은 국가가 외채의 부담을 크게 안고 있고 농산품을 비롯한 1차상품(primary commodities)의 지속적인 가격 하락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선진국의 지속적인 자국 농업보호정책으로 인해 가중되었다. 이는 시장 접근(선진국내: 편

집자 주)을 제한할 뿐 아니라 농업보조를 받아 생산된 농산품의 수입(후진국내: 편집자 주)으로 국내 농산품 생산자에게 피해를 준다.

무역, 투자 및 금융 자유화의 영향

183. 세계화의 주요 요인이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는 이들 이슈에 많은 조사가 진행되는 국가별 연구 결과에서 얻을 수 있다. 이들을 종합해 일반화하면, 그 영향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184. 예를 들어, 제조업 부문의 고용 및 임금에 대한 무역의 영향과 관련한 일련의 ILO 연구조사에 따르면, 국가별로 그 영향이 상당히 대조적인 양상을 보인다.¹²⁾ 조사 대상국인 아시아 신흥 3개 국의 경우, 무역성장이 대체적으로 제조업 부문의 고용과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와 반대로, 브라질과 멕시코 같은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는 제조업 부문의 고용이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만큼만 상승하거나 혹은 오히려 하락했다. 미숙련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고, 숙련 노동자와 미숙련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는 상대적으로 급격히 확대되었다.

185. 이들 연구 및 다른 유사 연구는 무역 자유화와 성장 그리고 고용 간의 관계는 ‘여러 국가 및 외부 요인에 의존하는 불확정적인 관계’임을 시사하고 있다.¹³⁾ 각국의 상황(소득수준 혹은 해당 국가가 농산품 또는 제조상품 등에서 비교우위를 갖는가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역 자유화에 있어서 각자 다른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자유화와 관련하여 간단하고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특효약은 없다.

186. FDI의 경우, 여러 근거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외국인 투자는 성장을 향상시킨다. 비록 FDI가 고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경쟁

12) Ajit Ghose, *Jobs and Incomes in a Globalizing World*(Geneva, ILO, 2003).

13) Francisco Rodriguez, and Dani Rodrik, “Trade Policy and Economic Growth: A Sceptic’s Guide to the Cross-National Evidence”, in B. Bernanke and K. Rogoff, *NBER Macroeconomics Annual 2000*(Cambridge, MA, MIT Press, 2000).

력이 없는 국내 기업이 강력한 시장 수축효과를 겪게 되고 외국기업이 자본집약적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긍정적 효과는 경감될 수 있다. 그러나 FDI의 고용효과에 대한 경험론적 증거는 부족하여 간단하게 일반화할 수 없다.

187. 국경간 투자는 기술 및 기능 등이 국내 경제로 이전되는 파급효과가 있을 경우, 성장률을 향상시킬 잠재성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투자가 노동생산성과 소득을 향상시키고 성장과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시 한번, 경험적 자료에 의하면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싱가포르 및 아일랜드와 같은 국가는 강력한 파급효과를 경험하였지만, 모든 국가가 그랬던 것은 아니다. 성공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주요 교훈은 신기술을 수용하고 새로운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의 존재가 결정적인 전제조건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내 교육, 훈련 및 기술 시스템 등을 발전시키고 공급자 네트워크 및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정책들도 매우 중요하다.

188. 그러나 FDI가 투자대상국에게 주는 순혜택이라는 이슈가 매우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FDI의 성장 및 고용에 대한 영향과 관련하여 위에 언급한 경험적 증거는 부분적인 해답만 제시해 줄 뿐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 FDI의 중소기업 및 영세 생산자(poor producer)에 대한 영향; 외국 기업과 투자대상국 간 잠재적 이해 갈등; FDI의 무역 패턴과 국제수지에 대한 영향. FDI에 따르는 비용과 혜택의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국가의 특성과 정책에 달렸지만, 국제동향도 중요하다. 여기에는 FDI의 지역별 유연성 그리고 지적재산권 및 세계경제 내 무역 및 재정 흐름과 같은 영역에서 다국적기업의 영향 증대 등이 포함된다.

189. 자본 자유화의 경우, 이를 통해 파생되는 성장 혜택이 적다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위기에 의해 발생하는 경제 및 사회적 혼란을 무시하더라도, 개발도상국들이 현 세계금융체제에 동참하면서 얻는 혜택에 대해 의문이 점차 제기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이 증가된다는 면에서의 잠재적 혜택은 불안정으로 인해 감소되거나 무효화되었

다. 이러한 문제는 금융체제의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에서 확연하게 나타난다.

190. 기초적인 구조적 결함으로서, 국내 체제에 단기성 투기자금이 현저하게 유입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자본계정시장이 개방되면 자본 유입이 급상승한 다음 재빠르게 유출된다. 이는 단기성 투기 수익을 올리기 위한 행동에 기인하며, 그 결과 생산적인 투자의 증가에 공헌하는 바가 없고 오히려 개발정책에 있어 새로운 지장만 초래했다.

191. 또 어떤 경우에는 금융 개방성으로 인해 자원이 잘못 할당되고 자본의 실질 비용(real cost)이 인상되기도 한다. 자원이 잘못 할당되는 것은 정보의 부실로 인해 외국 대출자가 부실한 투자에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이다. 또한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이자율을 인상할 경우 자본의 실질 비용이 증가한다. 금융 개방성에 따른 다른 부작용은 외환보유고 수준을 상당히 높이 유지해야 하는 것과 국내 자본의 유출과 관련된 취약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192.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금융 개방성으로 인해 경기변동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거시경제정책 시행의 범위가 제한되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금융 부문을 개방하게 되면, 국가는 환율이나 통화정책에 대한 자율성(autonomy)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본계정이 개방되었기 때문에, 고정환율을 유지하면 국내 이자율을 고정시키는 자율성을 상실하게 됨을 의미한다. 반면, 후자에 대한 통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변동환율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 금융자본가의 요구사항으로 인해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제한된다.

193. 세계화는 또한 공공재정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강한(mobile) 생산요소에 대한 세율이 감소했다. 세계 30대 부국에서 법인세율은 1996년 37.5%에서 2003년 30.8%로 하락했다(그림 12). FDI를 유치하기 위한 조세 관련 인센티브 또한 평균 세율을 하락시키는 데 공헌했다.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강한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부과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현상을 볼 수 있다. 1986년에서 1998년 사이, 저소득 [그림 12] EU와 OECD의 평균 법인세율: 1996-2003



출처: Klynveld Peat Marwick Goerdeler(KPMG), *Corporate Tax Rate Survey 2003*.

및 고소득 국가들 등 많은 국가에서는 개인 소득에 대한 한계세율이 감소되었고, 많은 경우 상당히 하락하였다.¹⁴⁾ 이러한 세율 변동으로 인해 세수가 꼭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세율이 하락하면 탈세가 줄어들고 생산 인센티브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성이 강한 생산요소에 대한 세율 하락이 분배구조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소득 불균형이 몇몇 고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서 점차 커지고 있는 이 시기에 간접세 및 노동력과 같은 비이동적 요소에 대한 세금에 보다 크게 의존하는 것은 세제 제도를 덜 진보적으로 만든다.

고용, 불평등 및 빈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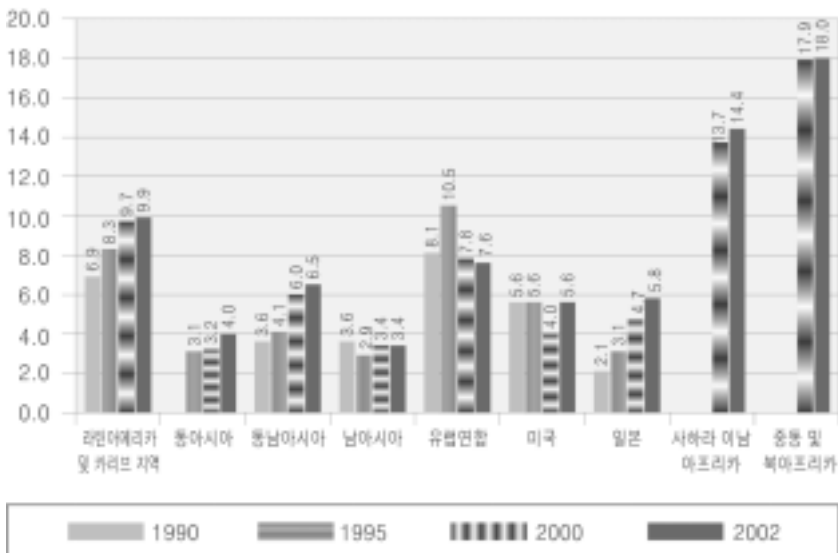
194. 세계화의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성과를 뛰어넘어 세계화가 진행된 지난 20년 동안 고용, 소득불평등 및 빈곤 등을 검토

14) Raymond Torres, *Towards a socially sustainable world economy*(Geneva, ILO, 2001) 참조.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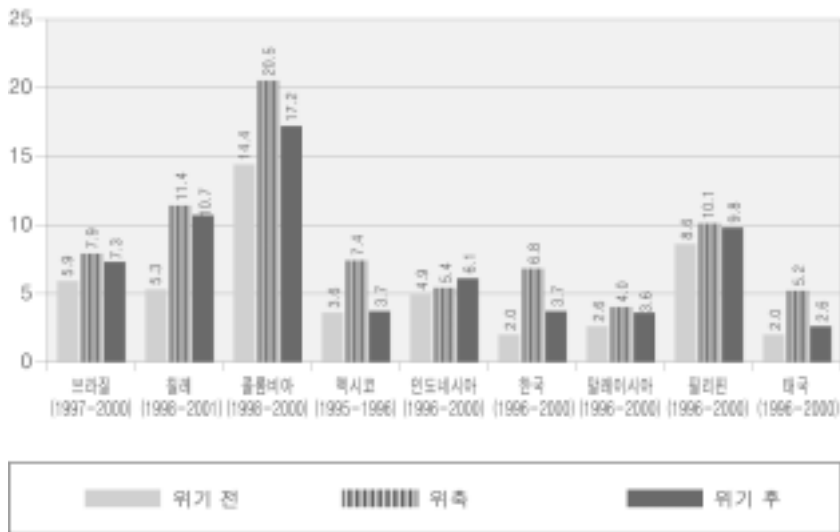
195. 최근 ILO 추정치에 따르면, 전세계 차원에서 볼 때 완전실업의 수준이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2003년에는 그 수가 1억 8,800만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의 고용 성과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그림 13). 또한, 개발도상국 지역에서 실업률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는 1990년부터 증가했고,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1995년부터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이 지역에서 실업률이 증가한 요인 중의 하나는 1990년대 말의 금융위기다. 예를 들어, 이 위기에 영향을 받은 주요 국가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이 감소하기는 했으나, 많은 경우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까지는 내려가지 않았다(그림 14).

[그림 13] 세계 각 지역별 완전실업률: 1990-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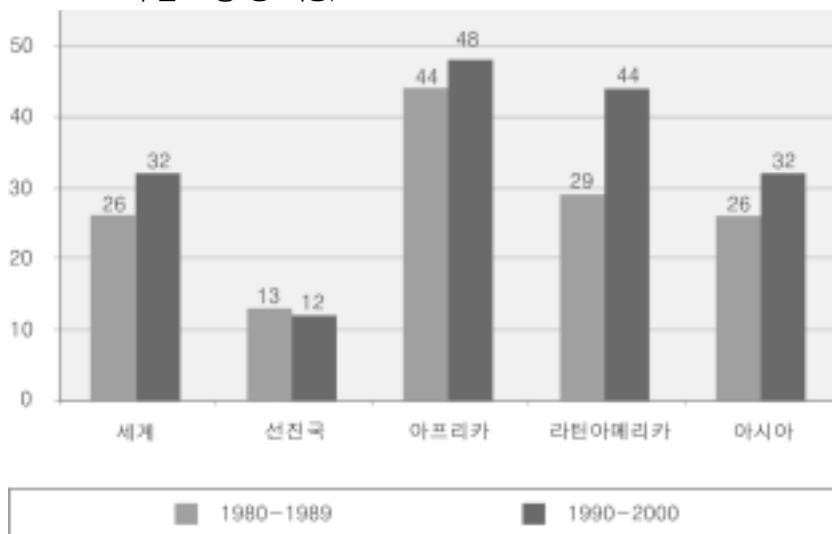
출처: ILO, *Global Employment Trends 2002*.

[그림 14]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 지역의 국가별 금융위기 전후 실업률(%)



출처: ILO, *Latin America and Caribbean 2000*, Labour Overview, Lima, 2001; E. Lee, *The Asian Financial Crisis*, Geneva, 1998; G. Bechterman and R. Islam, *East Asian Labour Markets and the Economic Crisis*, World Bank, ILO, 2001; ILO, *Global Employment Trends 2002*.

(그림 15) 비농업 부문의 자기고용, 1980/1989 및 1990/2000(총 비농업 부문 고용 중 비중)



출처: ILO, *Women and men in the informal economy*, 2002.

196.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지역에 있어 비공식 경제 규모에 대한 대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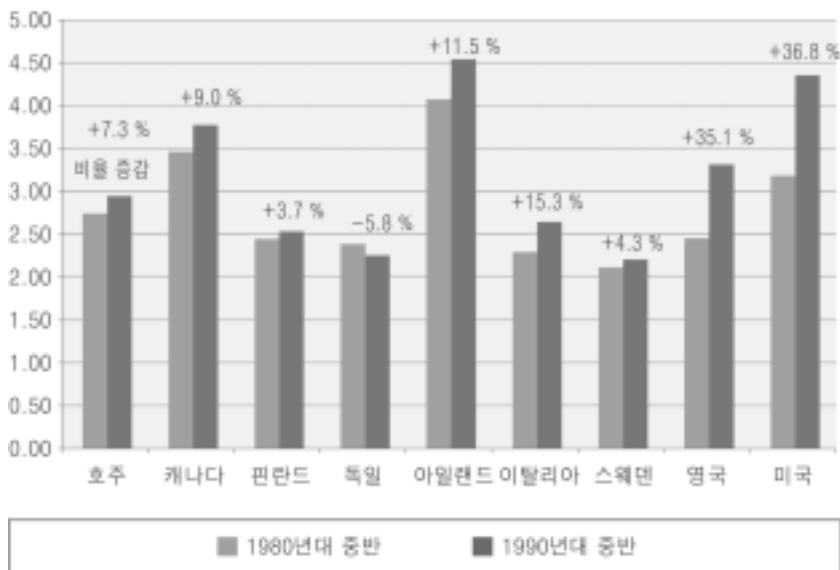
표인 자기고용(독립자영업) 비율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제외한 모든 개발도상국 지역에서 증가했다(그림 15). 비공식 경제내 고용에 관한 직접적인 자료는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이는 경기침체 또는 근대화 부문(modern sector)의 고용 성장의 둔화와 관계가 있는데, 이로 인해 비공식 경제 부문에서 노동력을 더 많이 흡수해 간다.

197. 선진국에서도 고용 성과는 다양하다. 지난 10년간 일본에서는 실업이 점진적으로 증가한 반면, 영국과 같은 몇몇 유럽의 개방경제의 경우에는 실업률이 급감했다. 미국 또한 최근의 경제하락 전까지, 몇몇 제조 산업에서 일자리가 상당히 없어지기는 했지만 실업률은 감소했다.

198. 몇몇 선진국에서 소득불평등은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민소득 중 자본의 비중이 커지고 1980년대 중반과 1990년대 중반 간 임금불평등이 심화된 것에서 두드러진다(그림 16). 더욱 두드러진 것은 미국, 영국 및 캐나다의 상위 1%의 고소득자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사실이다(그림 17). 미국의 경우, 이 고소득자 그룹의 비중이 2000년에는 국민총소득의 17%를 차지했으며, 이 수준은 1920년대에 마지막으로 나타난 수준이다. 이렇듯 부(富)가 한 곳으로 집중된 것이 미국내 소득불균형의 주요 원인이다. 소득 십분위 배율에서 하위 10%에 해당하는 소득자 비중이 감소하다가 1995년부터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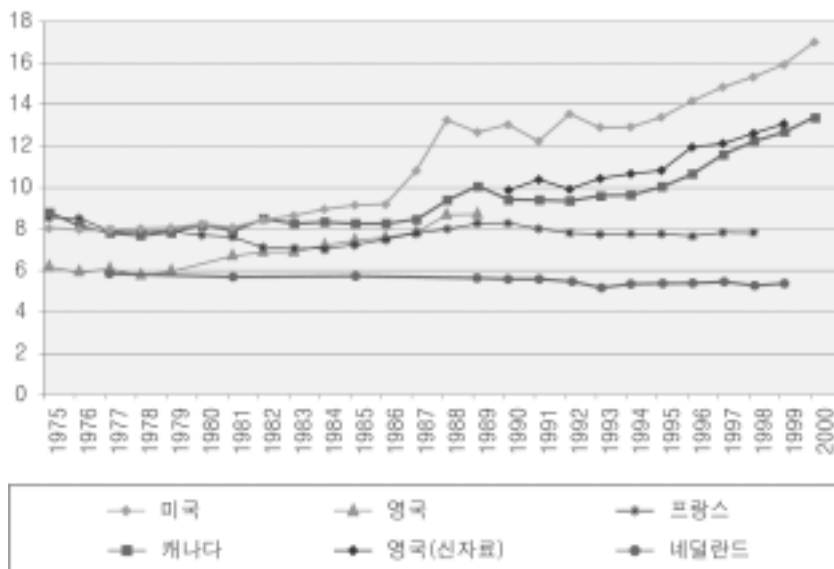
199. 이러한 방식의 부의 창출은 세계화를 분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유난히 높은 수준의 소득은 세계적 판로를 확보하고 세계적인 ‘거대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다국적기업이 지급하는 보상 시스템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부가 보다 집중화된다는 것은, 이의 혜택을 받은 자들의 시장 지배력이나 정치 권력이 국가 차원 그리고 세계 차원에서 증가함을 시사한다. 이는 또한 세계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림 16] 최소소득자 10% 대비 최고소득자 10%의 비중: 1980년대 중반



출처: OECD, *Employment Outlook*(various issues).

[그림 17] 선진국별 국민총생산 중 상위 1% 소득자의 비중: 1975-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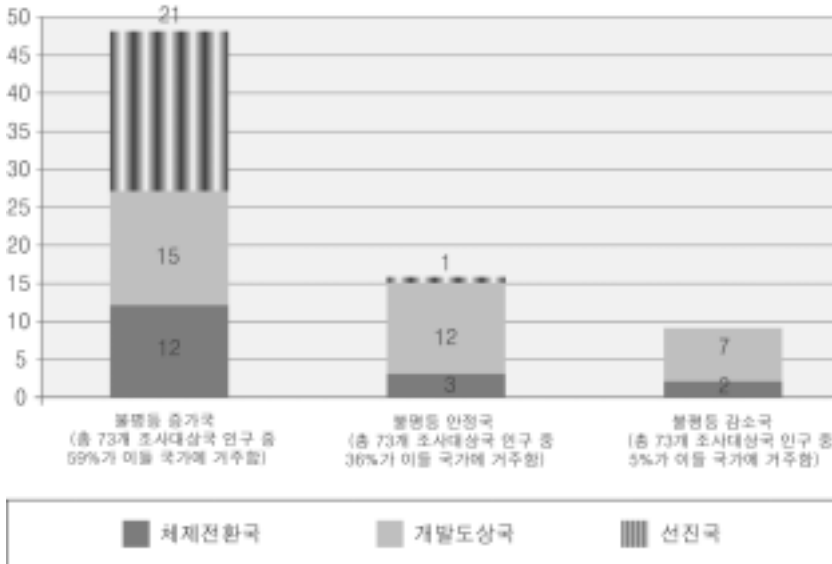


출처: A. B. Atkinson, *Income inequality in OECD countries: Notes and explanations*, Mimeo, Oxford, 2003.

200. 선진국 외 국가의 경우, 소득불평등의 변화에 있어 다양한 양상이

보인다(그림 18). 대다수 국가들 내의 소득불평등이 증가했지만, 여기에 세계화가 어느 정도까지 그 원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실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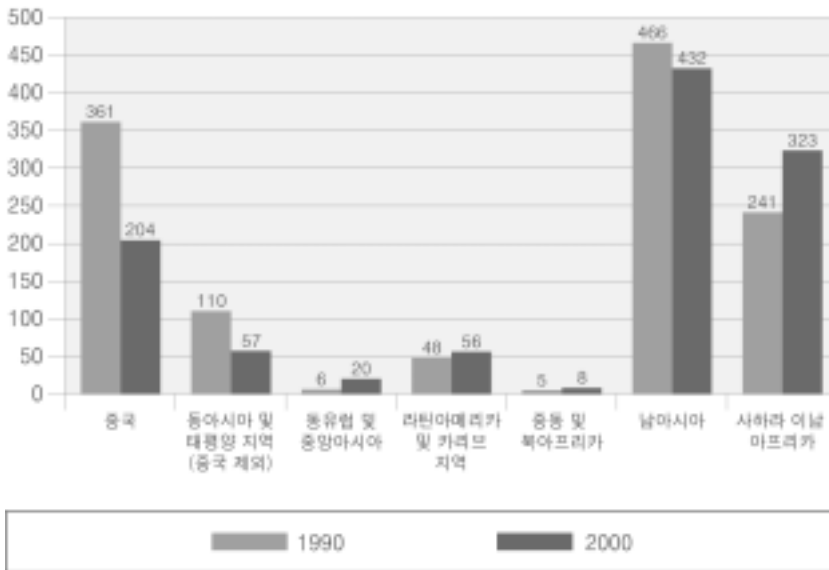
[그림 18] 73개국내 소득불평등의 변화: 1960년대부터 1990년까지



출처: Giovanni Andrea Cornia and Sampsa Kiiski, "Trends in Income Distribution in the Post-World War II Period: Evidence and Interpretation", *WIDER Discussion Paper No. 89*, UNU/WIDER, Helsinki, 2001.

201. 세계화가 빈곤에 미친 영향 또한 평가하기 어렵다. 전세계적으로 절대빈곤 속에서 사는 인구가 1990년 12.37억 명에서 2000년 11억 명으로 상당히 감소했다. 그러나 이 감소의 대부분은 세계인구의 38%가 거주하는 중국과 인도인 두 거대국가 내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중국만 보더라도 빈곤인구가 3.61억 명에서 2.04억 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유럽 및 중앙아시아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 등 다른 곳에서는 빈곤인구가 각각 8,200만 명, 1,400만 명 그리고 800만 명 증가했다(그림 19). 그러나, 빈곤인구 감소의 편차에 있어 세계화와는 무관한 지역별 및 국가별 요인이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그림 19]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 1990/2000(100만명)



출처: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2004*.

202. 위 상황으로 미루어 세계의 빈곤 추이에 관한 자료를 해석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애매한 점이 있다. 분명 전체적인 세계 빈곤인구가 감소하였다는 점에서는 축하할 일이지만, 이러한 감소가 집중된 소수의 국가 외의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위안이 되지 않는다.

203. 또 다른 모호성을 보면, 실업률이나 빈곤수준 등의 총계지표(aggregate indicator)가 악화되었음이 전혀 나타나지 않더라도 실질 사회비용의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들 항목의 비중의 안정성이 노동시장의 심한 ‘교란’이나 빈곤층에 속하게 되거나 이를 탈출하는 현상 등을 상당히 감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더욱 두드러진다는 증거가 있다.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보유하고 빈곤층이 아닌 사람들 덕분에 전체 실업률과 빈곤율이 하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일자리를 잃거나 빈곤층에 속하게 된 이들에게는 별로 위안이 되지 않는다.

204. 이러한 유동성과 다층성 때문에 사람들이 세계화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 각기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특정 사회단체나 지역주민이 실직을 하거나 소득이 하락하는 개인적인 경험(또는 직접적인 관찰)은 전

체 사회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 세계화의 사회적 영향과 관련된 열띤 논쟁의 일부는 그러한 인식과 총체적인 사회지표의 해석 방법간의 차이에 기인한다.

205. 결국, 경제적 성과나 고용, 소득불평등 및 빈곤에 있어 다양한 현상이 보이기 때문에 세계화의 영향을 일반화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는 세계화 자체가 복잡한 현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업과 빈곤 수준의 변화와 같은 관찰된 결과는 많은 요인들이 복잡하게 혼합되어 나타난 결과를 반영한 것이고, 세계화를 아무리 광범위하게 정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러 요인 중 단지 한 요인으로 작용할 뿐이다. 소득 및 부의 분배의 불평등 정도 그리고 지배구조의 질 등과 같은 국내의 구조적 요인이 흔히 이러한 결과에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 긍정 및 부정적 결과 등 관찰된 모든 결과를 전적으로 세계화의 탓으로 돌리는 일반적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의 삶에 대한 영향

206. 이 섹션에서는 경제적 변수 영역을 벗어나 세계화가 사람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세계화는 경제구조, 상대가격, 소비 잠재성 및 패턴 등의 변화와 관련 있고, 이는 사람들의 일자리, 생계 및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듯 강도 높은 변화 과정 속에서 어떤 이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또 다른 이들은 이익을 얻게 마련이다.

207. 세계화의 경제적 혜택과 사회비용은 사회집단간에 골고루 분배되지 않는다. 많은 개발도상국 및 선진국에서는 특정 노동자 집단이 무역자유화 및 저임금 경제로의 생산기지 이전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현상이 아직까지는 주로 미숙련 노동자에게만 영향을 미쳤지만, 어떤 숙련 근로자 및 전문인력도 소프트웨어 개발업무의 외주, 전문서비스 분야의 무역 증가 및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숙련 및 전문인력의 이주 등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다. 이와 동시에, 선진국의

노동조합은 세계화가 다국적기업과 금융기관에게 불평등한 수준의 혜택을 안겨주었다고 주장했다.

208. 국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계화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은 성공적인 다국적기업 그리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과 관련된 사람들(주주, 경영자, 노동자 또는 하청업체)이 포함된다. 더 일반적으로 보면, 자본이나 기타 자산, 기업가적인 능력, 계속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서의 학위나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다.

209. 반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는 무역 자유화 및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에 맞서 생존하지 못한 경쟁력 없는 기업과 관련된 이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기업에는 무역장벽으로 인해 보호를 받았던 기업, 국가의 보조를 받았던 기업 그리고 경제의 빠른 자유화에 조정할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 등이 포함된다. 도시의 비공식 경제 영역이든 농업 분야이든, 수입 가능재를 생산하는 영세업자는 값싼 수입품의 국내 유입 그리고 생산투입요소의 상대가격 및 획득 가능성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특히 취약했다. 이들 생산자는 또한 자본이 부족하고 신용, 정보 및 사업 능력 등의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기에 새로이 창출된 경제적 기회를 포착하지 못한다.

210. 급성장을 기록한 국가의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를 본 사람은 주로 빈곤층, 자산이 없는 사람(assetless), 문맹자, 미숙련 노동자 및 토착민 등이다. 이는 세계화의 주요 경제적 영향으로 인해 발생한 것뿐 아니라 세계화의 간접적인 영향에 의해서도 일어났다. 예를 들어, 자본 이동의 증가와 고실업률은 노동자가 사용자와 협상하는 데 있어 입지를 약하게 만들었다. 이와 동시에, 시장 점유 및 FDI 유치를 위한 국제 경쟁의 증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대하고 노동보호 기준들을 침식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FDI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외국기업에 고용된 노동자가 국내 기업 노동자보다 높은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글로벌 생산체제 내에서 창출된 고용의 질이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특히 의류 및 신발류 등 노동집약산업에서 다국적기업의 외주업체에 고용되는 경우 그러하다. 이를 통해, 모든 국가 내에서 기본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행동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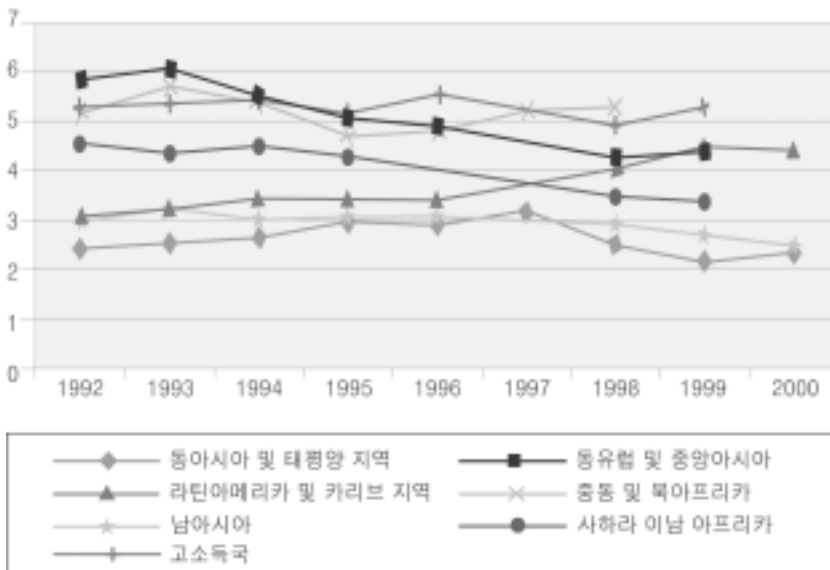
211. 토착민들은 특히 취약한 집단이다. 토착민들은 그들의 자유의사 없이 그리고 사전에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를 한 것이 아닌 상태에서 그들의 권리, 생계 및 문화의 적절한 보호 없이 세계화된 경제에 통합된 경우,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 경우, 채취산업, 대형 수력발전댐 및 대규모 농장 등에 대한 투자는 토착민의 거주지 재배치, 토착민의 생계수단 중단, 생태계 파괴 및 이들의 기본인권 유린 등의 결과를 낳았다.

212. 많은 이들은 조세경쟁의 심화가 국가의 역할 축소라는 새로운 이론과 함께 정부의 재정 역할을 약화시켰다고 생각한다. 많은 경우, 이로 인해 빈곤층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보건, 교육, 사회안전망, 농업지도 사업 등에 대한 정부지출이 줄어들었다. 그 예로, [그림 20]은 1990년대 후반의 세계 각 지역의 교육에 대한 지출 감조 추이를 보여준다.

213. 이 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지출은 빈곤 감소 및 사람들의 세계화에 따른 혜택 향유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교육은 세계화된 경제의 주요 요인으로서, 세계화된 경제에서는 경제적 성공뿐 아니라 생존을 위해 교육, 기술 및 지식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의 수준은 너무나 부적절하다. 개발도상국 내 초등학교 취학 연령의 아동 6.8억 명 중 1.15억 명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며, 이 중 6,500만 명이 여아이다. 또한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아동 2명 중 1명만이 졸업한다.

214. 어떤 국가의 경우, 세계화가 심각한 남녀간 불균형의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불균형의 정도는 한 국가가 세계화된 경제로 통합될 당시 그 국가의 사회규범, 제도 및 정책에 남녀평등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그 국가의 여성이 어느 사회집단에 속하느냐에

[그림 20] 교육에 대한 정부지출: 1992-2000(GDP 중 비중)



출처: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3(online version).

따라 받는 영향도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뿌리깊이 오래 지속되어 온 성차별은 세계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여성이 지나치게 부담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215. 상당수의 여성들이 절대적 그리고 상대적으로 남성과 비교하여 세계화에 의해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설명하는 증거들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무역 자유화로 인해 국가의 보조를 받는 농산품과 소비재가 수입되어, 이를 통해 여성 생산자의 생계가 전멸되었다. 또한 국내 시장으로 진출하는 외국기업이 증가하여, 이들은 농촌 여성이 농촌을 떠나게 만들거나 농촌 여성의 생산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원재료의 확보 경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위와 유사한 결과를 낳았다. 이와 동시에, 여성 생산자들은 세계화에 의해 형성된 새로운 경제활동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 엄청난 장벽에 직면한다. 이는 주로 규제 및 정책환경상 여성 자체에 대해 또는 여성이 대다수 차지하는 소규모 또는 영세적인 생산 부문에 대해 편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성이 직면하는 불리한 상황의 정도는 여성 소유 토지가 전세계 토지의 2% 이하이고

전체 신용대출 규모 중 여성의 신용대출이 10% 이하인 점에서 충분히 짐작될 수 있다.¹⁵⁾

216. 여성은 세계화에 의해 발생한 금융위기 당시 남성에 비해 부정적인 영향을 더 받았으며, 사회보호가 삭감되었을 때도 여성이 더 많은 불이익을 감수했다.

217. 한편, 세계화를 통해 경제적 및 사회적 지위가 향상된 여성도 많다. 여기에는 글로벌 생산체제에 흡수된 수백만에 달하는 여성 근로자도 포함된다. 이렇듯 임금을 받는 고용형태는 과거의 상황보다 이들에게 훨씬 높은 소득을 안겨주었다. 그 전에 이들은 가족사업(intra-family)에 종사하거나 비공식 경제 속에서 궁핍하고 불안하게 일했었다. 임금 고용을 통해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갖게 되었고 대단히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도 이들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었다.

보다 폭 넓은 영향

218. 세계화가 전세계 사람들의 삶에 미친 영향은 광범위하다. 우리는 그 중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하나는 세계 상호 연결성의 증가이고 다른 하나는 국경간 불법행위의 증가이다.

219. 세계 상호 연결성의 급증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예측이 가능한 것이 있고 예측이 불가능한 것도 있다.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세계에 대한 인식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제 세계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쟁점사항들에 대해 과거에 비해 훨씬 잘 인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생활수준, 삶의 기회, 정치적 및 사회적 권리, 자유 등에 있어서 지구상에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음이 널리 인식되었다.

15) FAO, *Women and sustainable food security*(SD Dimensions, SDWW, 2003) <http://www.fao.org/sd/fsdirect/FSP001.htm>).

220. 이러한 현상은 지구상 상대적으로 가난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그들의 기대치를 높여주고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인내를 부족하게 만든다. 이는 민주주의 및 정치적 자유가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민주화가 퍼지고 정치적 자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보다 많은 정보가 제공되면서, 압력단체 및 유권자들이 보다 정통하고 비판적이 되면서 민주주의의 질이 향상되었다.

221. 보다 부유한 국가의 사람들의 경우, 정보혁명은 지구공동체 및 초국가적 결속 등에 대한 인식을 높여 주었다. 그 예로서, 세계화 자체, 환경, 인권, 인도주의적 원조, 노동착취 등과 같은 보편적 이슈에 대하여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s)들이 세계적으로 결속을 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22. 세계 정보혁명은 문화적 및 사회적 가치에도 명백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변화는 명확히 지적하여 문서화하기가 어렵다. 논란이 되는 이슈 중 하나는 세계의 각 현지 문화 및 가치에 대한 정보혁명의 영향이다. 세계의 언론이나 오락산업을 미국 및 기타 서방세계의 문화와 가치가 압도적으로 지배한다는 우려가 만연하다. 즉 서양식 생활방식이나 역할 모델(role model)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문화적 및 사회적 분열을 발생시키는 긴장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

223. 세계화의 또 다른 부작용은 국경간 불법행위의 급증이다. 여기에는 탈세 그리고 돈세탁, 인신매매, 성매매 및 마약거래 등과 관련된 국제 신디케이트 범죄의 증가가 포함된다. 합법적 국경간 경제거래를 촉진한 바로 그 요인들이 불법적 국경간 거래의 수단을 제공해 주었고 세계의 금융 자유화는 탈세 및 돈세탁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은 국경간 불법행위의 조정을 용이하게 해주었다. 마찬가지로, 운송비의 급락과 단체관광 분야의 성장으로 인해, 밀입국과 마약밀수가 보다 적은 비용으로 이루어지고 이의 적발과 척결은 더욱 어려워졌다.

224. 이러한 국경간 범죄의 증가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더욱 확대되

었다. 첫째 요인은 각국 시장간 차이거래를 통한 수익의 기회가 확대되어 국경간 범죄의 경제적 수익이 증대되었다는 점이다(예를 들어, 역외 금융센터와 세금 피난처의 부상 그리고 부국과 빈국 간의 소득격차의 심화 및 엄격한 출입국관리 등). 둘째 요인은 국경간 불법행위를 감지하고 억제하기 위한 다자간협정의 개발이 완만하게 진행되어 불법행위에 따른 위험이 감소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유리한 조건하에서 국경간 불법행위가 번창하였다.

제Ⅲ부 세계화의 지배구조

서론

Ⅲ.1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시작

국가 역량 및 정책

지방 차원으로의 권한 부여

디딤돌로서의 지역 통합

Ⅲ.2 전지구적 지배구조의 개혁

Ⅲ.2.1 분석 기반

세계화와 지배구조

현대의 전지구적 지배구조의 주요 결함

불안정한 결과

Ⅲ.2.2 공정한 규칙

서론

국가 개발을 위한 공간

무역을 위한 다자규칙

글로벌 생산체제를 위한 규칙

금융체제의 개혁

세계화된 경제 속의 노동

III.2.3 개선된 국제정책

서론

전지구적 목표를 위한 자원

주요 목표 달성

양질의 노동을 전지구적 목표로 정하기

경제 및 사회적 목표의 통합

III.2.4 보다 책임있는 제도

다자체제의 강화

민족국가

의회

기업

노동조합

글로벌 생산체제 안에서의 사회적 대화

시민사회

커뮤니케이션과 대중매체

네트워크화된 지배구조

◆ 서론

225. 우리의 비전에 제시된 목표는 광범위한 전선에서의 일치된 행동을 필요로 한다. 행동을 위한 우리의 제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계경제구조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과 관련 있다. 우리는 세계화가 경제 효율성 및 성장을 향상시키는 큰 잠재력을 갖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가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경제적 번영을 안겨 줄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잠재적 혜택을 완전히 실현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226. 이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현재의 세계화 과정은 효과적이고 민주적인 통치구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몇 가지 필수적인 시장지원 제도 및 규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세계화의 체제가 다양한 시장실패(market failure)에 취약한 것이다. 더구나, 현재 존재하는 규칙과 제도는 작성된 방식이나 그 영향 측면에서 가난한 국가에게는 불공평하다. 더구나, 국가내 그리고 국가간 불평등을 시정하고 세계 공공재(global public goods)¹⁶⁾ 및 사회보호의 제공 등 중요한 사회적 우선순위를 이행하는 메커니즘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더욱 심화된다.

227. 민족국가(nation state)의 세계에서는 세계화의 지배구조가 국가 차원의 지배구조와 연결되어 있다. 세계화의 기회를 이용하고, 그것이 국가내 다양한 그룹들간 광범위하고 공정하게 배분될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정치 및 법 제도, 강력한 경제 및 기술 능력 그리고 경제적 및 사회적 목표들을 통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다른 국가들의 욕구를 고려하여 국내 정책을 수행하는, 통치의 효율성이 높은 국가가 보다 공정하고 포괄적인 세계화 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파트너가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세계화에 대한 대응은 국가적 차원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다.

16) 그 예로, 전염병 통제, 환경보호 및 세계안보 등이 있다.

228. 우선, 섹션 III.1에서는 세계화의 맥락에서 국가의 사회 및 경제적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 및 주요 국가 행위자들이 그들의 국내 제도 및 정책을 강화시키는 데 사용하는 도구와 대안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는 우선, 국가 차원의 행동을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공정한 세계화는 지방공동체 및 지방경제에서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는 새로운 지역 협력 및 통합 등 여러 차원에서의 행동과 권한 부여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각 차원의 주요 이슈를 검토한다.

229. 그 다음에 섹션 III.2에서는 전지구적 지배구조의 개혁을 위한 광범위하고도 복잡한 의제를 살펴보겠다. 우선, 후반부에 제안할 권고사항의 기초가 되는 세계화의 지배구조를 위한 분석 틀을 제시한다. 현재의 지배구조체제의 결함과 이로 인한 불균형의 결과를 강조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필요한 주요 개혁사항을 지적한다.

230. 섹션 III.2.2에서는 최초로 개혁이 단행되어야 할 분야인 세계화된 경제를 지배하는 현 규칙들을 살펴본다. 우리는 국가내 그리고 국가간, 특히 부국과 빈국 사이에 보다 큰 공정성과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다자무역 및 금융체제에 있어 어떤 규칙은 불공정하고 국제이주 등과 같은 분야에서 적절한 규칙의 부재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인 영향 등이 포함된다.

231. 다음으로, 섹션 III.2.3에서 우리는 개발지원 및 세계 사회·경제적 목적 달성을 포괄하는, 보다 형평성 있고 일관된 국제 정책들을 위한 제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세계화의 혜택의 분배 그리고 세계화의 빈곤에 대한 영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특히,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모든 이를 위한 양질의 노동이라는 목표에 최우선순위를 두기 위해 이러한 세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을 많이 증가시키는 것이 시급히 필요한 것을 강조한다.

232. 마지막으로 섹션 III.2.4에서는 현재 전지구적 지배구조의 주요 제도와 관련 주요 행위자들의 역할을 검토하다. 우리는 다자체제를 보다 민주적이고 일관되고 책임성있게 만듦으로써 다자체제의 역량을 강

화하기 위한 조치와 이러한 과정을 지원하는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을 모두 동원하는 조치를 제안한다.

III.1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시작

국가역량 및 정책

지방 차원으로의 권한 부여

디딤돌로서의 지역 통합

233. 모든 국가들은 점점 더 상호 의존적이 되어가기 때문에, 보다 공정한 세계적 차원의 규칙, 정책 및 제도가 시급히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을 다루기에 앞서, 우리는 우선 개별 국가적 차원에서 시작해야 한다. 사람들은 세계가 점점 상호 연결됨에 따라 동반되는 문제들과 기회를 경험하게 된다. 흔히, 이 경험은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고 그들이 살고 있는 국가 내에서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도 각각 다르다. 국가내 정책은 계속해서 국가와 사람이 세계화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사람들이 세계화의 이익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적응이 필요할 때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 그리고 국가내 사회 행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수단(means)과 도구(instrument)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234. 세계화는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들의 경제적 적응으로 이어진다. 새로운 경제 기회가 만들어지지만, 그것은 새로운 기술을 요구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국가간 생산기지의 이동은 한 곳에서는 일자리를 없애지만 다른 곳에서는 고용을 창출한다. 사양산업의 생산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 전체는 피해를 보지만, 다른 곳은 새로운 기회로 인해 혜택을 누린다. 정부는 사회 행위자들과 함께 그러한 변화를 관리해야 한다. 적응과 새로운 기회를 지원하고,

참여와 기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국민들을 불안정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이는 제도, 역량 및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경쟁력이 심화되는 경제환경에 직면해 있는 많은 개발도상국에게는 엄청난 과제인 것이다.

235.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고 보편적인 정책 의제는 없지만, 어떤 이슈들은 반복해서 제기된다. 다음 섹션들은 민주적 지배구조의 공헌, 세계경제로의 통합 과정을 관리할 강력한 국가 역량의 필요성, 그리고 비공식 경제의 과제 등을 다룬다. 교육에 대한 투자, 노동과 고용 등을 살펴보고 경제, 사회 및 환경 목표간 일관성의 필요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236. 이는 국가 의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표와 열망을 어떻게 정하고 달성하느냐는 그들이 당장 놓인 경제적 및 사회적 환경에 많이 달려 있다. 세계화에 대응하는 성공적인 정책은 지역사회(local community)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세계화가 사람을 위해 진행되도록 만드는 전략에 있어 핵심요인이다.

237. 마지막으로, 지역 차원(regional level)에서 국가간의 조정은 제도의 역량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한 추가 경로를 제공한다. 보다 공정한 세계화 패턴을 달성하는 데 있어 지역 통합의 역할에 대해 살펴본다.

◆ 국가 역량 및 정책

지배구조

238. 세계경제로의 효과적이고 공평한 참여를 위해서는 각 발전 단계에 있는 모든 국가가 올바른 지배구조(good governance)를 갖고 있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것을 확신한다. 세계화를 인도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기본 원칙은 민주주의, 사회평등, 인권 존중 그리고 법치다.¹⁷⁾

17) “우리는 민주주의를 촉진하고, 법치를 강화하고, 개발할 권리를 포함한 모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데 최선을 다할

이러한 원칙들은 국가의 제도, 규칙 및 정치체제에 반영되어야 하고 사회 모든 부문이 존중해야 한다.

239. 부실한 지배구조(*poor governance*)는 국가마다 각기 다양한 문제들이 다양한 혼합형태 그리고 다양한 정도로 표면화되면서 드러난다. 그 예로서, 내란에 의해 분열된 무기력한 국가, 다양한 형태의 독재 정부, 그리고 민주적인 정부가 있기는 하나 잘 작용하는 시장경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책이나 제도가 부적절한 국가 등이 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는 국제적 행동이나 원조 없이 개선의 희망이 거의 없다. 민주적 지배구조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국가적 노력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다.

240. 올바른 지배구조의 기초는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는 대의적이며 정직한 정부를 보장해 주는 잘 작용하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이다. 이는 단순히 정기, 자유 및 공정 투표를 개최하는 것 그 이상이 필요하다. 이는 일반적인 인권에 대한 존중, 특히 자율 및 복수 언론을 포함한 결사 및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시민 자유(*civil liberty*)에 대한 존중 등이 포함된다. 노동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조직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이들 조직간의 생산적인 사회적 대화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빈곤층 및 기타 사회 약자 집단을 대표하는 조직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것은 관점의 이해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활력 있는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조건이다. 이는 정책의 계획 및 적용 과정의 참여적인 과정을 보장하고 정부나 기업이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 지속적인 견제와 균형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241. 법치 및 정의에 기초한 효과적인 운영이 기본이 된다. 모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는 공평한 법적 기반은 국가 또는 비국가 행위자의 권력 남용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 준다. 이는 사람들에게 재산, 교육, 양질의 노동, 언론의 자유 및 인간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한 기타 다른

것이다”(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 2000).

‘도약 요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한편, 법이 준중 및 적용됨을 보장하고 가난한 자 및 부자 등 모든 사람들이 그 법에 접근하고, 그것에 대한 지식을 갖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집행, 행정 및 입법 등 모든 차원에서 책임있는 정부 제도 그리고 독립적인 사법부가 필요하다. 예산, 계약 및 조달 부분에 대한 공공 감시(public monitoring) 또한 중요하다. 이는 주로 의회가 책임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지만, 근로자 및 사용자단체,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242. 올바른 지배구조의 필요성은 시장경제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공식적 제도(formal institutions)에도 확대 적용된다. 기본 요건에는 저축 및 투자를 촉진하는 건전한 금융체제, 남용 및 반경쟁 행위를 방지하는 시장의 규제, 투명하고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기업 지배구조를 보장하는 메커니즘, 그리고 재산권을 인정하고 계약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체제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제도가 없으면, 국가는 세계금융시장을 접근하는 데 매우 불리해진다. 적정한 법적 기반, 결사의 자유 등의 노동시장 제도, 그리고 대화와 협상을 위한 제도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보호를 제공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장려하는 데 필수적이다. 사회적 대화는 올바른 지배구조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참여 및 책임성을 위한 도구이다. 사회적 응집이 강화될 수 있도록 소득 및 부의 불균형이 일정 수준에만 머물도록 보장해 주는 수단도 필요하다.

243. 국가 지배구조의 중요한 단면 중 하나는 국가가 자국의 정책이 다른 국가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는 세계화된 경제 속의 주요 행위자의 경제정책이 다른 국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국제기구에서 의사결정 권한이 큰 국가는 세계화된 시장 내의 모든 이해를 고려할 특별한 책임을 갖는다. 또한 1990년대 당시 유엔의 회의들에서 합의한 공약 및 협정, 특히 재무적 자원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이행되지 않았다.¹⁸⁾

244. 모든 국가는 부실한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어떤 형태로든 이의 영향을 받는다. 공공부문의 경우, 고소득 및 저소득 국가 등을 포함하여 국가공무원 및 행정기관의 책임이 부적합하다.¹⁹⁾ 한편 민간부문의 경우, 부실한 기업 지배구조가 주요 우려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2001년과 2002년의 Enron, Worldcom 및 Global Crossing의 경영진의 엄청난 비리는 부실한 이사회, 결함 있는 감사 및 회계 관행 때문에 발생하였다. 부패는 많은 개발도상국에 만연되어 있으며, 이는 서비스로부터 배제되고 자의적인 대우를 받는 빈곤층에게 특히 피해를 많이 준다. 물론, 선진국도 절대로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않다.²⁰⁾ 더구나, 개발도상국내 부패 관행에는 상당한 뇌물을 선뜻 제시하는 상대자가 선진국 출신인 경우가 흔하다.

245. 경제성과의 향상을 위한 여정에 있어 이러한 결함을 극복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중부 및 동유럽의 경제적 변혁 과정은 이를 잘 설명해 준다. 과거 계획경제를 고수했던 이 지역의 국가들은 시장경제의 기능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제도 때문에 부담을 안고 있었다.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명백한 법과 사법 제도가 부재했고 시장 진출과 진입을 관리할 제도 또한 없었다. 시장경제를 위해 필요한 제도가 정착되기 전에 가격 자유화 및 민영화정책이 실행되어, 이권 추구(rent-seeking) 및 자산 수탈(asset stripping) 활동에 노력이 집중되었다. 개방된 민주적 과정이 부재한 이 체제 전환 과정에서, 국가의 일부분을 포함한 많은 제도는 민간 이해당사자가 지배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국민총생산이 오랜 기간 동안 하락했고, 실업, 불평등 및 빈곤이 놀라운 수준으로 상승했다. 보다 최근에는 제도적 개혁에 초점이 맞추어져 아직은 진전이 골고루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경제적 대응은 개선되었다.

18) 정부가 국제회의에서 공약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국제적으로 보고하는 annual Social Watch 참조(www.socwatch.org).

19) *Transparency Deutschland, Positionen, Aktionen, Perspektiven, 2003* 참조, www.transparency.de

20) Transparency International, *Global Corruption Report 2003*(Berlin, 2003).

경제 자유화와 국가

246. 세계화된 경제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 국가들이 채택한 정책은 무역, 투자 및 금융정책 등의 폭 넓은 자유화를 동반하였다. 이는 흔히 민영화, 경제 경영 및 규제에 있어 국가의 역할 축소 그리고 시장의 역할이 일반적으로 확대되는 등 국내 경제의 쌍방향 자유화(collateral liberalization)와 관련되었다. 1980년대 몇몇 선진국에서 시작된 이 모델은 이제 매우 다양한 경제 및 사회적 맥락에서 채택되고 있다.

247. 시장 자유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출발점의 중요성이 인식되어야 한다. 즉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상황의 차이점, 이미 존재하는 정책과 제도적 환경,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적용되는 시점의 경제상황 및 대외경제 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자유화정책이 그것의 주창자들이 예견하는 보편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어떤 사례에는 긍정적이고 다른 경우에는 매우 부정적인 혼합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248. 세계화 과정의 속도와 배열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다. 과거에는 자유화에 대한 ‘빅뱅(big bang)’ 접근방식이 주창되고 흔히 적용되었다. 이는 전면적인 자유화를 동시에 단행하는 것이다. 오늘날, 이는 일반적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인식된다. 시장경제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및 규제적 틀은 점진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강력한 행정적 역량을 필요로 한다. 동유럽과 동아시아의 개혁 경험을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249. 세계화된 경제로의 통합 과정을 관리하고 그것이 경제 및 사회 목표를 달성하도록 보장하는 데 있어 국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 역할에는 보건, 교육 및 법질서와 같은 긍정적 외부효과를 낳는 전통적인 공공재의 제공, 시장 감독 그리고 시장 결함 및 실패의 시정, 환경 파괴와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의 수정, 사회복지의 제공 및 사회적 약자의 보호,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공공 이익 분야에 대한 투자 등

이 포함된다. 이러한 국가의 필수적 기능은 세계화의 맥락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세계 여러 곳에서 겪는 문제는 국가가 이들 분야에 대한 행동을 약하게 하고, 그 격차를 민간부문이 채운다는 실질적인 기대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국가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누진과세, 임금정책, 사회 프로그램 및 기타 메커니즘을 통해 세계화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영향을 제한하는 것이다.

250. 전세계적으로 국가의 역할이 축소된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그 속도가 너무 빨랐으며 균형이 너무 기울어진 결과를 낳았다. 과거 국가의 경제 개입이 비효과적이었거나 방향이 틀린 경우가 흔히 있었지만, 이제 세계화는 국가가 대응해야 할 많은 요구를 새로이 만들었다. 전지구적 지배구조를 위한 강력한 제도가 부재한 오늘날, 정부의 이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

251. 세계경제로의 통합이라는 맥락에서 국가가 직면하는 새로운 과제는 여러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다. 금융 자유화는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황폐 상태를 포함한 경제적 변동의 더 큰 위험에 국가를 노출시킬 수 있다. 이는 사회보호를 제공하는 국가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될 것을 요구한다. 마찬가지로, 세계화와 관련된 자본의 이동성 증가는 근로자와의 협상에서 사용자의 입장을 유리하게 해 준다. 이와 동시에, 경제 개방성의 증가로 인해 노동시장은 일자리 창출(job creation), 이동(dislocation), 상실(destruction) 등 모든 면에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 및 후진국 모두에 있는 근로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노동 관련 사항은 효과적이고 공평한 사회안전망과 노동시장 제도를 구축하는 데 있어 국가가 보다 강력한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해 준다.

252. 또 다른 중요한 국가의 행동 영역은 거시경제정책이다. 이것의 주요 목적에는 가능한 한 최대한의 경제성장의 달성, 완전고용의 촉진, 그리고 거시경제적 안정의 유지가 포함된다. 마지막 항목은 산출과 고용의 성장률이 지속가능하고 경제위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됨을 보장

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거시경제정책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지속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을 수용 가능한 비율로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거시경제 안정이라는 목표는 앞의 두 목표를 압도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은 중기적으로 거시경제적 안정성과 양립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산출 및 고용 성장을 달성하는 것이다.

253. 세계화의 영향 중 하나는 국가 거시경제정책의 범위를 축소시킨 것이다. 이의 주원인은 국제자본시장은 정통성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나열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 주는 정책 도구들이 남아 있다. 그 중 주요 도구는 경제에 대한 공적 및 사적 생산적 투자의 성장률이다. 이것은 국가를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과 더불어 국내 자원의 동원 그리고 효과적인 비역진적 과세 제도(즉 누진세: 편집자 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또한 비공식 경제를 경제 주체로 합류시켜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만일 공식 경제에만 세금이 과세되면, 세수익이 줄어들 뿐 아니라 비공식 경제로 진출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254. 경제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 보다 폭 넓은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위 전략을 실현할 가능성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그러한 정책 입안은 기술관료(technocrat), 은행가 및 금융가의 배타적 영역이라고 흔히 생각된다. 그러나 경제 및 사회정책 간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정부 부처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더구나, 노동자와 각 규모의 기업 그리고 기타 많은 집단의 이해가 정책 입안 결과와 크게 관련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가 경청되고 그들의 이해가 고려될 수 있도록 기존의 제도가 강화되고 새로운 메커니즘이 만들어져야 한다.

경제적 역량의 강화

255. 공공 투자 및 정책은 세계경제로 통합함으로써 혜택을 얻고 그

이익을 보다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 전략적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와 기업, 노조, 공동체 단체, 협동조합 등 민간 행위자간의 파트너십은 기능, 인프라, 기술 및 경영 능력 그리고 가장 역동적인 생산활동 분야에 민간투자(외국인 및 내국인 포함)를 유발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기반을 개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것은 ‘승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전제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256. 국가의 경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취하는 접근방식은 초기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여러 저소득 국가의 경우, 농업이 경제활동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고용에서는 그 비중이 더 높다. 빈곤층 대부분(75%)이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산물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에서 빈곤이 가장 높게 발생한다. 그러므로, 농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일련의 정책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가격 왜곡 및 농업의 특정 부문을 차별하는 관행의 제거, 틈새시장에 대한 지원, 교육과 보건 부문에 대한 상당한 공공투자, 농업생산에 있어 여성의 중요한 역할 및 그에 따른 빈곤 감소에 있어 여성의 중요한 역할의 인식 등이 포함된다. 많은 국가의 경우, 우선순위는 생산성과 안전을 향상시키고 시장을 개방시키는 운송망, 전력 및 상수도 관리에 대한 투자다. 한편, 농업 연구, 지도사업 및 금융 지원에 대한 투자 또한 중요하다. 많은 빈곤국들은 보다 좋은 종자, 덜 유해한 작물재배 방식, 그리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와 동시에, 전통적 지식의 보호, 활용 및 지도도 매우 중요하다.²¹⁾

21)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은 최근 농촌 개발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을 요구했는데, 이러한 점들을 대다수 나열하였다(ECOSCO, Draft Ministerial Declaration, E/2003/L.9 참조). 지속가능한 농촌 생계 및 식량안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역량 강화 및 기술지원 프로그램들 그리고 농촌의 빈곤층이 조직성 및 지식을 강화하고 공공정책에 그들의 영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 국제 농업개발기금(IFAD)의 노력을 기초로 국가의 행동이 추진될 수 있다(www.ifad.org 및 www.fao.org 참조).

257. 이와 동시에, 일반적으로 농촌의 생산구조의 다변화도 필수적이다. 농촌의 비농업경제는 대부분 비공식 경제에 속하기 때문에 성장이 억제되곤 한다. 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매우 광범위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학습 및 기술진보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농산물 수출품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수출구조를 다변화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258. 많은 중간소득 수준의 개발도상국은 동일한 시장으로 노동집약적 제조상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상호간 경쟁한다. 그 결과, 무역량은 많아졌지만, 상대적으로 수익은 감소하였다. 이들 국가가 직면한 과제는 고가 수출품 분야로 진출하는 것이다. 혁신, 적응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학습 과정을 장려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²²⁾ 혁신 관련 국가 체제를 형성하는 데 있어 관건은 기능과 기술 역량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다. 이는 무역을 통한 수익과 글로벌 생산체제에의 참여를 향상시키고 생산성 및 임금인상을 통해 국내 시장을 확대시킬 것이다. 글로벌 생산체제는 국내 기업이 산업 및 서비스 부문에서 ‘세계적 수준의’ 생산 경험에 가까운 학습 및 적응 과정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경제의 선도산업 부문과 나머지 부문의 생산 연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요구와 제약사항을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금융과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 그리고 중소기업 및 영세 여성 경영인을 위한 전문 기술지도 서비스 또한 특히 결정적이다.

259. 이러한 이슈들은 선진국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선진국에서도 훈련, 금융 및 기술정책 그리고 파트너십이 비효율적인 구산업의 단계적 폐지 그리고 새로운 고부가가치 활동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²³⁾

22) A. Amsden, *The Rise of the Rest*(Oxford University Press, 2001)

23) 2000년 3월 리스본에서 개최된 유럽이사회 회의에서 유럽연합은 다음 10년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는 지속적 경제성장이 가능한, 더 많은 그리고 보다 나은 일자리를 보유하고, 보다 심화된 사회적 응집을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지식기반경제가 되는 것이다”.

경제적 적응을 위한 측면 지원 정책에는 사회보호 및 소득보장뿐만 아니라 특히 지식경제 및 새로운 서비스 부문에서 새로운 기회가 창출하도록 돕는 지원 정책도 포함된다.

260. 농업은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다. 물론 각 국가는 자국의 농업정책을 개발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많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농업 부문에 과도한 지원을 하거나 보조를 해주는 것은 국내 정책이 다른 국가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나타낸다. 이 부문에 대한 정책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모두의 영세농민의 생계를 고려하면서 설계되어야 하며, 환경 서비스와 같은 공공재의 공급에 대해 농촌 생산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 현재, OECD 국가의 농업 지원 중 4%만이 환경적 목적을 대상으로 한다.

비공식 경제

261.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는 공식적인 법 및 규제 기반이 경제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는 비공식 경제가 큰 규모로 존재한다. 여기에는 주로 도시의 소규모 제조업체, 서비스업체 또는 하청업체, 가내노동(domestic work) 또는 소작농 등이 포함된다. 많은 저소득 국가에서는 대다수의 노동자가 비공식 경제에 종사한다. 흔히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소기업에서부터 자기고용, 가족고용, 시간제 고용 등의 생존 활동(survival activities)에 이르기까지 그 종사 형태도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활동은 생산성이 낮으며, 비공식 근로자의 빈곤 수준은 매우 높다. 그러나 그곳은 창업정신 및 혁신의 보고(寶庫)이기도 하다. 비공식 경제활동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고, 여기에는 과거에는 안정된 임금이 보장된 고용이 비공식화된 경우도 포함한다.

262. 빈곤과 마찬가지로, 비공식 경제는 세계화 훨씬 이전부터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는 현재도 성장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 많은 곳의 자기

고용 및 임금고용을 포함한 대부분의 새로운 고용은 비공식적인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것에 대해 세계화가 어느 정도까지 기여했는지 가늠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세계화된 시장의 경쟁압력의 증가는 비공식 경제를 통제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어떤 비공식 근로자들은 글로벌 생산체제에 저비용 투입요인을 제공하지만, 그들의 대부분은 세계화의 기회로부터 배제되고 제한적인 시장에만 국한되어 있다.

263. 이것은 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로서, 세계화의 혜택의 분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첫째, 권리와 보호가 부재하면 취약성 및 불평등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위에 나열한 지배구조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이다. 둘째, 시장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므로 성장 및 발전의 잠재성은 실현되지 못한다. 셋째, 게임의 규칙이 모든 이에게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하고 참여적인 경제를 구축하는 데 실패한다. 민간주도 사업(private initiative)이나 새로운 창업 활동의 경우, 법이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될 때에만 활발히 진행되므로, 사회의 모든 인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명확한 규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64. 목표는 이들 비공식 경제활동을 양호한 일자리, 소득 및 보호를 제공하고 국제경제체제에서 무역을 할 정도로 성장 가도를 타는 공식 경제 부문의 일부로 만드는 것이다. 이는 빈곤 감소를 위한 국가전략의 핵심 부분을 이룰 것이다. 이는 자산 및 생산성 향상, 적절한 규제기반, 기술향상 및 정책적 편견의 제거 등을 의미한다. 비공식 근로자의 자격과 기능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보장 및 기타 보호 조치로부터 이들을 배제시키는 활동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그리고 그 외의 여러 가지 보호 조치가 특히 중요하다. 자산의 분배를 개선하는 정책도 중요하며, 특히 자가고용 여성 및 남성 그리고 소기업의 금융자원, 기술 및 시장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키고 투자의 기회를 증가시키는 정책이 중요하다. 그러나 비공식 경제 내 대부분의 근로자와 경제 단위는 계약 이행을 강요하는 사법 제도에 접근하기가 어렵고, 공공 인프라 및 혜택에 대한 접근도 제한되어 있다. 공식화, 성장 및 지속성을 방해하는 장애

요인과 난국을 형성하는 관료주의적 및 기타 규제들이 아직도 많이 존재한다.²⁴⁾

265. 근본적인 문제는 재산을 위한 적절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재산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세계의 40억 명이 세계화된 경제로부터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법적 근거(legal identification)와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필요한 사업자 서류 등을 갖추지 못한다. 실제로, 토지와 건물 등 그들의 자산은 상당한 액수에 달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보통 대출 담보로 사용되지 못하여 신용이나 투자가 성사되지 않아 ‘죽은 자본(dead capital)’이라 한다. 이러한 이슈를 다루지 않으면, 수 백만의 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좌절시키게 된다. 이는 또한 과세 영역(tax net)에서 벗어나 있는 저질의 경제활동을 장려한다.²⁵⁾

266. 그러므로 사실상 재산권의 합법화는 비공식 경제의 전환에 있어 중요한 단계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당사자 및 관련 자산 파악
- 지배적인(prevaling) 사회 맥락 안에 재산법을 뿌리박기 위해 해당 자산의 소유권, 이용 및 이전을 지배하는 관습과 관행의 파악
- 행정적, 관료주의적 및 법적 방해요소와 시장접근 장애요인의 파악
- 관련 행위자들이 법치하에서 활동하고 그들의 자산 및 거래가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인센티브가 생기도록 법적 기반의 재구조화 그리고
- 과거 비공식 자산보유자 및 사업체가 신용대출자, 투자자, 공공서비스 및 국제시장과 생산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

24) 법적 기반, 기준, 금융 및 지배구조 문제 등을 포함한 비공식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 이슈를 검토하고자 하면 ILO, *Decent Work in the Informal Economy*, Report VI,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90th Session(Geneva, ILO, June 2002) 참조.

25) Hernando de Soto, *The Mystery of Capital: Why Capitalism Triumphs in the West and Fails Everywhere Else*(New York, Basic Books, 2000)

는 저비용의 법적, 행정적 메커니즘의 설계.

267. 재산권 설정과 사유화(privatization)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토지 및 기타 자산이 전통 체제 안에서 보유되는 방법은 다양하며, 상당 부분이 공동, 집단 및 조합 형태로 존재한다. 국가의 법적 기반은 이러한 양상들을 인식 및 인정하고 법적 권리를 기록할 때, 특히 여성 관련 문제들을 포함한 모든 측면들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세계 어느 곳에서는 여성이 전통적 비공식 체제를 지배하지만, 공식화가 이루어지면 등록은 남성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경제의 공식화(formalization)는 기회를 향상시키는 것이지 억제하는 것이 아니다.

268. 비공식 경제를 균형 있게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재산권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비공식 경제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핵심 노동권도 또한 체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특히, 비공식 경제의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비공식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여성과 청년(youth)의 대표성과 권한이 특히 결여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적절한 사회보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 모든 전선에서의 행동은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

교육을 통한 역량 및 권한 강화

269. 사람들은 충분히 건강하고 지식, 기술 및 가치를 보유하며 그들의 기본 생계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권리를 부여받았을 때만이 세계화에 공헌하고 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들은 일자리, 소득 그리고 건강한 환경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그들이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양질의 삶을 살고 지방, 국가 및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새천년 선언(Millennium Declaration)의 핵심인 이들 목표는 각국 정부가 보건, 교육, 기존 인프라 및 환경에 적절한 자원을 배분하고 광범위한 접근 및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할 경우에만 실현 가능하다.

270. 효과적인 교육체제는 양질의 삶을 향유할 기회의 기초가 된다. 선진국 및 후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아이들이 교육에 적절히 접근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은 공공부문의 핵심적 기능이다. 교육은 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된다. 아이들이 충분한 기간 동안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 특히 여자아이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으면, 이를 통해 경제성장이 향상되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유아사망률이 감소하고, 다음 세대의 교육 성취도가 향상된다. 적절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제공은 한 개인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힘을 강화시켜 준다.

271. 교육 부족 현상은 개발도상국에서 더 두드러지지만, 선진국에서도 주요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문맹과 저숙련(low skill) 문제가 끊이지 않고 나타나는데, 이는 비난이나 무시 등 사회적 배제를 유발하는 주요한 원천이다. 교육의 불평등한 접근은 또한 섹션 II.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시장에서 임금불평등의 심화를 가속화하며, 선진국의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과 미숙련자는 점점 경쟁이 심해지는 세계화된 시장 속에서 심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272. 1990년대에 걸쳐 초등 및 중등교육의 제공이 증가하였으나, 진전은 아직도 충분하지 않고 국가간·지역간의 편차도 크다. 예를 들어, OECD 국가의 학생 1인당 초등 및 중등교육비 지출이 저소득 국가 지출의 100배이다. 그러나 몇몇 중간 및 저소득국은 교육부문에 있어 놀라운 진전을 보여주었다. 브라질, 에리트레아, 감비아 및 우간다는 1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초등교육 수료율을 20% 향상시키는 결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경험은 국가의 소득수준을 떠나, 정치적 의지와 자원이 존재한다면 빠른 진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²⁶⁾

26) Christopher Colcough et al., "Achieving Schooling for All: Budgetary Expenditure on Education in Sub-Saharan Africa and South Asia", *World Development* 28 (11), pp.1927-1944. 저소득 국가의 성공적인 초등교육 개혁 프로그램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국가 자원의 많은 부분을 초등 및 중등교육에 할당; 단위비용의 통제; 보완적 및 비급여 투입요소에

273.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국가들을 포함한 오늘날 많은 국가들의 교육적 성과는 주로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여교사 등 많은 교사들의 생명을 앗은 에이즈(AIDS)라는 유행병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에이즈 예방과 치료는 이미 취약한 교육체제의 붕괴를 방지하고 과거의 이익을 상실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교육서비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274. 아동노동도 널리 우려되는 문제다. 이는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이고 학교 등록, 재학 및 수료를 제한시키는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교육과 기능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아동노동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이슈와 관련하여 민족의식이 강화되어 많은 국가들은 가장 나쁜 형태의 아동노동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을 채택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러한 전략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275. 세계화로부터 혜택을 입은 모든 국가들은 자국의 교육 및 훈련 제도에 크게 투자했다. 오늘날, 남녀 모두는 급변하는 경제의 요구사항에 적응될 수 있는 광범위한 기능과 정보기술로부터 혜택을 누리게 해주는 적절한 기본 기능을 필요로 한다. 이를 통해, 거리의 장벽과 예산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다. 인터넷 기술이 특별히 자본집약적인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정도로 인적자본집약적이다. 건전한 교육정책은 소득불균형의 심화와 같은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켜 줄 중요한 도구를 제공해 주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정책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²⁷⁾ 인종적 및 종교적 소수민족의 교육적 수요와 그들이 처해 있는 불리한 여건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이슈는 소득의 수준을 불문하고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

276. 훈련 투자에 관한 보편적 모델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과세체제

대한 평균 이상의 지출; 교사들에게 경쟁력 있는 급여 지급; 관리가 가능한 40대 1 정도의 학생·교사 비율 유지; 평균 학습반복 비율(repetition rate) 10% 미만.

27) Martin Rama, *Globalization, Inequality and Labor Market Policies*(World Bank, Development Research Group Paper, 2001) 참조.

(levy system), 공공보조, 훈련기금, 세금 환급 및 안식년제 등 다양한 메커니즘과 인센티브가 적용될 수 있다. 직장내 모범 학습 관행은 생산성 향상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업은 그러한 훈련에 대한 재정지원에 있어 긍정적 이해관계에 있다.

277. 국가자격제도의 틀을 개발하는 것도 평생학습을 촉진하고, 기능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켜 주고, 개인이 경력선택을 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세계화된 경제에 참여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를 제공해 준다. 여성을 위한 기술 및 능력개발은 흔히 가정을 돌봐야 하는 책임감으로 인해 방해받게 되는데, 이는 육아시설의 필요성 그리고 원격교육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함을 시사한다. 다른 우선순위 과제에는 비공식 경제 근로자들의 기능 인정 및 업그레이드 그리고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를 위한 훈련과정 도입 등이 있다.

일과 고용

278. 사람들은 직장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계를 바라본다. 노동시장에서의 성패는 가족의 욕구와 열망이 충족되고, 남녀 아이들 모두 양질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청년들이 직업경력을 쌓을지 아니면 거리를 배회할지 등을 결정해 준다. 청년 고용은 행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이다. 일자리 상실은 체면이나 자존심에 영향을 주고 스트레스 등 기타 건강 문제를 유발하며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

279. 사람들은 직장과 고용을 통해 세계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즉 이를 통해 세계화의 기회, 혜택, 위험 및 배제 등 모든 측면을 경험하게 된다. 세계화의 이익을 널리 공유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업 및 사람들이 세계적 기회를 일자리와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280. 주요 목표는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국민들과 사회에 큰 비용을 안겨주는 실업을 감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많은 사람들은 도저히 적합하다고 할 수 없는 일자리에 완전 고용 되어 있다. 이는 흔히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생산성도 낮고 억압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고용은 자율적으로 선택되고 기본적인 경제적 및 가정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소득을 제공해야 한다. 노동자의 권리와 대표성이 존중되어야 하고, 어떤 형태로든 사회보호 조치를 통해 기본적 생활보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적절한 근로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각각의 요인들을 합해 ‘양질의 노동(decent work)’이라 한다. 여기에는 고용뿐 아니라 남녀 모두의 보다 광범위한 욕구를 반영하는 폭 넓은 목표가 포함된다.

281. ‘양질의 노동’ 창출을 향한 가장 확실한 경로는 고성장을 달성하는 것이고, 이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경제정책의 목표이기도 하다. 주요 거시경제적 이슈는 고용에 주력하게 되면 금융 또는 재정정책의 균형 상태가 달라지는가이다. 금융 및 재정 각 사례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위해, 국가는 고용 목표를 예산편성 과정의 일부로 채택하고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시 고용에의 영향에 관한 분석(employment impact analysis) 명시적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거시경제정책의 여성과 남성에게 대한 차별적 영향, 특히 고용 및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영향 등을 검토하는 성별 예산편성(gender budgeting)과 같은 접근방식으로 성별 민감도(gender sensitivity)를 구축할 수 있다.

282. 고용집약적 성장에 대한 편견을 만드는 시장실패 요인을 수정하고 과세 패턴이 투자, 기업성장 및 고용창출에 대해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만들지 않도록 확실히 만드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특히 중소기업(SMEs) 등 기업 형성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확실히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 및 기타 기술의 급격한 보급을 기초로 하는, 신경계의 성장을 육성하는 구조정책이 필요하다.

283. 특히, 선진국과 중간소득 국가를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는 고실업

를 또는 실업률 증가 문제는 고용의 질에 대한 압력 증가 문제와 합쳐져 더욱 가중되었다. 실질임금과 근로조건은 계속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이는 수출시장 및 해외투자자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직장을 가진 사람들도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더욱 심화되었는데, 이는 복지국가의 붕괴(erosion), 노동시장의 규제완화 및 노조의 권한 약화 등과 같은 상호 연계된 요인들 때문이다. 기술 및 작업조직(work organization)의 변화는 보다 큰 노동유연성을 강조하게 되었고, 그 결과 비정규노동 그리고 덜 안정적인 계약직 노동이 증가하였다.²⁸⁾ 노동자 및 사용자 양측의 이해관계를 인정해야 하며, 그러므로 균형된 정책이 필수적이다. 그것은 다음 요소를 포함하는 새로운 사회적 계약에 기반해야 한다.

- 특히 노동시장 및 사회보호의 개혁과 관련된 경제 및 사회정책 마련시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에 대한 공약
- 보다 높은 효율성 및 생산성 달성을 위한 노력은 보장 및 평등기회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인식
- 효율성 개선을 위해 사용자-노동자 공조라는 ‘고차원 방식(high road)’을 택하는 한편, 비용절감 및 구조조정이라는 ‘저차원 방식(low road)’은 피한다는 약속. 이는 다양한 인력의 기능과 동기부여가 결정적으로 중요해진 지식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284. 실업과 불완전 고용을 감소하는 것이 빈곤을 줄이는 관건으로 된 저소득국에서도 ‘인간적 노동’을 촉진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285. 양면적 전략이 필요하다. 첫 번째 전략은 소득수준이 빈곤선보다 높은 새로운 일자리의 증가를 극대화하는 것과 관련된다. 두 번째에는 농촌 및 도시의 비공식 경제 속에서 빈곤선을 미달하는 고용상태(sub-poverty employment)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생산성과 소득을 향상시키는 정책 및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28) ILO, *World Employment Report*(Geneva, 1996-97) 및 OECD, *Employment Outlook: 2003 Edition: Towards More and Better Jobs*(Paris, 2003) 참조.

286. 농촌 인프라 개발, 소작농 대상 지도사업, 소기업 및 영세기업 발전 및 소액 신용대출제도 등 가난한 자들을 위한 고용기회를 늘리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들도 강화되어야 한다. 여성, 토착민 및 소수민족에게 자산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 고용을 고려하지 않는 농업의 현대화정책은 결국 그들을 주변화시킨다.

287. 일자리창출 외에도, 국가들이 세계화에 따른 사회적 긴장감을 보다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제도가 약하고 자원이 부족하다. 세계화와 관련된 불안정성은 실업보험, 소득지원, 연금 및 보건시스템 등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필요성을 드높인다. 이는 또한 사회보호의 적용범위가 일반적으로 더 넓지만 여전히 보편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고 생산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업자가 되는 이들이 보상을 받을 길이 거의 없는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세계화의 혜택이 국가 내에서 공정하게 배분되기 위해서는 모범적인 사회보호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²⁹⁾ 특히 사회보호제도가 비공식 경제, 농촌경제, 여성 그리고 대개 사회에서 소외되는 집단에까지 적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사회보호제도가 빈곤 감소를 위한 전략의 핵심 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기구 차원의 혁신적인 접근방식이 장려되어야 한다. 저임금위원회를 결성하여 저임금의 원인을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제안하도록 하는 것도 경쟁의 압력으로부터 근로빈민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모든 정책이 모든 시민을 위한 사회경제적 기반을 개발하는 데 공헌할 수 있다.

288. 이와 동시에, 양질의 노동 및 공평한 개발을 장려하는 데 있어 근로자의 기본권 그리고 시민 및 정치적 자유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29) D. Rodrik, *Has Globalization Gone Too Far?*(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7); 및 ILO, *World Labour Report 2000: Income Security and Social Protection in a Changing World*(Geneva, ILO, 2000).

이러한 권리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노동운동 및 빈곤층을 대변하는 조직을 통해 근로자 임금수준 향상을 촉진하고, 근로기준 악화 방지 및 이를 개선시키고, 생활수준 향상 및 공평한 성장의 선순환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힘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또한 경제정책에서 보다 큰 책임성 및 투명성 그리고 보다 형평성 있는 사회정책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민주주의적 압력을 행사하는 데 필수적이다.

289. 많은 국가의 노동법은 고용 패턴의 변화와 보조를 맞추고 있지 못하다. 그 결과, 많은 근로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적용범위 및 준수와 관련된 상당한 개선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특히 비공식 경제를 강조한 보다 나은 모니터링과 보다 강력한 행정 등이 요구된다. 그리고 또한 노동자 및 사용자단체 조직(collective organization) 그리고 단체교섭이 붕괴되는 추세를 역행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제적 개혁은 사회의 모든 부문의 관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관련된 조직간의 대화 그리고 더 큰 노력을 강조해야 한다. 보다 강력한 사회적 대화는 사회 및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 국가내 서로 다른 이해 당사자간에 공통의 관점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다.

지속가능 발전 및 자원생산성

290. 경제적·사회적 및 환경적 목표간 상호 작용이 일관된 정책 접근의 핵심을 이룬다. 많은 환경 이슈는 전지구적 행동을 필요로 하지만,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기초 작업의 상당 부분이 국가 및 지방(sub-national)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91.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하는 전략적 방법 중의 하나는 올바른 기술을 택하는 것이다. 개발도상국 정부는 다국적기업에게 국내 및 해외사업 모두에 동일한 오염방지 기술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국내 기업에게는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이보다 더 진보적인 방법은 천연자원 한 단위로부터 산출되는 경제복지 및 사회복지의 양인 자원생산성

을 체계적으로 증가시키는 정책을 채택하는 것일 것이다. 자원생산성을 보다 강조하고 노동생산성을 덜 강조하면 고용이 증가하고 이와 동시에 환경도 개선된다. 이러한 주안점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 및 초국가 차원의 인센티브가 형성되어야 한다.

292. 지방 공동체들은 전통적으로 그들의 지역 환경을 삼림 파괴 및 오염으로부터 보존하고 보호해 왔다. 그들이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관리에 투자하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동시에 두 가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즉 환경의 질을 확보 및 개선할 수 있고 지방의 고용 및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한 세계 공공재를 지방 차원에서 창출 및 유지하는 것을 보상하는 기존의 메커니즘을 전지구적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소비 및 생산의 보다 지속가능한 패턴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차원의 역량을 향상시키려는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의 후속조치로 진행 중인 노력을 지지한다.

◆ 지방 차원으로의 권한 부여

293. 세계화에 대한 우리의 비전은 지방 차원에 놓여 있다. 국제정책의 의제는 다양한 지방 차원의 필요와 관점을 존중하고 그들의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방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민주주의가 가장 강력하고, 정치적 동원(political mobilization)이 많이 발생하고, 자율성이 실현되고, 연대감이 일상생활의 일부로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지방 차원의 환경인 것이다. 이와 동시에, 지방 공동체는 통합하는 세계의 일부이다. 결국, 지방은 세계의 일부이고, 세계화의 양상은 지방 차원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294. 이와 동시에, 지방 개발의 주요 방해요인이 흔히 존재한다. 보다 많은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역량과 자원이 증가해야 하고 민주주의 및 참여를 위한 효과적인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국가 정부는 부자 지역에서 가난한 지역으로의 재분배를 보장하고 지방정부와 기타 행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지방분권화란 국가의 경제 및 정책의 범주 안에서 지방공동체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295. ‘지방’ 공동체(local community)의 개념은 굉장히 다양하다. 세계 인구의 대부분에게 있어 지방공동체란 마을(그 대다수가 고립된 외지에 있고 생태적으로 취약함) 그리고 도시의 허름한 자치구(town)나 빈민가(slum)를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일하는 곳과 사는 곳 사이에 직접적인 연계가 있다. 농촌의 공동체는 그 지방의 농업 및 비농업 활동으로 생존하는 반면 이보다 더 빈곤한 도시의 공동체는 비공식 경제의 다양한 활동에 의존한다. 이들 공동체 중 많은 것들이 지방 고유의 빈곤을 겪고 있으며, 지방을 떠나는 이주를 제외하고 생각할 때, 빈곤 감소 노력의 관건은 지방경제의 기초를 강화하고 기본적 사회서비스의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다.

296. 지방 공동체의 개념은 고소득 환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강력한 연방국의 국정은 명백하게 권력이 부여된 지방 차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국가 하위 단위(subnational entity)에 의존한다. ‘지방의 영역(local space)’을 공표하는 것도 유럽연합(EU) 건설의 명백한 구성요소다. EU 회원국들이 자국의 경제정책 중 일부에 대한 주권을 EU 차원으로 이전하지만, 문화 다양성, 가치 및 언어는 지방 차원에서 보호된다. 세계 많은 곳에서는 지방의 산업 및 기술발전 관련 체제가 국가의 경제 역량의 구축기반이 된다.

297. ‘지방의 영역’ 이슈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다음 고려사항에 기인한다.

298. 첫째, 세계의 점점 더 많은 공동체들이 세계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어떤 공동체는 무역 자유화 또는 기업의 저임금 국가로의 이전으로 인해 지방 산업이 쇠퇴하여 많은 일자리가 상실되는 타격을 입었다. 이는 흔히 지방 차원의 조정이라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사

회 조직에 큰 스트레스를 준다. 심지어 저가의 수입품이 농촌의 생계를 전멸시키거나, 대형 채광 또는 벌목 회사가 진출하거나, 특정 형태의 관광이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혼란시키고 지방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개발도상국의 외딴 농촌 공동체에까지도 부정적 영향이 미친다.

299. 둘째, 세계화는 심지어 직접적인 경제적 영향이 없는 곳을 포함하여 지방 공동체의 경제 탄력성 및 활력을 갉아먹는다. 세계 언론, 연에 및 관광산업이 점점 더 확대됨에 따라, 지방 공동체의 전통 문화, 가치관, 정체성, 그리고 사회적 연대를 흐리게 만드려는 압박이 늘어난다. 우리의 비전은 다수의 지방 문화 및 역량을 수용하는 미래의 세계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지 동질성을 강요하는 해일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다.

300. 셋째, 우리는 세계적인 것이나 국가적인 것은 지방적인 것을 토대로 발전된다고 믿고, 이것이 보다 공정하고 보다 관대한 세계화의 관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정책 설계 및 적용에 있어 지방 분권화된 접근방식을 취하는 것은 보다 효과적이고, 실제 상황 및 제약에 대한 보다 나은 지식을 기초로 하고, 보다 참여적이며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에 더 밀접하고, 더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다.

301. 이렇듯 지방과 세계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지방의 경제기반, 지방의 가치관 및 문화유산에 초점을 맞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제가 필요하다.

지방정부

302. 많은 사회 및 경제정책은 지방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적용된다. 보조성(subsidiarity)의 원칙에 따라, 우리는 통치구조가 효과를 나타내는 가장 낮은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강하고, 민주적이고 책임있는 지방 제도를 요구한다.

303. ‘지방의 영역’을 보호 및 육성하고 지방 당국을 형성 및 지원하는 것이 국가 책임의 최우선이다. 정부는 행정구조 및 책임에 대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보다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을 느리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방의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적절한 공공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부패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방 당국은 자체 세수익을 확보하거나 국가 예산으로부터 충분한 재정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

304. 그들의 이행능력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비국가 행위자의 경우,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유럽에서 발전된 영토 조약(territorial pact)은 여러 행위자들이 하나의 공동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회합함으로써 지방 공동체에게 권력을 부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³⁰⁾ 이에 대해, 모든 행위자들은 자신들의 지출에 대해 국가 및 지방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305. 지방 행정은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세계화는 지방 당국간 국내 및 국경 간 네트워킹, 협력 및 교류의 기회를 많이 제공한다. 지방은 국가만큼, 심지어 국가보다 더 개방적이 될 수 있다. ‘시장 네트워크’ 및 지방 공동체 기반 단체들 사이에 형성된 네트워크는 보다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³¹⁾

30) 영토 조약은 시의회, 기타 지방 당국, 근로자 및 사용자 조직, 노조, 종교 및 문화집단, NGO, 전문가협회, 학교 등 광범위한 행위자들간의 공식 합의로서 해당 영토를 위한 일관된 개발전략을 공동으로 설계 및 이행하는 것이다. 지방 주도 이니셔티브를 통해 일자리창출 촉진 및 사회배제 퇴치를 위해 1990년대 이후 수백 개의 조약이 유럽 전역에서 출범하였다. www.europa.eu.int/comm/regional_policy/innovation/innovating/pacts/en/ 참조.

31) 도시 그리고 지방 당국간 형성한 국제 네트워크 중 주요 네트워크에는 최근에 창립된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www.iula.org), World Associations of the Major Metropolises(www.metropolis.org), World Associations of Cities and Local Authorities Coordination(www.waclac.org), Cities Alliance(www.citiesalliance.org),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www.iclei.org), 등이 있다. 전체 리스트는

지방경제 기반

306. 지방생산체제 및 시장은 소비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방경제 영역은 보호되어야 하고, 이와 동시에 더 생산적이 되어야 한다. 소액 신용대출에 대한 접근 증가, 경영 지원 및 외부 개입으로부터 보호 등을 통해 지방 차원의 노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국가 및 국제정책 및 지원 체제가 필요하다. 원 재료를 지방 현지에서 가공하는 기술 및 인프라를 제공하는 농촌 산업화를 지원해야 한다. 가공을 통해 얻는 부가가치는 농촌 발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소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더불어 지방기업 발전 서비스도 장려되어야 한다. 이들 서비스는 지방기업이 한 공급망에만 ‘속박’되지 않도록 마케팅 지원을 해주고, 글로벌 제품의 규격을 맞추는 능력을 지원해 주고, 기업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유기적 관련성을 갖는 조직끼리 서로 긴밀히 묶어주고(*clustering*), 보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중부 자바의 가구 생산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이르기까지 소규모, 지방기업의 클러스터는 경제적 역동성 및 고용 창출의 주요 원천이 될 수 있다.³²⁾ 정보교류의 전지구적 네트워크는 세계화가 지방의 제품 및 서비스 생산을 촉진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을 제공한다.

307. 지방환경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 조직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www.lgib.gov.uk/weblinks_3.htm 참조. 유엔인간정주프로그램(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 Programme(UN-Habitat))는 이들 이니셔티브를 확대할 장을 제공해 준다. www.unhabitat.org 참조.

- 32)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모두를 다루는 보다 종합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Clusters, Industrial Districts and Firms: The Challenge of Globalization*, conference in honour of Professor Sebastiao Brusco, University of Modena, Italy, 12-13 September 2003(www.economia.unimo.it/convegni_seminari/CG_sept03/index.html) 참조.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는 개발도상국 관련 정보를 얻는 중요한 출처이다(<http://www.unido.org/en/doc/4297>, 참조).

사회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다. 협동조합이 그 좋은 예다.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8억의 회원을 자랑하는 세계적 세력가이자 신뢰와 책임성을 기반하는 역량을 가진 주요 지방 행위자이다. 그들의 기여를 인정하고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308. 사회 기업가들도 지방 차원에서 중요하다. 그들은 시장 논리를 이용하여 개별 이니셔티브로 사회 목적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 아마도 가장 유명한 사례는 빈곤층에게 정보기술 및 교육을 제공하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 운동(Grameen initiative)일 것이다. 이 운동의 설립 결과, 4만 명에 달하는 ‘여성 영업사원(telephone ladies)’이 방글라데시의 마을 중 반 이상에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다. 그라민은행은 금융 지원을 제공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 의제를 촉진한다. 다른 사례에는 인도의 자가고용여성협회(SEWA), 그 유사 단체인 남아프리카의 자가고용여성연합(SEWU), 코소보 및 알바니아에서의 공동체를 통한 경제활동 및 지역 인프라 구축을 위한 소액 대출제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고 복제 전파해야 한다. 특히 여성 경영인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지방 이니셔티브를 글로벌 파트너십 안에서 연계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 예로, 수 천의 소액 금융기관과 그들의 행위자들을 동원한 소액 신용대출 정상회담 추진운동(Micro-credit Summit Campaign)이 있다.³³⁾

지방 가치관 및 문화 유산

309. 세계화는 필연적으로 지방 가치관 및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 세계적인 대중매체 및 연예오락산업이 특히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이들 산업은 이들을 지배하는 국가의 가치와 인식을 투사시키며, 흔히 그러한 가치를 강요하는 위협의 대상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외부 문화의 영향은 사람들의 이동이나 소비재 및 생활방식의 전파 등 다양한 경로를

33) www.grameen.com, www.sewa.org, www.changemakers.net 그리고 www.microcreditsummit.org 등 참조.

통해 들어온다.

310. 문화는 결코 정적이지 않으며, 대부분의 공동체들은 다른 공동체와의 교류와 대화를 환영한다. 그들이 다른 현상에 개방적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법에는 여럿이 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열망에 따라 살아가는 권한(empowered)을 갖고 있느냐이다. 공동의 가치와 문화에 의해 결속된 사람들간의 신뢰가 지방의 기관들이 공동행동을 취하도록 구속하는 ‘연결 끈(glue)’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사회자본이 개발을 위해 필수적이다. 세계화는 사회자본을 강화시키고 약화시킬 수도 있다. 언론, 무역 및 관광 그리고 경쟁의 심화 모두는 공동체 차원의 여러 사항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특히 정보통신기술 등을 통한 세계의 상호 연결은 지방 차원의 행동을 위한 지렛대를 제공할 수 있다. 시민사회의 전지구적 역할은 지방 및 국가 차원의 행동을 지렛대로 삼은 결과이다.

311. 지방 및 국가 차원에서의 중요한 이슈는 영토와 자원, 문화와 정체성, 전통적 지식 등에 대한 토착민 및 부족민의 권리 그리고 그들의 자결권을 인정하고 옹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동체에 개발사업을 들여오기 전에 토착민 또는 부족민의 자율적 및 사전 정보에 근거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들의 고유한 사회정치적 및 경제체제, 자원 관리 관행 그리고 생계는 다른 체제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하며, 그들의 세계시장경제로의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그것들을 파괴시키기보다는 지원해 주어야 한다. 세계경제가 운영되는 규칙 및 법적인 틀은 토착민의 권리와는 모순되고 그들의 생활방식과 문화를 파괴시킬 수도 있다. 국가 및 지방 당국이 토착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관련법이 존재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유엔토착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초안(United Nations Draft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의 채택을 위한 각 정부들의 지지가 포함된다. 유사한 고려가 인종적 및 종교적 소수집단에 대해 제기되는데,

많은 경우 이들이 세계경제의 기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한다.

312. 태고적부터 토착민들이 점유하고 양육한 토지와 자원에 대한 토착민의 사전 권리도 인정되어야 한다. 토착민들에게 고유한 토지소유 체제 및 자원권리 체제를 인정할 것인지 그 여부를 결정하는 현대적 토지소유권 확정 절차(land tilting process)를 이들이 활용하지 못하거나 이의 활용을 거부한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하여 다른 이해당사자를 위해 그 토지나 자원을 그들로부터 강탈해서는 안 된다.

◆ 디딤돌로서의 지역 통합

313. 세계적 기회를 이용하고 그에 따른 혜택의 공정한 배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많다. 그러나 국가의 정책의제는 자원이나 개발 수준 그리고 세계의 규칙 및 정책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후자에 대해서는 다음 섹션에서 논의할 것이다. 그러나 중간 디딤돌인 지역 통합(개별 국가 영역을 넘어 유사 지역의 더 많은 국가들 사이의 결합: 편집자 주)이 있다.

314. 지역 통합은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세계무역기구에 통고된 250개 이상의 지역 통합 협정 중 그 대다수가 자유무역지대이다.³⁴⁾ 그러나 보다 심화된 지역 통합(deeper regional integration) 노력도 많이 있고, 이는 흔히 경제적 목적뿐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다. 유럽연합이 가장 좋은 예지만,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의 각 통합 과정에서 유사한 목적을 찾아볼 수 있다. 안보, 문화적 연계, 공유된 목표의 촉진 등의 이슈들은 경제적 관심사항만큼이나 중요하며, 이를 통해 광범위한 지역 제도가 생성된다.

315. 지역 통합 및 협력은 적어도 세 가지 방법으로 보다 공평한 세계

34) WTO, *World Trade Report, 2003*(Geneva, WTO, 2003); World Bank, *Trade Blocs*(Washington DC,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화의 양상을 촉진할 수 있다.

316. 첫째, 사람과 국가에게 세계 경제요인(economic forces)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다. 통합은 각국의 국내 시장의 규모를 효과적으로 증가시켜 줌으로써 외부 경제요인의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 경제정책을 지역 차원에서 보다 잘 조정하면 이웃 국가간 외부충격의 파급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금융 규제, 작업장에서 권리, 세제 조정 및 투자 인센티브를 위한 공동 기반은 이 분야에서 ‘하향 경주(race to the bottom)’의 위험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지역 차원의 목표다. 유러(euro)와 같은 공동 화폐의 개발도 안정을 위한 잠재적 원천이다.

317. 통합은 또한 국제 차원에서 달리 목소리를 내지 못했을 약소국이 집단으로 행동을 함으로써 그들의 협상력(negotiating power)을 향상시켜 준다. 국가들이 자원을 취합하고 공동 기반을 개발하면 국제기구 및 다국적기업을 상대하는 데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얻게 된다.

318. 둘째, 지역 통합은 전지구적 기회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 흔히 기능, 인프라, 조사, 기술 및 혁신에 대한 지원은 지역적 차원에서 보다 용이하게 달성되는 ‘결정적 노력’이 필요하다. 보다 큰 시장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이용하는 것이 더 쉽다. 산업 전환을 위한 지역 전략 또는 조정된 포괄적인 개발전략 등, 보다 야심적인 지역적 목표도 가능하다.

319. 셋째, 지역 통합은 사람들이 세계화된 경제와 연결되는 조건을 개선해 줄 수 있다. 인권 및 민주주의의 고양은 유럽(유럽이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함), 라틴아메리카(특히 미주인권위원회를 통해), 아프리카(신아프리카연합의 이니셔티브) 그리고 다른 지역의 의제에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 주요 지역 차원의 관심사에는 국경간 인력 이동, 에이즈 예방 및 치료, 불법거래 방지 등이 있다. 더 일반적으로, 지역 통합과 지역 제도 안에 사회 목표를 구축하게 되면, 이를 더 폭 넓은 세계화된 경제 안에서 구현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 만들어진다.

지역 통합의 경험

320. 유럽연합은 보다 심화된 통합의 예를 잘 보여준다. 이는 강력한 법적인 틀과 여러 정책 원칙을 토대로 구현되었다.

- 세계화된 경제에 대한 개방 및 효과적인 역내 시장경제
- 국가별 사회보장체제의 지지 및 공동의 최소 근로기준
- 법치, 인권, 남녀평등 및 정치적 민주주의의 존중.

321. 민주적 감독 및 개입이 증가하였으며, 여기에는 유럽의회가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유럽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등 다른 제도들은 정당성(legitimacy)에 공헌한다. 사회적 파트너들도 지역 정책에 참여하고 공헌한다. 최근의 발전사항은 현재 검토 중인 유럽헌법으로서, 이는 주요 원칙과 목표 의제를 체계적으로 포괄한다. 통합 과정은 현재 중동부 유럽국가로까지의 회원 확대에서 볼 수 있듯이 확실한 경제적 성공으로 평가된다.

322. 지역 통합은 미주 지역의 정책 의제에서 계속 높은 순위를 차지해 왔다.³⁵⁾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의 통합에 대한 공약은 무역 자유화의 범주를 넘어 금융, 거시경제, 사회 및 정치 통합까지 포함된다. 작업장에서의 권리, 근로조건 및 고용은 의제에 널리 포함되어 있다. 이는 라틴아메리카 의회(Latin American Parliament)와 같은 지역 정치제도, 라틴아메리카 준비기금(Latin American Reserve Fund)과 같은 지역 금융제도 그리고 비국가 행위자의 참여를 위한 지역 포럼 등이 부상하는 긍정적 결과를 초래했다.

323. 아프리카에서는 지역경제 통합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세계화된 경제로의 참여를 위한 중요한 경로로 간주된다. 목적은 외국 및 국내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지역 전문가 풀(pool)을 형성하는

35) 주요 통합 과정에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안데스공동체(CAN), 카리브공동시장(CARICOM),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및 중미통합체제(SICA) 등이 있다. 또한 전미주 대륙 자유무역지대 형성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것이다. 많은 지역 및 소지역 제도 및 기구들이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형성되었다.³⁶⁾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2001년 아프리카연합(AU)을 출범 시킴으로써 이 과정에 대한 그들의 공약을 분명히 표현했다. 아프리카 연합의 프로그램에는 ‘세계화 과정에서 아프리카의 주변화를 중단시키기 위한’ 통합개발 전략인 아프리카 발전을 위한 신파트너십(NEPAD)이 포함된다.

324. 아시아의 지역 통합은 통합을 심화하는 측면보다는 무역 및 경제협력, 평화 및 안보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인다.³⁷⁾ ‘성장의 삼각지대(growth triangles)’로 알려진 소지역 협력관계는 참여국간의 경제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형성되었다. 몇 가지 주요 지역간 협력관계에 아시아가 참여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태평양연안국에 위치한 아시아와 미주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아태경제협력기구(APEC)이다. 아랍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역내 그리고 역외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325. 결론적으로, 지역 통합은 전세계 모든 곳의 의제다. 그러나 말과 현실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유럽연합에서는 관료주의화, 사람들과는 동떨어진, 무역 전환, 그리고 국가간 및 사회 행위자간 불평등한 무게 및 영향력의 문제에 대해 불평이 일고 있다. 또한 국가간 경제정책의 조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물론 일부에서는 진전이 고르지 못했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자원의 제약 그리고 일련의 경제 및 정치 위기로 인해 지역 제도의 강화가 저해되었다.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 경제를 개방하고 상호연계시키는 노력은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데, 이를 동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새로운 관료주의를 만들 위험은 실제로 존재하며, 그 과제의 어려움을 과소 평가해서는 안 된다.

36) 동부 및 남부 아프리카 내 6개 주요 소지역 기구 그리고 서부 및 중부 아프리카 내 5개 기구 등 포함.

37) 그러나 동남아국가연합(ASEAN)의 최근 발전사항은 향후 10년간 통합이 심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326. 또한(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및 유럽 내의 경우처럼) 전반적으로 유사한 생활수준의 국가들간의 협정과(미주자유무역지대 및 EU-지중해 간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의 경우처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참여하는 협정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은 매우 상이하다. 저소득 국가와 고소득 국가 간의 지역 통합 협력은 시장접근의 증가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보다 더 광의의 과정인 세계화를 추진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세계화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영향력이 서로 다른 국가간의 협정은 저소득 국가의 국가개발정책이 제약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줄 자원 없이 실업을 유발하는 경제 조정의 어려움을 겪는 등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유럽의 통합 과정에서는 부자 지역에서 가난한 지역으로 상당한 자원이 이전되어 불균형을 감소시키고 조정을 촉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메커니즘은 상당한 정치적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이러한 이슈들은 양국간, 지역 그리고 전지구적 협정에서 재현되는 현상이며, 다음 섹션에서는 지구적 차원에서 이를 살펴보겠다.

지역 통합의 사회적 측면

327. 많은 심화된 형태의 통합은 고용, 교육, 환경, 근로기준, 인권, 남녀평등 및 기타 사회 목표에 초점을 맞춘 정책과 제도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런 사회 목표는 경제적 및 정치적 목적보다는 훨씬 뒷전인 이차적인 이슈인 경향이 있다. 만약 지역 통합이 보다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초석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사회적 측면이 필수적이다.

328. 지역 통합 과정에 이들의 광범위한 사회 목표를 포함시키기 위해, 다음 이슈를 고려해야 한다.

329. 첫째, 참여 및 민주적 책임성의 원칙들은 필수적인 기반이다. 지역의회와 같은 대표 집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 우리는 지역 통합이 민주적 및 사법적 책임을 위한 강력한 제도를 기초로 하여, 근

로자 및 사용자대표 집단들 간의 대화, 그리고 주요 사회 행위자들과의 보다 넓은 대화를 통하여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사회협의포럼(Consultative Economic and Social Forum) 또는 유럽 경제사회위원회(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와 같은 지역 차원에서 노사정 삼자(tripartite) 혹은 더 많은 당사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나 포럼의 구성은 그러한 대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인 틀을 제공한다. 성차별이 지속되는 양상을 고려해 볼 때, 여성의 참여 증가에 대해서도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한다.

330. 둘째, 지역 통합은 사회 목표를 포함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결과를 보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목표는 기본 권리에 대한 존중, 전체 고용률, 빈곤 발생, 교육기회 그리고 사회보장의 적용범위 등에 대해 성별로 다루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측정은 지역 차원에서 특히 유용하다. 왜냐하면 진전의 유무 상태에 따라, 조정된 행동을 위한 정치적 압력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차원의 조직에 의한 공식적 검토 과정은 국가정책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331. 셋째, 지역 차원의 자원 동원은 투자 및 적응을 위해 필요하다. 이는 통합 과정에 각기 다른 발전 단계에 있는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을 경우 특히 중요하다. 유럽연합의 구조협력기금(Structural and Cohesion Funds)은 유럽연합 내 상대적으로 가난한 지역의 상향 집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자원이 지역 투자사업에 투입되도록 하는 데 있어 지역 금융제도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 통합의 모든 과정에 이러한 제도와 기금을 마련하는 것에 우선권을 두어야 한다. 공여자 및 국제기구들은 또한 사회 및 경제개발의 촉진을 위한 공동의 지역 전략을 개발하려는 국가들의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지역 통합의 사회적 차원은 최상위의 정치적 공약을 기초로 하는 통합된 정치 접근방식을 필요로 한다. 각국 정상들만이 필요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지역 통합을 위한 중요한 조치는 이 수준에서 결정된다.

지역의 세계화

332.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화의 이미지는 서로 경쟁하는 블록(bloc)이라는 의미에서 오웰의 세계(Orwellian world)가 아닌 서로 연계되고 상호 작용하는 지역들이라는 이미지다. 그것은 각 지역이 아이디어, 상품, 자본 및 사람에 대해 개방되어 있는 세계다. 이러한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 과정은 세계경제에 제약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세계화의 불균형을 다루고, 다자적 기반 안에서 지역 내의 개발 및 형평을 제고할 수 있다. 각 지역에서의 지역 통합 과정은 해당 지역에 가장 적합한 메커니즘을 통해 추진된다. 하나의 획일적인 모델은 없다. 지역 차원의 행동은 역내 국가의 정책을 보완하고 지원해 준다.

333. 지역 통합의 길을 택하는 논리는 세계 차원에서 통합을 추진하면 어려움이 더 많기 때문에, 지역 단계를 먼저 거치는 것이 이치에 맞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세계화는 개방적 지역간의 연계 역할을 하여 지역 차원의 목표를 지원하는 자원을 전달해 줄 수 있다. 세계화는 민주적 선택 및 보편적 인권의 기초가 되는 가치의 공동 기반을 지원해 줄 수 있다. 또한 지역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정책과 제도가 있으면, 보다 공정한 전지구적 정책이 용이하게 마련될 수 있다. 이는 세계화된 경제의 보다 나은 지배구조를 위한 기초를 제공해 준다.

334. 우리는 세계 통합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을 모이게 하는 제도가 세계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이 전지구적 지배구조의 향후 의제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 통합은 전지구적 지배구조의 기초가 될 수 있고, 역으로, 전지구적 지배구조를 위한 모범 제도는 지역 통합에 강력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III.2 전지구적 지배구조의 개혁

III.2.1 분석 기반

III.2.2 공정한 규칙

III.2.3 개선된 국제정책

III.2.4 보다 책임있는 제도

III.2.1 분석 기반

◆ 세계화와 지배구조

335. 여태까지의 지배구조 이슈에 대한 국제적 관심의 증가는 거의 전적으로 국가 차원의 지배구조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전지구적 지배구조 이슈는 이제 확실히 심각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전지구적 지배구조란 국제사회 및 민간 행위자들이 정치, 경제 및 사회 정세를 관리하기 위해 제정한 규칙 및 제도의 체제이다. 국가 및 세계 양 차원에서의 모범 지배구조는 자유, 안보, 다양성, 공정성 및 사회적 연대 등의 가치를 더욱 진전시킬 것이다. 그것은 인권 존중, 국제적 법치, 민주주의 및 참여 등을 보장하고 기업이 정신을 촉진하며 책임성, 실효성 및 보조성(subsidiarity)의 원칙들을 준수해야 한다.

336. 세계화의 증대로 인해 보다 나은 전지구적 지배구조가 필요하게 되었다.³⁸⁾ 민족국가간 상호 의존성의 증가는 보다 광범위한 이슈들이

38) Deepak Nayyar, "Existing System and Missing Institution", in Deepak Nayyar (ed.) *Governing Globalization: Issues and Institutions*(Oxford, University Press, 2002)와 Joseph Stiglitz,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보다 많은 국가들에게 보다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 FDI, 자본 흐름 등을 통한 국가간 연계의 증가는 주요 경제국의 경제상황이나 정책의 변화가 세계 나머지 지역에 강력한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세계적인 규칙 또한 국가들의 정책 대안이나 경제적 성과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337.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계화의 심화를 통해 공동의 전지구적 행동이 아니면 효과적으로 다룰 수 없는 광범위한 이슈들이 부상하였다. 그 예로, 금융위기의 전염효과, 전염병, 국경간 범죄, 안보문제, 세금 피난처 및 조세 경쟁 등이 있다. 더 일반적으로는, 모든 참가자의 이익을 위해 세계시장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제도적 협정을 개발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진다. 여기에는 원활하고 공평한 운영, 비경쟁적인 관행 및 남용 행위의 제거, 그리고 시장실패의 시정 등이 포함된다.

338. 이러한 새로운 과제에 대한 반응은 아직까지는 체계적이지 못했다. 현재까지의 대응은 분산되고 비일관적인 체제로서, 이는 경제, 사회 및 환경 영역에서 끼워 맞추는 식의 중복되는 네트워크와 기관들로 구성되었다. 법, 규범, 비공식 합의, 민간 자율규제 등을 포함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합의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신용평가기관과 같은 민간 행위자들이 정부 및 시장이 무시할 수 없는 사실상의 기준을 마련한다.

339. 이러한 합의의 적용범위 또한 완벽하지 않다. 국제이주 및 해외투자 등과 같이 중요한 분야에 규칙이 전혀 없거나, 부분적으로 있거나 또는 있어도 부적합한 상태이다. 몇 개의 분야에서는 규칙이 잘 적용되지만 많은 분야에서는 규칙이 너무 제한적이며 흔히 불공정하다.

◆ 현대의 전지구적 지배구조의 주요 결함

340. 그렇기 때문에 전지구적 지배구조의 현 구조와 과정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족국가들이 각기 다른 영향력과 능

London, Allan Lane, 2002) 참조.

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국가들의 경제력에 있어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이 이 문제의 근원이다. 선진국들은 훨씬 높은 1인당 소득을 기록하며, 이는 전지구적 지배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협상에서 경제적인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 선진국이 바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장 영역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고, 해외투자, 금융자본 및 기술의 근원지이기도 하다. 중요한 자산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이들은 상당한 경제력을 갖는다. 이는 전지구적 지배구조 과정 안에 특히 부국과 같은 영향력 있는 행위자에게 유리한 추세가 전개되어 나오도록 만든다.

341. 이상적인 세계에서는 강자와 약자,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해가 균형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전지구적 통치구조는 공정한 결과를 초래하는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기초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멀다. 제2차 세계대전의 주요 승전국들은 유엔과 브레턴-우즈 제도를 중심으로 전후 세계의 지배구조를 정의했다. 이 제도들은 여전히 현 전지구적 지배구조의 핵심을 이룬다. 그때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당시 50개 국에 비교하면 현재의 독립국가의 수는 190개 국에 달한다. 그동안 몇몇 개발도상국들은 고소득 국가 대열에 진입했으며, 중국, 인도 및 브라질과 같은 중간소득 및 고인구 국가들은 세계화된 경제 속에서 주요 행위자로 부상하였다. 이 세 국가가 특정 이슈에 대해 공동 행동을 취하면, 전지구적 지배구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발전사항에도 불구하고 전지구적 지배구조에 있어 선진국의 지배적인 영향력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342. 또한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확대 보급되었다.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 지배구조 그리고 점점 더 전지구적 지배구조에 있어 발언권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정보통신기술 혁명과 세계 연결망의 가속화 덕분이다. 정보에의 접근도 광범위하게 확대되었고 시민사회단체와 노조들은 옳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안을 중심으로 국경간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수단도 있다. 폴란드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민주화 운동은 그러한 연대들의 압력행사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343. 세계 시민사회의 영향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발휘된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국내에서 그리고 국제회의장에서 정부들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인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그들의 신념을 주창하고 여론을 동원한다. 그들은 비평 및 국제 공약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함으로써 투명성과 민주적 책임성을 촉진한다. 그러나 그들의 영향력은 이러한 비공식 경로에만 국한되어 있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이들은 국제기구나 세계회의에서 공식적인 대표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부상은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의견과 이해를 조합함으로써 전지구적 지배구조 과정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다. 이들은 또한 가난한 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정책을 쟁취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전지구적 지배구조에 있어 공정성을 진일보시켰다. 그러나 전지구적 지배구조에 있어 그들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344. 특히 기업 및 기업단체 등 다른 비국가 행위자도 전지구적 지배구조에 있어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는 세계의 경제가 점점 더 자유시장으로 되어가는 속에서 민간부문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음을 반영해 주는 현상이기도 하다. 다국적기업과 국제금융기관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그들이 전세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경제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정부들의 정책 및 관행에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전지구적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들은 흔히 경제 및 금융 관련 국제협상에서 선진국 정부 대표에 포함되어 있다. 이들의 중요성 증가는 특정 전지구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민관 파트너십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345. 민간 자율규제 노력이 세계 차원에서 증가하고 있다. 자주 인용되는 사례가 회계기준의 조화다. 또 다른 예는, 환경 및 노동기준과 같은 이슈들을 강조하는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다. 이는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비정부기구의 활동이 널리 홍보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추진되는 것이기도 하다. 몇몇 새로운 형태의 민간 자율규제는 다른 당사자들과 협력을 통해 하는 경우가 있다.

346. 반대로, 부국의 노조의 영향력은 세계화의 심화로 압력을 받고 있다. 이는 증가하는 자본 이동성 및 세계화된 경제에서의 경쟁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사용자의 힘에 대항하는 평형추가 국내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약화되었다. 그러나 전세계의 노동조합 운동이 이러한 압력에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화 과정에 활발한 역할을 하는 다국적기업과의 협약 또는 협정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347. 위 구조적 불평등에 의해 제기되는 문제들은 전지구적 지배구조 내 민주성의 결핍과 연관된다. 이것의 주요 요소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 브레턴-우즈 기관 등 몇 국제기구에서의 의사결정이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보다 더 널리 퍼져 있다. 세계무역기구와 같이 의사결정이 공식적으로 평등하게 되어 있는 기구에서도 공정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경제력이 불평등하기 때문에, 가난한 국가는 협상에서 거부하기 어려운 힘(bargaining strength)의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개발도상국 내에서도 격차가 심화되어, 저개발국(LDC)은 가장 약한 협상력을 갖게 된다.

348. 전지구적 지배구조에 관한 많은 중요한 결정들은 다자체제 밖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불평등은 더 심화된다. 선진 7개국(G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바젤위원회(Basle Committee), 국제통화기금(IMF) 내 선진 10개국(G10) 등 제한적인 멤버십을 갖는 부국들의 그룹이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및 금융 이슈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왔다

349. 개발도상국들이 전지구적 지배구조에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있어 또 다른 어려움에도 직면한다. 전지구적 지배구조는 이제 광범위한 이슈에 적용되는데 이 중 많은 것들은 기술적으로 복잡한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난한 국가들이 적절한 기술적 수준을 보유한 대표단을 보내는 것은 고사하고 모든 협상에 참석하는 것조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 내에서도 격차가 점점 심해지

기 때문에 개별국의 취약성을 보상하기 위한 세계무대에서의 공동 행동(collective action)과 관련된 문제도 더 어렵게 되어간다.

350. 이러한 문제들은 전지구적 지배구조 과정의 민주적 책임성이 낮기 때문에 더욱 가중된다. 국제포럼에서 한 국가가 취한 입장은 그 국가의 의회의 긴밀한 그리고 정기적인 조사 대상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등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엄격한 의무요건도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최근 진전사항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들의 투명성 및 책임성 결여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그들의 정책 및 운영이 국가 및 사람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외부 평가를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의 운영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351. 보다 많은 정보를 공시하고 정부 및 국제기구가 자신들의 행동 및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보다 강력한 압력을 가하면 그들의 결정과 정책이 보다 명확해지고 관련 이슈에 관한 유익한 공공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것이다. 물론, 세계 정보자유법의 제정 그리고 선진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의 주요 정책결정의 전지구적 영향에 대한 사전 평가 등은 환영할 만한 진전사항일 것이다.

352. 또 다른 단면은 세계의 의사결정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지구적 지배구조에 대한 협상은 무역, 금융, 보건, 사회, 개발 원조 등 개별 부문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기구들은 그들의 구체적인 위임사항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다른 중요한 목적에 미치는 영향은 시야에 들어오지 않기 마련이다. 그러나 한 분야에서 취한 행동은 다른 분야의 결과에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무역 분야에서 내린 결정은 개발원조를 통해 개발도상국이 입은 혜택을 수포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국제금융기구들이 취하는 행동의 목표는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는 기관의 목표와 상치할 수

있다. 전지구적 지배구조의 총체적 일관성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은 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전지구적 지배구조의 일관성 부족은 국가 지배구조 안의 정부 부처들이 각자 담당하는 전지구적 지배구조의 분야에서 취하는 행동에 대해 서로 조정을 거의 안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해 주고 있다. 이러한 결함은 앞서 논의한 책임성 부족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내 정치에서 당연시되는, 서로 경쟁하는 경제·사회 및 환경 목표들간의 균형(trade-off)을 이루는 타협을 해야 한다는 압력이 세계 맥락에서는 보통 존재하지 않는다.

◆ 불안정한 결과

353. 전지구적 지배구조의 취약성은 세계화의 사회적 및 경제적 영향이 불평등하게 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는 두 개의 경로가 있다. 첫째, 세계화된 경제를 지배하는 규칙의 체제가 특히 저개발국 등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의 이해를 차별하고 있다. 둘째,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세계화 양상을 달성하기 위한 일관된 국제경제 및 사회정책을 설정하지 못했다.

354. 다자협정 및 규칙의 체제 변화는 그 의제를 설정하는 데 있어 시장 확장을 위한 조치에 주력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세계의 성장 및 완전고용을 위한 보다 균형된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에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었다. 정책들이 보다 포괄적인 양상의 세계화를 달성해야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다. 이와 더불어, 국경간 인력 이동에 대한 다자기반 개발, 글로벌 생산체제에서 반경쟁적 관행의 억제 등 세계시장을 규제할 조치, 세금 피난처의 회피, 세계 금융시장에서의 심각한 결함의 수정, 기록 원조 및 세계 공공재의 새로운 원천의 개발 등의 보완적인 이니셔티브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355. 합의에 도달한 대부분의 협정들은 균형을 이루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다자무역체제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수출을 확대시키는 데 필수적인 주요 부문에서 무역장벽이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은 자신

들이 손해를 입으면서 개발정책의 중요 부분에 대한 정책적 자율권을 포기하였는데, 그 부분은 여전히 그들이 역량을 키워야 하는 영역이다.

356. 유감스럽게도 개발도상국이 적응에 따르는 어려움을 견뎌내고 경쟁적인 세계화된 경제 속에서 번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켜 주는 정책 강조는 훨씬 적다. 점점 더 지식기반이 되어 가는 세계경제에서 개발도상국의 기술 역량 개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다. 현재의 국제정책 속에서는 완전고용이나 모두를 위한 양질의 노동 달성이라는 목표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357. 전지구적 지배구조의 또 다른 취약점은 사회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세계적 메커니즘 및 정책의 부재다. 부국의 경우, 국가 수익의 상당 부분이 빈곤 감소, 사회보장 제공, 취약계층의 필요 충족 등을 위해 할애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런 자금이 급격히 삭감되고 있다. 세계적 차원의 경우, 이 역할이 다자기구, 자원봉사단체, 양자 개발협력 프로그램에 의해 수행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목적을 위해 이용 가능한 자원은 빈곤퇴치를 위한 수요에 비교하면 매우 적다.

358. 전지구적 지배구조에 대한 그 어떤 개혁도 공정하고 포괄적인 세계화라는 우리의 비전에서 영감을 얻어야 한다. 그것은 법치, 인권 존중 그리고 민주주의 육성 등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촉진해야 한다. 그것은 또한 새천년 선언 및 기타 주요 국제협정에 명기된 사회 및 경제 목표를 달성하는 데 공헌해야 할 것이다. 개혁 제안은 성장, 공평성, 인간개발 및 양질의 노동을 위한 법적 그리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전지구적 제도의 대표성, 참여성,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과 관련된 특성의 도모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모든 남녀가 그들의 우려와 이해를 표현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기회를 줘야 할 것이다. 그것은 세계 공동체의 주요 행위자들의 에너지, 공약, 연대 및 책임성을 동원할 것이다. 이 정도 규모의 전지구적 지배구조의 개혁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 개혁은 세계화의 과정과 내용을 변화시켜 전세계 사람들의 열망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III.2.2. 공정한 규칙

◆ 서론

359. 우리의 가장 핵심적 우려는 무역 및 금융에 관한 주요 규칙의 불공정성과 이들이 부국과 빈국에 비대칭적 효과를 낳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세계경제, 투자 및 국제이주와 같은 분야에서 적절한 규칙이 부족하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섹션에서는 다음을 논의한다: 국가들이 자국에게 최대의 이해를 가져오는 개발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국가들에게 자원을 보장해야 할 필요(단, 집단 이해에 상충되지 않아야 함); 국제무역에 있어 시장접근 측면에서 현 불균형을 시정해야 할 필요; 글로벌 생산체제의 기반을 강화해야 할 필요; 그리고 국제금융체제의 개혁.

360.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현재 부국과 빈국 간의 불균형을 수정해야 할 필요이다. 그러나 공정성이라는 이슈는 이보다 훨씬 범위가 넓다. 세계경제는 빈국 및 부국을 막론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세계화된 경제의 규칙은 이것이 전 세계 사람들의 권리, 생계, 보장 및 기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고안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는 핵심노동기준에 대한 준중을 강화하는 조치 그리고 인력의 국경간 이동을 위한 일관된 기반 마련을 살펴볼 것이다.

◆ 국가 개발을 위한 공간

361. 앞 섹션에서 강조했듯이, 세계화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강력한 노력뿐 아니라 정부의 전략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현존하는 세계 규칙은 이러한 핵심적인 정책 공간을 침해하고 있다.

362. 산업개발이 주요 분야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현재 선진국인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산업화 과정의 중대한 시기에 국내 산업의 개발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도구를 채택했었다. 그들은 또한 FDI의 유입, 소유권 및 성과요구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통제를 하였다.³⁹⁾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의 신흥공업국도 수출장려, 조건부 보조 및 국내 산업 보호 등을 기초로 산업전략을 추진했다. 무역정책은 자국 생산(home-grown) 개발 전략의 일부였으며, 이 전략에 따라 국가와 기업들은 서로 협력하여 국내 산업의 성과를 강화하고 모니터했다. 국가는 국내 투자를 유치하고, 그의 할당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FDI를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했다.⁴⁰⁾ 최소 국내 생산품 비율 유지(minimum local content), 수출 및 기술이전 요건, 역설계, 수입기술의 현지 적응 등과 같은 조치도 효과적으로 이용되었다.

363. 물론 국제경쟁력의 기반이 변했고, 많은 부분이 초기 조건과 역량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이런 전략을 모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타당하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산업 개발 초기의 경험은 적절한 일련의 자국 생산정책이 경쟁력 있는 산업 기반을 형성하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모든 국내 생산정책이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과거에, 수입 대체정책이나 비효율적인 국영기업 등에 대한 지나친 의존 등의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

364.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은 ‘후발 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상당히 제한시켰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8조에 의거, 유치산업의 보호 그리고 긴급수입제한조치는 허용되었지만, 보조금

39) 여기에는 수출보조금, 수출을 위해 사용한 투입물에 대한 관세 리베이트, 정부 허용 독점권 및 협정 및 직접신용대출(direct credit)이 포함된다. Ha-Joon Chang, *Kicking Away the Ladder*(London, Anthem Press, 2002) 그리고 *Foreign Investment Regulation in Historical Perspective*(Third World Network, 2003) 참조.

40) A. Amsden, op. cit.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SCM)은 수출 성과를 조건으로 하는 보조금 또는 수입 투입요소보다 국내 투입요소의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보조금을 금지한다.⁴¹⁾ 또한 이 협정은 외국의 상계 가능한 보조금에 의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준 경우, 상계 조치의 이용을 허용한다. 무역 관련 투자조치 협정(TRIMs)은 국내 생산품 요건 및 무역수지 균형화 요건 등의 조치의 제거를 요구한다.⁴²⁾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협정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383절에서 논의할 것임),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은 역설계 및 모방의 가능성을 감소시켜 놓았으며, 개발도상국의 기술 취득비용을 인상시켰다.

365. 전반적으로, GATT 체제하의 규칙과 비교하여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은 선택적 보호(selective protection) 또는 외국 경쟁자와 비교하여 국내 기업에 대한 전략적 진흥을 추진하는 것을 훨씬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규칙이 적용하는 제약은 어느 면에서 브레턴-우즈 제도의 정책 조건 제한에 의해 더 가중된다. 이들 규칙과 정책조건 제한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산업정책, 기술정책, 무역정책 및 금융정책을 산업화 추진을 위해 전략적인 개입의 형태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시킬 수 있다.⁴³⁾

366. 정책 공간(policy space)을 제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또 다른 분야는 세계화된 경제 내 금융규제를 위한 틀이다. 새로운 기준과 규범은 기준 및 규범 검토(ROSC) 그리고 금융부문 평가(FSA) 과정을 통해 제고되고 있다. 금융체제의 강화라는 목적은 칭찬할 만하지만, 이런 도구들이 현재와 같이 고안되고 제고된다면 많은 개발도상국에게는 맞지 않는 기준을 적용시킬 위험이 존재한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여전히 제도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 그 모든 규범들을 다

41)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VII에 명기된 최저개발국 및 기타 국가(1인당 GDP 1,000달러 미만)는 수출보조금 금지조항 적용으로부터 제외된다.

42) 협정에는 ‘무역 관련 투자조치’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 그 대신, 내국민 대우에 관한 GATT 3.4조 그리고 수량제한에 관한 9.1조의 적용과 일관되지 않는 조치의 리스트를 제시한다.

43) Deepak Nayyar (ed) op. cit.,

포용할 수 없다.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실행 가능한(viable) 성장 및 개발 전략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367. 우리는 개발도상국들이 개방된 경제환경에서 그들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조치를 채택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보다 여유로운 정책 공간(policy space)을 허용하기 위해 모든 세계 규칙들에 대한 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국제기구 및 공여국의 정책은 외부 조건 제한(external conditionality)에서 정책의 국가 소유 쪽으로 결단력 있게 그 방향을 바꿔야 한다. 그들은 권리, 형평성 및 효율성 간의 균형을 도모할 필요성을 확실하게 인정해야 한다. 현재, 이는 WTO의 특별 및 차별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조항에서만 인정되고 있으며, 다음 섹션에서 우리는 다자무역 규칙에서의 그러한 조항의 강화를 제안한다.

◆ 무역을 위한 다자 규칙

368. 우리는 무역에 대한 다자주의 접근방식을 지지하고, 모든 국가에게 상호이익이 되고 모든 국가 내에서 사회적 형평성이 달성되는 다자간 무역 자유화를 실현하는 노력을 장려한다.

369.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무역에 관한 다자간 규칙이 균형을 이루고 공정해야 한다. 세계무역 체제 내에서 불평등이 심화되는 이유는 후진국(the South)에서 생산되는 노동집약 상품에 대해 선진국(the North)이 무역장벽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품목에는 후진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으며, 이들 품목은 후진국의 성장과 개발 전망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해, 우리는 시장접근에 대한 불공정한 장벽은 상당히 줄여야 하고,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들이 중요한 기회를 얻게 된다는 일반적인 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저개발국의 경우, 수출 잠재력을 육성하기 위한 WTO의 특별 및 차별대우(SDTs)를 통해 그들의 이해를 보호해야 한다. 후진국간 장벽(south-south barrier)은 여전히 높고, 개발도상국들은

이러한 장벽을 줄임으로써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다. 또한, 모두에게 완벽하게 공정한 세계무역체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접근 원칙 외의 다른 특정 원칙들도 존중해야 한다.

370. 그 특정 원칙 중의 하나는 무역 자유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무역 자유화는 단지 고성장, 지속가능 성장, 완전고용 그리고 빈곤 감소와 같은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정책은 이러한 목표를 고려하면서 마련되고 이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371. 이와 동시에, 무역 자유화는 흔히 어려운 적응 노력을 동반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의 수출품을 위한 보다 큰 시장으로의 접근은 선진국의 어떤 노동자에게는 큰 사회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따라, 부정적 영향을 받은 노동자에게 적응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실현 가능한 국가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게 되면, 개발도상국에게 보다 많은 공정성을 부여하는 것이 부국의 취약한 노동자를 희생시키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보다 공정한 세계화의 양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책과 국제정책 간에 보다 큰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좋은 예가 된다.

372. 우선, 우리는 세계화된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이 다자간 무역 자유화로부터 얻는 혜택의 정도와 분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을 인식해야 한다. 개발도상국 수출품을 위한 시장접근은 지속가능한 세계성장과 완전고용을 위한 보다 균형된 전략 아래서 훨씬 더 쉽게 개선될 수 있다. 경험에 따르면, 국가간 균형을 이루지 않는 성장은 무역 상대국간 경제적 긴장 조성의 기본적 원천이다. 해외로의 산업기지 이전으로 인해 지속적 경상수지 적자 및 실업을 경험하는 국가에서는 보호주의를 강화하라는 국내 압력이 증가한다.

373. 우리는 또한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등 모든 국가의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려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노동에서의 권리와 기본 원칙에 관한 ILO 선언(ILO

Declaration of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을 준수하는 것이다. 노동기본권 보장은 그 자체로 바람직한 것이고 공정한 무역의 필수적 조건일 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모든 국가에서 발생시키는 생산성 증대에 대한 공정한 배분을 받도록 그들에게 권한을 주는 수단을 제공해 준다.

374. 농업보호는 빈곤 감소에 있어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달성한 모든 것을 무효화시켜 버릴 수도 있다. 선진국의 농업보조금은 현재 1일 약 1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세계 빈곤층의 70%는 농촌 지역에서 살며 하루 1달러 이하에 생존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불공평하다. 우리는, 농업 발전을 위한 이들 국가정책의 합법성(legitimacy)을 인정하지만, 새로운 수출 신용대출 및 보조금 그리고 무역을 왜곡하는 국내 산업 지원조치가 금지되고 기존의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그리고 급격히 폐지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또한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우선권을 주면서, 관세를 상당폭 인하하고 현재의 차별적인 관세할당제도를 처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375. 비석유상품의 가격하락 문제는 위 농업보호 이슈와 관련이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은 여전히 수출 수익의 반 이상을 농산품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부터 2000년까지 18개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세계 가격이 실질적으로 25% 하락하였다. 면(47%), 커피(64%), 쌀(60.8%), 주석(73%), 코코아(71.1%) 및 설탕(76.6%)의 가격 하락이 특히 심했다.⁴⁴⁾

376. 이 문제에 대한 간단한 해답은 없다. 그러나 최소한 농업보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제거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면 부문에서 보호 및 보조 조치를 제거하면 향후 10년간 가격이 13% 인상하고, 면의 세계무역량은 동기간 동안 6% 증가할

44)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Yearbook*, various issues, cited in Oxfam, *Rigged Rules Double Standards*(Oxford, 2002)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아프리카의 면 수출이 13% 증가할 것이다.⁴⁵⁾ 수출품목을 다변화하고 상품을 수출하기 전에 가치를 드높일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지원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가공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에 관한 이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⁴⁶⁾ 또한 설탕, 면, 밀, 땅콩 등 특정 품목에 대하여 전지구적으로 조정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⁴⁷⁾

377. 섬유 및 의류의 무역장벽 문제를 다루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개발도상국은 섬유, 특히 의류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으며, 이들 품목의 세계수출 중 비중은 섬유의 경우 50% 그리고 의류는 70%이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이들 수출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또한, 섬유 및 의류에 대한 관세는 농산품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문의 품목에 대한 관세보다 훨씬 높아, 전체 제조품의 평균 관세율보다 3배에서 5배 정도 높다.

378. 그러나 우리는 국가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이해하여야 한다. 상당수의 노동자들과 기업들이 선진국과 몇몇 개발도상국에서 노동과 사업을 하고 있다. 만약 실직을 하거나 소득이 없어지면 그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이것이 지원 및 사회보호가 불충분한 곳에서 발생하면 그 어려움은 더할 것이다. 모든 경우,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산업의 붕괴 및 구조조정은 노동자 및 그 가족의 안정을 보호하고, 새로운 기회의 개발을 지원하고, 새로운 기능과 역량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켜 주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의 책임을 강조한다. 많은 국가의 의류 부문에서는 특히 여성 근로자들이 관련 있다. 저소득국의 경우,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은 흔히 국제적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379. 개발의 또 다른 장벽은 선진국의 관세 인상 조치다. 이는 공산품이나 원자재 수출에 가치를 부가하려는 개발도상국의 노력을 저해한다.

45)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2004*(Washington DC, 2003)

46) WTO, *World Trade Report 2003*(Geneva 2003) 참조.

47) 각 품목군에 대한 가능 세계 행동 및 분석을 위해서는 World Bank, op. cit, 참조.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은 계속 관세 인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식품류, 섬유, 의류, 신발류 등 일반특혜관세(GSP)가 적용되지 않는 ‘민감한 품목’에 대해 특히 그렇게 한다.

380. 이러한 명백한 시장장벽 외에도, 개발도상국은 포장, 식품위생, 농약 잔류 등 제품에 대한 기술 표준의 증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물론, 이것들은 소비자 및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당한 필요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선진국 내에서는 충분한 안전성 마진을 갖는 표준을 설정하라는 정치적인 압력이 존재한다. 이 표준들은 객관적인 방법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표준을 준수하게 되면 개발도상국의 수출업자는 큰 비용부담을 안아야 하기 때문에 보호주의라는 비난을 하게 된다. 최근 사례를 보면, 유럽연합은 견과류, 곡물류 및 건조 과일 에 아플라톡신(aflatoxin) 수준에 대해 제한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수준은 국제표준보다 훨씬 과도한 것이다.⁴⁸⁾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은 국제표준의 이용을 장려함으로써 남용을 방지하려고 하지만, 특히 저개발국은 이를 적용하기 위한 자원 및 역량이 부족하다. 그들은 또한 이들 표준을 감독하는 국제기구 및 프로그램에 효과적으로 참여 하도록 해주는 제도적인 역량이 부족하다.

381. 이 분야에서 몇 가지 상호보완 조치(offsetting measures)가 취해 져야 할 것이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이 상품 표준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개발도상국은 상품 표준을 형성하는 데 있어 보다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고 이들 표준의 시장접근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48) 세계은행의 한 연구는, 이러한 높은 표준을 적용하면, 해당 품목의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의 수출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현 국제 아플라톡신 표준에 따른 수출 수준과 비교하여 수출이 64%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액수로는 연간 6.7억 달러에 해당). T. Otskui, J.S. Wilson and M. Sewadeh, “A Race to the Top? A Case Study of Food Safety Standards and African Export”, *Working Paper No. 2563*, World Bank(Washington DC, 2001) 참조.

382. 반덤핑 조치는 시장접근에 대한 장벽의 일종이 될 수 있으므로, 이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국내 공정거래 관련 사례와는 다르게 반덤핑의 경우에는 ‘기준 이하에 대한 증명(lower standard of proof)’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반덤핑이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한다. 현재 관련 규율과 규칙은 보다 투명하고 예측이 가능해야 하며, 이를 수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위에서 언급한 원칙들간의 불일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의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절차적인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게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 반덤핑 관련 제소를 하거나 변호하는 데 있어 비용이나 역량 측면이 불리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383. 우리는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TRIPs)이 복잡한 이슈라는 것을 인정한다. 혁신과 기술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모두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지식에 대한 폭넓은 접근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면 널리 공유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특히 지식과 기술이 제한되어 있는 저소득 국가의 경우를 포함하여 기술 고안자 및 기술 이용자의 이해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공정한 규칙이 필요하다. 최저 개발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제도적 역량이 부족하고, 기술을 고안하더라도 자원 확보를 위해 다른 국내 개발목적 사업과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Agreement)이 너무 지나치다고 주장한다. 한 예로,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을 적절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했다. 다른 예로, 오랫동안 공유상태로 존재해 왔던 전통 지식에 대한 개방된 접근을 적절히 보호하지 않았다. 최근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과 공중보건 분야의 합의는 개발과 관련된 고려사항을 다룰 수 있는 수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⁴⁹⁾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노력이 진행 중이다.

49) 2001년 11월 도하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 발표한 TRIPs 및 공중보건에 관한 특별선언은 TRIPs 협정을 공중보건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적

384. 투자 및 경쟁정책과 관련하여, 우리는 WTO 내에서 이들 정책과 기타 ‘싱가포르 이슈(Singapore Issue)’에 대해 의견이 크게 양분된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는 2003년 9월 개최된 칸쿤 각료회의 결렬에 공헌했다. 상당수의 개발도상국들은 이 이슈들이 협상 의제에 포함되고 일괄 타결(single undertaking)에 포함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몇몇 선진국은 투자 및 경쟁정책 둘 다 무역 자유화의 중요한 보완책이 되기 때문에 WTO 틀 안에서 협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이슈에 대해 WTO 내에서 진전이 있을 가능성은 낮은 것 같다.

385. 다자무역 체제 안에 공정 규칙을 제도화하는 것은 큰 진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체제 안에 보다 강력한 개발 관련 조항이 구축되지 않는 한, 개발도상국들은 이 공정 규칙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현재 개발도상국을 위한 특별 및 차별대우 조항은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게 협정 및 공약을 이행하는 데 보다 긴 유예기간을 허용하고, WTO 협정을 준수할 능력(예를 들어, 기술표준의 적용) 및 분쟁 해결 능력을 강화하도록 지원을 해준다. 저개발국을 위한 특별조항도 있다. 그러나 이 조항들은 충분하지 않으며,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386. 규칙 이행을 위한 시간을 더 주는 것 가치고는 충분하지 않다. 불평등한 파트너들간의 공정한 규칙은 불평등한 결과만 가져올 뿐이다.⁵⁰⁾ 국가들의 발전 수준이 다양한 것을 감안할 때, 선발주자 국가들과 동일한 능력을 갖지 못하는 후발주자 국가들에게 유리한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이 필요하다. 국가의 의무가 발전 수준이나 단계와 상관관계에 있도록 하는 일련의 다자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 후발주자 국가들이 자국의 개발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보다 큰 정책

용 및 해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강제실시권, 병행수입권(parallel importing) 등 TRIPs 내 마련된 유연성 조항을 사용할 국가의 역량을 강조했다. WTO 회원국 정부들은 국내에서 의약품 생산을 할 수 없는 국가들이 강제실시권에 의거 일반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에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의 변경에 동의했다.

50) Deepak Nayyar, op. cit.

공간(greater policy space)을 갖도록 하기 위해 WTO에서 제안한 규율이나 새로운 이슈에 대해 동참하거나 예외(opt out)로 남을 것인지에 대해 유연성을 허용하는 것이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 글로벌 생산체제를 위한 규칙

387. 생산의 세계화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산업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중요하고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듯이,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가속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 시장접근 제한이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하였다. 특히, 계속적인 관세 인상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세계 공급사슬에서 부가가치 생산활동 영역으로 진입하려는 노력에 있어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다루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 두 가지 있다.

388. 첫째, 다국적기업들은 많은 경우에 고성장 및 사업환경 개선에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세계시장의 지배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이 새로이 진출하는 데 엄청난 장벽이 될 수 있다. 또한, 1990년대에 일었던 국경간 기업합병의 물결은 세계시장의 산업 집중화와 이로 인해 발생할 자유경쟁에 대한 장벽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⁵¹⁾

389. 둘째, FDI 유치를 위한 개발도상국간의 인센티브 경쟁이 이들 국가들로 하여금 규제, 세제, 환경보호 및 노동기준 등을 지나치게 해체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부적합한 국내 규제 및 세제 장벽을 갖고 있는 국가의 경우, 규제완화 조치는 분명히 필요하다. 이러한 규제나 장벽은 FDI 유입을 방해할 뿐 아니라 국내 경제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격을 부담시킨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인센티브 경쟁이란 개혁의 의미를 훨씬 넘어선다. 우려되는 부분은 국가들이 FDI

51) P. Nolan et al., "The Challenge of the Global Business Revolution", *Contributions to Political Economy* 21, 91.110, Cambridge Political Economy Society(Oxford University Press, 2002).

를 경쟁적으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양허를 제안하게 되고 유치를 통해 얻는 전반적인 혜택이 감소된다. 이런 현상의 예로 수출자유지역이 흔히 제시된다. 이는 우리가 다루어야 할 중요한 관심 분야이다.

390. 경쟁과 관련, 대부분의 국내 시장에는 강력한 불공정거래법이 있지만, 세계화된 경제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지적했듯이, 세계시장에서 반덤핑 조사에 적용되는 조치와 국내 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지배하는 법원칙 간에 일관성이 거의 없다. 세계화된 시장을 보다 투명하고 경쟁적으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

391. 세계화된 시장에서 민간 차원의 장벽 또는 기타 제약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정된 노력이 필요하다. 제약요인에는 세계화된 시장에서의 지배적인 위치의 남용행위 및 가격을 고정, 시장을 할당, 그리고 경쟁을 제약하는 국제 민간카르텔 등이 있다.⁵²⁾ 또한, 독점 판매계약(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 독점 구매계약(exclusive purchasing agreement), 선별적 판매계약 등 공급사슬의 수직적 제약이 시장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⁵³⁾

392. 우리는 세계화된 경제를 보다 투명하고 경쟁력 있게 만드는 이슈에 대한 대화와 협력을 촉진할 것 그리고 공정거래법의 해외영토 적용과 관련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 세계경쟁정책 네트워크(ICN), OECD 세계경쟁포럼(Global Forum on Competition), 무역 및 경쟁정책에 관한 WTO 실무작업반들의 포럼들은 이러한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393. 장기적으로 볼 때, 세계시장의 집중화를 모니터하고, 국가 경쟁정

52) World Bank에 따르면, 1990년대 기소된 카르텔들이 개발도상국에 수입되는 상품에 오버차지(overcharge)한 액수가 2000년에는 20억 달러에 달했을 것으로 예측했다.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2003*(Washington DC, 2002) 참조.

53) 예를 들어, WTO 코닥-후지 사건의 미국과 일본의 사례에서는 미국 기업이 중요한 유통 채널이 자신들에게 배제되었다고 주장했다.

책에 대한 검토를 촉진하고, 개발도상국에게 기술 지원을 하고, 국경간 불공정거래 이슈에 대해 해당 국가들이 서로 상충하는 해석을 하게 될 경우 국제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을 해줄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유형의 새로운 제도를 위한 환경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대화 및 협력을 위한 기존의 기반들이 그러한 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394. ‘근린 궁핍화(beggar-thy-neighbor)’ 투자정책 경쟁 문제와 관련하여, FDI를 위한 더 균형되고 개발친화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보다 큰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FDI를 포함한 투자 분야에서의 다자 규칙 제정의 역사는 매우 험난했다. 1970년 말과 1980년대 유엔 다국적기업의 윤리규범에 관해 합의 도출은 불가능하였다. 규범 초안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책임을 서술하려고 했다. OECD 내에서 다자간투자협정(MAI) 체결 노력은 노조, NGO 및 기타 단체 등의 심한 반대에 직면하였고, 마침내 1998년에 실패로 돌아갔다. 많은 논평가들은 MAI의 초안 내용이 외국인투자가의 권리를 나열했지만, 투자자의 윤리행동과 관련하여 필연적 책임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는 투자국, 투자대상국, 투자자(국내 및 해외), 근로자 및 시민 등의 이해간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모든 관련 행위자들을 협상테이블에 모이게 할 필요성이다. 둘째, 투명하고 개방된 과정의 필요성이다.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MAI에 대한 대중의 의심 및 반대가 가열되었다.

395. 투자 관련 다자규칙을 논의하기 위한 무대는 개발도상국, 노조 및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 WTO로 옮겨졌다. 반대자들은 무차별 및 내국민 대우 등의 원칙들이 투자협정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국가가 외국자본보다 국내 중소기업을 유리하게 대우하려는 정당한 경우(예: 유치산업)가 있을 것이다.

396. 일관된 다자규칙의 부재시, FDI에 관한 현재의 기반이 이 영역을

단편적 및 산발적으로 규제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양자투자협정(BITs),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와 같은 지역협정, 그리고 기타 WTO 협정(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SCM), 무역 관련 투자조치협정(TRIMs))이 포함된다.⁵⁴⁾ 최근 양자투자협정 수의 급증은 다자기반에서 합의에 도달하는 것과 무관하게 FDI를 보호하고 촉진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개발도상국이 우세에 있는 선진국을 파트너로 양자투자협정을 체결할 때 불리한 조건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397. FDI를 위한 보다 투명하고 일관되고 균형된 개발기반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래야만 모든 국가가 이익을 얻을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이 글로벌 생산체제로 진출할 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win-win)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98. FDI를 위한 보다 균형된 개발기반 마련을 향한 첫 번째 단계로서 국가들이 인센티브를 보다 투명하게 하여 투자정책 경쟁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행동을 취할 것을 권고한다. 모든 이들이 보다 투명한 체제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어느 국가 또는 투자자도 다른 이들이 이행하지 않는 투명성을 이행함으로써 경쟁 열위에 있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집단으로 추진하고 합의된 규율을 개발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 국가들은 이를 지역 차원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개발도상국들이 투자 이전 및 투자 이후 단계에서의 내국민 대우, 분쟁해결 절차, 수용 및 보상 조항, 국제수지 보호조치, 성과 요건, 민간 및 공공 이익을 균형화할 기타 조치 등은, 기타 다른 이슈에 대해 그들의 집단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귀중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양자 협상에서 개발도상국들의 협상 역량을 향상시켜 줄 것이다.

54) 협정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FDI Policies for Development: Nation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www.unctad.org/wir 참조.

399. FDI를 위한 균형된 개발 노력을 마련하기 위한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포럼을 찾기 위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IV부에서 제안된 유형의 ‘정책개발 대화’에서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기반은 별도의 그리고 일관된 실체(entity)로서 협상되어야 하고 WTO 무역협상 의제의 양허와는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투자자에게 안정적, 예측 가능한 그리고 투명한 기반을 제공하고, 외국 및 국내의 민간, 근로자 및 공공의 이익, 권리 및 책임 간의 균형을 도모하며, 공정하고 투명하며 적절한 분쟁해결 절차를 보장한다. 또한 투자의 혜택이 실현되고 국내 투자를 밀어내는 등의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 또는 통제되도록 국가가 투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 유연성과 정책적 공간(policy space)이 허용되어야 한다.

◆ 금융체제의 개혁

400. 그러나 국제무역에서의 시장접근 그리고 글로벌 생산체제로의 진출 측면에서의 진전은 세계금융체제의 개혁 이슈를 적절하게 다루지 못하면 무효화될 수 있다. 무역 및 FDI 분야에서의 이득은 금융 불안정 및 위기로 인해 역전될 위험이 있다. 무역 및 투자를 지배하는 보다 공정한 규칙에 의해 형성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도 세계금융체제의 작동 상태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401. 현재의 세계금융체제는 너무나 불완전하다. 세계금융시장은 다른 시장과 비교하여 선진국의 금융 이해당사자의 더 큰 지배를 받고 있다. 이들 국가의 정부, 특히 경제적으로 가장 강한 국가의 정부는 국제금융기관(IFI)에 대한 영향력을 통해 시장을 지배하는 규칙을 정한다. 반면, 국제금융기관은 개발도상국의 거시경제 및 금융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와 동시에, 선진국의 은행 및 금융기관은 세계금융체제 안에서 엄청난 시장 지배력을 누린다. 이 체제는 심각한 시장실패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불안정하다. 결국, 이러한 금융 불안정성의 위험과 부정적 결과는 이 체제 내에서 가장 약한 행위자인 중간소득 국가들이 다 떠

안게 된다.

402.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으로 유입된 순 사적자본 흐름은 2002년에 총 500억 달러를 상회했는데, 이는 2001년과 비교해서는 증가했지만 아시아 금융위기 직전인 1996년의 최고 수준과 비교하면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 순 사적자본 흐름 중 순 사적 FDI만이 플러스를 기록한 부분이다(2002년에 1,100억 달러).⁵⁵⁾ 다른 두 주요 부분인 순 간접투자자와 순 은행대출은 2002년 682억 달러 유출되어 연속 6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세계금융체제의 작동 방식을 보면, 총체적으로는 FDI를 제외한 순 사적자본이 가난하고 자본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 부자이며 자본이 풍부한 국가쪽으로 흘러들어갔다.

403. 지난 10년 동안, 세계의 자본이동성 증가와 더불어 개발도상국에서 금융위기의 발생 빈도가 증가했는데, 이러한 위기는 대개 높은 사회비용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금융위기는 변동성(volatility)과 전염성(contagion)이라는 상호연계 문제성을 잘 반영한다. 섹션 II.2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변동성은 단기금융 흐름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것의 특징은 투자 대상국의 경제전망에 대한 금융시장의 인식이 변하게 되면, 이에 따라 자본의 유출입이 급상승한다. 이들 시장에 대한 정보의 결합은 특정 국가의 경제전망에 있어 해당 실질적 변화에 대한 정당한 반응을 넘어 더 과장된 형태로 이루어지게 한다. 다시 말하여, 금융시장 운영자(financial market operator)의 ‘군집행동(herd behavior)’으로 말미암아, 결국 경제의 기초(economic fundamentals) 측면에서는 제법 탄탄한 국가에까지 그들의 설부른 판단이 전염되는 효과 때문에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염효과는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특히 심했다. 우리가 세계화의 보다 공정하고 포괄적인 양상을 얻고자 하면, 이러한 심각한 결합이 수정되어야 한다.

404. 오늘날, 국제금융체제를 개혁할 필요성에 대한 합의는 상당 정도 이뤄졌다. 이는 상호 의존성 및 개방성이 변동성 및 전염성과 혼합되어

55) UNCTAD, *Trade and Development Report 2003*(Geneva, 2003) 참조.

금융시장의 지배구조를 훨씬 어렵게 만들었다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이다. 우리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세계성장을 자극하고, 기업에게 적절한 재정을 제공하고, 양질의 노동을 위한 노동자의 필요에 충족해 주는 안정적인 금융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될 것이다. 안정된 금융체제는 생산성 있는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금융위기에 따른 파괴적인 고용 관련 효과를 방지할 것이다. 이는 또한 국내 저축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외자의 예측가능한 역할을 장려할 것이다. 결국, 국제금융체제는 개발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개발도상국의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405.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진전은 느리고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여태까지, 개혁은 정보 공시의 증가, 조기경보체제 개발, 금융부문 감독을 위한 국제기준 및 규범의 형성 등 주로 위기방지 조치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들 이니셔티브들이 유용하기는 하나, 그들의 영향은 점진적이고 또 아마도 충분치 않을 것이다. 국제기준 및 규범이 전세계 각국의 금융체제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들은 그것이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의 원칙을 통해 또는 신중한 규제, 감독 및 책임성 등을 통해 국제금융시장이 운영되는 제도적 기반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강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이를 달성하면, 세계금융시장이 보다 안정되는 것에 공헌하고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접근을 향상시킬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들 기준 및 규범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과정의 진행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존재한다.

406.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새로운 표준과 규범의 설계에 개발도상국이 적절히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⁵⁶⁾ 또한, 이 기준들을 고수하게 되면, 개발도상국들이 세계금융시장에 접근하는 데 훨씬 더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예를 들어, “국제은행들에 의한 위험대

56) 변화의 조짐이 몇 가지 있다. 1990년대 말 신흥시장의 금융위기 이후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의 국제포럼인 G20이 설립되었다. 이의 회원국에는 10개의 체계적으로 중요한 신흥시장 경제가 포함되었다.

출(risky loan) 비용을 증가시키는 자기자본 기준(capital standard)의 조정은 그러한 국가들이 개발사업에 자금조달을 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⁵⁷⁾

407. 그러므로 우리는 국제금융체제의 개혁 과정에 보다 많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결연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또한 표준 및 정책 지침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개발도상국의 각기 다른 상황과 필요에 보다 민감한 개방되고 유연한 접근방식이 있어야 한다. 지적했듯이, “G7 각료나 다자기구 관리들이 어떤 것이 최선의 (개발) 모델인지에 대한 지식에 대해 독점권을 갖고 있지 않다”.⁵⁸⁾

408. 엄격한 논리로, 지침은 국제금융체제의 운영을 지배하는 공식 규칙과는 다르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은 실제에서는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자본자유화와 같은 이슈에 대한 국제금융기관의 정책 지침은 흔히 개발도상국을 위한 사실상의 규칙으로 운영된다. 그것은 이들 기관이 개발도상국의 정책 대안에 있어 큰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409. 예를 들어, 자본자유화정책은 독단적 접근방식을 추진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1990년대의 경험은 후진적이고 부실하게 규제되는 금융체제를 갖는 국가들은 신중하고 점진적인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⁵⁹⁾ 그러한 접근방식은 미리 금융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여유를 허용하기 때문에 보다 바람직하다. 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취약한 금융체제를 갖고 조기 자유화를 단행한 국가가 자본계정을 관리하기 위해 선택적 도구를 재도입하려는 시도를 단념시켜서는 안 된다. 이러한 조치들과 관련하여 불리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에 직면하여 잠정조치로서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면 결국에는 수용할 만한 것이라고 고려될 것이다.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57) Barry Eichengreen, *Financial Crises and What To Do About Them*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58) Ibid.

59) E. Prasad et al., *Effect of Financial Globalization on Developing Countries: Some Empirical Evidence*, IMF Mimeo(17 March, 2003) 참조.

언을 수 있다 : 즉 위기상황에서 칠레와 말레이시아의 위와 같은 도구 사용 그리고 자본 자유화에 대한 인도와 중국의 건전한 전략 등에서 배울 수 있다.

410.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개혁 과정 이후 브레턴-우즈 환율체제의 불안정성 그리고 거시경제 및 금융정책의 불안정화 영향 등의 근본적인 이슈들과 맞서야 한다고 믿는다. 국가 거시경제정책들의 협의, 일과성, 그리고 감독을 원활히 해줄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세계 거시경제경영의 문제는 전적으로 시장에 맡길 수 없고 G7 국가를 넘어 보다 광범위하게 다루어져야 한다.⁶⁰⁾ 다음 섹션에서 우리는 거시경제 정책들의 조정의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데, 이는 단지 재정 흐름 및 환율을 단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뿐 아니라 경제성장, 생산성 향상 및 고용창출을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411. 신흥시장에서 금융 변동성 및 전염효과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재정준비금(financial reserve)이 고갈된 후보다는 그 전에 긴급 차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기 시 긴급 차입의 공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한 차입은 전염효과에 직면한 국가에게도 제공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이슈에 대해 진행 중인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지만 더 빠른 진전을 촉구한다.

412. 다음 섹션에서 다룰 부채 탕감 문제 외에도 부채 정리를 위한 효과적이고 공평한 메커니즘을 고안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한 메커니즘은 특히,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책임과 부담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여태까지 현 체제의 불공정성을 수정하는데 있어 진전이 별로 없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는 채권자의 이해를 채무국 및 그의 빈곤한 국민의 이해보다 우선시되게 지속시킨다.

413. 이와 관련된 이슈는 위기에 직면한 국가가 보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적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연성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변화에의 적응 패키지(adjustment package) 중 사회비용 극소화라는 목

60) Deepak Nayyar, op. cit.

적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함을 포함한다. 이는 흔히 더 긴 적응기간 그리고 거시경제정책에 있어 덜 갑작스러운 수정 등을 수용함을 의미한다.

◆ 세계화된 경제 속의 노동

414. 게임에서 경제 규칙이 보다 공정해졌다고 해서 그 자체로 충분히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세계화를 보장할 수는 없다. 제 I 부에 명기한 바와 같이 합의된 인간의 고유 권리 및 사회정의를 장려하는 조치에 대한 국제기반이 존중되어야 한다.

415. 국제노동운동 및 기타 활동으로 인해 강조된 중요한 고려사항은 심화된 경쟁이 노동기준에 미치는 영향이다. 핵심노동기준은 세계경제에서 노동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련의 세계 규칙을 제공한다는 합의가 존재한다. 질문은 이러한 핵심노동기준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다.

416. 두 번째의 중요한 고려사항은 국경간 인력이동을 위한 일관된 기반의 부재다. 무역 및 자본에 대한 공정 규칙은 어렵고도 매우 중요한 이슈인 인력의 이동에 관한 공정한 규칙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핵심노동기준

417. 국제사회는 전세계의 고용 및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수단으로서의 국제노동기준의 가치를 대체로 인정한다.

418. 1995년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는 7개의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기초로 하는 일련의 노동자의 ‘기본’권리가 정의되었다. ILO는 이들의 보편적 비준(universal ratification)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고, 1998년 총회 때 이들을 참조하여 노동에서의 권리 및 기본 원칙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및 그의 후속 조치(follow-up)을 채택하였다. 선언은 협약에서 다루는 기본권과 관련된 원칙을 존중, 촉진 및 실현해야 하는 모든 회원국의 의무를 다시 한번 설명한다. 그 원칙은 아래와 같다:

-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
-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의 제거
-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폐지
- 고용 및 직업 관련 각종 차별의 제거.

419.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8개의 ILO 협약이 노동기본권을 정의하는 것으로 널리 인정된다.⁶¹⁾ 그러므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이들 핵심노동기준은 세계화된 경제에서 노동에 관한 최소한의 규칙을 구성한다는 국제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420. 국제사회는 관련 기준을 설정하고 다루는 데 있어 ILO의 역할을 자주 재확인하였다.⁶²⁾ 이는 서로 다른 조직이 의미의 해석 및 적용에

61) 이는 다음과 같다. 1930년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제29호); 1957년 강제근로 폐지에 관한 협약(제105호); 1948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제98호); 1951년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에 관한 협약(제100호); 1958년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제111호); 1973년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제138호); 1999년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제182호). 각 협약에 대해 130~162개국이 공식 비준을 하였으므로, 협약의 의무는 거의 보편적으로 수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62) 정부는 다음을 통해 직업 및 고용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b)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결사의 자유 및 단결하고 집단교섭할 권리,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남녀 모두에게 동일임금 지급, 고용에서 차별이 없는 등 기본 노동권의 존중 및 촉진하면서, 비준국은 ILO 협약을 완전히 이행하고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이 협약의 포함된 원칙을 고려하여 진정한 지속적 경제성장과 지속적 개발을 달성할 것이다(사회개발세계정상회의의 행동 프로그램, para. 54, 1995); “우리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핵심노동기준의 존중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일신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 기준들을 설정하고 다루는 권한 있는 기구이며, 우리는 이 기준들을 촉진하는 ILO의 활동을 지지한다(WTO 싱가포르 각료선언, 1996년 12월 13일 채택, para 4)

있어 서로 상충되는 각기 다른 노동기준을 기초로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게 했다.

421. 1996년 WTO 싱가포르 각료선언 그리고 1998년 노동에서의 권리와 기본 원칙에 관한 ILO 선언 모두에서 양 조직의 회원국들은 핵심노동기준의 준수에 대한 공약을 확인했다.⁶³⁾ 그들은 이 기준이 보호주의 무역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말아야 하고 모든 국가의 비교우위에 이익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특히 강조했다. 물론, 이 공약이 내포하는 의미는 그 어느 국가도 핵심노동기준을 무시하거나 고의적으로 위배함으로써 비교우위를 달성하거나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원칙들은 매우 명백한 용어로, 상호 보강하는 방법으로, 서로 다른 포럼에서 재확인되었다.

422. ILO에서 합의된 접근방식은 홍보 접근방식으로서, 협약이 비준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들의 공약을 보충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기본 원칙 및 권리준수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국가들이 협약을 발효시키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노동기준 및 원칙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하고 적합한 절차를 제공해 주는 ILO의 정기 감독 메커니즘이 아래 박스(Box)에 설명되어 있다.

63) 2001년 도하 각료회의에서 WTO 회원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핵심노동기준에 관한 싱가포르 선언을 재확인하였다. WTO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20 November 2001, para.8 참조.

■ 국제노동기준 적용 증진을 위한 ILO의 행동

ILO는 국제노동기준의 전세계적 적용 및 기준 준수와 관련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행동수단을 결합한다. ILO의 정기 보고 및 불만족사항 처리 절차에서는 회원국, 기업체 및 노조 대표가 모여 국가별 또는 사례별로 준수사항을 평가한다.

8개 기본협약을 포함한 ILO 협약은 ILO 노사정 총회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각 정부는 이들의 비준을 위해 의회에 제출하였다.

정기보고 절차(Regular reporting procedures)

주요 보고 메커니즘에 관한 ILO 헌장 제22조에 의거, 국가는 자국이 비준한 협약이 법으로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ILO에게 보고한다. 제19조에 의거, 정부는 비준하지 않은 협약 및 권고에 대한 적용에 대해 보고한다. 협약 및 권고 적용에 관한 ILO 전문가위원회(ILO 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는 제22조 및 19에 의거한 보고를 검토하고, 이는 기준적용에 관한 삼자위원회 회의(tripartite Conference Committee on the Application of Standards)에서 논의된다.

1998년 노동에서의 권리 및 기본 원칙에 관한 선언에 관한 후속조치는 연례보고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선언의 적용 여부를 모니터하고 ILO 이사회(Governing Body)에게 행동에 관한 권고를 한다. 4개 기본 원칙 및 권리에 대해 매년 별도의 세계보고서(Global Report)가 작성되며, 이는 국제노동 총회에서 논의된다. 연례보고서와 세계보고서는 핵심 협약의 비준을 촉진하고 기술 지원이 필요한 곳을 파악한다.

사용자 및 노동자 조직은 이 모든 절차와 관련하여 정부 보고에 관한 그들의 소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들 보고 절차에서의 대화는 어려

움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가 제안되는 것을 보장해 준다.

불만족사항 처리(Complaint procedures)

ILO에는 회원국이 비준한 협약의 기준 준수와 관련된 분쟁을 처리하는 헌법상의 절차가 있고, 결사의 자유의 경우에는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분쟁 처리가 이루어진다. 제24조에 의하면, ILO 이사회는 어떤 회원국이 비준한 협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사용자 및 노동자 조직의 진정(representations)을 검토한다. 제26조에 의거, 독립 심사위원회(independent Commission of Inquiry)는 정부 또는 총회 대표(사용자 및 노동자 조직)로부터 어떤 회원국이 비준한 협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접수하여 이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결론 및 행동을 위한 권고를 한다. 제33조는 모든 다른 조치들이 실패했을 때 극단적 상황에서 조치를 집행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ILO 헌장 자체 기원을 둔 절차를 통해, 결사의 자유에 관한 삼자이사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는 국가의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회원국의 결사의 자유 위반에 대한 정부나 해당 노동자 및 사용자 조직이 제기하는 불평을 검토한다.

423. 이런 기준과 원칙을 실제로 실행했을 때, 최고위 정치 차원에서 한 공약을 자주 모순되게 만들었다. 즉 차별이 만연하고 노동권 및 노조의 권리를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그림만 보여줄 뿐이다. 이는 성, 연령, 장애, 에이즈 감염 등에 따른 차별이 오늘날 세계의 작업장에 널리 퍼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점차 증가하는 경제적 불안정 및 불평등은 외국인 혐오증 그리고 인종적·종교적 차별 문제들을 더욱 악화시킨다.⁶⁴⁾ 약 2억 4,600만에 달하는 아동들이 아동노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64) ILO, *Time for Equality at Work*, Global Report Under the Follow-up to the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Geneva, 2003).

이 중 3분의 2는 가혹한 형태의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17세 미만의 아동 800만 명 이상이 강제로 아동군인이 되며, 가내노동을 위해 인신매매되며, 농업 및 벽돌 제조업에서 노예노동(debt bondage)을 하고, 불법 마약 및 성매매 산업에서 일하도록 강요당한다.⁶⁵⁾ 노예 및 강제 노동 형태는 성인에 대해서도 보편화되어 있다. 이의 범위는 가내노동, 마약 관련 또는 성매매 관련 노동에서 군대, 농촌 및 감옥에서의 강제 노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⁶⁶⁾ 노조 권리의 침해는 계속해서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노동자들은 목소리를 내려고 할 때 정치적 및 행정적 장애물에 직면한다.⁶⁷⁾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노조원의 감금, 실종 또는 살인에 대한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⁶⁸⁾

424. 어떤 관측자는 보다 강력한 행동을 요구한다. 이러한 기준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무역재제를 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WTO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핵심노동기준의 존중 및 이의 국가 노동법에의 적용이 몇몇 쌍무무역협정 조항에 포함되었다.

425. 여기에는 상당 수의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주요 문제는 정치적인 것이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핵심노동기준을 보다 광범위한 개발 의제의 일부, 즉 개발의 목표 및 주요 개발수단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세

65) ILO, *A Future without Child Labour*, Global Report Under the Follow-up to the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Geneva, 2002).

66) ILO, *Stopping Forced Labour*, Global Report Under the Follow-up to the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Geneva 2001).

67) ILO, *Your Voice at Work*, Global Report Under the Follow-up to the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Geneva, 2000). 또한, www.ilo.org에서 Reports of ILO Committee of Experts to the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특히, the *General Survey: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Report III, Part 4B,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81st Session, Geneva, 1994 참조.

68) www.ilo.org에서 이사회에 제출된 Reports of the ILO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참조.

계화된 경제 규칙이 그들의 개발 목표 전체를 지원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여기에는 위 언급한 이슈들인 부적절한 시장접근 상황의 수정, 자본의 안정적인 흐름 촉진, 상품가격 변동 감소 등이 포함된다. 핵심노동기준 준중을 강화하는 새로운 제안은 다른 불균형 상태를 해결하고 성장 및 고용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는 개발도상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보다 강력한 국제정책의 한 부분 그리고 한 영역이 되어야 한다. 무역 의제와 인권 의제가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해당 인권을 전적으로 준수하는 국가들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였다.

426. 우리는 핵심노동기준이 개발을 위한 보다 넓은 국제적 의제의 일부를 구성되고, 이를 촉진하는 ILO의 역량이 강화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다자체제를 그 전체로서 동원하여 이 목표를 정부, 기업체 및 기타 관련 행위자의 행동 안에 강화시키는 것이 포함된다:

- 첫째, 모든 관련 국제기관들은 핵심국제노동기준 그리고 노동의 기본 원칙 및 권리에 관한 선언을 촉진하는 데 있어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어떠한 측면도 이 권리들의 적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 둘째, 노동의 기본 원칙 및 작업장에서의 권리 실현의 실패가 정치적인 의지보다는 역량의 부족 때문이라면, 기준 적용을 위한 기존의 기술지원 프로그램이 강화되어 할 것이다. 여기에는 노동행정, 훈련 그리고 노동자 및 사용자 조직에 대한 지원 강화가 포함된다. 아동노동을 퇴치하는 기존 행동의 강화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⁶⁹⁾
- 셋째, 공정하고 적합한 감독 및 모니터링, 홍보지원(promotional

69) 이 이슈는 최근 그 우선순위가 많이 올라갔다. ILO의 아동노동 퇴치에 관한 국제 프로그램(IPEC)은 85개 국에 있는 국가 당국, 사회적 파트너 및 기타 행위자들과 협력한다.

assistance), 그리고 노동의 기본 원칙 및 권리에 관한 선언 및 ILO 헌장에 명기된 기타 절차에 대한 사후관리(follow-up)를 수행하기 위한 자원을 증가함으로써 ILO 자체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넷째, ILO 감독 메커니즘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권리 침해가 지속 되면, ILO 헌장 제33조에 의거, 이들 노동기준이 강제 적용될 수 있다. 동조에 따르면, 비준한 헌장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ILO는 해당 국가의 준수 이행 확보를 위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이는 다른 방법을 다 사용한 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미얀마의 강제노동 상황을 정정시키기 위해 특정 조치를 통해 실시한 바 있다.

427. 국제기관의 행동 외에도 시장 기능의 힘이 핵심노동기준을 존중하는 것이 사업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보장하도록 기업들을 계속 독려해야 한다. 윤리적 소비자 및 공정거래 관련 이니셔티브는 민간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시장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보다 많은 수의 투자자들은 사회책임투자(SRI)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재정적인 측면뿐 아니라 핵심노동기준 존중을 포함한 환경 및 사회적 성과 측면도 평가하는 것이다. 규모를 불문하고 기업들은 이들 핵심노동기준이 사내 윤리규범 안에 또는 자발적인 이니셔티브로 이루어지든지 간에 이의 존중에 대한 공약을 공표하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이 제안한 글로벌 협약(Global Compact)은 노동에서의 권리와 기본 원칙에 관한 ILO 선언에 명기된 노동원칙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유엔기관, 노동 및 시민사회를 같이 모이게 한다. 세계보고서 이니셔티브(Global Reporting Initiative)와 같은 노력들은 이들 및 기타 기준에 대한 구체적 보고 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국경간 인력이동

428. 세계화된 경제를 위한 현 제도적 구조에 있어 주요 결함은 국경간 인력이동을 지배하는 다자기반의 부재이다.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

반협정(GATS)의 ‘Mode 4’ 규정은 서비스직 노동자의 임시 이동에만 제한되어 있고 국경간 인력이동의 아주 작은 부분에만 적용된다. 또한 이주노동자를 보호하고 인신매매를 퇴치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상당 수 있다.⁷⁰⁾ 그러나 국경간 인력이동에 관한 종합적인 다자기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의 부재는 몇 가지 이유에서 심각한 문제가 된다.⁷¹⁾

429. 국경간 인력이동은 지난 10년 동안 연간 천만 명 이상이 관련된 상당하고도 보편화된 현상이며, 관련된 국가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이동이 임시적이었지만, 다른 경우에는 이주가 영구 정착으로 이어졌다. 한때는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이동이 거의

70) 1990년에 채택된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은 2003년 7월에 발효되었다. 이는 1949년 고용을 위한 이주협약(ILO Migration for Employment Convention)(제97호) 및 1975년 이주노동자협약(ILO Migrant Workers (Supplementary Provision) Convention) (제143호)을 보완한다. 위 세 국제협약은 이주노동자의 권리 및 비정규적 이주(irregular migration)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준다. 그들은 인신매매, 밀입국 및 착취에 관한 최근에 채택된 유엔협약을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정치 맥락에서 운영된다. 위 유엔협약에는 유엔국제조직범죄협약(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2000),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를 방지, 억제 및 처벌에 관한 의정서(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2000), 영토, 영해, 영공상의 이주자 밀수방지협약(Protocol against the Smuggling of Migrants by Land, Sea and Air)(2000),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 대한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2000), 그리고 앞서 제정된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1951) 및 그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1967)가 포함된다. 현재까지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국가, 그리고 관련 있을 경우, 적은 수의 지역 경제조직이 이 협약들을 비준했지만(난민협약을 제외하고), 이들 도구들은 보다 종합적인 의제를 위한 중요한 요인을 제공해 준다.

71) 이 이슈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논의를 위해서는 Deepak Nayyar, “Cross-Border Movement of People,” in Deepak Nayyar (ed.) op. cit 참조.

지배적이었지만, 이제는 개발도상국간의 이동 측면도 두드러진다. 이는 선진국에서(상품, 서비스 및 자본의 국경간 이동과는 달리) 입국 통제를 강화하고, 또 이주를 장려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경간 이동 양상이 발생했다.

430. 이러한 이주 양상은 세계화의 심화와 분명 연계되어 있다. 운송비가 줄어들고 저렴한 단체관광(mass travel)의 도래로 인해 이동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장벽을 크게 줄였다. 정보통신기술의 혁명과 언론(media)의 전세계적 전파는 부국과 빈국 간의 생활수준 격차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켰고, 이로 인해 이주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었다. 중개인(intermediary) 및 대리인(agent) 등의 형태로 이 과정을 촉진하는 새로운 시장 제도가 부상하였다. 다국적기업들은 관리자들을 전세계로 이동 배치시키며, 전문 기능인력(specialized skills)을 찾기 위한 해외 ‘쇼핑’의 관행이 더 증가되었다. 어떤 고기능 전문 분야에 대한 노동시장은 이미 효과적으로 세계화되어 있다. 고등교육체제의 세계화가 이 추세를 강화시켜 주었다.⁷²⁾

431. 개발도상국의 관점에서는 국경간 인력이동에 관한 다자기반의 부재는 세계화된 경제를 지배하는 규칙에 또 하나의 빈틈이 있음을 반영해 준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선진세계로의 보다 자유로운 이주는 세계화의 혜택을 증가시키는 빠르고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자의 관점에서는, 이주에 관한 다자체제의 부재는 현재의 게임의 규칙에서의 불평등의 존재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세계화된 경제를 위해 설정된 규칙에서는 외국인투자자의 권리가 더욱 강화되었지만, 이주노동자의 권리는 이보다 관심을 훨씬 덜 받았다.

432. 국경간 인력이동 과정을 보다 더 정연하게 하고 이주자에 대한 착취를 제거하는 다자체제는 모두에게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인구가 고령화되고 그 수도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인구가 더 젊고 그 수도 증가하고 있다. 노동인력

72) Deepak Nayyar, *ibid.*

감소 그리고 부양 비율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재정의 어려움 등 고령화 인구의 여러 문제점들은 이주노동자 권리의 존중을 조건으로 하는 이주의 증가에 의해 줄어들 수 있다.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주가 저생산성 및 노동 잉여 국가에서 고생산성 국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 세계의 노동생산성은 향상될 것이다. 이는 해당 이주자 개인에게 이익이 될 뿐 아니라, 그들의 송금을 통해 고국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고, 이주자에 의해 기술이 이전되고 사업도 활성화될 것이다. 개발도상국으로의 송금은 현재 연간 750억 달러에 달하며(공적개발원조액의 1.5배에 해당), ‘이주자 효과(disapora effect)’는 몇몇 동아시아 국가와 인도의 첨단산업 및 기타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였다. 한마디로, 이러한 노동의 이동은 선진국 그리고 후진국 모두에게 상호 이익이 된다.

433. 국경간 인력이동에 관한 한, 정연한 형태의 다자간 합의구조가 없기 때문에, 상당 수의 심각한 이차적 문제들이 부상하게 되었다. 그 중 하나는 가난한 국가에서 부자 국가로의 두뇌 유출(brain drain) 문제다. 이 때문에 가난한 국가들은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유형(category)의 노동자들을 빼앗기게 되었고, 반면 이들을 훈련시키는 데 지출한 투자는 보상받지 못한다. 이와 동시에, 불법이주 그리고 범죄 조직에 의한 국제 인신매매가 급격히 증가했다. 전세계적으로 1,500만 명에서 3,000만 명의 불법 또는 미등록 이주자가 있는 것으로 예측되며, 그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듯 인신매매의 증가에서 특히 우려되는 것은 피해자의 많은 비중을 여성이 차지한다는 것이고, 이들은 흔히 성매매 및 유흥산업의 열악한 여건 속에 속박되어 있다. 모든 국제이주자의 절반을 여성이 차지하는 국제이주의 여성화 증대라는 맥락 속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 전에 여성들은 주로 부양가족으로 이주했지만, 이제 보다 많은 여성들이 생계부양자(breadwinner)로서 이주하고 있다. 그들의 취약성이 더 큰 것을 감안하면,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 문제가 더 시급해진다.

434.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제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국제

이주를 위한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견이 대립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대립의 절충은 관련된 비용과 혜택을 심각하게 평가하는 데 있다. 우리는 이주자 자신뿐 아니라 이주자의 고국 및 이주 대상국 모두에 대한 상당한 잠재 혜택에 대해 이미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 의견은 현지 노동자의 실업, 노동시장제도 및 사회보호체제의 혼란 그리고 사회적 응집의 약화와 같은 잠재비용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435.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국제이주를 지배하는 다자기반의 개발과 관련된 이슈는 이제 국제 의제 속에 확실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기반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이주 과정이 이주자의 고국 및 이주 대상국 모두에게 공정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정당한 이해를 고려하면서 상호이익이 되는 이주 기회의 증가를 원활화한다; 그 과정을 정연하고, 예측가능하고 합법적으로 만든다; 인신매매 및 기타 남용행위 등 특히 여성의 피해가 심한 남용행위를 제거한다; 이주노동자 권리의 완전한 보호를 보장하고 그들의 현지 통합을 원활하게 한다; 국제이주의 개발혜택을 극대화한다.

436. 확실한 혜택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국경간 인력이동에 관한 다자기반 개발은 실현 가능한 사업이라고 믿는다. 몇 가지 유망한 아이디어가 이미 제시되었다.

437. 이 중 다수는 두뇌 유출 문제와 관련이 있다. 숙련노동자의 선진국으로의 이주는 노동 수출을 하는 개발도상국에게 이익과 비용 둘 다 발생시킨다. 해당 노동자는 당연히 이익을 얻고, 또 노동자가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리고 그 전부터 유지하는 인간관계를 통해 그들이 습득한 기능, 기술적 노하우 그리고 사업지식 등이 고국에게 이익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항상 자발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도 아니다. 잠정 귀국(temporary spell)을 포함하여 노동자들의 귀국을 원활화하는 조치를 채택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이 얻게 되는 혜택이 증가할 수 있다. ‘숙련노동의 순환(skills circulation)’

과정을 촉진할 조치로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는 이주자의 고국과 이주 대상국 등 양국이 이중시민권을 수용하는 조치, 비영구적(non-permanent) 이주자에 대해 입국 조건을 완화하는 조치, 숙련 이주노동자의 귀국을 격려하는 세제 및 기타 인센티브 제공 조치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유형의 ‘숙련 노동의 순환’이 증가하게 되면, 이는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선진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의 숙련 노동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가난한 국가에서 부자 국가로의 두뇌 유출로 인한 현재의 불공평한 상황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⁷³⁾

438. 그러나 개발도상국이 부담하는 비용도 있는데, 이는 부족한 숙련 노동자들을 선진국에게 빼앗길 경우에 특히 그렇다. 이 경우, 인력의 유출이 기능의 부족 상태를 더 악화시킨다. 문제는 교육 및 보건과 같은 필수적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더 심각하다. 숙련 노동자가 고국에 남도록 하게 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기회를 증대시킬 국내 정책이 해결방안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선진국이 자국의 고용정책 마련시 필수적 서비스 분야에서 인력부족에 직면한 개발도상국과 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는 제안도 있었다.

439. 또 다른 흥미롭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는, 국제이주의 개발 관련 혜택을 증가시키기 위해 채택될 수 있는 조치와 관련 있다. 여기에는 송금 비용과 위험을 줄임으로써 이주노동자가 고국 송금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주노동자들이 고국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이주대상국은 이주노동자들이 사회보장부담금을 고국으로 송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주를 통한 이익의 일부가 해당 이주노동자의 기능 및 교육에 투자한 국가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안되었다. 그 중 간단한 것을 살펴보면, 이주노동자가 납입한 모든 소득세의 일부를 개발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73) Deepak Nayyar (ed) op. cit.

440. 그러므로 다자 차원의 행동을 위한 대규모의 생산적인 의제가 존재한다. 국경간 인력이동과 관련된 이슈와 문제들은 한 국가가 단독으로 행동하거나 일방적으로 행동해서 해결될 수 없다. 이 의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 차원의 행동을 권고한다.

441. 첫째는 국제협약과 구속력이 있는 의무(binding obligation)와 관련 있다. 우리는 기존 제도의 기초를 토대로 하여, 다자 차원의 공약을 활성화하고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기본 권리 및 보호, 인신매매, 차별 및 착취 등의 이슈를 포함하여 몇몇 분야에서 국제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이슈에 대한 행동은 관련 다자기구, 특히 ILO 그리고 인권 및 범죄 예방과 관련된 유엔기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42. 둘째는 이주자의 고국과 이주대상국 간에 공동이해에 관한 정책을 논의하는 대화와 관련 있다. 이러한 대화의 목표는 절차, 권고 및 구속력이 없는 규범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으로서, 이는 비준된 협약에 따른 공식적 의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양자 또는 복수 기반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지역 차원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화는 다음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노동의 부족 및 잉여에 대한 정보교류
- 노동수출 국가간 정책조정 개발
- 노동수입 국가간 어느 정도의 정책조화 형성
- 중개자(intermediary)에 부과될 규율체제(regime of discipline) 마련을 위한 노력
-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체제 구축
- 불법이주자 문제 해결

443. 이들 대화는 일시적 이주에 관한 규칙, 두뇌 유출, 이주가 사회경제 발전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사회보장 및 노동시장정책 간의 조율 등 주요 정책이슈에 대한 공동접근 방안을 구축하고 이러한 사안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444. 세 번째 차원은, 국경간 인력이동을 위한 보다 일반적인 제도적 기반을 향한 준비 과정에 착수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는 국경간 이동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임의로 변하는 재량이 아닌, 규칙에 기초한 투명하고 통일된 체제를 형성하는 것이다. 궁극적 목표는 이민법 및 영사 업무를 위한 다자체제에 대해 정부들이 서로 협상하여 국경간 인력이동을 총괄하는 체제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품, 서비스, 기술, 투자 및 정보의 국경간 이동에 관한 이미 존재하거나 현재 논의 중인 다자체제와 유사할 것이다.

445. 관련된 모든 국가 및 이해간 정보와 견해의 정기적 교류를 위한 세계 포럼이 필요하다. 그러한 포럼은 문제와 기회 모두를 파악하도록 도움을 주고 인력의 이동이 정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부뿐 아니라 고용의 양 당사자도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이 의제를 가장 잘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기 위해 제IV부에서 우리는 이 이슈에 관한 정책개발을 위한 대화를 제안한다.

446. 이 의제를 진전시키는 것은 사람의 이동을 담당하는 기존의 다자기구, 특히 ILO, 국제이주기구(IOM), 유엔의 인권 메커니즘 및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등이 강화되고 이들간의 조정이 개선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제네바 이주그룹(Geneva Migration Group)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Dr. Mamphela Ramphele과 스웨덴의 Mr. Jan O. Karlsson이 공동 의장을 맡아 새로이 설립된 국제이주에 관한 세계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International Migration) 등 현재 진행 중인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ILO가 앞장설 것을 요구하고, 2004년 제네바에서 개최될 ILO 총회 때 이주노동에 대한 일반논의(General Discussion)의 결과를 기대한다.

III.2.3 개선된 국제정책

◆ 서론

447. 보다 공정한 규칙을 위한 우리의 제안이 지역, 국가 및 지방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행동과 합쳐지면 모두를 위한 세계화인 우리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상당한 공헌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충분한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 공평한 경쟁조건(level playing field) 하에서도 많은 국가, 특히 저개발국가는 세계화된 경제 속에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기회와 혜택이 널리 배분되고 공동 목표가 실현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상당히 강화된 국제적 행동이 요구된다. 이 섹션에서 우리는 몇 가지 주요 목표 달성을 위한 보다 잘 조정되고 통합된 접근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448. 우리는 우선 세계 목표 및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자원, 특히 새천년 개발 목표(MDG)를 검토하고, 이를 증대시키고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449. 그런 다음, 세계화의 사회적 차원을 다루기 위해 행동이 요구되는 주요 국제정책 영역을 살펴본다. 우리는 상당한 개선이 가능하다고 확신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안사항, 특히 역량 강화, 안정보장 및 양질의 노동 같은 개념을 통해 제시한다.

◆ 전지구적 목표를 위한 자원

450. 성장과 개발 목표의 달성 여부는, 우선, 국가 지배구조의 질과 국내 자원의 동원에 달려 있다. 섹션 III.1에서 우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행동들을 강조했다. 그러나 많은 개발도상국에 있어, 그 모든 이슈를 진전시키는 것은 무거운 짐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상당한 외부 자원의 지원 없이는 달성할 수 없다. 개발을 위한 보

다 많은 자원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사안이 국제 의제에서 높은 순위를 지키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몬테레이 합의서(Monterrey Consensus)⁷⁴⁾에는 “재원의 동원 및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가 및 국제적 경제조건을 실현하는 것이 21세기를 모두의 개발을 위한 세기로 만드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2001년 개최된 저개발국에 관한 3차 회의(Third Conference on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에서 193개 참가 정부는 “공적개발원조의 감소 추이를 역행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합의하였다.

451. 오늘날, 아래에서 논의될 새천년 개발 목표(MDGs)는 우리의 이해를 돕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준다. 예측에 따르면, 모든 국가들이 2015년까지 새천년 개발 목표를 달성하려면, 적어도 연간 500억 달러의 추가적인 공적개발원조가 필요할 것이다.⁷⁵⁾ 몬테레이 회의에서 기부국들이 2006년까지 공적개발원조를 160억 달러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으나, 그 공약을 이행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필요한 총액의 3분의 2 이상이 부족하다. 또한 새천년 개발 목표는 최소의 수치를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국제자원이 새천년 개발 목표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452. 이 자원들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는 공적개발원조(ODA), 채무구제(debt relief), 그리고 가능한 한 새로운 공적 자원(public sources) 및 민간투자를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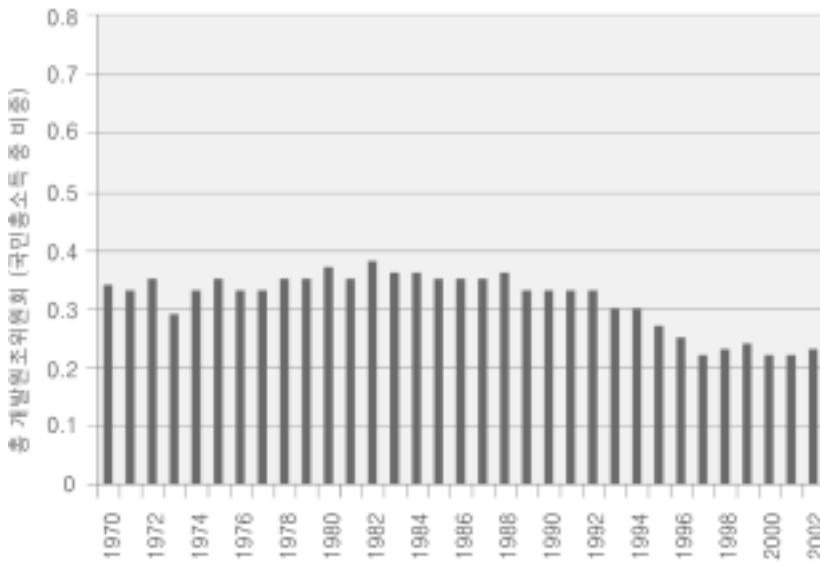
공적개발원조(ODA)

453. 최근 몇 년 동안, 순 ODA 흐름은 감소해 왔다. 2002년 회복세가 시작되어 하향 곡선이 이미 바닥을 쳤다는 조짐이 있기는 하지만, 몇

74) 몬테레이 합의서는 2002년 3월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개최된 개발재원에 관한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에서 채택된 공식 문서다.

75) 유엔총회에서 재원개발 고위급 패널의 권고사항, A/55/1000. 2001년 6월.

(그림 21) 개발원조위원회 국가가 개발도상국 및 다국적기구에 제공한 순 공적개발원조: 1970-2002



주: 개발원조위원회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그리고 미국이다.

출처: OECD, *DAC Journal*(various issues).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국별 ODA 수준은 현재 평균 GDP의 0.23%로서 장기 목표인 0.7%를 훨씬 밑돌고 있다(그림 21). 0.7%의 목표를 달성하면, 원조가 연간 1,000억 달러 증가할 것이다. 우리는 이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을 재청한다. 만약 모든 국가들이 지난 30년 동안 자국의 목표를 달성했었다면, 추가로 2조 5,000만 달러가 개발을 위해 마련되었을 것이다.

454. 국가들이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여기에는 국내의 실업 및 불안정과 같은 기타 우선사항에 대한 국민의 우려(public concern) 그리고 원조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몇몇 국가들의 믿음 등이 포함된다. 결국, 재원은 선진국의 납세자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들의 연대감을 장려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정치적으

로 실패한 부분이 있다. ODA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⁷⁶⁾되었으나, 많은 국가에서는 정치적인 대응이 너무 약했다. 정치적인 과정은 정부가 보다 멀리 있는 국제적 공약사항보다는 가까운 국민을 우선하도록 만든다. 우리는 선진국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 공약을 핵심정책 기반의 일부로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455. 그러나 간곡한 권고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새로운 이니셔티브 또한 필요하다. 새천년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론을 동원하는 것은 주요 글로벌 이슈의 정치적 프로필(profile)을 향상시키는 방법의 한 사례다. 가시적인 우려사항인 에이즈나 아동노동에 대한 세계적 압력의 증가는 새로운 재원 공약을 만들어냈다.

456. 대중의 지지는 공약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많은 비정부기구(NGO)들이 중요한 주창자 역할을 수행하며, 부자 국가가 원조, 무역 및 기타 정책을 통해 개발을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를 측정하는 개발공약지수(Commitment to Development Index)와 같은 연구 노력은 그 메시지를 강조해 준다.⁷⁷⁾ 공적개발원조가 감소하려는 빈곤과 불의는 세계의 불안정과 불안의 원천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이에 대해 그들의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457. 새천년 개발 목표 도달을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공적개발원조의 공급이 필요할 것이다. 너무나 많은 원조금이 빈곤 감소 목표보다는 전략적인 지정학적 목표의 동기로 인해 지급되었다. 많은 부분이 최빈

76) OECD, *Public opinion and the fight against poverty*(Paris, 2003) 참조. 한 세계 조사에서는 10명 중 7명이 세수익이 세계 빈곤층의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에 확신한다면 더 많은 세금의 납세를 지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Global Issues Monitor 2002*(Toronto, Environics International, 2002) pp. 67-68 참조.

77) Foreign Policy Magazine and the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Ranking the Rich", in *Foreign Policy*, September-October 2003.

국가가 아닌 중간소득 국가에게 돌아가며, 원조금은 흔히 기부국의 수출업자에게 혜택을 주고 홍보(visibility)가 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더구나, 해외 원조는 개발지원금의 준비, 전달 및 모니터를 위한 다양한 기부자 요건이 부과되기 때문에 매우 단편적인 방법으로 전달되며, 그로 인해 그의 영향은 흔히 약화된다. 이는 불필요하게 높은 거래비용을 발생시키고, 국가 체제를 저해하고, 수혜 국가의 제한적인 공공행정 역량을 압도한다. 기부국의 정체를 상실시키지 않으면서 점진적으로 양자 경로에서 다자 경로로 전환하는 것이 중복, 모순 및 원조의 효과 감소 따위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458. 기부자들은 가장 가난한 국가 그리고 새천년 개발 목표 달성에 원조를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원조는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충분히 잘 지배되는 국가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원조는 국내 개발(home-grown) 전략을 지지하고 수요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 기부자는 국내 지배구조를 대체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기부국 내 ODA를 위한 정치적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의 조건부는 불가피하지만, 이것이 국가의 의사결정을 저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개발정책의 국가 소유라는 개념 전체가 조건부에 의해 저해될 수 있다. 원조금은 신뢰성 있고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공약되어야 하며, 기부자 및 수혜자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흔히 기부국 및 수혜국내 보다 많은 의회의 감시를 위한 여지가 있다. 조건이 붙은 원조(tied aid)는 수혜자에게 보다 효율적이지 못하고 부패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효과적인 원조는 조건이 없어야 한다. 지방비용(local expenditure) 및 경상비용(recurring expenditure), 특히 보건 및 교육 부문의 재정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더구나, 개발원조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부자는 자국의 절차를 상대국 체제의 절차와 조화가 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모든 기부국이 2003년 2월의 조화에 관한 로마 선언문(Rome Declaration on Harmonization)을 채택했다. 이제 그것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채무 구제

459. 대부분이 아프리카에 위치한 많은 빈곤 국가들의 외채가 비현실적으로 높은(unsustainable) 수준에 있다. 1990년과 2001년 사이, 외채과도국(severely indebted country)의 경우, 국민총소득(GNI) 중 외채의 비중이 88.1%에서 100.3%로 증가하였다.⁷⁸⁾ 2001년에 저개발국(LDC)들은 국내총생산(GDP)의 거의 3%를 부채 상환(debt servicing)에 지출했다. 이는 채무 구제가 얼마나 빨리 많은 자원이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460. 해당 채무국이 채무가 정리된 상태(clean slate)에서 여러 가지 개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 부채 문제가 가능한 한 빨리 해결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IMF와 세계은행(World Bank)이 1996년에 출범시키고 1999년에 강화된 채무과다빈곤국(HIPC)을 위한 부채탕감 이니셔티브(Debt initiative)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결과다. 그러나 이 또한 심화되고 가속화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의 중간 단계(intermediate phase)에 도달한 대다수의 국가들이 아직 마지막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마저도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지속가능한 외채 부담의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⁷⁹⁾ 부채 무효화를 위한 ‘주빌리 2000(Jubilee 2000)’ 캠페인은 이것이 전세계적으로 큰 지지를 받고 있는 결정적인 이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461. 채무 경감 과정은 빈곤감축전략서(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s: PRSP)의 목적처럼, 국가가 설계 및 소유해야 하고 국가의 국민에게 책임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부채 경감 및 무효화에 붙여지는 조건⁸⁰⁾은 경감액(savings)이 사람들의 수요에 대응하는 성장추진, 고용

78) World Bank, *Global Development Finance*, 2002, 2003.

79) UNDP의 *The Human Development Report 2003*이 제시한 제안에 따르면, 채무과다 빈곤국(HIPC)에게는 자연재해 또는 상품가격 폭락 등의 외부충격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부채 상환이 GDP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외부금융 및 채무 구제가 제공되어야 한다.

80) 부채 무효화는 1995년 사회개발정상회담(Social Summit)에서 행동계획의

창출 및 빈곤감축 관련 프로그램에게로 전달되는 것을 보장한다면 정당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민영화에 대한 독단적 요구 및 공공서비스 감축과 같이 효력이 없었던 구조조정 정책을 재생시켜서는 안 된다. 브레턴-우즈 기관들의 수반들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고 지적하였으며, 최근 증거에 따르면 채무과다빈곤국(HIPC)과 관련된 교육 및 보건에 대한 공공지출(public spending)이 인상되었다. 그러나 정당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그래서 삭감조건(conditionality)의 정치적 결과들이 매우 자세히 모니터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부의 손이 묶여 있으면, 정치체제와 민주주의의 신뢰성이 피해를 본다.

462. 채무 구제가 선진국으로부터의 공적개발원조의 증가를 동반하도록 보장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저개발국의 잔여 부채 문제의 많은 부분이 다자적 원천(multilateral source)과 관련 있다. 이러한 부채를 상환하지 않으면, 이는 향후 대출에 대한 가용자원을 줄어둘게 한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 기부국으로부터의 재정지원(funding)의 인상이 필요하다. 또한, 상품가격(commodity price)의 폭락으로 부채가 비현실적(unsustainable)이라고 판단된 국가들에게 특별한 고려를 해주어야 한다.

국제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공적 자원

463. 우리는 GDP 0.7%의 공적개발원조의 실현 및 채무 구제가 특히, 우선순위 목표인 빈곤 감소를 위한 새로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가장 유망하고 빠른 경로라고 믿으며, 노력이 여기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들은 확고히 공약을 했고, 이들이 그 공약을 고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모두의 책임이다. 그러나 재정지원의 추가적 원천 또한 필요하다. 국가들이 세계화된 경제에 참여하려는 노력을 지원하고 다른 중요한 세계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한 보다 큰 규모의 자원의 이용이 가능하지 않는 한, 보다 공정한 세계화의 목표는 달성되지 못한다.

제7공약에서 이미 예견되었었다.

추가적인 재원을 발생시키고 현재 또는 미래의 공약사항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면, 보다 폭 넓은 선택안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464. 중요한 첫 단계는 국내의 재원 동원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적인 세제 관련 협조의 강화가 될 것이다. 섹션 II.2에서 보았듯이, 세계화는 세금 징수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 더구나, 역외자본시장은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선택권을 증가시켜 주었고 탈세 퇴치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세금 피난처의 광범위한 사용은 국가로부터 사회 및 경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자금을 박탈한다. 옥스팜(Oxfam)은 개발도상국의 세수익 손실액을 연간 500억 달러로 예측하였는데, 이는 총 개발원조와 맞먹는 액수이다.⁸¹⁾

465. 조세담당 국가공무원과 국제기구 간 조세 관련 논의를 격려 및 촉진하기 위한 조세 관련 국제대화(International Tax Dialogue)가 이미 IMF, OECD 및 세계은행에 의해 이미 출범되었다.⁸²⁾ 많은 국가와 전문가 사이에는 국제적 조세 협력을 위한 종합적이고 접근 가능한 기반이 형성될 필요성이 있고, 유엔이 이를 위한 적합한 포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존재한다. 유엔 사무총장은 조세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전문가 실무단(Ad Hoc Group of Expert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Tax Matters)이 정부 전문가위원회 또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에 새로운 특별위원회 형태의 정부간 기구로 업그레이드될 것, 그리고 이를 소규모의 전문 사무국이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우리는 모든 국가의 조세체제의 보전성을 강화하고, 개발을 위한 공적재원을 증가하고, 세금 피난처, 돈세탁 및 테러행위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항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인으로서 이 이니셔티브를 지원한다.

466. 상당 기간 동안 검토되고 있는 제안은 세계화된 경제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특별인출권(SDRs)의 정기적 발행을 재개하는 것이다.

81) Oxfam, *Tax Havens: Releasing the hidden billions for poverty eradication* (Oxford, Oxfam, 2000).

82) www.itdweb.org

이 재원은 자발적으로 개발도상국으로 할당되어 투자를 위한 추가적 재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승인된 국제통화기금협정 4차 개정(Fourth Amendment to the Articles of Agreement of the IMF)은 즉시 비준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누적 특별인출권의 배분이 배가될 것이다.

467. 또 다른 제안은 국제개발신탁기금(International Development Trust Fund)을 설립하는 것이다. 기부국은 국제금융기금(IFF)에게 연례 재정지급을 위한 일련의 장기 약정(long-term pledge)을 한다. 이 약정(pledge)을 기반으로 IFF는 채권을 발행하여, 이들 장기적 소득원천을 즉시 이용 가능한 개발 자본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영국 재무장관 고든 브라운(Gordon Brown)이 처음 제시한 이 제안은 현재 연간 500억 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개발원조액을 2015년에는 1,000억 달러로 인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공약 외에 새로운 재원을 추가로 발생시킨다면, 이 아이디어는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468. 또한 세계적 차원에서 새로운 조세를 위한 다양한 제안이 있는데, 그 중 많은 것들이 논란의 대상이 된다.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투기자본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된 토빈세(Tobin tax)인데, 그 외에도 더 많이 있다. 그 중 한 제안사항을 살펴보면, 세계 자원의 이용, 특히 전세계가 공유하는 자원(global commons)의 이용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탄소세(carbon tax)의 근거 논리로, 이는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공헌하게 될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2003년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에서 자크 시락(Jacques Chirac) 프랑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새로운 재정 원천을 찾자. 예를 들어, 연대감을 갖게 하기 위하여 세계화에 의해 발생한 상당한 부에 대한 과세는 필요하다.”⁸³⁾ 한편, 세계 복권(global lottery)도 수익원으로 제안되었다.

83) “Let us find new sources of financing. For example, a necessary levy, in the interest of solidarity, on the considerable wealth that has been generated globalization.”

469. 역사적으로, 지방, 국가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지역 차원에서의 행동을 위한 책임이 커짐에 따라, 재원을 조달하는 능력도 이에 상응하게 증가하였다. 멀지 않아, 세계적 책임의 성장 또한 유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세계적 차원의 조세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쟁을 차치하고라도, 이것을 도입하는 데 있어 현재 극복하기 어려운 정치적 장벽이 존재한다. 기술적으로 타당한 제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세 대상이나 방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요점은 세금은 국가 내의 정부가 징수하는 것인데, 조세 부담이나 재원 활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인 권한을 가진 세계적 제도기반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실용적 행동에 대한 논의가 보다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470. 물론,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내 군사지출을 개발을 위해 재배분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2001년 전세계 총 군사지출비는 8.39억 달러로 추정된다. 군사지출 상위 15개 국가 그 지출의 단 5%만 ODA로 전용하는 것에 동의하면, 그 재원은 연간 3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 액수는 분명 군사지출을 통해 사용되는 것보다 세계평화와 안전에 더 큰 공헌을 할 것이다.

471. 그러나 정부들이 세계 차원에게 재원을 조달을 위한 공약에 동의할 하지 못하면, 일반시민들이 할 수 있다. 그들은 19세기 유럽의 복지 국가가 시작될 당시 상부상조 프로그램(neighbourhood schemes)과 공제조합(friendly societies)의 경우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연대(solidarity)를 위해 전지구적 책임을 지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많은 비정부기구(NGO)들의 개발사업이 자발적 기부금을 기초로 수행되는데, 어떤 것은 큰 규모이다. 예를 들어, 옥스팜(Oxfam)은 연간 예산이 3억 달러 정도이고 ‘월 기부회원(monthly pledge donor)’ 수가 100만이 넘는다. 우리는 또한 세계사회신탁(Global Social Trust)⁸⁴⁾ 아이디어와 같이 자발적 기부가 국제 결속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환

84) 이는 ILO가 제안한 것으로서 개발도상국의 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선진국의 자발적인 지원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ILO, *Exploring the feasibility of a Global Social Trust*, GB.285/ESP/4, November 2002 참조.

영한다. 개인이 국내 세금신고를 할 때 해당 자원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러한 계획으로의 자발적 기부를 촉진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될 수 있다. 거듭 말하지만, 그러한 재원은 기존 ODA 공약에 추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 ODA 공약 또한 NGO의 사업을 자주 지원한다.

472. 재단이나 개인 재력가 등의 민간 자선 이니셔티브 또한 수년 동안 세계 사회 목표에 중대한 공헌을 해왔다. 미국내 재단에 의한 국제 지원 금(grant)만 2000~2002년 기간 동안 연평균 30억 달러를 상회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3분의 2가 보건, 교육, 국제개발 및 환경 관련 프로그램에 사용되었다.⁸⁵⁾ 국제기부는 기타 기부에 비해 빠르게 성장했는데, 이는 주로 Ford Foundation, 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 David and Lucile Packard Foundation, United Nations Foundation, John D. and Catherine T. MacArthur Foundation, Rockefeller Foundation 등 몇몇 대형 재단에 의한 기록적인 기부 공약이 동기가 되어서 성장하였다. 그러나 미국내 총 자선기부금 중 단지 2% 미만이 해외로 간다. 많은 조직 및 네트워크는 세계 자선기부의 미개발된 잠재력을 적극 개발해 내고 있다.⁸⁶⁾

저소득국으로의 민간자본의 흐름

473. 국경간 투자는 급증했다. 오늘날, 개발도상국으로 유입되는 순 자본 흐름의 75%가 민간자본이다. 그러나 제II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개발국은 금융의 세계화로부터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한 것 같다. 민간 자본 흐름은 여전히 거의 소수의 중간소득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474. 민간자본 유치 방법과 이것이 개발에 어떻게 공헌하는지에 대해서는 앞 섹션에서 논의했다. 섹션 III.1은 정부가 기능, 인프라 및 제도

85) Loren Renz and Josefina Atienza, *International Grantmaking Update*, The Foundation Center, October 2003(www.fdncenter.org/research) 참조.

86) 자세한 명단은 Global Philanthropy Forum 웹사이트 참조(www.philanthropyforum.org).

에 투자하고 민간투자자의 동기(motivation)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섹션 III.2.2는 투자를 위한 규칙의 개발친화적 다자기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두 요인은 국가투자 지침, 공동원칙, 투자 경로 등 보다 많은 민-관 이니셔티브 및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요인에는 창업 회사(start-up)에 재원을 지원(channel)해 주는 세계 투자기금, 소액 신용대출 이니셔티브 그리고 사회책임 이니셔티브가 포함될 수 있다. 상당수의 사회책임투자 이니셔티브⁸⁷⁾가 성공을 거둔 것은 이 경로가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며, 이 이니셔티브가 재원을 저소득 국가로 유입시키는 방법을 개발하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민간자본 흐름과 공공자본 흐름의 상호 보완성 또한 의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475. 사회적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양질의 데이터가 중요하다. 신용평가기관은 사회·정치적인 지표보다는 경제지표를 강조하며, Calvert-Henderson 지표 또는 Money Matters 연구소의 국부의 삼각형 지표 (Wealth of Nations Triangle index)의 경우에서 시도된 바와 같이 장기적 전망과 안정에 대한 보다 정확한 그림을 얻기 위한 평가 기준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⁸⁸⁾

◆ 주요 목표 달성

476. 밀레니엄 정상회의(Millennium Summit)에서 각국 정상들은 2015년까지 보다 안전하고 보다 풍요롭고 공평한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협조할 것을 동의하였다. 그들은 8개의 세계 목표를 채택했는데, 이 모두

87) 미국에서는 전문투자관리하에 있는 매 9달러당 1달러가 사회책임투자이며, 그 액수는 2달러를 상회한다. Social Investment Forum, 2003 Report on 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 Trends i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www. socialinvest.org](http://www.socialinvest.org) 참조.

88) H. Henderson, J. Lickerman and P. Flyn (eds), *Calvert-Henderson Quality of Life Indicators*(Bethesda, Calvert Group, Dec. 2000). Money Matters Institute, *Wealth of Nations Triangle Index*(Boston, March 2002).

가 2015년까지 달성되는 것이다. 이 목표는 세계 공동체 전체, 즉 부국과 빈곤국 모두가 공약한 것이다. 우리는 이 목표들을 양호한 세계를 위한 최소 조건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이를 기초로 세계화된 경제를 위한 사회경제적 기반을 향해 전진해야 할 것이다.

■ 새천년 개발 목표

2000년 9월, 189명의 각국 정상들은 선진국과 후진국을 포함한 그들의 국가들이 2015년까지 일정이 확정된(time-bound), 측정 가능한 일련의 목표를 달성할 것을 공약했다:

- 극심한 빈곤 및 기아 퇴치
- 보편적 초등교육의 제공
- 남녀평등 촉진 및 여성의 힘 강화
- 어린이 사망률 감소
- 산모 건강증진
- 에이즈,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 환경적 지속가능성 보장
- 개발을 위한 세계 파트너십 개발

477. 섹션 III.1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들 목표 중 많은 것들이 국내 정책에 달려 있다. 그러나 새천년 개발 목표는 또한 국제적 행동에 관한 세계의 공약을 나타낸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보다 공정한 세계로 향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자원(resource) 수준으로는 그것들이 달성되지 않을 것이다.

478. 이 목표 중 많은 것들이 이미 여러 번 해왔던 공약들, 특히 1990년대 주요 세계회의의 행동계획의 공약들을 재강조하는 것이다.⁸⁹⁾ 이

89) 특히 리우 선언과 의제21(유엔환경개발회의),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세계인권회의), 코펜하겐 선언 및 행동계획(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의), 카이로 선언과 행동계획(카이로 인구개발회의), 베이징 선언 및 행동계획(베이징 세계여성회의) 참조.

들은 또한 사회적·경제적 및 문화적 발전에 필요한 사람들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도구들을 반영한다.⁹⁰⁾ 그러한 보편적 인권들이 기초가 된다. 그것들은 보편적 가치 및 원칙의 법적인 표현인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범과 기준이다. 이들은 정부, 시민, 기업 및 국제기구를 포함한 사회적 행위자들이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기반을 제공해 준다.⁹¹⁾

479. 사회개발의 주요 목표 중 보건 분야가 특히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았다. ‘모두를 위한 보건’이라는 개념은 의약품 가격을 더 적정하게 책정하는 것에 대한 최근의 논쟁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전염병의 빠른 전파는 우리의 상호 연결된 세계의 전지구적 병폐 중 하나다. 가장 최근에, 세계보건기구(WHO)의 사스(SARS)에 대응한 신속한 행동은 이 전염병의 전파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세계보건기구가 후원하는 거시경제와 보건에 관한 위원회(Commission on Macroeconomics and Health)는 세계 빈곤층의 필수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강화시키기 위해 부국이 대규모의 금융 공약을 해야 하며, 이는 경제성장의 가속화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이 논리의 역도 사실이다. 아프리카에서 에이즈의 비극적인 효과에서 알 수 있듯이, 부실한

90) 여기에는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발전에 관한 권리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아동의 권리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LO 협약 제169호 토착민 및 부족민에 관한 협약(ILO Convention No. 169 on 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그리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이 포함된다.

91) www.unhchr.ch 참조. 그리고, 세계화와 인권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Mary Robinson, “Making Globalization Work for all the Worlds People”, speech delivered at the Aspen Institute Summer Speakers Series, Aspen, Colorado, July 2003 참조.

보건은 개발을 저해한다. 에이즈는 개발이익을 침식하고, 이의 위험은 한 세대 전체를 무력하게 만든다. ILO는 전세계적으로 약 2,600만 명의 노동력 인구(15~49세)가 에이즈에 감염되었다고 예측한다. 아프리카에서는, 1,100만 명의 아동이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을 에이즈로 잃었으며, 이 수치는 2010년에는 2,0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 에이즈 감염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아프리카에서는, 에이즈 감염자 중 58%가 여성이고, 에이즈 감염 10대 청소년 중 74%가 여자 아이다.⁹²⁾ 이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 출범한 이니셔티브는 즉각적인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이미 필수약품(essential medicine)에 대한 접근과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을 연계한 논쟁에 대해 언급했다. 2005년까지 300만 명에게 항바이러스 치료(antiretroviral therapy)를 제공하기 위한 유엔에이즈퇴치계획(UNAIDS),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에 대항하는 글로벌 펀드(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그리고 세계보건기구(WHO)의 '3 by 5' 전략과 같은 다자제도 및 프로그램들은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절한 자원이 조달되어야 한다.

480. 우리는 또한 본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대해 언급하였다. 세계화는 천연자원과 환경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었다. 대규모 삼림 파괴와 온실가스의 배출은 세계적 기후 변화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지구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과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세계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선언은 생태적, 사회적·경제적 목표 간의 상호 보완성을 나타내는 행동을 위한 기반을 제시했다. 환경 목표는 세계화의 사회적 차원을 보완하는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481. 우리는 이미 상당한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들 이슈에 대해 더 논의하지는 않는다. 그 대신 특히 보다 큰 국제적 노력을 필요로 하는 세계화와 긴밀히 연관된 목표들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첫

92) UNAIDS가 발간하는 *AIDS Epidemic Update 2003*는 에이즈의 전반적인 진전 상황에 대한 보고를 제공해 준다.

째는 교육, 기능 및 기술적 역량이고, 둘째는 안정과 적응 관련 이슈이며, 셋째는 양질의 노동이라는 목표다.

교육, 기능 및 기술적 역량

482. 오늘날의 세계화된 경제 및 정보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사회적 통합(social inclusion)과 생산성의 관건이고, 연계성(connectivity)은 세계 경쟁력의 관건이다. 그러나 우리의 불공평한 세계에서 네트워크화된 경제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편입시킬 수 있지만, 지배적인 모델에 맞지 않는 사람과 세계의 지역은 배제한다.

483. 기술적 역량은 필수적이다. 국가들은 개발을 위한 정보를 처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신 인프라와 생산체제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환경에 참여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또 그 안에서 창의적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이용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정하고 포괄적인 세계화의 중심에 교육과 기능이 있는 것이다.

484. 그러나 세계의 많은 곳에서는 이의 기초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보편적 초등교육의 제공은 새천년 개발 목표 중 그 실현이 가장 멀리 있는 목표 중 하나다. 정보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중등 이상의 교육에서 개발되는 기능이나 역량의 경우, 그 거리는 훨씬 더 멀다.

485. 교육은 사회의 핵심 요소이고 민주적 선택의 기초이다. 국가간 교육기회에 있어서 큰 차이는 세계적 불평등의 근본적 원인이다. 더구나, 국제이주로 인해 부국들은 빈곤국에서 이루어진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로부터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로써, 부국은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곳의 교육제도를 지원해 줄 책임을 갖게 된다. 그러나 세계은행의 수치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교육 예산의 재정 중 3%만이 국제적 원천에서 제공된 것이다.

486. 우리는 이 분야에 대한 국제적 행동이 강화되기를 요구한다. ‘모

두를 위한 교육' 이니셔티브("Education for All" Fast Track initiative)는 우선순위 의제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목표는 2000년 4월 다카(Dakar)에서 개최된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에서 한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다. 즉 2015년까지 모든 아동이 완전하고 자유로운, 그리고 양질의 의무 초등교육을 받고 성차별이 철폐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에 대한 국제적 금융지원이 상당히 증대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을 위한 양 국가간 원조의 흐름은 2000년에 35억 달러로 하락했는데, 이는 1990년과 비교하여 30%의 실질적 하락이다.

487. 우리는 또한 저소득 국가들의 빠르게 기술 역량을 향상하도록 도와주는 야심적인 제안들이 더 많아야 한다고 본다. 중요한 수단 중 하나는 선진국의 교육기관을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에 관여시키는 것이다.⁹³⁾ 원격교육은 개발도상국을 위한 강력한 툴(tool)이 될 수 있다. 즉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을 위해 많은 투자를 요하는 물리적 인프라의 필요성이 감소되고, 그 대신 투자는 통신장비 분야에서 이루어지며, 교과과정과 강의는 지역적 이니셔티브를 통해 제공된다. 글로벌 원격교육 네트워크(GDLN)는 지원을 받을 만한 이니셔티브 중 하나다. 이는 개발과 빈곤 감소에 초점을 두며 원격교육 기술 및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기관들의 세계적 네트워크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들이 기술적 역량을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적응, 안정 및 사회보호

488. 경쟁적인 국제경제에서는 보호된 국내 시장보다는 급격한 변화에 대해 더 취약하다. 세계화는 국가 생산 과정에 대한 빈번한 적응의 필요성을 유발하며, 이에 따라 일자리 및 남녀 모두의 생활 전략에 대한

93) 그 예로, Manuel Castell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and global development", keynote address at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New York, 12 May 2000 참조.

적응의 필요성을 유발한다. 적응은 시간이 걸리고, 생산체제의 재편 및 새로운 기회의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정책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489. 이는 섹션 III.1에서 논의한 일련의 집중된 국내 정책을 요구한다. 소득을 안정화하고 달리했다면 배제되었을 집단에게 세계화의 이익을 배분하고, 새로운 역량의 개발을 지원하는 사회보호제도가 최소한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세계의 가정 중 80%가 사회보호를 거의 또는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100년 전 세계화의 물결은 특히 유럽과 미국의 사회보호제도를 강화하는 것과 연관되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오늘날의 경향은 정반대이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많은 사회에서는 구조조정 프로그램, 느린 성장 또는 국가예산 제한으로 인해 사회보호제도가 재정 압박을 받고 있고, 이러한 압박은 인구통계의 변화로 더 가중된다. 공공지출 축소에 대한 압박이 생길 경우, 주요 표적 중의 하나가 사회적 이전(social transfers) 항목이다.

490. 국제적 행동이 이제 필수적이다. 기부자 그리고 국제 및 지역 금융기관들은 개발도상국의 국가 사회보호제도의 개발에 공헌하고 보다 공정한 적응 그리고 세계화에 따른 이익의 보다 공정한 배분을 장려할 수 있는 재훈련 및 경제 구조조정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민간 차원의 연대(solidarity) 이니셔티브 또한 공헌할 수 있다. 적어도 이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491. 이 영역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 국제적 연대의 증대가 요구된다. 이는 모든 공동체에게 그렇지만, 세계 공동체에 있어 주요 이슈이다. 기본적 안정의 확보는 인정된 인권이고 세계적인 책임이다.⁹⁴⁾ 모든 선진국은 상당한 자원을 사회보호 및 사회이전에 투입하지

94) Commission on Human Security는 이것이 기본적 경제적 안정을 넘어서 보건, 교육, 주거, 신체적 안전, 깨끗한 공기와 물, 남녀평등 등 최소의 절대적인 자유를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개인 안정 및 사회보호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보편적 사회보호를 위한 ILO의 현 전지구적 캠페인의 목표는 이러한 이슈에 대한 여론을 동원하는 것이다.

만, 세계 차원에서 그러한 정책들은 극도로 제한적이다. 그러나 국가간의 소득 및 안정의 격차는 국가 내의 소득 및 안정의 격차의 허용 수준보다 훨씬 크다. 어느 정도 최소 수준의 사회보호가 당연히 세계화된 경제의 사회경제적 기반의 일부로 수용될 필요가 있다. 아무리 가난한 국가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세금과 기부금을 회수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사회보호 수준은 부담할 수 있다.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국제적 지원을 받을 만하다. 불안정(*insecurity*) 이슈를 다루기 위한 세계적 공약은 세계화를 정당화시키는 데 있어 결정적이다. 우리는 공동의 책임감을 강화시키고 국경간 상호 지원을 증대시키기 위해 당장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양질의 노동을 전지구적 목표로 정하기

492. 앞 섹션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성장, 기업발전, 빈곤 감소 및 모두를 위한 양질의 노동 창출 등을 보다 잘 지원하도록 국제정책들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들은 시장개방 조치를 강조하고 완전고용 및 사회보호와 같은 목표에는 낮은 순위를 두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불균형을 수정하고 모두를 위해 양질의 노동(*decent work*) 달성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세계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섹션 III.1에서 국가 행동을 위한 중요한 목표로 파악된 양질의 노동은 완전고용, 사회보호, 직장에서의 기본 권리 및 사회적 대화를 포함하는데, 이것들은 세계의 사회정의의 달성을 위한 주요 구성 요소이다.

493. 세계화된 경제의 성과는 고용의 창출과 각 국가내 고용의 질에 대해 주요 시사점을 갖는다. 오늘날, 국가는 혼자서 고용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국제투자의 양상, 무역 성장 및 국경간 인력이동 모두가 고용, 소득, 안정 및 노동자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세계화된 경제 속에서 모두를 위한 양질의 노동의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많은 국제정책의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거시경제

정책의 조정, 글로벌 생산체제 내에서 양질의 노동의 장려, 그리고 경제 및 사회적 목표간 일관성을 설정하는 보다 광범위한 문제를 차례로 논의한다.

완전고용을 위한 조정된 거시경제정책

494. 세계화의 가장 두드러진 영향 중의 하나는 거시경제정책 측면에서 국가간의 상호 의존을 증가시켰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다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고용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국가는 국제자본 시장에 부정적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독단적으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그러므로 완전고용과 양질의 노동의 세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간의 보다 잘 조정된 거시경제정책이 중요하다.

495.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보다 높고 안정적인 세계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 자유화는 세계 거시경제적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동반해야 한다. 지속적인 국제수지 적자 및 흑자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그리고 그 어느 국가도 최후의 소비자로 간주되지 않도록 세계화된 경제에서 효과적인 수요 관리를 위한 책임의 균형 배분, 이 모든 것을 달성하기 위해 보다 개선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개발도상국 및 선진국 등 모든 국가는 공정하고 책임 있는 무역정책, 그리고 적절한 사회 보호와 적응 지원을 제공하고 다른 국가에 대한 영향도 고려하는, 재정적으로 책임있는 국내 정책을 채택해야만 한다.

496. 국제 조정을 위한 개선된 기반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 조정은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 모두와 이들의 시기(timing)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는 또한 섹션 III.2.2.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염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결의된 노력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다양한 발전 단계에 있는 국가들의 특정한 욕구와 취약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간소득 국가들이 경기 역행적(counter-cyclical) 거시경제정책을 적용할 여유를 보장해 주기 위한 수단이 요구된다. 현재, 이들은 이 측면에서 선진국과 비교하여 훨씬 제약되어 있다. 조정에는 정부뿐 아니라 산

출량 성장(output growth)과 고용 수준을 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중앙은행도 참여하여야 한다. 고용 수준은 이미 미연방준비은행(US Federal Reserve)과 같은 몇몇 중앙은행들의 위임사항이다.

497. 우리는 이러한 이슈들이 세계 차원에서의 행동을 위해 높은 우선 순위 이슈로 다루어지길 권고한다. 고용이 국가 차원의 거시경제정책에 관한 결정에서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국제적 경제 조정에 있어서도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 거시경제정책은 재정 목표뿐 아니라 이것의 사회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이 이슈를 중심으로 정치적 추진력(momentum)이 형성되어야 한다.

글로벌 생산체제 안에서 양질의 노동의 장려

498. 글로벌 생산체제는 이것의 일부가 된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이제 고용 성장의 중요한 원천이다. 비록 다국적기업 자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용의 적은 부분만을 차지하지만, 국내 생산자들에게 외주(outsourcing) 한다는 것은 이 글로벌 생산체제가 세계 많은 곳의 노동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새로운 생산체제에 있어 규제는 약하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노동 및 기타 기준에 있어 ‘하향 경주(race to the bottom)’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보편화되어 있다. 이와 동시에, 많은 국가들에게 있어 이 체제에 참여하는 것은 투자를 유치하고 기술 역량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방법이다.

499. 수출가공지역(EPZs)체제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5,000만 명 이상이 수출가공지역 안에 고용되어 있다. 수출가공지역은 어떤 경우 가끔 국내 노동법 적용이 면제되거나 노동권리를 실제 행사⁹⁵⁾하는 데 있어 장애가 존재하고 국가들이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경쟁을 하게 되어 불리한 세제 및 보조정책으로 이어진다는

95)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 *Export Processing Zones: Symbols of Exploitation and a Development of Dead-End*(Brussels, September 2003).

우려가 지속적으로 표명되었다. 수출가공지역은 본래 세계화된 경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경제와의 연계는 몇 안 되기 때문에 국제적 고립지(enclave)를 형성한다. 수출가공지역에 대한 것 외에도 공식 및 비공식을 포함하여 국제 하청사슬(international subcontracting chain)에 있는 다양한 중소기업들의 고용 및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유사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500. 이와 동시에, 수출가공지역은 개발전략에 중요한 공헌을 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 임금 및 근로조건 그리고 여성을 위한 고용기회는 흔히 국가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관찰된다. 수출가공지역 그리고 일반적으로 글로벌 생산체제에 대한 참여가 개발 및 양질의 노동 모두에 공헌하도록 보장하는 데에는 아직 완전히 활용하지 않은 가능성들이 남아 있다. 이는 제조뿐 아니라 서비스에 점점 더 많이 적용된다. 서비스 무역은 세계무역의 가장 급성장하는 구성요소이며, 데이터 처리(data processing), 콜 센터(call center)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software services)와 같은 서비스 활동들은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들의 글로벌 생산 및 유통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점점 더 많이 착수되고 있다.

501. 앞서 섹션 III.2.2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개선된 경쟁정책 및 FDI를 위한 개발 기반은 글로벌 생산체제를 위한 모든 정책 기반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양질의 노동을 장려하는 것은 보다 광범위한 통합 경제 및 사회정책을 필요로 할 것이다. 우리는 노동 혹은 환경 기준의 약화 그리고 과도한 세제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 우리는 주요 국제기구들과 기타 관련 행위자들이 수출가공지역 그리고 더 일반적인 글로벌 생산체제에서 양질의 노동, 투자 및 무역을 장려하는 효과적인 국제정책을 위한 제안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 그러한 제안은 노동기준 및 국내 경제로의 후방연쇄효과(backward linkage)에 관한 이슈 그리고 기업들이 투자 및 기술적 업그레이드를 통해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 보다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에 있어 주요 수혜자는 관련 국가, 국내 및 다국적기업 그리고 노동자다. 우리는 또한 노동자와 사용자 간

의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가 이것을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다음 섹션에서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양질의 노동을 위한 정책 일관성

502. 위 분야에서의 행동은 모두를 위한 양질의 노동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당한 공헌을 할 것이다. 그러나 다자체제 내에서 일관성과 통일성이 더 많으면 그 영향도 훨씬 클 것이다. 이러한 정책 일관성을 향한 주요 단계는 관련된 모든 기구들이 양질의 노동의 목표를 충분히 인정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의 장려뿐 아니라 노동조건, 남녀평등, 사회안정, 작업장에서의 안전 및 사회적 대화와 같은 양질의 노동의 주요 요소들도 포함한다. 앞서 논의한 핵심노동기준 외에도 이들 이슈들을 다루는 국제노동기준이 개발되었다.

503. 이 접근방식은 전체 국제체제 안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 출범 당시부터 유엔은 ‘생활수준 향상, 완전고용, 경제적·사회적 진보의 조건 및 개발’⁹⁶⁾을 촉진하는 것을 과제로 위임받았다.

504. 국제사회는 1995년의 사회개발 정상회의에서 이 공약을 재다짐하고 “완전고용의 목표를 경제 및 사회정책의 기본 우선순위로 장려하고 남녀 모두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생산적인 직업과 직장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계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데” 합의하였다.⁹⁷⁾ 남녀평등은 이 목표의 중요한 단면이다.

505. 국제체제의 주요 경제기구들 또한 고용 목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제통화기금(IMF)의 목적에는 “국제무역의 확대

96) 유엔 헌장 제55조.

97) United Nations, 1995,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agreed at the 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및 균형된 성장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높은 수준의 고용과 실질소득의 장려와 유지에 공헌하는 것”이 포함된다. 1994년과 같이 최근까지만 해도, 세계무역기구(WTO)를 탄생시킨 마라케시 합의(Marrakech Agreement)는 “무역과 경제활동 영역에서의 관계는 생활수준의 향상, 그리고 완전 고용과 거대하면서 점점 더 증가하는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보장을 목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인식했다.

506. 그러나 실제에서는 국제경제기구들은 고용 그 자체를 목표로 하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의 주요 과제의 파생물(derivative)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WTO는 무역 확대를 장려하는 것이 고용을 창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무역 자유화는 국가 소득을 증가시키고 성장과 고용을 육성한다”⁹⁸⁾. IMF는 성장과 고용창출의 기초로 건전한 금융정책을 장려한다. 세계은행은,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성장이고, 그 성장이 이차적으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고용 및 기업은 그 자체로서 주요 정책 목표로 간주되지 않는다. 빈곤감축전략서(PRSP) 설계 과정에 고용에 대한 강조가 부족한 점이 바로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507. 국제경제정책에 있어 개선된 조정의 필요는 사회개발정상회의의 공약을 향한 진전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2000년 개최된 유엔특별총회의 결과에 반영되었다. 189개 국 대표는 만장일치로 ILO가 “고용에 관한 일관되고 조정된 국제전략을 정교하게 마련하라”고 권고했다.⁹⁹⁾ 이에 대해, ILO는 정부, 사용자 및 노동자 단체를 광범위한 행동에 참여시키는 노사정 삼자 전략(tripartite strategy)을 기반으로, 고용을 경제 및 사회정책의 중심에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계고용의제(Global Employment Agenda)를 개발하였다. 여기에는 고용 목표를 추구하기

98) ILO, “Trade liberalization and employment”, paper presented to the ILO Working Party on the Social Dimension of Globalization, November 2001.

99)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Ad Hoc Committee of the Whole of the Twenty-Fourth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2000, para. 36. p.24.

위해, 브레턴-우즈 제도와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유엔환경계획(UNEP) 및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다른 제도와의 전략적 제휴가 포함된다.

508. 실제로, 이는 한편으로는 양질의 노동 및 완전고용의 목표와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체제의 금융, 무역 및 생산 관련 목표 간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ILO는 이미 국제경제정책의 사회적 시사점을 감독하도록 헌장에 과제가 명시되어 있다.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Declaration of Philadelphia)에서 ILO는 “모든 국제경제 및 금융정책 및 조치를 검토 및 고려하여” 이 정책과 조치들이 “자유 및 존엄 그리고 경제적 안정과 균등기회의 조건에서 자신의 물질적 안녕과 정신적 개발을 추구하는” 인간의 권리와 모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특별한 책임을 부여받았다.¹⁰⁰⁾

509. 실제로 금융, 개발, 무역 및 사회정책들을 위한 국제적 차원의 책임은 각기 다른 제도에 지정되었으며, 적절한 조정 메커니즘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또한 금융 및 무역을 담당하는 제도와 규범(normative) 및 사회 관련 사항을 담당하는 제도간의 근본적인 권력의 비대칭이 존재하였다.

510. 우리는 다자체제의 기구들이 국제경제 및 노동정책들을 보다 통합되고 일관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몇 가지 긍정적인 추세들이 있으며, 이들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지난 10년간 개최된 주요 국제회의를 보면, 빈곤을 감소하고 세계화를 보다 포괄적으로 만들기 위한 일치되고 조정된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세계은행과 ILO간의 협조는 몇몇 국가의 빈곤감축전략서(PRSP) 안에 고용성장을 더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만들기 시작했다. IMF에서는 세계

100) Constitution of the ILO, Annex, Declaration Concerning the Aims and Purpose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Philadelphia Declaration) sec. II, p.23.

화의 사회적 차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¹⁰¹⁾ 또한, 직장에서의 기본권이 국제경제정책을 위한 필수적인 토대로 보다 많이 수용되고 있다.

◆ 경제 및 사회적 목표의 통합

511. 양질의 노동과 관련하여 우리가 개발한 보다 일관된 접근 원칙은 더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교육, 보건, 인권 및 환경 목표는 서로 상호 작용을 하고 또 경제적 목표 및 관계와 상호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보다 일관되고 통합된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국제, 국가 및 지방 차원의 정책도 상호 의존적이며 통합된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512. 국제의제에 대한 조정 노력뿐 아니라 국제체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행동도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 빈곤감축전략서(PRSP) 및 기타 국가 차원의 기반에 대한 국제 자문 및 지원 제공시 경제 및 사회 목표에 대한 일관된 접근방식이 채택될 것을 보장하기 위해 유엔체제 전체의 개선된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 이들은 양질의 노동, 교육, 인권, 남녀평등 및 사회개발의 기타 주요 측면을 적절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513. 이러한 각기 다른 차원들에서의 일관성을 장려하고 관련 국제기구 간의 보다 효과적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 우리는 다자체제의 다른 기구들과의 협조하에 ILO가 그의 광범위한 현장, 구성원(constituency)인 사용자 및 노동자 조직 그리고 정부를 이용하여 세계화된 경제 속의 경제 및 사회적 목표간의 일관성을 장려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 및 방법을 개발할 것을 요청한다. 제IV부에서 우리는 보다 통합된 의제를 진전시키는 방법에 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한다.

101) 그 예로, “Toward a Better Globalization” by Horst Köhler, Managing Director of the IMF, Inaugural Lecture on the Occasion of the Honorary Professorship Award at the Eberhard Karls University in Tübingen, 16 October 2003.

514.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서로간의 정책의 일관성을 검토하기 위해 재무 및 무역 관련 장관 그리고 주요 노동 및 사회정책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회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모임에는 가능하면 노동자 및 사용자 대표들이 참석하고 또 적합한 사안일 경우 시민 사회도 참석하도록 한다. 이것은 처음에는 지역적 또는 소지역적 차원에서 조직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차원에서는, 다음 논의할 유엔 경제 사회이사회(ECOSOC)의 고위급 회의(High Level Segment)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III.2.4 보다 책임있는 제도

515. 세계화는 개선된 커뮤니케이션과 새로운 기술을 통해 여론에게 힘을 부여(empower)했다. 그 결과, 보다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지배구조를 위한 국가 및 국제 제도에 대한 압력이 더 증가하고 있다.

516. 전지구적 지배구조에 있어 주요 이슈는 세계 의제를 설정하고 세계 정책의 결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일반 사람들을 위해 보다 책임성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한에 대해 보다 개선된 책임성 및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한 필수 원칙은 대표성, 참여, 투명성, 효능 및 보조성 등의 확대이다.

517. 대부분의 국제 행위자들은 이러한 원칙에 대한 지지를 즉각적으로 표명하지만, 실제로는 이 원칙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서로 매우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다. 책임성(accountability)은 간단하게 정보를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협의의 개념에서 국제기구들이 자신들의 정책의 영향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보다 광의의 개념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518. 어떤 경우에는, 원칙들이 서로 완전히 상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포괄성(inclusiveness)과 최대 참여(maximum participation)는 효과적이고 정치적으로 관련 있는 의사결정과 완전히 일관되지 않을 수 있

다. 또 한편, 실효성(efficacy)의 원칙은 보조성(subsidiarity)의 원칙과 조정되어야 한다. 비공식적인 ‘네트워크화된’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

519. 이 섹션에서 우리는 앞 섹션들에서 제안된 국제경제 및 사회정책에서 개혁을 적용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으로서 민주적 지배구조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검토한다. 우리는, 전지구적 지배구조 체제를 검토하고 그것의 개혁 및 갱신을 위한 권고를 한 바 있는, 우리보다 앞선 몇몇 위원회들과 여러 학자들의 활동을 토대로 작업한다.¹⁰²⁾ 우리는 우선 다자간 제도의 힘과 실효성을 향상시킬 몇 가지 개혁을 지적인 다음 국가, 의회, 기업, 노조, 시민사회 및 언론(media)의 과제와 책임에 대한 권고를 한다.

◆ 다자체제의 강화

520. 유엔 다자체제가 기존 전지구적 지배구조의 체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50년을 넘게 축적한 경험, 지식 및 능력으로 무장해 있고,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그 회원이고 위임받은 책임 등을 통해 합법성을 부여받은 유엔은 경제 및 사회정책의 개혁 과정을 선도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 이와 동시에, 세계가 점점 더 많은 활동 분야에서 상호 의존적이 되어가면서, 새로운 국제협약 및 협력의 새로

102) 그 예로, Commission on Global Governance, *Our Global Neighbourhoo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Meltzer Commission, *Report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dvisory Commission* (Washington DC., 2000);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Issues for the 1990s*(New York and Geneva, 1997); Erskine Childers and Brian Urquart, *Renewing the United Nations System*(Uppsala, Sweden, Dag Hammarskjöld Foundation, 1994); Mahbub Ul-Haq et al.(eds), *The United Nations and the Bretton Woods Institutions: New Challenges for the 21st Century*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5); Global Governance Reform Project, *Reimagining the Future: Towards Democratic Governance*(2000); Deepak Nayyar(ed), op. cit; Joseph Stiglitz, op. cit 참조.

운 영역 및 형태의 필요성이 더 시급해질 것이다. 다자체제가 세계 통합에 따른 현재의 도전은 물론, 앞으로 나타날 도전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술서비스, 지식 기반 및 관리체제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자신의 실효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그의 실효성은 지배구조의 질이 어떠한가에 또한 의존한다. 특별히 관심이 가는 분야가 있다. 민주적 대표성 및 의사결정, 모든 이해당사자에 대한 책임성, 그리고 경제 및 사회정책 간의 일관성. 또한 다자기관들이 세계화의 사회적 차원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한 자원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필요하다.

이사회(governing council) 내 민주적 대표성

521. 권력과 부의 보유 정도가 다양한 민족국가(nation States)가 구성하는 세계에서는 국제기구 내 국가들의 영향력이 균형을 이루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과제는 권력의 현실과 평등 및 민주적 참여 사이를 조정하는 것이다. 브레턴-우즈 제도, WTO 그리고 유엔의 현 의사결정체제에 대한 불만이 만연하다. 예를 들어, 유엔 안보리(Security Council)의 이사국 자격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상황을 기초로 하며, 오늘날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다. 안보리의 이사국 선정 및 의사결정 절차의 개혁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시급해졌다.

522. 국제금융제도 내 개발도상국의 대표성과 의결권(voting strength)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많았다. 한 예측에 따르면, 세계인구의 약 15%를 차지하는 선진국은 유엔에서의 의결권이 17%,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에서의 의결권 34%, 그리고 세계은행과 IMF에서의 의결권이 60%를 넘는다.¹⁰³⁾

523. 브레턴-우즈 제도의 의결 공식은 다양한 경제지표의 계산 그리고 재량적 요소를 기초로 한다. 이는 다양한 문제점(anomalies)을 발생시

103) G. Helleiner, "Markets, Politics and Globalization", i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 2, No. 1, 2001.

졌다. 의결권을 미국 달러 GDP 기준으로 측정하고, 또 이를 구매력평가(PPP) GDP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도 개발도상국이 의결권 측면에서 대표성이 떨어진다고(under-represented). 이는 특히, 아시아의 경우는 심하고 라틴아메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는 덜하다.

524. 이 상황은 브레턴-우즈 제도 내에서 대표 선거구 체제(constituency system of representation)에 의해 개선되었다. 8개국이 그들의 대표를 상임이사회 위원으로 임명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각 국가 그룹을 대표하는 16명의 위원이 대표한다. 더구나, 이 체제는 개방되어 있어, 국가가 한 그룹에서 다른 그룹으로 소속을 옮겨 다른 이사(director)가 그 국가를 대표할 수 있어, 어느 정도 작전을 펼 수 있는 여유가 주어진다.

525. 이러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주주인 선진국들은 여전히 중요한 정책결정에 있어 이해당사자보다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보다 공정한 의결권 관련 체제의 설립을 권고한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대표성이 증가되면서도 의결권의 상당 비중이 여전히 선진국에게 귀속할 것이다. 우리는 더 나아가, 상임이사회의 규모를 늘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대표 한 명을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책임성 증대

526. 모든 국제기관들은, 세계화 시대에서 그들의 책임이 향상됨에 따라, 그들의 이사회(governing body)에게뿐 아니라 일반국민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자신들의 활동을 보다 투명하고 사람에 대하여 보다 책임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각 공공 또는 민간기관이 검토할 일이지만, 세계화는 이들 기관들이 이 책임을 이제 명시적으로 인정하도록 요구한다.

527. 금융, 개발 및 무역을 책임지는 국제 제도들은 최근 몇 년 사이 상당한 대중의 비판을 받았다. 많은 비판가들과 항의자들은 국제기관

들이 투명성이 부족하고 그들의 정책 및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시민사회와 이해 집단과 협의를 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세계은행과 같은 어떤 기관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응했으며, 노조, 사용자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의 대화를 위해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기 시작했다. 최근에, 이들 집단들이 WTO 관련 이슈에 점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 WTO는 이들과의 보다 체계적인 대화를 정립시킴으로써 이에 대응했다. 그러나 협상을 위해 채택된 절차로 인해 오히려 WTO의 의제와 협정이 주요 무역 집단이나 국가의 이익에 의해 지배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의제 설정에 있어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그리고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협상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 방식과 협상 절차를 개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칸쿤 각료회의의 결과는 그러한 개혁의 필요성을 강화시켜 주었을 뿐이다.

528. 공공책임성(public accountability)의 이슈와 관련, 다자간 기구의 성과가 향상되었지만,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과 IMF는 과거에는 기밀이었던 정책, 운영, 결정 및 평가 관련 정보를 공시한다. 그러나 상임이사(Executive Director)들은 여전히 이사회의 회의록을 여전히 공시하지 않는다. 우리는 브레턴-우즈 기관의 집행이사회 위원들이 회원국의 의회에게 책임성을 줄 것을 권고한다.

529. 세계은행과 IMF는 또한 보다 정교한 평가방법을 개발하였다. 세계은행의 업무 및 평가부(Operation and Evaluation Department)에는 4개의 평가 단위(unit)가 있는데, 이들이 작성하는 보고서는 일반에게 공개된다. IMF는 독립평가국(Independent Evaluation Office)을 설치하였으며, 이곳에서 작성하는 보고서도 공개된다. 평가국은 관리 조직과 분리되어 있으며, 상임이사사회에게 직접 보고한다. 유엔에서 책임성은 전통적으로 외부 감사 및 공동감사국(Joint Inspection Unit) 등 외부 감독기관을 통해 또는 유엔의 내부감독서비스국(Office for Internal Oversight Services)과 같은 내부 감독 메커니즘을 통해 이행되었다. 대부분의 유엔기구들은 평가국들이 잘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몇몇은 집행이사회(executive management)에 직접 보고한다. 회원국들은 이러한 평가 역

량의 강화 그리고 평가국 작성 보고서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향상을 계속 요구해 왔다. 시민사회 조직들 또한 이런 평가 과정을 통해 도출된 권고들의 적용을 요구해 왔다. 어떤 유엔기관은 평가의 결과 및 권고를 공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는 했지만, 우리는 모든 유엔 기관들이 그들의 평가국을 강화시키고 그들의 프로그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내·외부 평가의 결과와 관련하여 명확한 공시 정책을 채택하고, 그에 따라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평가 과정으로 인한 권고에 대한 후속 관리에 대한 정기적 보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해당사자나 기타 당사자에 의한 독립적 평가 또한 환영한다.¹⁰⁴⁾

530. 섹션 III.2.3에서 지적했듯이, 정책의 조정과 일관성은 다자체제에 있어 결정적인 이슈다.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 및 경제정책을 조화 및 균형화하는 데 리더십을 제공할 수 있는 보다 대표적이고 정치적으로 효과적인 기구의 설립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엔 안보리와 유사한 지위를 갖지만 법적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권한은 없는 경제 및 사회안보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것은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아이디어다. 그러나 이 제안에 대해 심각한 고려는 하지 않았었는데, 이는 주요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고 그러한 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유엔 헌장을 개정해야 하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다.

531. 정책과 행동의 세계적 일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또 다른 제안은 어네스토 제딜로(Ernesto Zedillo) 멕시코 전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유엔 사무총장이 제안하여 설치한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고위급 연구단(High-Level Panel on Financing for Development)이 최근 제시하였다. 연구단의 보고서에는 “최근의 가치 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아직 세계적 경제 쇼크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완전히 만족할 만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써 있다. 또한 “..... 세계화된 경제에서 의사결정은 점점 더 소수의 국가에만 집중되었다. 그 결

104) 예를 들어, One World Trust가 개발한 Global Accountability Project. www.oneworldtrust.org 참조.

과, 긴장상태가 심화되었다. 광범위한 공동 문제들에 대해 세계는 모든 관련 부분을 대표하는 목소리가 논의에서 들리도록 보장하기 위한 공식적인 제도적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 않다”. 연구단은 “전지구적 지배구조의 이슈에 대한 리더십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가장 높은 정치 레벨에서 글로벌 이사회(global council)”를 만드는 것을 제안했고, “.....그의 정치적 리더십을 통해 이사회는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 정책 기반을 제공하고, 주요 국제기구의 정책 목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세계경제 및 사회 지배구조의 이슈를 위한 가능한 해결책에 대해 정부간의 합의 구축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다.”¹⁰⁵⁾

532. 국제 사회 및 경제정책에 있어 일관성을 증대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함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 이슈가 유엔 정기총회 때 격년으로 개최되는 고위급 대화, 지역 정상회담 또는 소지역 정상회담, 그리고 선진 8개국 회의(G8)의 확대회의와 같은 세계 정치 지도자들의 모임의 의제에 포함될 것을 권고한다. 개혁의 필요성과 타당한 제도적 합의의 범위(range of feasible institutional arrangements)에 대해 충분한 기술적 작업은 수행되었다. 국제적 차원에서, 국제 사회 및 경제정책의 일관성 증대를 보장하기 위해 각국 정상들이 공동으로 관련 국제기구들에게 명확한 과제를 부여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533. 유엔 헌장에 따라, 경제사회이사회(ECOSOC)가 경제 분야에서 세계의 정책 조정을 장려하는 주책임을 갖고 있다. 그러나 ECOSOC의 위임 과제는 항상 실제로 행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했다. 브레턴-우즈 제도와 유엔의 정치 및 기능적 분리 그리고 유엔 초기에 국제 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의 설립 실패로 결국 ECOSOC가 무역, 금융, 투자 및 기술 분야 세계화의 동력(dynamics)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되었다.

534. ECOSOC이 위임된 모든 과제를 실행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권위를 부여받은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본래의 의미와 합법성마저 잃

105) High-Level Panel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op. cit.

은 것은 아니다. 현재 ECOSOC의 위임 과제만으로도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경제 및 사회 이슈에서 유엔의 역할에 대한 정치적 태도를 바꿈으로써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ECOSOC이 새로운 형태로 기능하고, 그의 대표성의 수준이 업그레이드되어야 하고, 경제, 무역, 금융 영역의 주요 행위자들이 이를 고위급 정책결정 기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그 역할에 대한 정치적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ECOSOC의 기존 구조 내에서 어떤 개혁은 즉시 단행되어 ECOSOC을 강화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개선할 수 있다. ECOSOC 연차회의의 고위급 회의(High Level Segment)에서는 재무, 노동, 사회, 환경 또는 기타 분야 담당 각료들이 각 사안에 따라 세계의 거시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관리 특정 측면에 있어 적절한 상호 작용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다. ECOSOC은 또한 그 역량을 이용하여, 관련 각료가 참가하여 우선순위 또는 긴급 이슈들을 논의하기 위해 집중 단기회의를 일 년 중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ECOSOC은 또한 경제사회 사무총장(Under-Secretary-General for Economic and Social Affairs)이 이끄는 다기구 사무국(multi-agency Secretariat)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각료급 위원으로 구성된 ECOSOC의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는 그러한 개혁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리더십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자원 증대

535. 일반적인 인식과는 반대로, 유엔체제는 평화 및 안보 유지, 인권 및 법치 촉진, 인도주의적 활동 및 국민들의 필수 개발 욕구를 충족하는 국가 지원 등의 엄청난 책임에 비하여 미비한 자원을 집행한다. 연간 13억 달러인 유엔사무국의 일반예산은 지난 8년 동안 명목적으로는 변하지 않았다(실질적으로는 감소함). 기금, 프로그램, 전문기관 및 평화 유지 등 전체 유엔체제에 대한 지출은 연간 120억 달러 정도인데, 이는 뉴욕시 교육위원회의 연간 예산보다 적다.

536. 이러한 점을 볼 때, 몇몇 선진국이 유엔체제에 대한 의무기부금의 명목 인상을 ‘0’으로 고수하는 것은 비난할 만하다. 개선된 책임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다자간 기관에 대한 재정 기부의 증가에 동의하고 의무 기부금 대신 자발적 기부금을 조성하려는 추세를 역행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와 더불어 이들 기관의 관리에 있어 실효성 및 효율성이 향상되어야 한다.

◆ 민족국가(Nation States)

537. 세계화는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의 권력과 자치권을 감소시켰지만, 국가들 특히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정책 또는 행동을 통해 그리고 정부간 기관 내에서 의사결정을 통해 계속해서 전지구적 지배구조에 대해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므로 너무나 적은 수의 국가가 국제포럼에서 그들의 대표가 취한 결정을 의회 또는 기타 공공 감사를 받게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예를 들어 무역, 농업, 환경 또는 금융 사안에 관한 이슈에 대해 대표단이 취한 입장과 관련하여 집단각료 책임(collective cabinet responsibility)의 원칙마저도 많은 국가에서는 잘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의회 의제의 과부하 상태, 관련된 이슈가 점점 전문화되어가고,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 논의를 위해 적절하고 균형된 정보가 부족하다. 정부와 의회가 집단각료 책임의 정기적 채널과 의회 및 공공 논쟁의 심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538. 그러므로 국가의 정부는 국제기구의 책임을 향상시키는 데 상당한 공헌을 할 수 있다. 정부가 국제 모임에서 국가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공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의회 및 이해 집단이나 전문가 집단이 정부의 결정을 면밀히 검토하면, 이는 정부 대표가 국제적 업무를 수행하는 그의 역할에 상당히 유익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가 수도에서 대중과 각료, 국회의원 및 공무원들의 상호 작용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39. 세계 사회 및 경제정책의 일관성 증가를 실현하는 데 있어 국가들의 공헌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근본적으로, 세계 정책의 일관성 문제의 뿌리는 국가 차원에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유엔체제는 분산된 기능의 조정(decentralized functional coordination)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정부간 기구들은 성격상 각 부문별로 나뉘지며, 그 지배구조는 정부의 각 부처를 반영한다. 이 기구들은 또한 자체적 헌장에 따른 위임과제가 있다. 그 결과, 해결책은 먼저 국가 차원에서 찾아야 하는데, 종종 정부 안의 서로 다른 부문과 부처들이 일관된 세계 정책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 합의를 못한다. 세계적 일관성은, 모범 지배구조와 마찬가지로, 국가 차원에서 시작한다. 우리는 각국 대표들이 국제포럼에서 취하는 입장이 사람들의 안녕과 양질의 삶에 주안을 두는 경제 및 사회정책의 일관된 통합을 보장하도록 각국 정상들이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540. 세계 경제 및 사회 이슈에 대해 내각, 의회 및 공공 논의를 통한 국가 차원의 정책 일관성을 위한 행동이 취해지지 않으면, 세계 정책 조정이 크게 개선될 희망은 거의 없다. 여러 국가 내에 존재하고 정부, 사용자, 노동자 및 시민사회 대표들로 이루어진 국가경제사회이사회(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ouncil)는 이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541. 국가는 또한 전지구적 지배구조의 기초가 되는 법, 규제 및 규범을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일관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 위 섹션 III.1에서 강조했듯이, 국가는 그들의 행동 및 정책이 세계의 나머지 국가, 특히 저개발국과 빈곤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른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부국과 강대국들은 그들의 국내 결정이 세계의 나머지 지역의 사람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는, 더 무거운 책임을 안고 있다.

542. 국가들이 그들의 국경 밖에 있는 이들의 곤경(plight), 특히 빈곤한 자들의 곤경으로 관심 영역을 넓혀야만 세계 공동체가 육성될 수

있다. 선진국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개발 이슈에 관심을 보이기는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이슈에 표를 던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관심 있는 사람들의 수와 그들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 시민사회 및 시민운동 그리고 자발적 주창 및 개발 기관이 가장 큰 목소리를 내지만, 의회, 종교집단, 재단, 노조, 전문가협회 및 다국적기업 등 기타 영향력 있는 집단의 여러 분파들이 점점 자신들의 세계적 책임을 인식하고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세계질서를 위해 노력한다.

◆ 의회

543. 의회는 국가 차원에서의 책임성을 위한 중심 주체이다. 이는 세계 이슈에 대해 공공 논의 그리고 세계 차원에서 정부의 행동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국가포럼이다. 의회 위원회 청문회는 특정 이슈를 홍보하고 여론을 참여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각국 의회가 국제포럼에서의 정부의 입장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신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544. 의회는 또한 공공정책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세계적 차원에서 장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국제의회연맹(IPU), 세계적 행동을 위한 의원 모임(Parliamentarians for Global Action), 평화를 위한 세계 여성의원 연합(World Women Parliamentarians for Peace)과 같은 세계의회 협회들 그리고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라틴아메리카 의회(Latin American Parliament), 아프리카연합 의회협회(African Union Parliamentary Assembly)와 같은 지역의회 협회는 국제기관이 성과를 향상시키고 책임성을 더 갖도록 장려한다. 세계 사회 및 경제정책의 특정 분야에서 행동을 촉구하고 발전사항을 모니터하기 위해 이미 몇몇 의회간 단체들이 설립되었다. 여기에는 세계은행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참여하는 의회 네트워크가 포함된다. 우리는 이러한 의회 그

롭들에게 세계 정책 및 행동에 대해 책임성을 진보적으로 확산시키도록 촉구한다. 특히, 우리는 세계 경제 및 사회정책 간 일관성과 일치함과 관련된 세계의회 그룹(Global Parliamentary Group)의 창설을 요구한다. 이 그룹은 유엔체제, 브레턴-우즈 제도 및 세계무역기구의 주요 국제기구에 대한 통합된 감시를 개발할 것이다.

545. 유엔에서 IPU의 연차회의는 국제 이슈에 대한 각국의 국회의원들간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유용한 방법이다. 각기 다른 분야의 의회 그룹은 전지구적 지배구조의 개혁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전자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조율할 수 있다. 우리는 IPU와 다른 의원포럼들이 세계화의 사회적 차원에 관한 여론을 동원하는 방법을 탐구하고 국제기관들에게 그러한 행동을 촉진하도록 요청할 것을 권한다.

◆ 기업

546. 국내 및 국제(transnational) 기업 모두 세계화의 사회적 차원에 중요한 공헌을 한다. 그들은 노동이 이루어지는 장(world of work)을 형성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및 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들은 고용과 소득 창출의 주원천이며, 그들의 가치와 관행과 행동은 사회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547. 기업 지배구조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 지배구조

548. 기업 지배구조는, 본질적으로 기업의 소유 및 통제, 그리고 재정 절차, 공시 및 투명성을 지배하는 규칙과 관련 있다. 여기에는 법적 기준 및 사내 절차가 포함된다. 모범적인 기업 지배구조는 시장경제 및 민주사회의 핵심이다.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OECD 원칙(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1999)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영향력 있는 벤치

마크(benchmark)인 “모범적 기업 지배구조는 기업들이 광범위한 당사자(constituencies)의 이해, 그리고 그들이 사업하는 지역사회(communitiy)의 이해를 고려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도와준다..... 이는 한편, 기업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업하도록 보장하도록 도와준다.”

549. 기업 지배구조는 각기 다른 국가체제가 새로운 시장의 압력에 적응해야 하는 점점 더 세계화되어가는 경제 속에서 주요한 이슈가 되었다. 최근 부패를 포함하여 기업의 행동과 관련된 여러 스캔들, 그리고 기준 불이행(non-compliance)은 혁신의 필요성과 강화된 책임성의 필요를 증가시켰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550.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은 기업들이 법적 의무를 초과하여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이니셔티브(voluntary initiative)와 관련 있다. 이것은 모든 기업이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에 대한 자신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다. CSR은 정부의 규제 또는 사회정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다.

551. 점점 더 많은 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회사 사업의 일부로 만들고 있다. 기업 이니셔티브의 범위는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의 채택에서부터 각종 지역사회 차원의 이니셔티브에 파트너로 참여하는 것에 이른다. 이는 기업의 자체적인 윤리적 관심과 NGO, 노조, 윤리적 투자자 및 사회 의식이 있는 소비자의 자극에 의해 추진된다.

552. 많은 기업들은 CSR에 대한 접근방식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데, 이는 기업의 업종 그리고 경제 및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중요한 벤치마크 및 기준점(reference point)에는 ILO의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에 대한 노사정 삼자원칙 선언(ILO 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 (1997년 제정,

2000년에 개정), 노동에서의 권리와 기본 원칙에 관한 ILO 선언(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1998년), 다국적기업을 위한 OECD 지침(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1976년 제정, 2000년 개정) 등이 포함된다. 이 이슈에 대해 많은 포럼에서 강도 높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의 성과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발간한 녹색(Green Paper)과 보고서(Communication)가 있다.¹⁰⁶⁾

553. 특히 영향력 있는 이니셔티브는 유엔 사무총장에 의해 출범된 유엔 지구협약(UN Global Compact)이다. 이 협약은 기업들이 유엔, 국제노동기구(ILO), 유엔인권고등판무관(OHCHR),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및 기타 행위자들과 협력하여 인권, 노동 및 환경에 관한 보편적으로 수용된 합의에서 도출된 9개의 핵심 원칙을 수용하고 장려하도록 촉구한다. 협약은 이미 진척이 있었는데, 그 예로 관련 국내법의 준수를 촉진하고, 대화를 장려하고, 글로벌 공급사슬 안에 보편적 원칙 실현의 장애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 진척이 있었다. ILO가 자신의 지구협약에의 참여를 모니터하고, 향후 잠재성을 평가하고, 유효성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554. 세계협약(Global Compact) 등 자발적 이니셔티브들은 기업에 대한 공공 신뢰 및 신임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 기업의 지속성에 공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실질적 영향에 대해 몇몇 행위자들은 여전히 회의적이다. 즉 신뢰받는 자발적 이니셔티브가 되기 위해서는 투명성 및 책임성이 필요하고, 이는 측정, 보고 및 모니터링을 위한 좋은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위원회가 개최한 대화 및 다른 곳에서 표명되었다.

555. 자발적 이니셔티브의 공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화될 수 있다:

106) 최근 이니셔티브에 관해서는 “Information note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GB.288/WP/SDG/3, ILO, Geneva, November 2003 참조.

- 국제적으로 인정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글로벌 사업 및 국내 공급업체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고 메커니즘 및 성과 측정을 개발하려는 기업들의 노력을 지원
- 다양한 상황과 수요를 고려한 모니터링 및 검증 방법 개선. 인정 (accreditation) 및 인증(certification)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기업들이 이것이 신뢰성 확보의 원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최근 가혹한 노동 관행, 특히 아동노동을 퇴치하기 위해 코코아 업계에서 최근 합의한 것과 같은 보다 광범위한 업계 차원의 파트너십 개발.¹⁰⁷⁾ 이는 홍보정책(promotional policy), 모니터링 및 인증이 결합된 프로그램에 기업, 사용자 조직, 노조, 협동조합, 정부 및 시민사회단체를 참여시킬 수 있다.
- 윤리규범의 적용 및 그의 영향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 수행 그리고 모범 관행에 관한 지침 개발.

556. 기업들의 국제 대표기구들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제사용자기구(IOE)는 기업 지배구조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는 특권이 주어진 행위자로서의 현재의 노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고, 중요한 이슈에 대한 정보 배포, 훈련 및 논의를 통해 세계화의 경영에 기업의 참여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OE는 세계협약과 같은 이니셔티브 내의 선도적 역할을 더 강화하여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후원하고 조화시키고 사회적 대화를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니셔티브의 세계적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557. 노사정 삼자로 구성된 ILO는 이러한 이슈에 관한 연구, 대화 및 정책개발을 위한 독특한 장을 제공한다. ILO는 세계화의 사회적 차원에 대한 기업의 공헌에 관한 실용적인 의제를 개발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하여야 할 것이다.

107) “International Cocoa Initiative-Working towards Responsible Labour Standards for Cocoa Growing” 재단은 2002년에 설립되었다. 여기에는 세계 초콜릿 및 코코아 산업, 노조 및 NGO가 참여하고 ILO가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www.bccca.org.uk 참조.

558. 기업 지배구조 및 사회적 책임의 이슈 외에도, 민간부문과 국제기구의 관계가 최근 몇 년 동안 강화되었다. 몇몇 중요하고도 새로운 다부문 협력 사례에서 이제 민간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은 저소득 국가의 어린이 예방접종 노력에 있어 주요 행위자이다. GAVI의 주요 재정지원 기관인 Gates Foundation의 대표와 업계, 국제기구, 정부 및 시민사회 대표가 그 이 사회의 멤버다.

559. 국제 공공정책에 있어 민간부문의 보다 깊은 참여는 세계적 프로그램을 위한 추가적 재원의 출처로서 그리고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대한 전문성 및 그 네트워크로의 접근성의 제공자로서 잠재력이 크다. 우리는 그러한 참여를 격려하고 촉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책의 선택이 이해 상충으로 인해 왜곡되지 않게 보장해 주는 합의(arrangement)를 통해, 공공이익(public interest)의 보호에 대한 우려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사무총장 산하의 민간부문 및 개발위원회(Secretary-General's Commission on the Private Sector and Development)가 이러한 파트너십과 가능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제안할 것을 기대한다.

◆ 노동조합

560. 2000년에 국제 노동조합운동은 새천년을 위한 주요 목표로 '사회 정의의 세계화'를 정했다.¹⁰⁸⁾ 실제로, 이 목표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노조가 10년 이상 추구해 온 목표다. 이 기간 동안, 노동조합운동은 세계화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몇 가지 전략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선진 8개국(G8) 및 유사 경제 정상회의의 정기 모임 시 주요 정부에 대한 압력 행사; 지역경제 및 무역회의의 의제에 사회 및 경제 이슈를 포함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아동노동, 노예노동,

108)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 *Globalizing Social Justice: Trade Unionism in the 21st Century*, World Congress Report (Durban, April 2000).

차별 및 결사의 자유와 같은 근본적인 이슈를 포괄하는 기본 협약에 대해 협상을 통한 다국적기업과의 직접 대면 노력.

561. 또한, 지난 10여 년 동안 국제 노동조합운동은 세계은행, IMF, WTO,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및 OECD와 같은 국제기관의 일부 활동과 정책 방향을 재조정하려는 노력을 통해 세계화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이와 동시에, 노동조합은 경제개발, 무역 및 사회정책을 책임지는 다자기구들간의 증가된 일관성과 협력을 장려하는 데 상당한 자원을 헌신하였다. 노조는 특히, 경제적 과제를 위임받은 국제 제도가 시야를 넓혀 공정성, 인권 및 사회적 고려를 더 강조하도록 격려했다.

562. 세계화 및 주요 국제 제도의 정책에 대한 노동조합운동의 영향은 의사결정에 대한 노조운동의 영향력에 어느 정도 달려 있다. 예를 들어, ILO 내에는 노동조합이 지배구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기구의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OECD와 같은 다른 국제기구에는 노조의 사용자와 협의하기 위한 공식 구조가 존재하여, 이를 통해 사회적 파트너들이 OECD 직원 및 정부 대표들과 정기적인 정책 논의를 할 수 있게 해 준다. 우리는 세계은행, IMF 및 WTO의 현장의 규정 및 지배구조를 전적으로 존중하면서 OECD에 존재하는 것과 유사한 공식 협의 구조가 이들 국제기구에도 설치될 것을 권고한다. 이는 사회적 파트너들에게 국제기구의 작용(workings)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상의 입구(structural entry point)를 제공해 주어, 이들이 세계화에 대해 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경제적 과제를 위임받은 국제기구의 외부적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신뢰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지금 한창 부상하는 지역간 및 양자 무역 투자 및 경제협력 제도 등에 대해서도 유사한 합의(arrangement)를 만들 수 있다.

◆ 글로벌 생산체제 안에서의 사회적 대화

563. 국가 차원에서 산업민주주의 및 단체교섭의 발전은, 역사적으로 작업장내 생산성 및 공평한 결과를 장려하기 위한, 그리고 노동자와 노

조에게 생산 과정에 있어 중요한 목소리를 부여하기 위한 중요한 메커니즘을 제공해 주었다. 글로벌 생산체제의 성장을 미루어, 이에 대한 노동자와 사용자 간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제도가 개발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세계화된 경제에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564. 현재, 상당히 많은 실험이 진행 중이며 몇 가지 흥미로운 자발적인 접근방안이 출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제산별노련(Global Union Federations)과 다국적기업 간에 25개 이상의 기본 협약이 체결되었다. 이들 협약의 내용은 각기 다르지만, 대부분이 핵심노동기준을 다루고, 어떤 것들은 ‘생활임금’ 그리고 보건 및 안전사항 등의 이슈를 포함한다. 지역 및 세계 차원의 노사협의회도 또한 사회적 대화를 육성하기 위해 보다 많이 활용되고 있다.

565. 성격상 고도의 글로벌 산업인 해운산업에서 종합형 글로벌 사회적 대화가 출현했다. 국제운수노조연맹(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과 국제해상경영자위원회(International Maritime Employers’ Committee) 간 체결된 선구적인 단체협약은 임금, 최저기준 및 모성보호를 포함한 기타 근로조건을 다루고 있다.

566. 이러한 형태의 글로벌 사회적 대화는 관련 글로벌 행위자 간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장려하고 노사분쟁의 해결을 촉진하는 이들의 잠재성을 결정하기 위해 ILO 및 기타 기구들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시민사회

567. 세계화의 두드러진 특징은 시민사회 행위자 커뮤니티의 급격한 출현이다. 이들은 전세계의 시민들과 관련 있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그들은 1950년대 중반에는 약 1,500개 정도의 규모에서 2001년에는 25,00개로 늘어났다. 물론 국제기관과 시민사회단체 사이의 접촉의 성격이나 빈도 그리고 상호 작용 방식이 다

양하지만, 전면적으로 협력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568. 시민사회단체들은 보다 공정한 세계화의 이슈를 제기하고 논쟁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공헌을 한다. 그들은 대중인식을 끌어올리고, 연구를 시행하고, 인간, 공동체 및 환경에 대한 세계화의 영향을 문서화하고, 여론을 동원하고 민주적 책임성을 보장한다. 그들은 또한 개발원조 및 인도주의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을 촉진하고,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지뢰사용금지 조약 및 국제형사법원(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설치 등과 같은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선도한다. 이들의 활동 중 유명한 것은 공정거래를 장려하기 위한 옥스팜(Oxfam)의 노력, 부채 무효화를 위한 주빌리 2000(Jubilee 2000) 캠페인, 세계사회포럼 및 지역별 사회포럼, 그리고 기타 많은 사례가 있다. 포괄적인 세계화에 대한 그들의 공헌은 범지구적 개혁 조치를 위한 국가적 지원을 동원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더욱 향상될 수 있다. 최근, 시민사회단체와 노조, 의회 및 다른 집단, 그리고 정부와의 상호 작용이, 특히 WTO 협상과 관련하여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569. 세계화의 다른 행위자와 마찬가지로, 시민사회단체도 이해당사자들에게 투명하고 책임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시민사회조직에는 정부가 구성하거나 기업이 지원하는 비정부기구(NGO), 시민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그리고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조직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조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 및 책임성의 이슈를 얘기할 때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사회단체의 책임성을 다루는 조치가 공공 이익을 위해 의견 및 우려를 동원하거나 이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 출발점은 시민사회단체 부문 내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신봉하고 추구하는 가치에 의거하는 자율 규제(self-regulation)에 의한 자발적인 이니셔티브를 격려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시민사회 커뮤니티는 동료간의 상호 평가(peer view)의 촉진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570. 현재, 세계시민사회 커뮤니티 내에는 대표성이 균형을 이루지 못

한다. 개발도상국의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빈곤하고 주변화된 커뮤니티의 조직은 적절히 대표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여 이들의 우려와 이해가 국가 및 세계 차원의 논의 및 협상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로벌 시민사회 커뮤니티 그리고 정부 및 국제사회는 가장 빈곤한 국가의 시민사회조직, 특히 빈곤 여성, 빈민가 거주자, 토착민, 농촌 근로자(rural worker), 영세사업자(small trader) 및 기능노동자(artisan) 등 주변화된 또는 결핍된 집단의 협회를 장려하고 강화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571. 시민사회, 정부 및 다자간기구 간의 긴장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어떤 다자간기구들은 NGO의 급격한 확산에 대응하는 그들의 역량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고 느낀다. 어떤 국가들은 NGO들이 그들의 영역을 침범하여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NGO들 자신도 정부 및 UN 기구와 같이 일하는 데 있어 관료주의와 정치적인 제약을 흔히 견디지 못해 한다. 많은 이들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타협으로 인해 그들의 독립성과 일관성이 저해된다고 생각한다.

572. 국제기구에의 시민사회단체의 관여는 또한 참여민주주의와 대리민주주의 간의 조화라는 복잡한 문제를 제기시킨다. 다양한 메커니즘들이 여러 다자간 과정과 여러 정부간 기구 안에서 발전하였다.¹⁰⁹⁾ 이들 메커니즘의 장단점에서, 특히 개발도상국의 주변화된 부문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교훈을 배워야 한다. 현상상의 규정 및 지배구조를 완전히 존중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정부간 기구간에 총괄적이고 구조화된 대화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시민사회단체의 자기 조직(self-organization) 과정의 강점을 추출하여, 이를 유엔체제와 시민사회조직 간 상호 작용을 향상시키기 위해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추가적으로 발전시켜 내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엔 사무총장은 페르난도 카르도스(Fernando Henrique Cardoso) 전 브라질 대통령의 리더십하에

109) 개요에 대해서는 <http://www.un.org/reform/panel.htm>에서 “The UN system and civil society: an inventory and analysis of practice” 참조.

고위급 연구단을 설치하여 유엔과 의회 의원 및 민간부문을 포함한 시민사회 간의 상호 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우리는 연구단이 우수 경험 및 모범 관행을 기초로 하는 다자체제 안의 시민사회의 참여 및 다자체제와의 시민사회의 상호 작용을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탐구하고, 유엔과 보다 많은 상호 작용을 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성 및 책임성을 보다 더 잘 처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 커뮤니케이션과 대중매체

573. 정보에 대한 접근은 민주적 의사결정에서 필수적이다. 대중매체는 정보를 배포하고 공공 논의를 위한 포럼을 제공하는 주요 수단이다.

574. 인터넷 및 저렴한 TV 및 라디오 수신체제 등과 같은 기술적 발전은 제공되는 정보의 양과 범위를 증가시켰고, 개발도상국의 외진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하고자 하는 정부들은 이제 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프로그램의 다양성은 문화 발전에 자극이 되어, 소수언어집단(linguistic minority) 및 기타 소수집단을 도왔다.

575. 그러나 커뮤니케이션 주도 기술의 어떤 측면은 우려의 소지가 있다. 매개로 사용되는 영어의 지배적인 역할은 영-미(Anglo-American) 뉴스 출처가 압도적으로 되도록 만들었다. 프랑스어, 스페인어 및 아랍어 등 다른 주요 언어들로 구성된 글로벌 프로그램 제작 능력을 개발하고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영어 구사자들이 국제 영어권 언론 매체에서 더 큰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상황은 바뀔 수도 있다. TV 뉴스 피드(news feed), 통신기사(wire service), 신디케이트 인쇄 언론(syndicated print journalism)의 구매자들은 압력을 더 가하여 정보 제공자(vendor)들이 문화, 현실 그리고 관련 이해당사자에 대한 보다 균형 있는 관점을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576.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세계는 새로운 민영방송의 도입으로 과거의 국영방송의 독점을 종식시키고 소비자의 힘이 커지면서 새로운 신문과 잡지를 지지하게 됨에 따라 보다 많은 언론의 다양성을 경험해 왔다. 그러나 서방세계에서 소유하는 최대의 매체는 여러 번 합병되었고, 이는 뉴스와 관점의 다양성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

577. 모든 곳의 정책은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흐름의 다양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책임있는 언론은 보다 공정하고 포괄적인 세계화를 향한 움직임을 촉진하는 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만약 여론이 본 보고서에서 제기된 이슈에 정통하게 된다면 이것은 변화를 이루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 네트워크화된 지배구조

578. 최근, 공공 및 민간 행위자 모두가 참여하는 세계 이슈 관련 네트워크 그리고 세계 사회정책개발을 위한 기타 비공식 합의(arrangement)가 급격히 확산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네트워크화된 지배구조’는 기존의 제도 내에 존재하는 특정한 부적절함(specific inadequacies)이나 격차(gaps)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¹¹⁰⁾ 이는 흔히 다부문적인데, 이 말은 국가 정부, 다자간기구, 시민사회단체 및 민간부문이 결합된 형태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또한 비공식적이 지배구조를 갖는 경향이 있고 조직 구조도 경직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자주 도입한다.¹¹¹⁾

110) Ngaire Woods, “Global Governance and the Role of Institutions”, in D. Held and A. McGrew (eds.), *Governing Globalization* (Cambridge, UK Polity Press, 2002); and Bob Deacon, Eeva Ollila, Meri Koivusalo and Paul Stubbs, *Global Social Governance: Themes and Prospects*, Elements for Discussion Series,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of Finland,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Helsinki, 2003) 참조.

111) Jeremy Heimans, *Reforming Global Economic and Social Governance: A Critical Review of Recent Programmatic Thinking*, background paper prepared for the World Commission, Geneva, 2003 참조.

579. 세계화된 네트워크, 프로젝트 및 파트너십은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고, 국제적 관행의 설정, 정보 배포 또는 자원 동원과 같은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우리는 앞에서 유엔의 글로벌 협약(Global Compact) 및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에 대항하는 글로벌 펀드(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와 같은 네트워크의 예를 언급하였다. 또 다른 예는 제약회사들이 새로운 말라리아 백신을 개발하도록 촉구하는 인센티브를 형성하기 위한 세계적 파트너십인 말라리아 의학 벤처(Medicines for Malaria Venture)가 있다. 지구촌환경기구(Global Environment Facility) 또는 유엔, 세계은행 및 ILO가 주관하는 청년고용 네트워크(Youth Employment Network)의 사례처럼, 국제기구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580. 다른 수많은 네트워크들이 사회적, 인도주의적 개발 및 양성(gender)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 및 의견의 교류를 위해 설치되었다. 많은 시민사회 캠페인 및 운동은 글로벌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매우 효과적으로 이용했다.¹¹²⁾ 인터넷은 책임 및 연대의 분권화된 네트워크(decentralized network)들이 사회 변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들 네트워크가 개방되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운영되고 정보가 원활하게 교환되기 위해서는 인터넷 그 자체의 지배구조가 계속 개방되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581. 이들 새로운 메커니즘을 위한 몇 가지 장점이 다음과 같이 주장되었다. 신속하고 비관료주의적인 행동의 혜택; 다양한 행위자 및 기능을 동원하는 능력; 그리고 특정 이슈에 주력하기 때문에 ‘결과 기반’ 접근방식(results-based approach)의 이용. 반면, 많은 경우에 이러한 접근방식은 선별된 행위자에게만 참여를 제한하고, 모든 이해당사자의 책임성 및 대표성 문제를 제기시키며, 기술관료적(technocratic)이 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감소시키기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 파트너

112) 예를 들면, Third World Network, which is an important contributor to debate and information on the reform of the global trading system. www.twinside.org.sg 참조.

십 및 국제기구 간의 개선된 조정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네트워크들의 기업가 정신 및 실험 정신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 * * * *

582.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비추어볼 때, 유엔체제 내에서 새로운 주요 제도를 형성하거나 심지어 경제사회이사회(ECOSOC)와 같은 기존 제도 및 브레턴-우즈 제도의 의결체제(voting system)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글로벌 네트워크는 세계화 그 자체의 결과로 증가할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새로운 그리고 유망한 지배구조의 형태를 찾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제도적 개혁을 위해 정치적으로 실행 가능한 가능성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국제형사법원(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설치가 보여주었듯이, 의미 있는 진보가 가능하다.

제Ⅳ부 변화를 위한 행동의 촉진

서론

국가 차원에서의 후속관리

다자체제

보다 나은 정책개발

연구지원

제도적 지원

부속서 1: 제안 및 권고 지침

부속서 2: 세계위원회; 배경 및 구성

부속서 3: 위원회 회의, 협의, 인구

찾아보기

서론

국가 차원에서의 후속관리

다자체제

보다 나은 정책개발

연구지원

제도적 지원

◆ 서론

583. 다양한 목소리들이 현 세계화 과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제시한 제안들은 그러한 요구에 대한 대응이다. 그러나 우리가 제시하는 권고에 대해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관성 있는 행동이 보장되지 않는다. 우리는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의 공약 및 지속적 관여를 보장하는 행동을 제안한다. 모든 경우, 우리는 사후 관리 과정에 총체적으로 활력을 불어넣고 지원하는 데 있어 유엔의 다 자체제의 중심적인 역할 수행을 마음 속에 그린다.

584. 사후관리는 국가뿐 아니라 국제 차원에서 이행되어야 한다. 각국 정부 및 국내 비정부 행위자들이 해야 할 일이 많다. 각국 대화에 참여했던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는 아래와 같이 세계화 이슈에 관심 있는 국가내 여러 집단간의 교류와 상호 작용을 위한 국가적 공간(national space)을 확장하기 위한 구체적 제안을 한다.

585. 세계화의 특성상, 우리는 정부간 과정 및 민족국가(nation state)의 영역을 넘어서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행위자와 세력(forces)을 참여시키게 된다. 우리는 기업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이미 활동하고 있는 비국가 행위자의 여러 네트워크의 에너지, 창조

성 및 영향 범위를 필요로 한다.¹¹³⁾ 우리는 국제 제도를 새로운 시대의 현실에 적응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변화를 위한 제후를 의미한 것으로, 흔히 관계 있는 분야(officialdom)의 경계 밖에 있는 파트너와의 제후를 뜻한다.

586. 우리는 정부, 의회, 국제기구 그리고 국제자유노련(ICFTU), 세계노동총연맹(WCL), 국제사용자기구(IOE), 국제상공회의소(ICC) 및 관련 NGO 등 기타 관련 행위자들이 국가 및 전지구적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세계화와 관련된 정책에 있어 보다 증가한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또 적절할 경우 행동으로 옮기길 바란다. 우리는 세계화 및 민주주의에 관한 헬싱키 협의(Helsinki Process on Globalization and Democracy)를 환영하며, 이 과정이 우리의 주요 권고 몇 가지에 관한 대화를 심화시키길 기대한다.

587. 우리는 많은 권고를 했지만, 공약이 중요하다. 우리의 비전에서 강조된 세계화를 위한 기본 가치 및 원칙은 공정하고 포괄적인 세계화 과정에 관한 보편화된 공약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우리는 본 보고서에 언급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행동 및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세계화 과정을 지배하는 관계와 규칙에 있어서 이 가치와 원칙의 안내를 받길 바란다.

588. 국제적 차원에서 우리는 두 단계로 후속관리 행동이 이행될 것으로 생각해 본다. 첫 번째 단계는 제안과 목표에 대한 보편화된 인식과 지지를 홍보 및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본 보고서의 정책 권고와 일치하도록 현 세계화 과정을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이 개시될 것이다.

113) 세계화의 다양한 측면들이 이미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과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 등 다양한 포럼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 외에도, International Forum on Globalization, Ethical Globalization Initiative, Global Stakeholder Panel Initiative on Globalization and Global Governance, State of the World Forum's Commission on Globalization 등 여러 혁신적인 사업들이 진행 중이다.

589. 행동의 첫 단계의 일부로서, 우리는 세계 공동체 안의 모든 행위자가 논의와 분석을 위해 정책 제안을 고려하는 데 있어, 권고를 수용하는 데 있어, 그리고 주창 및 행동을 위한 계획을 개발하는 데 있어 이 보고서를 기초로 이용하길 바란다. 우리는 우리의 작업을 통해 대립에서 대화로 이동하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본 보고서가 필요한 수정 조치를 취하게 하는 합의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길 희망한다.

590. 우선, 우리의 보고서는 본 위원회를 설치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이사회(Governing Body)에 제출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본 보고서의 광범위한 범위를 고려하여,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되어 제59차 유엔 총회 때 각국 정상들에게 제시될 것이다. 보고서는 또한 경제사회이사회(ECOSOC), 국제금융기관들의 집행이사회, 세계무역기구(WTO), 유엔(UN), 유럽연합(EU), 아프리카연합(AU), 아랍연맹(Arab League),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동남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등의 지역경제위원회 그리고 77개 개발도상국그룹(G77) 및 G8에 제출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이 보고서를 노동자 및 사용자조직, 경영자협회, 의회 및 지역정부, 관련 NGO, 연구소 및 재단, 전문가 및 소비자협회, 종교단체, 경제 및 사회 협의회, 정당 및 사회운동단체 등 세계 공동체의 주요 행위자들에게 제시할 계획이다. 우리는 이 모든 포럼들이 우리의 권고에 대해 논의하고 각자의 책임 영역에서 적합한 후속관리 행동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591. 분명, 1990년대 유엔회의에서 채택한 그리고 새천년 정상회의 선언에 명시된 공약사항의 이행은 본 보고서에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공정하고 세계화의 달성은 전진하려는 가장 강력한 행위자들의 정치적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정부, 의회, 기업, 시민단체 및 국제기구에서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책임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592. 우리의 권고 중 상당 수가 기존 다자간 기반 내에서 진행 중인

협상의 공정하고 균형 있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새로운 기반 및 정책 이니셔티브를 개발하는 등 보다 복잡한 과제가 필요로 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부터 이 후자 권고를 보다 자세히 다루겠다.

593. 사후관리 행동의 두 번째 단계는 더 많은 정책 일관성과 개선된 정책개발을 위한 전략을 기초로 할 것이다. 이것은 몇 가지 요인으로 구성될 것이다. 첫째, 우리는 지방, 국가 및 지역 정책에 대한 우리의 권고를 국가 차원에서 검토하고 사후관리하는 행동이 개시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우리는 또한 다자체제 안에서 보다 많은 정책 일관성을 달성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는 조치가 즉각 취해질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한다. 셋째, 우리는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가 관여하는, 주요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을 제안한다. 넷째, 우리는 관심 있는 국제기구 간에 세계화 정책포럼(Globalization Policy Forum)을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다섯째,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지원하는 필수 기술적 투입(input)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 세계화의 사회적 차원에 대한 지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제안한다.

◆ 국가 차원에서의 사후관리

594. 우리의 권고에 대한 사후관리의 주요 부분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들이 세계화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이러한 혜택이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될 것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정부 및 비국가 행위자들이 본 보고서의 섹션 III.1에서 제시한 광범위한 일련의 권고를 국가, 지방 및 지역 정책에 대해 검토할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국가 지배구조의 강화, 전지구적 지배구조 이슈에 대한 국가정책의 보다 큰 일관성, 중심 정책 목적으로 모두를 위한 양질의 노동 제공의 목표를 채택, 그리고 정책 형성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 등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한다.

595. 본 위원회가 개최한 국가 대화는 세계화와 관련된 다양하고도 각기 다른 국가의 집단 간의 교환 및 상호 작용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다. 이 대화는 국가 차원에서 다른 행위자간의 교류를 분석하고 심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가를 보여주었다. 관점과 이해의 차이를 조화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대화는 국가가 그들의 정당한 국가 이익을 지키는 역량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회 결속(social cohesion)을 실현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단계이다.

596. 그러므로 우리는 정부 및 기타 행위자들이 본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이러한 대화를 진전시킬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정부가 기존의 기구 또는 세계화의 사회적 차원에 관한 국가위원회와 같은 새로운 공공 기반의 설립을 통해 이를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회동하여 우려되는 이슈를 제기하고 사람과 공동체에 대한 세계화의 영향을 더 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대화는 문제를 파악하고, 정보를 배포하고, 모범 관행을 공유하고 대안적 정책대응을 고려하는 데 목적을 둘 것이다. 이러한 교류의 결과는 아래 제안된 다자간 기관의 국가 차원 업무에 주입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화의 사회적 차원에 관한 국가 연구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국가 대화를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또한 세계화에 대한 정책대응에 있어 다양한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이들 국가위원회간의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 다자체제

597. 유엔, 세계은행, IMF, WTO 등 다자체제는 ‘세계화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긍정적인 힘으로 만들기’ 위한 새천년 선언(Millennium Declaration)을 책임성 있게 전진시켜야 한다. 이는 21세기의 오랜 과제 못지않다. 이것은 이들 활동의 통일된 주제가 되어야 한다.

598. 다자체제의 모든 개혁의 목적은 이를 더 민주적·참여적으로 하

고, 보다 투명하며 책임성 있게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개혁은 보다 공정하고 포괄적인 세계화 과정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599. 본 보고서의 모든 권고에 대한 행동이 다자체제의 기구들에게 국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는 많은 행동들이 그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세계화에 관한 주요 프로젝트들이 유엔 내에 그리고 유엔의 기금, 프로그램 및 전문기구 내에 이미 존재한다.¹¹⁴⁾

600. 우리는, 관련 국제기구의 이사회(governing body)들이 본 보고서에 대한 사후관리의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그들의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 우리의 권고를 참작하는 방법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통치되는 세계화를 향한 규칙 및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01. 그러나 이렇게 중추적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자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주요 필수요건은 다자주의에 대한 새로운 정치적 공약이다. 모든 국가들은 공정하고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화된 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다자체제에 대한 자신들의 공동 이해 및 의무를 인정해야 한다.

602.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화로 향하기 위해서는 다자체제 내의 국제기구 간에 가치에 대한 일관된 행동이 요구된다. 또한, 보다 효과적인 국제적 홍보와 보편적 가치의 실현이 요구된다. 그 첫 단계로, 모든 국제기구들은 국제법하에 그들의 의무와 일관되게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위임 과제(mandate)를 적용해야 한다. 둘째, 우리는 다자체제의 각 기구, 특히 유엔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와 ILO가 보편적 원칙 및 인권을 장려하고 보호하기 위

114) FAO, ILO, IFAD, UNCTAD, UNDP, UNEP, UNESCO, UNIDO 및 WHO의 프로그램 등.

한 그들의 기존 절차 및 현 체제를 검토하길 기대하는데. 이는 그것들은 실제에서 보다 잘 적용하고 보편적 가치에 대한 국제 대화를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정책 일관성의 실현

603. 원칙적으로, 주요 국제기구들의 기본 원칙 및 목표 간에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들 국제기구들은 많은 목적들을 공유한다. 국제법에 따라 이들은 그들의 위임 과제(mandate)를 해석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다른 국제기구들의 위임 과제와 조화를 이루고 이들 국제기구들이 공유하는 궁극적 목표에 일치되게 해석해야 한다. 이들 모두는, 각 기구의 경제력이나 영향력의 차이를 불문하고, 회원국들이 다른 국제 도구 및 조약에서 이행하는 의무와 상충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위임 과제를 실제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604. 실제로, 다자체제는 인간개발 및 사회 진보를 장려하기 위한 경제, 금융, 무역, 환경 및 사회정책들 간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기대 이하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앞서 주장했듯이, 국제 규칙 및 정책은 모든 국가 및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세계화의 양상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 및 사회정책보다는 시장 확대를 위한 조치를 선호했다. 이는 무역 및 금융 관련 기구들이 개발 및 사회정책 관련 기구들보다 경제력 및 영향력이 더 큰 것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하고 포괄적인 세계화를 위해 보다 큰 일관성을 보장하는 데 있어 주요한 국면은 이러한 불균형을 이루는 결과를 수정하는 것이다.

605. 정책간 보다 큰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은 다자체제의 기구들만의 책임이 아니고, 정부 그리고 정부의 업무를 감독하는 의회의 책임이기도 하다. 특히, 국제기구들은 보다 큰 정책 일관성을 달성하기 위해 명확한 정치적 위임을 받을 필요가 있다.

606. 사회적 목표와 경제적 정책 간의 불균형을 수정하기 위한 보다

큰 정책적 일관성을 달성하여 초점을 시장에서 사람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수단은 국가 차원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경제, 금융 및 무역정책이 사회적으로 어떤 시사점을 갖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권고한다. IMF와 WTO는 각각 금융정책 및 무역정책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를 하지만, 그들은 각자의 위임사항 범위 내에 포함되는 이슈에만 주력한다. 이들 정책이 양질의 노동, 남녀평등, 교육, 보건 및 사회개발에 어떤 시사점을 갖는지를 조사하는 검토가 분명히 필요하다. 이는 사회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공간을 확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들 검토는 ILO¹¹⁵⁾ 그리고 UNDP 및 유엔 산하 전문기구와 같은 사회 이슈에 대해 위임 통치를 받은 국제체제의 기타 관련 기구들이 시행해야 할 것이다. 전체 과정을 국가가 소유하여(national ownership) 추진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 고용에 관한 한, ILO의 고용정책에 관한 협약(Employment Policy Convention)은 세계적 차원의 접근을 위한 기초로서 사용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준다.

607. 국제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국제기구들이 각자의 위임 통치를 적용할 때 서로 교차되고 각자의 정책이 상호 작용하는 이슈들과 관련하여 서로간의 정책 조정의 질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새로운 운영 도구가 체계적으로 개발될 것을 제안한다. 이는 경제 및 사회정책들 간의 불균형을 수정하고, 반대의 목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으로 입은 손실을 제거하고, 보완적인 정책들에 의한 시너지(synergy)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608. 우리는 관련 기구들이 세계화의 사회적 차원을 다루는 주요 이슈에 대해 정책 일관성 이니셔티브(PCI)를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의 목적은 특정 이슈에 대한 경제, 사회 및 개발 고려사항을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게 하는 통합된 정책 제안의 점진적 개발이 될 것이다.¹¹⁶⁾

115) 위 508절에서 지적했듯이, ILO는 이미 그 현장에서 국제경제정책의 사회적 시사점을 감독하라는 위임을 분명 받았다.

116) UNAIDS, 새천년 개발 목표의 사후관리를 위한 총체적 노력, 그리고 최

609. 우리는 다자체제의 모든 사무총장(Executive Heads)이 다른 기구들과 협력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포괄적인 세계화를 위해 정책 일관성을 유지(Policy Coherence Initiatives)할 것을 촉구한다. 본질적으로 대조적인 몇 가지 우선순위 이슈들이 즉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고용창출 및 빈곤 감소, 남녀평등 및 여성 권한강화, 비공식 경제의 경제 주류로의 통합, 핵심노동기준의 보호, 교육, 보건, 식량안보, 인간정주 등이 포함된다.

610. 각 기구의 사무총장(Executive Heads)은 다른 기구들과 함께 정책 일관성 이니셔티브를 위해 적절하다고 고려되는 이슈에 대해 추진하고,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최선의 공동 작업방식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공평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균형된 정책에 대한 이해도출은 검토와 행동을 위해 각자의 이사회(Boards or Governing Bodies)에 회부될 것이다. 이들 이니셔티브들의 진전 상황은 유엔 사무총장이 이끄는 유엔 최고집행위(Chief Executive Board)와 경제사회이사회에 보고될 것이다. 이 접근방식은 유연하면서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이용하면서 정책 입안의 질을 상당히 향상시켜 줄 것이다.

611. 우선, 우리는 관련 유엔기구,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세계무역기구 그리고 국제노동기구의 사무총장들(Executive Heads)이 정책 일관성 이니셔티브를 통한 세계 성장, 투자 및 고용창출이라는 질문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본 보고서에서 논의한 질문들을 고려해 볼 때, 이것이 가장 높은 순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이들 기관들이 정부, 기업, 노동자, 시민사회 그리고 모든 곳의 사람들에게 있어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슈에 대해 상당한 공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이니셔티브는 모든 국가들 내의 주요 정치적 요구에 대응할 것이고, 이러한 결정적인 분야에서 해결책을 찾아내도록 새로운 협력방안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근 창설된 제네바 이주그룹(Geneva Migration Group) 등, 통합적인 정책 접근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이미 진행 중이다.

◆ 보다 나은 정책개발

612. 사후관리는 또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관점과 이해를 고려하면서도, 구체적 권고를 운영 가능한 정책으로 더욱 발전시키는 과정을 요구한다.

613. 우리는 일련의 정책개발 대화(Policy Development Dialogues)를 통해 우리의 제안이 더 검토되고 개발될 것을 제안한다. 대화는 관련된 모든 행위자간의 커뮤니케이션 및 교류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고, 중장기적으로 구체적 정책 제안에 대한 합의 및 구체적 적용을 초래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여태까지 상대적으로 관심을 거의 받지 않은 중요한 정책 이슈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거나 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614. 그러한 대화는 행정관(administrator), 정치인, 의원, 기업인, 노동자, 시민사회, 그리고 공식 지배구조에서 대표성이 떨어지는 집단 등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화는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이해당사자, 그리고 변화를 시행할 책임을 가진 사람 등을 이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615. 각 대화의 본질, 의제 및 참가자는 담론의 단계 및 관련 주제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616. 이들 정책 대화는 다음 분야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 국경간 인력이동을 위한 다자체제의 구축. 이를 위한 과정은 440~444절에서 제시되었다. 유엔사무국,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이주기구(IOM),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유엔 마약 및 범죄사무소(UNODC) 등이 관여해야 할 것이다.
- 보다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ILO가 관련 포럼을 개최할 것을 557절에서 제안하였다. 국제사용자기구(IOE)와 국

제자유노련(ICFTU)이 주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면서(국내 및 국제) 투자자 그리고 투자 대상국 및 투자국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FDI를 위한 개발기반(399절). 이는 관련된 모든 국제기구를 관여시키고 모든 이해의 대표성을 보장할 것이다.
- 세계화, 적응 및 사회보호(490~491절). 이 대화는 세계화된 경제 속에서 사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의제를 구축할 것이다. 이는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노동기구(ILO) 등 기타 기구들을 관여시킬 것이다.
- 세계화의 이익을 넓히기 위하여, 교육 및 정보기술을 위한 기능에 대한 세계역량 강화(487절). 기존의 모든 이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이니셔티브와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와 세계은행이 주도하고, 국제통신연합(ITU), 유엔개발계획(UNDP) 등을 관여시켜야 할 것이다.
- 지역 및 소지역 통합의 보다 공정한 세계화에 대한 공헌(333~334절). 이는 관련 지역 기구의 사무국 그리고 유엔의 지역경제위원회(UN Regional Economic Commissions), 지역 의회, 지역 개발은행, 기타 지역 기구 및 관련 국제기구를 참여시킬 것이다.
- 유엔, UNDP, 유엔여성개발기금(UNIFEM) 및 기타 행위자들을 모이게 하는 보다 포괄적인 세계화를 위한 도구로서의 남녀평등.

617. 우리는 국제기구들이 각자의 위임 영역에 포함되는 주제에 대한 대화를 장려하고 이에 공헌할 것을 요구한다.

618. 이러한 집중된 정책 대화 외에도, 우리는 세계화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갖는 사람들간의 아이디어 교환을 위한 보다 광범위한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위원회의 경험은 이러한 교류가 유익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위원회 위원 개개인은 사용자와 노동자, 정책 입안자와 의원,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학계 등의 세계 각

다른 곳에서의 견해를 반영한다. 우리는 우리의 견해를 대화로 끌어들이면, 서로 이해가 다른 경우라 해도 거의 필연적으로 서로의 이해를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공동의 목적과 전진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다. 우리의 국가 및 지역 협의도 보다 광범위한 교류 및 상호 이해의 촉진 그리고 서로 다른 사회 행위자들이 공동의 이해를 위해 취할 수 있는 행동을 파악하는 데 있어 대화의 가치를 마찬가지로 보여주었다.

619.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다양한 견해간의 대화를 보다 공정한 세계화의 기반으로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로서 관심 있는 국제기구간에 세계화 정책포럼(Globalization Policy Forum)이 설치될 것을 권고한다. 이는 세계화의 사회적 차원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검토할 것이다.

620. 포럼의 역할은 다자간 대화(multi-stakeholder dialogue)를 위한 장을 마련하고 이 대화를 통해 제시되는 제안에 대해 공공의 지원을 구현하기 위한 다자체제의 집단 노력을 동원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포럼은 다자체제의 기구들, 특히 세계화의 사회적 차원에 관심 있는 유엔과 그 산하의 특별기구, 기타 기구, 단체 및 개인을 모이게 하는 장이 될 것이다. 이는 정기적으로 세계화된 경제 속의 개발 및 정책의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게 될 것이다. 이는 세계화의 사회적 영향의 동향을 모니터하고 주요 정책 이슈를 분석하는 데 있어 참여하는 모든 기구들의 지식, 자원 및 관점을 이용할 것이다.

621. 세계화의 사회적 차원에 관한 세계위원회의 경험으로 미루어, 우리는 ILO가 관련 있는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이 권고에 대한 사후관리를 주도해야 한다고 믿는다.

622. 참여하는 기구들 또한 그들의 광범위한 구성원(constituency)의 경험과 관점을 반영하는 ‘세계화 현황 보고서(State of Globalization Report)’를 준비함으로써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지원

623. 세계화의 사회적 차원에 대해 위에 제안한 행동들은 세계화의 동향 및 사람과 공동체에 대한 그의 영향 그리고 주요 이슈에 관한 국제정책의 심층적 분석에 관한 보다 나은 정보로 기초가 다져져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세계 모든 지역으로부터의 다양한 원천 및 전문성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를 전세계 사람들을 위한 긍정적인 힘으로 만들고, 또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제시한 구체적 제안을 지원하는 데 있어 지식개발은 필수적이다. 보다 양성평등 의식에 기초한(gender-sensitive) 모니터링 및 측정, 조사, 정책 검토 및 체계적 보고 등이 여론을 동원하고 행동을 안내하기 위해 모두 필요하다.

개선된 모니터링 및 측정

624. 측정된 것은 행동으로 옮겨진다. 우리는 세계화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그리고 최신의 지식 기반이 시급히 필요하다. 무역, 인력이동 및 자본 흐름 등 세계화의 여러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집단적인 정보가 이미 존재하지만, 이들 데이터는 불충분하다. 글로벌 생산체제 및 그의 공급업체의 네트워크, 기술의 전파 및 기술로의 접근, 증가하는 사람 및 조직의 국제 네트워크 등 현재 부실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에 대한 보다 나은 정보를 가져야 하고 이 데이터는 확장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세계화의 사회적 차원 및 세계화의 이익의 분배에 관해 성별로 구분된 신뢰 있는 정기적 정보 또한 필요하다. 이 작업은 진보의 측정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기존의 노력들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고 이들을 연결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주요 세계화 관련 이슈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와 반응에 관한 보다 신뢰성 있고 체계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이것의 목적은 “세계화가 사람들의 수요와 열망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조사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625. 이 모든 분야에 있어, 이들 주제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및 대조하고 네트워킹 및 교류를 촉진하고 있는 전세계의 통계기관(statistical office) 및 관측기관(observatory)의 작업을 취합할 필요가 있다.

보다 체계적인 연구 프로그램

626. 세계위원회의 작업은 세계화의 사회적 차원에 관한 더 많은 정보 그리고 더 나은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심층적 검토 또한 시급히 필요하다.

627.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하나 이상의 연구기관이 세계화의 다양한 측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¹¹⁷⁾ 우리는 기존의 노력을 복제하기보다는 이러한 연구기관 및 네트워크들이 협력하여 다자체제와 더불어 NGO도 참여시키는 세계화의 사회적 차원에 관한 광범위한 공동 연구 노력에 투자할 것을 권고한다. 우리는 연구기관들간의 국가, 지역 및 세계적 네트워크가 세계화의 사회적 차원의 여러 단면들을 일관되고 다원적인(multi-disciplinary) 방법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구축할 것이라고 믿는다. 예를 들어, 세계화된 경제의 맥락에서 국가 차원의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기반을 개발하는 것이 주요한 단면이다.

117) Yale Center for the Study of Globalization 및 London School of Economics Center for the Study of Global Governance 등과 같이 많은 기관들이 이 주제에 대해 전문화되어 있다. 다카에 소재한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Science Research in Africa(CODESRIA), 카이로에 소재한 Economic Research Forum for the Arab Countries,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소재한 CLACSO 등 많은 기관들이 지역 네트워크의 멤버이다. 다른 기관들은 세계개발네트워크(Global Development Network)와 같은 세계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거나, 헬싱키에 소재하고 있는 유엔대학 세계개발경제연구소(United Nations University World Institute for Development Economics and Research: UNU-WIDER), 국제노동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Labour Studies),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제네바에 소재한 South Center 등이 주도하는 세계적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628. 주요 다자간 기구는 또한 중요 이슈에 관한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세계무역기구(WTO) 및 국제노동기구(ILO)는 무역 발전 사항이 고용의 양과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이 성별로 어떤 시사를 하는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이와 유사한 기구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금융 및 개발정책의 중요한 변화를 검토하고 권리, 고용 및 개발 간에 긍정적인 연계를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629. 정책개발 협상(Policy Development Dialogue) 외에도, 우리는 연구원, 정책 입안자,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회동시켜 위 분야 및 기타 영역에 있어 실행 가능한 대안을 파악하기 위한 기존의 다자간 실무작업단(task force) 및 정책포럼에 대한 일반적인 지지를 요구한다. 이것은 정책 일관성이라는 목표에 공헌할 수 있다. 기존의 존재하는 몇몇 이니셔티브가 이러한 노력을 위한 기반을 제공해 줄 것이다. 또한, 세계화의 사회적 차원에 관한 정기 학술회의 개최 및 저널 발간 등은 개방되고 지적인 담론을 지속시키고 경험적 조사 결과의 정기적 출판을 위한 길을 제공해 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세계 모든 지역의 이러한 이니셔티브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이를 지역 차원에서 개발해야 하는 강력한 논리가 있다.

◆ 제도적인 지원

630. 우리는 ILO 및 기타 관련 기구들이 본 보고서에 대한 전반적인 사후관리 작업에 운영지원을 할 것을 희망한다. 이들 이니셔티브 중 많은 것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 관련 기관들이 추가 예산 자원을 동원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보다 공정한 세계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 국제사회의 이해가 상당함을 감안하면, 우리는 기부국 및 기타 재정지원 기관(funding institution)이 이러한 노력을 지원해 줄 것을 기대한다.

631. 우리는 가시적인 결과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우리는 보고서에 대한 반응을 모니터하고, 캠페인과 담론을 지원하고, 다양한 포럼에서 정책적 행동을 촉진할 것이다. 우리의 권고를 앞으로 전진시키기 위해 우리는 계속 노력할 것이다.

* * * * *

632. 서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우리는 결정적이면서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낸다. 우리는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모든 사람들의 가치와 열망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세계화는 수요와 관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든 이에게 더 큰 기회가 있는 곳이다.

633. 앞의 과제는 공약을 행동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치적 의지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전진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간의 보다 개방된 교류 그리고 보다 양질의 대화가 요구된다. 우리는 세계화의 보다 나은 통치구조를 위한 현재의 수요에 대응하는 국가내의 그리고 국가간의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제안한다. 이들은 증가하는 상호 작용 및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고 연대감을 행동지표로 삼는다.

634. 우리의 제안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입안에 보다 폭 넓은 사람과 국가들의 참여를 요구한다. 이는 정부, 의회, 기업, 노동, 시민사회 및 국제기구 내 결정을 하는 역량 및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고 공평하고 생산적인 세계 공동체를 장려하는 자신들의 공동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요구한다.

부속서

- 부속서 1: 제안 및 권고 지침
- 부속서 2: 세계위원회; 배경 및 구성
- 부속서 3: 위원회 회의, 협의, 연구

부속서 1: 제안 및 권고 지침

본 부속서는 보고서의 주요 정책 제안과 권고를 요약한 것으로서 관련 단락의 번호를 명시하였다.

공평한 세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 국가, 지역, 세계 등 모든 차원에서 보다 향상된 통치구조의 실현이 필요하다.

◆ 국가 지배구조

국가내 정책, 제도, 행동은 그 나라와 국민이 세계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들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제안은 그 범주를 국내 그리고 지방 차원으로 국한시켰다. 정책은 각 국가의 특수한 상황과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는 사실에 따라, 주요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1) 민주적인 정치체제, 인권 존중, 남녀평등, 사회평등, 법치를 바탕으로 하는 올바른 국가 지배구조. 모든 이해를 대변하고 사회적 대화를 가능케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238-245).
- (2) 필수적인 공공재 및 적절한 사회보호 제공, 모든 사람들의 능력과 기회 향상, 경제력(economic competitiveness) 강화에 있어서 국

가가 효율적인 역할을 담당한다.(249-251, 255-259, 269-277)

- (3) 시장을 지원하고 감독할 수 있는 건전한 제도, 세계화된 경제로의 통합 과정에 대한 신중한 관리, 안정적인 고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거시경제정책.(247-248, 251-254)
- (4) 정책을 통해 생산성 향상, 소득 증대, 보호 강화를 도모하고 재산 및 노동권, 기업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인 틀을 보장함으로써, 비공식 경제를 주류경제에 편입시키기 위한 정책 및 제도를 개혁한다. (261-268)
- (5) 고용창출에 우선순위 부여, 일터에서의 기본권 보호, 사회복지 강화,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노동을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로 설정한다.(278-289)
- (6) 기업들이 적절한 기술을 도입하고 지방 공동체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천연자원을 관리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의 기반을 마련한다.(290-292)
- (7) 보조성의 원칙에 따라 권위와 자원을 이전함으로써 지방 공동체에 권한 부여, 지방의 경제력 강화, 토속민과 부족민의 권한, 문화와 정체성 존중의 필요성을 인식한다.(293-312)
- (8) 세계 지배구조에의 지역 기구의 공헌 등을 포함한, 지역 차원에서의 협력을 통해 모든 잠재적인 혜택을 활용하고, 지역경제 및 정치적 통합 과정에서 사회적 목표들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313-334)
- (9) 국가정책과 전지구적 이해간의 일관성 유지. 모든 국가는 국가정책이 국경을 초월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전지구적인 지배구조 내에서 책임 있는 행위자가 되어야 한다. (243, 260, 541)

◆ 전지구적 지배구조

세계 차원에서 현 지배구조 체제는 불균형을 이루며 흔히 불공평한

결과를 생산해 내는 규칙과 정책을 바탕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정한 규칙

세계화된 경제의 규칙은 전세계의 사람, 가족, 공동체의 권리, 생활, 안보, 기회의 증진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공정한 무역, 금융, 투자 규칙, 핵심노동기준 준수를 위한 대책, 국경간 인력이동에 관한 일관된 체제 마련 등이 포함된다.

다자무역 체제와 국제금융 시스템은 개발도상국이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자율성을 확장하여 그들이 개방된 경제환경에서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361-367)

1) 무역

- (1) 불공평한 진입장벽들, 특히 개발도상국의 강력한 비교우위 상품의 시장진입을 막는 장벽들이 실질적으로 낮춰져야 한다. 농업 분야에서 새로운 수출신용과 보조금, 그리고 무역을 왜곡시키는 국내 정책들을 금지시키고 기존 정책들을 신속하게 철폐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섬유 및 의류 분야의 무역장벽 문제도 해결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정부 모두 노동자의 안정과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다.(369-379)
- (2) 무역상품의 기술 표준이 객관적이고 참여적인 방법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개발도상국이 상품 표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반덤핑 규제의 남용을 막고 개발도상국에게 절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380-382)
- (3) 시장 접근의 확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세계화된 경제에서 높은 수준의 유효수요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들이 똑같이 책임을 공유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전지구적 성장

과 완전고용을 위한 보다 균형잡힌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372)

- (4) 공평한 지적재산 보호규칙은 기술 고안자의 이익과 기술 사용자의 이익, 특히 지식과 기술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저소득국의 기술 사용자들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383)
- (5) 전지구적인 규칙은 또한 선진국가들의 역량을 보유하지 못한 국가들에 대한 우대정책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WTO의 특별 및 차별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조항을 상당 수준 강화할 필요가 있다.(369, 385-386)

2) 글로벌 생산체제

모든 이익과 권리 그리고 책임 간의 균형을 맞추는 FDI와 경쟁정책을 위한 보다 일관성 있고 명확한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 (1) 세계시장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경간의 경쟁정책에 관한 협력과 대화가 증진되어야 한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기업들이 글로벌 생산체제로 쉽게 편입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390-393)
- (2) FDI를 위한 더욱 투명하고 일관되며 균형잡힌 틀이 요구되며, 이러한 틀은 모든 이익을 반영하고 인센티브 경쟁 문제를 약화시키며 FDI가 공평한 개발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합의된 다자간 포럼을 찾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394-399)

3) 국제금융체제

무역과 FDI 영역에서 완전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국제금융 체제의 기능이 급격히 향상되어야 한다. 이는 지속가능한 세계 성장을 지원하고 빈국들이 세계화된 경제 속으로 통합하는 조건들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 (1) 개발도상국들이 국제금융체제의 개혁 과정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결단이 요구된다.(405-407)

- (2) 신흥시장에서 금융 변동성과 전염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보가 가속화되어야 한다. 위기시 더 많은 긴급 차입이 제공되고 이러한 차입이 금융 전염효과에 직면한 국가들에게도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들이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411)
- (3) 전지구적 금융 규칙과 정책은 후진적이고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금융체제를 보유한 개발도상국들이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자본 자유화를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회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적응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지를 주어야 할 것이다. (408-409, 413)
- (4)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책임과 부담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 고안 노력이 심화되어야 할 것이다.(412)

4) 세계화된 경제 속의 노동

보다 강력한 핵심노동기준 준수와 국경간 인력이동에 대한 보다 공정한 규칙으로 더 공평한 게임의 경제적 규칙이 보완되어야 한다.

- (1) 핵심노동기준의 준수를 장려하는 ILO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모든 관련 국제기구에는 이러한 기준을 널리 홍보하는 책임을 완수하고 그들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기준 실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426)
- (2) 국경간 인력이동에 관한 공평하고 투명한 규칙을 제공하는 다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접근방식을 제안한다. (a)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보호, 여성 인신매매 금지 등과 같은 사안을 해결하려는 기존의 다자간 공약을 확대하고 활성화, (b) 이주자의 고국과 이주 대상국 간의 대화를 통해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공통의 접근법 모색, (c) 공동의 이해를 위해 정돈되고 관리된 절차를 추구하는 전지구적인 기반 마련.(433-444)

- (3) 국경간 인력이동에 대한 견해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세계적 포럼이 필요하며, 이러한 이슈를 다루는 다자 기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445-446)

◆ 향상된 국제정책

보다 공정한 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행동은 더욱 일관성 있고 평등한 국제정책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 (1) 세계적인 차원에서 자원 동원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기본 요건이다. GDP의 0.7%까지 ODA로 사용하겠다는 공약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며, 각종 원조가 실효성 있게 전달되도록 만들어가야 한다.(453-458)
- (2) 채무 구제가 가속화되고 심화되어야 한다.(459-462)
- (3) 추가적인 자금원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들은 보완적인 것이어야 하며 0.7%의 ODA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약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463-470)
- (4) 자발적인 민간 기여의 잠재력과 전지구적인 연대를 위한 자선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471-472)
- (5) 저소득국으로의 자원이동 통로가 되는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원이 증가해야 할 것이다.(474-475)
- (6) 개발도상국의 교육투자를 늘리고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행동이 필수적이다.(482-487)
- (7) 마찬가지로, 세계화된 경제에서 최소한의 사회보호를 보장하기 위해서 각국의 사회보호체제를 지원하는 국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488-491)
- (8) 더 효율적인 세계 거시경제 관리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거시경제 정책 조정은 단기적으로 재정 흐름과 환율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 완전고용 달성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410, 494-497)

- (9) 수출가공지역, 더 나아가 글로벌 생산체제에서 양질의 노동을 장려하기 위한 강력한 행동과 폭 넓은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ILO가 이러한 대화에 참여하는 주체들에게 조언과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498-501, 563-566)
- (10) 모두를 위한 양질의 노동이 전지구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며 다자체제 내에서 더 일관된 정책을 바탕으로 이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다자체제의 모든 조직은 보다 통합되고 일관성 있게 국제경제정책 및 노동정책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502-510)
- (11) 교육, 보건, 인권, 환경, 그리고 남녀평등 문제는 경제사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통합된 접근방법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511-514)

◆ 보다 책임있는 제도

1) 다자체제와 국가 행위자

진보된 전지구적 지배구조를 위한 핵심 요건은 다자체제를 개혁하여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있고 일관된 체제로 만드는 것이다.

- (1) 브레턴-우즈(Bretton Woods) 제도는 개발도상국이 자국의 목소리를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투표권을 공정하게 부여하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521-525)
- (2) WTO의 운영방법 및 협상 절차는 모든 회원국들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527)
- (3) 모든 유엔체제 기구들은 평가 부서를 강화하고 분명한 공시정책을 도입하며 이를 바탕으로 결과를 발표해야 할 것이다. 외부평가를 권장하고 추후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529)
- (4) 우리는 각국 정상들이 사람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국제포럼에서 일관된 정책을 장려할 것을 요구한다. 전지구적 사회경제정책의 일관성 있는 증진은 전세계 정치 지도자들의 모임에서 의제로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532)

- (5) 경제 및 사회안보위원회 그리고 전지구적 지배구조 국제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기존 제안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530-531)
- (6) 각료급 집행위원회 구성, 주요 세계 정책 이슈에 관한 각료급 상호 논의 등 새로운 형태의 기능을 도입함으로써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대표성을 높이고 경제 및 사회 분야의 전지구적 정책을 조정하는 본 협의회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533-534)
- (7) 다자기구에 대한 재정 기여를 확대하여 이들이 더 많은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효율성과 능률도 더불어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536)
- (8) 유엔기구를 포함한 모든 조직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책에 대해서 대중들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의 정부와 의회는 이러한 조직에 파견된 대표의 결정을 검토함으로써 이 과정에 기여할 수 있다.(528, 539-540, 543)
- (9) 우리는 또한 세계 차원에서 다자체제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세계경제 및 사회정책 간의 일관성을 추구하는 국제의회그룹(Global Parliamentary Group)을 조성할 것을 요청한다.(544-545)

2) 비국가 행위자

다자체제 외에도 기업, 노조 및 시민사회단체, 글로벌 네트워크 모두 전지구적 지배구조에 중요하게 기여한다.

- (1) 국내 기업과 다국적기업 모두의 자발적인 이니셔티브는 세계화의 사회적 차원에 대한 기여 증진을 위해 강화될 수 있어야 한다. ILO는 관련 포럼을 개최해야 할 것이다.(555-557)
- (2) 브레턴-우즈 제도와 WTO 내에 국제노동운동과 기업 공동체와의 협의를 위한 공식 구조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562)
- (3) 시민사회단체 및 운동 강화를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개인의 협회 결성의 자유와 권리가 더욱 존중되어야 할 것

이다. 개발도상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세계시민사회 네트워크에서 갖는 대표성이 증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자체제와의 상호 작용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568, 570-572)

- (4) 시민사회단체는 투명하고 책임이 있어야 하며, 시민이 단체에 대해 갖는 권한과 목소리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569)
- (5) 책임있는 언론은 보다 공평하고 포괄적인 세계화를 이루기 위한 운동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모든 정책은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의 흐름에서 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577)
- (6) 경제 및 사회 분야의 정보교환, 주창, 자원 동원과 관계된 글로벌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그리고 국제조직 간의 조정이 보다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581)

◆ 변화를 위한 행동 촉진

이러한 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에는 많은 행위자가 필요하다. 국가 내에서 그리고 다자간 포럼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협상이나 담론 외에도 다음과 같은 행동과 이니셔티브를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

- (1) 국가 차원에서 우리는 정부와 비국가 행위자들이 지방, 국가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의 사후 행동을 검토하고 마련하기 위한 폭넓은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594-596)
- (2) 다자체제의 조직들은 그들의 절차가 일관성 있는 행동으로 보편적 가치와 인권 존중을 더 잘 실행하며, 국제 대화를 향상시키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513, 602)
- (3) 국제조직은 정책 일관성 이니셔티브(Policy Coherence Initiatives)를 발족시킴으로써 공평하고 포괄적인 세계화 달성을 위한 더 균형 잡히고 보완적인 정책 고안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 정책들은 우선적으로 세계화된 경제에서 성장, 투자, 고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608-611)
- (4) 사회문제 해결을 위임받은 국제체제 조직들은 한 국가에 속하

는 경제, 재정, 무역정책이 갖는 사회적인 시사점에 대해 국가별 연구(national review)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국가 소유권은 필수이다.(606)

- (5) 본 보고서에서 제안한 주요 정책의 검토 및 개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제 조직들이 앞장서 다자가 참여하는 일련의 정책개발대화(Policy Development Dialogues)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613-617)
- (6) 관심 있는 국제기구들이 세계화 정책포럼(Globalization Policy Forum)을 설립해야 한다. 이 포럼은 개발과 정책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나눌 수 있는 정기적인 대화의 장이 될 것이다. 또한 참여 기구들은 정기적으로 ‘세계화 현황 보고서(State of Globalization Report)’를 발표할 수 있다. (618-622)
- (7) 세계화의 사회적 차원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과 데이터 수집이 강화되어야 한다.(623-629)

부속서 2: 세계위원회: 배경 및 구성

세계화의 사회적 차원에 관한 세계위원회는 2001년 11월 ILO 이사회의 결정으로 설립되었다. 본 위원회는 세계경제와 직업세계 간의 상호 작용을 포함한 세계화의 사회적 차원에 대한 권위 있는 주요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성별, 지역간 균형, 3자간 관점(tripartite perspective)을 고려하면서도 세계화 논의의 주요 견해와 정책 고려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덕망 있고 권위 있는 위원을 선출하고자 ILO 사무총장을 초빙하여 자문을 구하였다.

2002년 2월 핀란드 대통령 Tarja Halonen, 탄자니아 대통령 Benjamin Mkapa가 사무총장의 초대에 응하여 위원회의 공동 의장이 되었다. 전 세계에서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갖춘 19명의 위원들이 선출되었다. 사무총장과 이사회 임원으로 구성된 5명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와 ILO를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

* ILO Governing Body documents: "Enhancing the action of the Working Party on the Social Dimension of Globalization: Next steps" (GB.282/WP/SDG/1), Geneva, November 2001; and "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e Social Dimension of Globalization (GB.282/12), Geneva, November 2001, 참조.

위원회는 독립기관으로 기능하였으며, 본 보고서에 대한 완전하고 독립적인 책임을 진다. 모든 위원은 최선을 다해 활동했다. 위원회는 따라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든지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하고, 위원회의 과제와 관련된 제안 및 권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 위원회 위원

공동 의장

H.E. Ms. Tarja Halonen, 핀란드 대통령

Tarja Halonen은 2000년 2월 당선되어 핀란드 최초 여성 총수가 되었다. Halonen 대통령은 헬싱키 대학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70년에 핀란드 노동조합 중앙지부(Central Organization of Finnish Trade Unions) 변호사가 되었고, 하원의원(MP)과 내각 각료(Cabinet Minister)로 정치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이 일을 계속하였다. 1979년 이후 핀란드 대통령으로 취임하기까지 하원의원직을 유지하였다. 법무부장관(1990-91), 외무부 장관(1995-2000), 북유럽 협력담당 장관(1989-91)을 역임하였다. Halonen 대통령은 유럽회의 현명한 지도자 위원회(Committee of Wise Persons of the Council of Europe) (1998-99) 위원으로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특히 인권, 민주주의, 법치, 시민사회 등의 이슈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H.E. Mr. Benjamin William Mkapa, 탄자니아 대통령

Benjamin William Mkapa는 1995년 11월 탄자니아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1962년 우간다 마케레 대학(Makere University College in Uganda)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다. 1966년에 언론계에 입문하여 탄자니아의 주요 일간지인 《The Nationalist Uhurur》와 《The Daily News》의 편집장을 역임했다. 1974년 당시 탄자니아 대통령 Mr. Mwalimu Julius

Nyerere의 언론보좌관으로 임명되었다. 나이지리아 고등판무관(1976), 외무부 장관(1977-80), 캐나다 고등판무관(1982), 미국 대사(1983) 등을 거쳐 국제외교에서 경력을 쌓았다. 1984년 외무부 장관으로 재임명되었고 1990년대 초 정보교육부 장관이 되었다. 1992년 과학·기술·고등교육 장관으로 임명된 후 1995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Mkapa 대통령은 탄자니아에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탄자니아를 세계무역과 해외 투자에 개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위원

Giuliano Amato

Dr.Amato는 1992-93년, 2000-2001년 두 번에 걸쳐 이탈리아 총리로 재직하였다. 최근에는 유럽연합 헌법총회(Constitutional Convention of the European Union)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이탈리아 상원의원이기도 한 Dr.Amato는 부총리, 재무부 장관, 제도개혁 장관, 이탈리아 공정거래 위원장 등 주요 정부 요직을 거쳤다. Dr.Amatos는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1975-97년까지 로마대학 정치학 대학원에서 이탈리아 법과 비교헌법 교수로 재직하였다.

Ruth Cardoso

빈곤 및 사회배척 배제를 위한 파트너십 조직기구인 Programa Capacitação Solidaria 총재. 1995-2002년까지 브라질 영부인이었으며 브라질 분석 및 계획 연구소(Brazilian Centre of Analysis and Planning) 수석연구원, 상파울루 대학 인류학 교수를 역임하였다. 그녀는 또한 유엔재단(UN Foundation) 이사회와 청년고용을 위한 고위급 패널(High-level Panel on Youth Employment)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Dr.Cardoso는 청년문제, 사회운동, 시민사회, 새로운 사회 행위자에 관한 저서를 집필하였다.

Heba Handoussa

이집트 상원(Upper House of Parliament)인 슈라(Shura Council) 의원, 이집트 중앙은행 이사회 이사. 경제학자이기도 한 Handoussa 교수는 2003년까지 아랍 국가, 이란, 터키 경제연구포럼(Economic Research Forum for the Arab countries, Iran and Turkey) 대표로 활동하였다. 카이로 소재 아메리칸 대학(American University) 교수로 재직 중 교무처장으로 임명되었다. 이집트 정부 자문위원과 세계은행 컨설턴트로 활동하였다. 구조조정, 산업정책, 해외원조, 제도개혁, 비교개발모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Eveline Herfkens

새천년 개발 목표 캠페인(Millennium Development Goals Campaign) 조정담당관이며 전 네덜란드 개발협력 장관(1998-2002). 1996-98년까지 Ms. Herfkens는 UN 및 WTO 대사를 역임했고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이사회 위원, 유럽경제위원회(Bureau of the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1990-96년까지 세계은행 그룹 총재, 그 이전에는 9년간 네덜란드 노동당 의원이었다. 법학을 전공하였으며 여러 비정부기구에서도 활동했다.

Ann McLaughlin Korologos

랜즈사(Rand Corporation) 부회장, 뉴욕에 소재한 투자뱅크 회사 Benedetto, Gartland and Company의 수석자문, Microsoft Corporation, AMR Corporation과 자회사인 American Airline, Fannie Mae, He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Kellogg Company, Vulcan Materials, Host Marriott Corporation 등의 기업 이사회 위원. Ms. Korologos는 1987-89년까지 미국 노동부 장관을 역임하고 내무부 부장관, 재무부 차관보를 거쳤다. 1996-2000년까지 아스펜 연구소(Aspen Institute) 소장으로 활동했다.

Lu Mai

1998년부터 중국개발연구재단(China Development Research Foundation) 사무총장. Mr. Lu는 1995년부터 중국 정부 개발연구재단 수석연구원으로 활동하였다. 중국의 농촌개혁에 관한 폭 넓은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1980년대 후반 농촌개혁실험지역사무소(Experimental Area office for Rural Reform) 소장, 중국 정부 농촌개발연구소(Research Centre for Rural Development of the State Council) 소장을 역임했다. 경제개혁에 관한 다양한 저서를 집필하였고,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그리고 기타 다른 국제기구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했다.

Valentina Matvienko

2003년부터 상트 페테르스부르크 주지사. Ms. Matvienko는 러시아 연방 부총리를 역임하면서 사회문제, 교육, 문화 분야를 책임졌다. 또한 정부와 노동조합, 사회운동과 협회, 종교조직과 대중매체 사이의 관계를 담당하였다. Ms. Matvienko는 1998년 사회문제 책임 부총리로 임명되기 전에는 외교관으로 활동하고 다년간 정부 관료로 재직하였다. 1991-95년까지 말타 대사, 1997-98년까지 그리스 대사를 역임하였다.

Deepak Nayyar

텔리 대학 부총장. Nayyar 교수는 저명한 경제학자이다. 옥스포드, 서섹스 외에, 뉴델리에 소재한 Calcutta and Jawaharlal Nehru 대학의 인도경영연구소(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 등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인도 정부 수석경제자문관과 재정부 차관을 역임했다. 활발한 저서 집필 및 기고 활동을 펼치고 있는 Nayyar 교수는 헬싱키 소재 세계개발경제연구소(World Institute of Development Economics Research) 이사회 의장, 옥스포드 대학 국제개발센터(International Development Centre) 자문위원회 위원장, 미국의 사회과학연구회(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의 이사회 멤버이기도 하다.

Taizo Nishimuro

Toshiba Corporation 이사회 의장. Mr. Nishimuro는 Toshiba에서 기업인으로 경력을 쌓으며 전기부품과 가전제품의 해외판매 및 마케팅을 담당했다. 2002년 5월 일본의 주요 2대 경영인 조직인 케이단렌(Keidanren)과 니카이렌(Nikkeiren)의 합병으로 탄생한 일본기업협회(Japan Business Federation)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François Perigot

2001년 6월부터 국제사용자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Employers) 회장. Mr. Perigot는 Thibaud, Gibbs et Cie사 CEO(1968-70), Unilever 프랑스 CEO(1971-86)를 역임하면서 프랑스 산업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1986-94년 국내 프랑스경영인협회(National Council of French Employers) 회장, 1997년 이후 프랑스의 주요 경영인 기구인 Mouvement des Entreprises de France (MEDEF) International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Surin Pitsuwan

태국 국회의원이며 전 외무부 장관. Dr. Surin은 정부기관과 외교에서 오랜 경력을 쌓았다. 1997-2001년까지 외무부 장관, 1992-95년까지 외무부 차관을 역임하였고, 1986년 처음 국회의원 당선 이후 6회 연속 당선되었다.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인간안보회의(Commission on Human Security) 위원을 역임했고, 태국과 주변 지역의 주요 일간지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Julio Maria Sanguinetti

라틴아메리카에서 새로운 형태의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포럼인 Circulo de Montevideo 회장. Mr. Sanguinetti는 1985-90년, 1990-95년 우루과이 공화국 대통령을 연임하였다. 정치, 문화, 저널리즘 분야에서 오랫동안 뛰어난 경력을 쌓았으며, 그의 뛰어

난 업적을 인정하여 2000년 UNESCO가 수여하는 <Simón Bolívar>상을 수상하였고 이외에도 전세계 여러 대학에서 명예 학위를 받았다.

Hernando de Soto

리마 페루에 소재한 자유 및 민주주의연구소(Institute for Liberty and Democracy) 소장. 《The Economist》는 이 연구소를 개발 문제를 다루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기관 중의 하나로 선정하였다. 경제정책에 관한 베스트셀러를 저술한 영향력 있는 작가이기도 한 Mr. de Soto는 1999년 《타임즈》지가 선정한 다섯 명의 라틴아메리카 혁신가 중의 한 명으로 뽑히기도 하였다. 비공식 부문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로 알려져 있으며, 페루 정부의 자문관으로 활동하면서 비공식 기업과 재산소유권을 주류 경제로 편입시키기 위한 개발 및 이행 전략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다.

Joseph Stiglitz

콜럼비아 대학 경제, 비즈니스, 국제관계 교수. 저명한 학자인 Stiglitz 교수는 근대개발경제학의 창시자 중의 한 명이다. 예일, 프린스턴, 옥스퍼드, 스탠포드 대학 교수로 재직했으며 세계은행 수석경제학자로 활동했다. 그는 1993~97년까지 미국 경제자문위원회(U.S. Council of Economic Advisors) 위원장을 역임했다. Joseph Stiglitz는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John J. Sweeney

미국노동총연맹 산업별노동조합회의(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AFL-CIO) 의장. 뉴욕 브롱스 태생인 Mr. Sweeney는 1995년부터 의장직을 맡고 있다. 노동조합과의 인연은 여성섬유노동자(Ladies' Garment Workers)에서 연구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시작되었다. 1960년 뉴욕시 계약 담당자로 서비스종사자 국제노조(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SEIU)에 합류하

였고 1980년 세계조합(International Union) 의장을 4회 연임한 후 AFL-CIO 의장이 되었다.

Victoria Tauli-Corpuz

테브테바재단(Tebtebba Foundation) 사무총장. 필리핀의 코딜레라(Cordillera) 지방 태생의 토착민 운동가인 Ms.Tauli-Corpuz는 사회인식 제고, 공동체 조직, 연구 및 개발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비정부기구(NGO)를 설립하고 관리했다. 그녀는 1994년 이래 토착민을 위한 UN 펀드이사회(Board of Trustees of the United Nations Voluntary Fund for Indigenous Populations) 회원이며 의장 연락관(chairperson-rapporteur)을 역임하고 있다. 최근에는 토착민을 대표하는 조직인 필리핀 여성의 역할에 관한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the Role of Filipino Women)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Aminata D. Traoré

작가이며 아프리카 사회포럼(African Social Forum) 조직의 하나인 Centre Amadou Hanyrat Ba (CAHBA) 대표. Dr. Traoré는 말리의 문화 관광부 장관을 역임했다. 선진국-후진국 관계, 양자간 다자간 협력, 민주적 지방 차원 및 전지구적 지배구조 그리고 세계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발문제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2002년 1월 바마코에서 열린 제1회 아프리카 사회포럼의 조직위원으로 활동했다.

Zwelinzima Vavi

남아프리카노동조합회의(Congress of South African Trade Union, COSATU) 사무총장. Mr. Vavi는 클릭스드롭(Klerksdrop)과 오크니(Orkney)의 금광에서 일했으며 1987년 전국광산노동조합(National Union of Mineworkers: NUM) 조직원으로 합류했다. 1988년 COSATU's 서부 트랜스발(Western Transvaal) 지부장이 되었고, 4년 뒤 조직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1993-99년까지 COSATU's의 부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이

후 사무총장이 되었다.

Ernst Ulrich von Weizsaecker

과학자이며 국회의원. 1998년 이래 독일의회(German Bundestag) 의원으로 ‘세계경제의 세계화: 도전과 응전’에 관한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저명한 생물학자이며 물리학자인 von Weizsaecker 박사는 UN 과학기술센터(United Nations Centre on Science and Technology)와 유럽환경정책연구소(Institute for European Environmental Policy) 소장을 역임했다. 1991년 이후 로마클럽(Club of Rome)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공공정책, 환경 및 에너지에 관한 다양한 저서를 출판했다.

당연직 위원

Bill Brett

2002-2003년 ILO 이사회 의장. Brett경은 7년간 ILO 이사회 실무그룹(Worker's Group) 회원으로 활동했다. 노동조합에서 다년간 경력을 쌓았으며, 1999년 6월 영국 상원(House of Lords) 의원으로 임명되었다.

Eui-yong Chung

2003-2004년 ILO 이사회 의장. 2001-2004년간 UN과 제네바 소재 기타 국제기구의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 역임. 정의용 대사는 2002-2004년간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의제를 위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특별회의(Special Session of the TRIPs Council for the Doha Development Agenda) 의장으로도 활동했다.

Daniel Funes de Rioja

ILO 이사회 부의장이며 사용자 그룹(Employers' group) 의장. Mr. Funes는 국제사용자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Employers) 부회장이며,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노동문제 비즈니

스 기술위원회(Business Technical Committee in Labor Affairs) 위원장 및 아르헨티나 산업연맹(Union of Industry of Argentina)의 사회정책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Juan Somavia

1998년부터 ILO 사무총장, 전 UN 칠레대표부 대사. Mr. Somavia는 시민문제와 국제정세 분야에서 수년간 탁월한 경력을 쌓았다. 유엔경제사회협력회의(ECOSOC) 의장으로 2회 선출되었고 코펜하겐 사회개발 정상회의 준비위원회(Preparatory Committee of the World Social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위원장을 역임했다.

Alain Ludovic Tou

ILO 이사회 의장(2001-2002)이며 2000년 11월부터 부르키나 파소(Burkina Faso) 고용·노동·사회보장 장관. Mr. Tou는 주택도시화 장관, 보건 장관 등 다양한 정부 요직을 거쳤다.

사무국

ILO는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사무국을 설립하였으며, 세계은행은 주요 간부를 사무국에 파견하였다. 사무국은 Jarmo Viinanen과 Heikki Pohja(Halonen의장 보좌관), Fulgence Kazaura, Ombeni Sefue, Tuvako Manongi(Mkapa의장 보좌관) 등 공동 의장 보좌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했다.

핵심 사무국의 직원으로는 Padmanabha Gopinath (Executive Secretary), Gerry Rodgers(Technical Director), Eddy Lee (Economic Adviser), Dharam Ghai, Arna Hartmann (세계은행), Susan Hayter, Michael Henriques (Manager, Operations), Rolph van der Hoeven (Manager, Technical Secretariat), Ruth McCoy, Aurelio Parisotto, Zohreh Tabatabai (Communications Adviser)가 수고해 주었다.

또한 Manolo Abella, José-Guilherme Almeida dos Reis, Rashid Amjad, Philip Bowering, Susan Davis, Janelle Diller, Tayo Fashoyin, Deborah France, Ajit Ghose, K.P. Kannan, Richard Kozul-Wright (UNCTAD), Bob Kyloh, John Langmore, Virgilio Levaggi, Francis Maupain, Steven Oates, Nana Oishi, Stephen Pursey 그리고 Hamid Tabatabai 등 많은 분들이 사무국의 활동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주었다.

Annette Schut는 문서 수집 및 관리를 담당하고, Rosemarie Beattie, Sheila Davey, Geraldene Fitzgerald는 편집을 담당했다. Barbara Collins와 Clare Schenker가 행정, 재정, 정보 시스템 조직과 사무 지원을 조직했고, Rowena Ferranco, Zydre Pember, Judy Rafferty, Véronique Arthaud, Mila Cueni, Sharon Dubois, Catherine Harada, Zohreh Mobasser, Meral Stagoll이 이를 제공하였다. Michiko Miyamoto와 Roberto Zachmann이 웹 개발을 지원하였고, Renato Johnsson, Andrew Lang, Malte Luebker, Muriel Meunier는 연구를 지원했다.

부속서 3: 위원회 회의, 협의, 연구

◆ 위원회 회의

위원회 회의는 제네바에서 총 6회 개최: 2002년 3월 24-26일, 2002년 5월 20-21일, 2002년 10월 12-15일, 2003년 2월 16-18일, 2003년 5월 17-20일, 2003년 8월 10-12일. 또한, 2003년 10월 4-6일간 제네바에서 전면적인 개방교류(open-ended exchange)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회의와 더불어 위원회는 폭 넓은 협의와 대화를 거쳐 실질적인 기술적 업무에 관한 프로그램을 고안했으며, 이는 사무국에서 조직하였다.

◆ 협의

위원회는 2002년 10월 12일 IMF 총재 Horst Köhler, 2002년 10월 14일 WTO 사무총장 Supachai Panitchpakdi, 2003년 2월 18일 세계은행 총재 James Wolfensohn과 의견을 교환하였다.

위원회는 또한 세계화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얻고자 전세계에서 일련의 대화의 기회를 가졌다. 위원 개개인과 사무국 직원들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열린 19회의 개별 국가 대화, 7회의(초국가적) 지

역별 대화에 참여했고, 핵심 행위자들과 10회의 협의를 거쳤다. 이러한 과정에서 2,000명이 넘는 전세계 정부, 비즈니스, 노동조합, 시민사회 대표 및 여론 주도자들로부터 전세계 공공 여론의 다양한 면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 대화들에 관한 보고서는 위원회 웹사이트(www.ilo.org/wcsdg)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가 대화(National dialogues)

- 탄자니아	다르 에스 살람, 2002년 8월 19-20일
- 세네갈	다카르, 2002년 8월 26일
- 우간다	캄파라, 2002년 10월 4일
- 필리핀	마닐라, 2002년 9월 12일
- 러시아	모스크바, 2002년 9월 25일
- 멕시코	멕시코 시티, 2002년 10월 8일
- 코스타리카	산호세, 2002년 10월 28일
- 칠레	산티아고, 2002년 11월 4일
-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2002년 11월 9일
- 핀란드	헬싱키, 2002년 11월 13일
- 중국	베이징, 2002년 11월 26일
- 아르헨티나-우루과이	캐라스코, 2002년 12월 2일
- 인도	뉴델리, 2002년 12월 11일
- 이집트	카이로, 2002년 12월 21-22일
- 브라질	브라질리아, 2003년 1월 20-21일
- 폴란드	바르샤바, 2003년 2월 6일
- 미국(포커스 그룹)	인디애나폴리스, IN, 2003년 4월 22일 워싱턴, DC, 2003년 4월 24일
- 독일	베를린, 2003년 4월 28일

지역 및 소지역 대화(Regional and sub-regional dialogues)

- 라틴아메리카 리마, 2002년 12월 7일
 칠레 산티아고, 2003년 7월 1일
- 아시아 방콕, 2002년 12월 16-17일
- 유럽 브뤼셀, 2003년 2월 3-4일
- 아프리카 아루샤, 2003년 2월 6-7일
- 카리브 지역 바베이도스, 2003년 4월 9일
- 아랍국가 베이루트, 2003년 5월 8-9일

기타 대화(Other dialogues)

-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부대행사, 요하네스버그, 2002년 8월 30일
-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시민사회단체와의 비공식 세션, 요하네스버그, 2002년 9월 2일
- IOE 세계회의 고위급 비즈니스 대표단 회의, 제네바, 2002년 10월 16일
- 국제노동조합운동(International Trade Union Movement)인 ICFTU 및 WCL과의 대화, 브뤼셀, 2002년 11월 26일
- 세계화에 관한 국제포럼 및 위원회 현황(State of the World Forum, Commission on Globalization) 비공식 세션, 멕시코 시티, 2002년 12월 4일
- “세계화의 사회적 차원 – 시민사회의 비판적 평가”에 관한 대화, 탐마삿 대학(Thammasat University)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Friedrich- Ebert-Stiftung), 방콕, 2002년 12월 17-18일
- 세계사회포럼 부대행사, 포르투 알레그로, 2003년 1월 24일
- 세계경제포럼 부대행사 “세계화의 가치” 2003년 1월 25일
- 비정부기구 대표들과의 원탁회의, 제네바, 2004년 6월 6일

◆ 기술적 지원

사무국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폭 넓은 지식 기반을 마련했고, 이는 이전 위원회의 성과 검토, 관련 문헌 및 연구 조사, 정책 아이디어 및 경험 축적, 세계화의 사회적 차원에서의 여러 경향에 관한 데이터 수집 및 실질적인 보고서 준비 등을 통해 가능했다. UN 경제사회 분과(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DESA), UNDP, UNCTAD, 세계은행, WTO, IMF 등의 국제기구와 기술적인 협의도 거쳤다.

다음 주제들에 대한 전문적인 토론을 위해, 정책 집행자, 기술 전문가, 학자, 기타 행위자들을 포함한 지식 네트워크(Knowledge Networks)가 구축되었다.

- 세계화의 맥락에서 가치와 목표
- 세계 속의 지방 시장과 정책
-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세계화
- 국가간 생산 및 기술 네트워크: 개발 및 양질의 노동 촉진
- 국제이주: 세계정책 의제로서의 노동의 이동성
- 포괄적인 세계화를 위한 전지구적 지배구조
- 세계화와 문화

양성평등과 고용의 문제는 교차 주제로 논의되었다.

사무국은 이러한 지식 네트워크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일련의 회의를 조직하였다. 이 회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정책들을 다양하게 검토하였으며 위원회가 고려할 만한 대안들을 모색할 수 있었다.

지식 네트워크 회의 보고서, 통계 자료, 세계화의 사회적 차원에 관한 정책안을 축적한 전자 아이디어 뱅크, 주석이 달린 참고문헌 목록과 기술 보고서 등은 위원회 웹사이트(www.ilo.org/wcsdg)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구축 중이다. 이 보고서는 출판될 예정이다

지식 네트워크(Knowledge Networks) 회의

- | | |
|----------------------------------|--|
| - 세계화와 사회적 배제 | 제네바, 2002년 9월 16-17일 |
| - 국제이주 | 제네바, 2002년 9월 18-19일 |
| - 생산 및 기술의 국경간 네트워크 | 제네바, 2002년 9월 19-20일 |
| - 가치와 세계화 | 화상회의, 2002년 9월 24-30일 |
| - 세계 속의 지방 시장과 정책 | 제네바, 2002년 11월 7-8일 |
| - 세계화된 경제 속의 규제 기반 | 제네바, 2002년 11월 21-22일 |
| - 보다 나은 세계화를 위한 지배구조 | 뉴욕, 2002년 11월 22일 |
| - 세계화의 효과: 근로가족과 빈민에게 세계화의 혜택 확장 | 워싱턴, 2002년 12월 2-3일
(브루킹스연구소(The Brookings Institution) 및 카네기연구소(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와 공동주최) |
| -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무역 | 제네바, 2002년 12월 6일 |
| - 국제이주 | 제네바, 2002년 12월 16-17일 |
| - 세계화, 문화와 사회 변화 | 제네바, 2003년 1월 30-31일
(UNRISD와 공동주최) |
| -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제네바, 2003년 2월 14-15일 |
| - 개발도상국의 세계화와 노동시장 적응 | 런던, 2003년 4월 8일(DFID와 공동주최) |

◆ 감사의 말씀

많은 개인과 기구들이 우리 위원회의 활동에 도움을 주었다. 모두의 공헌에 깊이 감사드린다.

재정 지원

ILO는 위원회 활동을 전폭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정부는 위원회의 특별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다.

대화 및 협의 지원

다음과 같은 많은 단체들이 대화 및 협의 조직에 도움을 주었다.: 알 아람 정치전략연구소(Al-Ahram Center for Political and Strategic Studies), 카이로; 안데스 공동체(Andean Community); 중국 개발연구재단(China Development Research Foundation: CDRF), 베이징; Colegio de Mexico, 멕시코 시티; 아프리카 사회과학연구발전위원회(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Science Research in Africa: CODESRIA), 다카르; 아프리카 경제위원회(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ECA); 중남미 경제위원회(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ECLAC); 경제사회연구재단(Economic and Social Research Foundation: ESRF), 다르에스살람;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고용사회부(DG Employment and Social Affairs); 독일 경제노동부(Federal Ministry of Economy and Labour of Germany); 플랑드르 국무부(Flemish Ministry for Home Affairs), 시민 서비스 및 외교정책실(Civil Service and Foreign Policy);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Friedrich-Ebert-Stiftung), 방콕; 바르바도스 정부(Government of Barbados); 하트연구협회(Hart Research Associates), 워싱턴 DC; 국제자유노동연합(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 ICFTU); 국제경영자단체연맹(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Employers: IOE); 브라질 외무부 산하 국제관계연구소(Institute of Research on International Relations, IPRI); 노동사회연구소(Institute for Studies on Labour and Society, IETS), 리우데자네이루; 폴란드 경제·노동·사회 정책부(Ministry of Economy, Labour and Social Policy of Poland); 우간다 여성·노동·사회개발부(Ministry of Gender, Labour and Social

Development of Uganda); 브라질 노동고용부(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of Brazil); 남아프리카 국가경제발전·노동평의회(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Labour Council of South Africa: NEDLAC); 핀란드 정부(Office of the Republic of Finland); 탄자니아 대통령실(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여론전략연구소(Public Opinion Strategies), 워싱턴 DC; 빈곤퇴치연구(Research on Poverty Alleviation, REPOA), 다르에스살람, 탐마삿 대학(Thammasat University), 방콕; 세계화에 관한 국제포럼 및 위원회 현황(State of the World Forum, Commission on Globalization); UN 비정부 연락사무소(United Nations Non-Governmental Liaison Service, NGLS); 세계노동협의회(World Confederation of Labour);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

ILO 지역사무소에서도 상당한 지원을 해주었다. 특히, 아비장, 방콕, 베이루트, 제네바, 리마 ILO 지역사무소 소장과 직원들; 부다페스트, 카이로, 다카르, 마닐라, 모스크바, 뉴델리, 리마, 포트오브스페인, 산티아고, 산호세 ILO 소지역사무소 소장과 직원들; 베이징, 본, 브라질리아, 브뤼셀, 부에노스 아이레스, 다르에스살람, 멕시코 시티, 뉴욕, 프레토리아, 워싱턴 ILO 사무소 소장과 직원들의 지원에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지식 네트워크(knowledge networks) 구축 지원

다음 분들이 지식 네트워크 관련 회의와 실질적인 논의 과정에 참여하여 조언을 해주고 배경 보고서를 작성해 주었다.

Nermin Abadan-Unat, Aderanti Adepoju, Yilmaz Akyuz, Yoginder Alagh, Alice Amsden, Catherine Aniagolu, Abdullahi An-Na'im, Edna Armendariz, Tony Atkinson, Farooq Azam, Jim Baker, Stephanie Barrientos, Graziano Battistella, Nouredine Benfreha, Raj Bhala, Arne Bigsten, Mark Bogan, Jan Breman, Nilüfer Çağatay, Wendy Caird, Marilyn Carr, Manuel Castells, Stephen Castles, Gopal Krishan

Chadha, Dan Chiribuca, Martha Chen, Anthony Clunies Ross, Barry Coates, Jeff Crisp, Dan Cunniah, Sriyan de Silva, Simon Deakin, Nitin Desai, Alisa DiCaprio, Zdenek Drabek, Asbjorn Eide, Kimberly Ann Elliott, Korkut Ertürk, John Evans, Richard Falk, Gary Fields, Michael Finger, Augustin Fosu, Torbjörn Fredriksson, Alvaro Garcia Hurtado, Charles Gore, Duncan Green, David Greenaway, Rebecca Grynspar, Basudeb Guha-Khasnobis, Bernhard Gunter, Sanjeev Gupta, Cees J. Hamelink, Ulf Hannerz, John Harriss, Pamela Hartigan, Jeremy Heimans, Hazel Henderson, Fred Higgs, Michael Hopkins, Edwin Horlings, Renate Hornung-Draus, Naomi Hossain, James Howard, John Humphrey, Didier Jacobs, Elizabeth Jelin, Richard K. Johanson, Emmanuel Julien, Dwight Justice, Naila Kabeer, Evance Kalula, Rashid Kaukab, Neil Kearney, George Kell, Martin Khor Kok Peng, Mwangi Kimenyi, Evans Kituyi, Michelle Klein Solomon, David Kostzer, Zeljka Kozul-Wright, Viktor Kuvaldin, Brian Langille, Frédéric Lapeyre, Ernst Ligteringen, Sachinkonye Llyod, Robert Lucas, Archie Mafeje, Philip Martin, Susan Martin, Joerg Mayer, Sharon McClenaghan, Allister McGregor, Malini Mehra, Claire Melamed, Ronald Mendoza, Jörg Meyer-Stamer, Thandika Mkandawire, Branko Milanovic, William Milberg, John Morley, Oliver Morrissey, Lamiya Morshed, Jill Murray, Sali Nasr, Sopiée Noordin, Anita Normark, Martha Nussbaum, Kingsley Ofei-Nkansah, Rene Ofreño, Irena Omelaniuk, Banji Oyeyinka, Florence Palpacuer, T. S. Papola, Ebrahim Patel, Roberta Piermartini, Roger Poole, Carolina Quinteros, Dan Rees, Steve Richards, Lesley Roberts, Virginia Rodríguez, Bruno Roelants, Jorge Saba Arbache, Lloyd Sachikonye, Ignacy Sachs, Ashwani Saith, Saskia Sassen, Rene Scharer, Elliot J. Schrage, Kunal Sen, Iddi Simba, Andrés Solimano, Lina Song, Simon Steyne, Seán Siochrú, Alain Supiot, Hiromi Suzumura, Michelle Swenarchuk, Kaarin Taipale, Dirk Willem te Velde, Elizabeth Thomas-Hope,

Anthony Tsekpo, Andras Uthoff, Valpy Fitzgerald, Gijsbert van Liemt, Anthony Venables, Anil Verma, Anna Walker, Simon Walker, Kevin Watkins, Jonas Widgren, Meredith Woo-Cumings, Adrian Wood, Ngaire Woods, Zhang Xiao Shan, Gisèle Yitamben.

우리는 또한 사무국의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위원회에 소중한 아이디어와 제언, 정보를 제공해 준 모든 ILO 직원들께 감사드린다.

유엔 사회개발연구소(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UNRISD), 영국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DFID),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카네기연구소(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등이 기술회의 조직을 공동 후원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협의 회의를 주최했다.

찾아보기

주: 아라비아 숫자는 각 절(paragraph); 로마 숫자는 요약(Synopsis)의 해당 페이지; 위 첨자로 표기된 숫자는 주석을 나타낸다.

가치관 6, 42, 269, 333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화(values-based globalization) 37-51, 587, 602

보편적 ix, x, xi, 21, 37-49, 358

지방 299, 301, 309-312

간디, 마하트마(Ghandhi, Mahatma) 22

간접 금융투자(portfolio investments) 150

갈등(conflicts) 25

내란 23, 239

개발공약지수(Commitment to Development Index) 456

개발도상국 151, 158, 258, 425

경제성과 175, 그림 3, 그림 11, 표 1

금융 기준 405-406

무역규칙 158, 353-356, 381

비교우위 89, 105, 369, 377

빈곤 69, 182, 256, 274, 295, 461

사회보호제도 287, 490

세계 제도 내의 역할 27, 347-349, 522

숙련노동의 이주 207, 432-433, 437-438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168, 180, 그림 4

- 주변화(marginalization) 169, 173, 323, 570, 572
- 개발재원에 관한 국제회의(2002, 몬터레이)(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Monterrey, 2002) 450⁷⁴
- 거시경제정책 247-248, 252-254
 - 경제사회이사회(ECOSOC) 534
 - 고용 281, 494-495
 - 국제금융기관 401, 410, 413
 - 사회적 영향 497
 - 지역 통합 322
- 경쟁정책 156, 359, 363, 392-393, 501
-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기구(International Agency on Competition Policy) 393
- 경제성장
 - 세계화의 영향 174-182, 그림 10, 그림 11
 - 전지구적 거시경제정책 495, 611
- 경제정책
 - 국가 243, 255-260, 351
 - 다자협정 354
 - 참조: 규칙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8
 -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원칙(1999)(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1999) 548
 - 노조운동 561-562
 - 다국적기업을 위한 지침(1976, 2000)(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1976, 2000) 552
 - 세계경쟁포럼(Global Forum on Competition) 392
 - 조세 관련 국제대화 465
- 고용 281
 - 무역 184
 - 세계화의 영향 194-197, 210, 279
 - 완전 494-497, 502
 - 일 278-289
 - 참조: 양질의 노동(decent work); 자기고용(self-employment); 실업
- 공공 캠페인 38, 55, 471, 542

- 시민사회조직의 역할 568
- 공공재정 249-251, 255-260, 269-277
- 공산주의의 붕괴 154
- 공적개발원조(ODA) 44, 169, 453-458, 그림 21
 - 새천년 개발 목표 xi, 451, 456-458, 463
- 공정거래 관련 이니셔티브(fair trade initiatives) 427
- 공정성 41
- 관광, 세계 차원 299
- 관료주의 264, 266, 325, 571
- 관세 83, 374, 그림 2
 - 확대 379, 387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37, 156
 - 참조: 세계무역기구(WTO)
- 교육 73, 249, 269-77, 609
 - 기능 및 기술 275-277, 482-487, 616
 -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 487
 - 정부지출 212-213, 그림 20
 - 초등 272, 272²⁶, 484
- 구조조정 13, 234
 - 사회보호 488-491
 - 정책 152, 413, 461
- 국가 주권 15
- 국가 지배구조 233-237, 238-245
- 국가(State)
 - 국가의 역할에 대한 세계화의 영향 ix, 101, 105, 149, 249-251
 - 공공재의 공급 249, 255, 269
 - 참조: 민족 국가
- 국경간 인력이동(cross-boarder movement of people) 134, 319, 360, 428-446
 - 다자규칙 354, 416, 616
 - 참조: 국제이주(international migration)
- 국경간 투자(cross-boarder investments) 187, 473-474
- 국부의 삼각형 지표(Wealth of Nations Triangle Index) 475⁸⁸
- 국제이주 xii, 74, 428-446

- 국제협약 428⁷⁰, 441
- 대화 442-443
- 라틴아메리카 102
- 세계상의 인센티브(tax incentives) 439
- 숙련 및 전문인력 207, 430, 433, 437-438
- 아프리카 85
- 유럽 107, 109
- 이민법 429, 433, 444
- 혜택 432
- 국제 제도
 - 국가와의 관계 114
 - 민주성 결핍 71, 129, 347, 521-525
 - 시민사회단체 529, 572
 - 자원 535-536
 - 참조 : 브레턴 우즈 체제
 - 책임성 15, 350, 515-519, 526-534
- 국제개발신탁기금, 제안(International Development Trust Fund, proposed) 467
- 국제금융기관(IFIs) 15, 120, 344, 352
 - 조건(conditionality) 125, 153, 365
- 국제금융기금, 제안(International Financing Facility: IFF, proposed) 467
- 국제노동기구(ILO) 52, 121, 426, 611, 616
 -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Worst Forms of Child Labour Convention, 1999) 419⁶¹
 - 결사의 자유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423⁶⁸
 - 고용을 위한 이주협약(Migration for Employment Convention, 1949) 428⁷⁰
 - 기업의 사회적 책임 557
 - 노동에서의 권리와 기본 원칙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40, 373, 418, 421, 552
- 노조 562
-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에 대한 노사정 삼자원칙선언(1977, 2000)(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 1977, 2000) 552

- 사회적 대화 566
- 세계고용의제(Global Employment Agenda) 507
- 세계은행과의 협력 510
- 아동노동 퇴치에 관한 국제 프로그램(International Programme for the Elimination of Child Labour: IPEC) 426⁶⁹
- 역할 420, 423(box), 602, 621, 628, 630
- 이주 446
- 이주노동자 협약(Migrant Workers(Supplementary Provisions) Convention, 1975) 428⁷⁰
- 정책 일관성 606
- 토착민 및 부족민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478⁹⁰
- 필라델피아 선언(1944) (Declaration of Philadelphia, 1944) 508
- 국제노동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Labour Studies) 627¹¹⁷
-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522
- 국제사용자기구(IOE) 556, 586, 616
- 국제산별노련(Global Union Federations) 564
-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586
- 국제운수노조연맹(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565
- 국제의회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 IPU) 544, 545
- 국제의회연맹(IPU) 544, 545
- 국제이주기구(IOM) 446, 616
- 국제이주에 관한 세계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International Migration) 446
- 국제자유노련(ICFTU) 586, 616
- 국제통신연합(ITU) 616
- 국제통화기금(IMF) 84, 348, 522, 611, 616
- 고용 505, 506, 510
- 국제통화기금 협정 제4차 개정(Fourth Amendment to Articles of Agreement) 466
- 노동조합운동 561
- 수입대체 정책 151

- 조세 관련 국제대화(International Tax Dialogue) 465
- 채무과다빈곤국을 위한 부채 탕감 이니셔티브(Debt Initiative for HIPC's) 460
- 책임성 528-529
- 국제해상경영자위원회(International Maritime Employers' Committee) 565
- 국제형사법원(International Criminal Court) 568, 582
- 군사지출 470
- 그라민 은행 운동(Grameen initiative) 308
- 글로벌 생산체제 140, 159-162, 258
 - 규칙 387-399
 - 사회적 대화 563-566
 - 양질의 노동 498-501
 - 외국인직접투자(FDI) 162
- 글로벌 원격교육 네트워크(Global Distance Learning Network: GDLN) 487
- 글로벌 정책(global policies) 24, 447-449
 - 경제 및 사회 통합 511-514
 - 경제환경 151-155
 - 보다 나은 발전 612-622
 - 양질의 노동 502-510
 - 연구 지원 623-629
 - 일관성 달성 33, 352, 496, 603-611
 - 자원 450-475
 - 제도적인 지원 630-631
- 금융관련 규제 345, 366, 그림 5
- 금융부문 평가 과정(Financial Sector Assessment: FSA process) 366
- 금융위기 167, 403
 - 아시아 95, 173
- 금융체제 xiii, 100, 143
 - 개방성 191-192
 - 개혁 400-413
 - 국가 242
 - 국제채권시장 145, 그림 7
 - 불안정 100, 189, 400-401, 410

- 세계 163-169
- 자유화의 영향 143, 186-193, 251
- 지역협력 316, 331
- 참조: 국제금융기관(IFIs)
- 기술 x, 133, 282, 482-487
- 개발 356
- 개발도상국의 접근 147-148, 186, 264, 364, 383, 624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380, 479
- 세계화 146-148
-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116
-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550-559
- 기업 지배구조 122, 242, 244, 548-549, 556
- 기준
 - 국제 380-381
 - 참조: 노동기준
- 남녀평등(Gender equality) xiv, 41, 68, 214, 504, 609, 616
 - 고용 281
 - 참조: 여성
- 남미공동시장(Mercosur) 75, 103, 322³⁵
 - 경제사회협력포럼(Consultative Economic and Social Forum) 329
- 남아프리카 308, 342
-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 75
- 네트워크 306, 487
 - 글로벌 53, 578-581
 - 책임성 581
- 네트워크화 된 지배구조(networked governance) 305, 578-582
- 노동
 - 강제 423
 - 고용 278-289
 - 세계화된 경제 121, 210, 414-416
 - 참조: 양질의 노동
- 노동기본권(fundamental rights at work) 242, 373, 418-419, 492, 510

노동기준 xiii, 107, 423, 502, 504, 609

경쟁 415

비공식 고용 263-264, 268

참조 양질의 노동

핵심 xiii, 360, 415, 417-427

노동생산성 및 이주 432

노동시장 203

제도 242, 251, 434

노동유연성 283

노동기구 xii

고용정책 288-289

세계화에 대한 견해 120-123

참조 노조

책임성 560-562

노동법 106, 289, 424

노동자

권리 288, 373, 510

보호 378

노조

국제 제도 560-562

권리의 침해 423

대화 120-123

영향력 346, 562

참조 노동기구

농산물 생산 256-257, 375-376

농업

국가정책 256, 260

보조금 70, 374-375

보호주의 182, 374-376

농촌경제 256-257, 295, 306

다국적기업(MNEs) 15, 147, 150, 179, 564

글로벌 생산 159-162, 388, 498

세계무역 188, 388

- 전지구적 지배구조 내의 역할 344-345
- 다자간 규칙
 - 공정한 x, xii, 359-360
 - 국가의 역할 361-367
 - 국가의 정책적 공간 33, 105
 - 국경간 인력이동 xii, 354, 416, 616
 - 글로벌 생산체제 387-399
 - 다자간 무역 368-386
 - 불평등 13, 353-355
- 다자간 무역 156-158
 - 규칙 368-386
- 다자간 투자협정(MAI) 394
- 다자주의(multilateralism) 24-26, 601
- 다자체제 xiv, 23, 27, 40, 206, 604
 - 변화를 위한 행동 xi, xiv, 597-602
 - 역할 xiv, 24-25, 76, 510, 58
 - 정책 일관성 603-611
- 단체교섭 289
- 대중매체(media) 573-577
 - 글로벌 산업 222, 299, 309
- 대화(dialogue) x, 618
 - 국가 584
 - 국제 49, 55-60
 - 노조 120-123
 - 이주 442-443
 - 참조 정책개발대화(Policy Development Dialogues);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
 - 협약(세계위원회) 62-64, 595
- 독일 108, 296
- 돈세탁 223
- 동남아, 실업 195, 그림 13
- 동남아국가연합(ASEAN) 324³⁷
- 동아시아 10, 180, 248, 362, 432
 - 실업 195, 그림 13

- 동유럽 104-107, 180, 245, 248
- 라틴아메리카 180, 319, 523
 - 빈곤 13, 201
 - 세계화에 대한 견해 97-110
 - 실업 195, 그림 14
 - 지역 통합 314, 322
- 라틴아메리카 의회 322, 544
- 라틴아메리카 준비기금(Latin American Reserve Fund) 322
- 러시아 106
- 마라케시 합의(1994)(Marrakech agreement, 1994) 505
- 말라리아 의학 벤처(Medicines for Malaria Venture) 579
- 말레이시아 409
- 말리(Mali) 83
- 멕시코 102, 180, 184
- 면 375, 376
- 모두를 위한 교육 이니셔티브(“Education for All” Fast Track initiative) 486
- 몬터레이 합의서(2002)(Monterrey Consensus, 2002) 450
- 무역 137-138, 149-150
 - 다자규칙 368-386
 - 다자무역체제 156-158
 - 순 FDI 유입 그림 1
 - 특별 및 차별대우 조항 367, 369
- 무역 자유화 137, 183-185, 370-372
 - 고용과 임금에 대한 영향 184-185, 506, 627
- 무역장벽 355, 369, 380
 - 민간 카르텔 391
- 참조 관세*
- 문화 310
 - 다양성 41, 50
 - 세계화의 영향 68, 107, 222, 574
- 미국 222, 296
 - 세계화에 대한 견해 112-113
 - 소득과 고용 197, 198

- 미얀마(Myanmar) 426
- 미주인권위원회(Inter -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319
- 민-관 파트너십 344, 474
- 민간 재단 472
- 민영화 246
- 민족국가(Nation State) 32, 72, 114, 340, 541
 - 경제자유화 246-254
 - 경제정책 255-260
 - 공공재정 193, 212-213, 그림 20
 - 공정한 규칙 361-367
 - 노동기준 강화를 위한 조치 420⁶²
 - 무기력한 239
 - 미시경제정책 252-253, 410, 494
 - 변화를 위한 전지구적 행동 xi-xii, 584, 594-596
 - 부채정리 과정(debt relief processes) 461
 - 상호 의존성 52-54, 336
 - 전지구적 지배구조 227, 537-539
 - 정책적 파급효과 및 외부효과 243, 247, 249, 316, 336, 529
 - 지역 통합 331, 332
 - 책임성 537-542
- 민주적 책임성 14, 350
- 민주주의 238, 358
 - 대표 15, 572
 - 모범적 통치구조의 기반 240, 529, 521-525
 - 전파(spread of) 220, 342
 - 참여 15, 293, 329, 572
- 바베이도스(Barbados) 101
- 반덤핑조치 382, 390
- 방글라데시 308
- 범죄
 - 다국적 223-324
 - 참조: 불법거래(trafficking)
- 법치(rule of law) 34, 48, 238, 241, 358

- 국제 24
- 베트남 181
- 보건 249, 479, 609
- 보조금 364
- 보조성의 원칙(subsidiarity, principle of) 302, 518
 - 확대 379, 387
- 보호주의 94, 380
 - 농업 182, 374-376
- 부의 비중 198-199, 그림 16, 그림 17
- 부채 무효화를 위한 주빌리 2000 캠페인(Jubilee 2000 debt cancellation campaign) 568
- 부채탕감 127, 412, 459-462
- 부패 244
- 북미
 - 세계화에 대한 견해 108-114
 - 제안 자유무역지대(proposed free trade area) 322³⁵, 326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322³⁵
- 불공정거래조치 382, 390, 393
- 불법행위 223, 224
- 브라운 고든(Brown, Gordon) 467
- 브라질 70, 98, 184, 272, 341
- 브레턴-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 141-142, 341, 365
 - 구조조정 정책 152, 461
 - 민주성 결핍(democratic deficit in) 347, 521, 522, 524, 582
 - 참조: 국제금융기관(IFI);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 비공식 경제(informal economy) 13, 196, 253, 261-268, 609
 - 재산권 265-267
- 비교우위 146, 150, 369, 377
-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s) 221, 304, 344
- 비정부기구(NGOs) 345, 456, 471, 569, 571, 586
- 비즈니스(기업, 사업) 115-119, 209, 344
 - 기업 관련 스캔들 119, 165
 - 법인세율 그림 12

사회적 책임 47, 118, 550-559

참조 기업 지배구조

책임성(accountability) 546-559

빈곤

사회비용 xi, 85, 203, 374, 609, 그림 19

세계화의 영향 201-205

양질의 노동 284-286

퇴치 21, 357

빈곤감축전략서(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s: PRSP) 461, 506, 512

사람/인간(people)

눈(eyes of) vii, x, 20, 62, 65

세계에 대한 인식 219, 342

세계화에 대한 견해 204-205

세계화의 영향 206-217

열망(aspirations) vii, ix, 16-17, 25, 70, 130, 236

사스 바이러스(SARS virus) 479

사용자단체

역할 xii, 31, 289, 344, 501

지배구조 240-241

지역 통합 329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38, 169

공적개발원조 458

브레턴-우즈 제도 523, 525

빈곤 13, 182, 201

외채 169, 182

HIV/AIDS 273

사회개발정상회의(1995, 코펜하겐) (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Copenhagen, 1995) 418, 478⁸⁹, 504

사회경제적 기반 xiii, 287, 476, 491, 627

사회경제적 안보 171, 357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 xii, 478, 488-491, 616

국가 조항 249

양질의 노동 287

- 자가고용 및 비공식 근로자 264
-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 242, 566
 - 고용정책 283-289, 501
 - 글로벌 생산체제 563-566
 - 지역 통합 329-330
- 사회적 차원 13, 21
 - 세계화의 영향 172, 206-217
 - 지역 통합 327-323
- 사회적 평등(social equity) 34, 238
-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 427
- 산업
 - 제조업 184
 - 첨단(high-tech) 160
- 산업개발 362
- 생산체제
 - 지방 306-307
 - 참조: *글로벌 생산체제*
- 서비스 무역의 성장 156, 160, 207, 500
- 선진 10개국(Group of 10: G10) 348
- 선진 7개국(Group of 7: G7) 348
- 선진 8개국(Group of 8: G8) 532, 560
- 선진국
 - 경제성과 175, 표 1
 - 고용 197
 - 교육 및 기능 259, 271
 - 입국 통제 429
 - 정책 도구 362, 362³⁹
 - 지배 401, 525
- 섬유 및 의류 377
 - 시장 접근 xiii, 377-379
- 세계 네트워크(global networks) 53, 306, 487, 579
- 세계개발 네트워크(Global Development Network) 117, 627
- 세계경쟁정책 네트워크(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392

- 세계경제포럼, 다보스(World Economic Forum, Davos) 119, 585¹¹³
- 세계공동체 52-61, 130, 221, 299, 358, 542, 634
- 세계교육포럼(2000)(World Education Forum, Dakar, 2000) 486
- 세계노동총연맹(WCL) 586
- 세계무역기구(WTO) 84, 120, 156, 597, 611, 616
- 고용창출 505, 506, 507
- 노동기준 421⁶³
- 노조운동 561
- 도하 각료회의(2001) 421⁶³
- 무역 및 경쟁정책에 관한 실무작업반(Trade and Competition Policy working group) 392
-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TRIPS)) 364, 380, 383, 383⁴⁹, 479
- 무역 관련 투자조치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TRIMs)) 364, 396
-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SCM)) 364, 396
-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and Services : GATS) 396, 428
- 시민사회단체 568
- 싱가포르 각료선언(1996) 421
- 외국인직접투자 395-399
- 우루과이라운드 158, 364
- 의사결정 347, 521, 527
- 의회 네트워크 544
- 칸쿤 각료회의(2003) 384, 527
- 특별 및 차별대우 조항(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365, 367, 369, 384, 385, 386
- TRIPs 및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RIPS and Public and Health) 383⁴⁹
-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558
- 세계보건기구(WHO) 479
- 세계 복권 468

- 세계사회신탁, 개념(Global Social Trust, concept of) 471
-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 119, 126, 585¹¹³
- 세계에 대한 인식(global awareness) 219, 342
- 세계여성회의(4차), 베이징(World Conference on Women(Fourth), Beijing) 478⁸⁹
- 세계은행(World Bank) 84, 376, 522, 527, 611, 616
- 고용 506
- 기준 및 규범 검토(Review of Standards and Codes: ROSC) 366
- 노조운동 561
- 빈곤감축전략서(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s: PRSP) 461, 506, 512
- 업무 및 평가부(Operation and Evaluation Department) 529
- 의회 네트워크 544
- ILO와의 협력 510
- 조세 관련 국제 대화 465
- 채무과다빈곤국을 위한 부채탕감 이니셔티브(Debt Initiative for HIPC's) 460
- 책임성 527-529
- 세계의 테러행위 11, 23, 43
- 세계인권회의, 비엔나(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Vienna) 478⁸⁹
- 세계적인 규칙
- 참조 규칙
- 세계적 차원의 조세 468-469
- 세계적 행동을 위한 의원 모임(Parliamentarians for Global Action) 544
- 세계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2002, 요하네스버그)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Johannesburg, 2002) 292, 468, 480
- 세계화 및 민주주의에 관한 헬싱키 협의(Helsinki Process on Globalization and Democracy) 586
- 세계화 정책포럼, 제안(Globalization Policy Forum, proposed) xiv, 593, 619-221
- 세계화에 관한 국제포럼 및 위원회 현황 585¹¹²
- 세금 피난처(tax havens) 354, 464
- 세네갈(Senegal) 80-81
- 세계 관련 협조 464-465

- 소득불균형 198-200, 그림 16, 그림 17, 그림 18
- 소수민족 275, 286
- 소액 금융제도(Micro-finance schemes) 286, 306, 308
- 소액 신용대출 정상회담 추진운동(Micro-credit Summit Campaign) 308
- 수입대체정책 151
- 수출가공지역(Export Processing Zones: EPZs) 120, 389, 499-501
- 숙련노동, 기능 275-277, 482-487
 - 순환 437
- 시락 자크(Chirac, Jacques) 468
- 시민 자유 240, 288
-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s: CSO) xii, 27, 310, 567-572
 - 국가 지배구조 240, 241, 542
 - 국제 제도 527, 529, 572
 - 세계 시민사회 343, 570
 - 세계화에 대한 견해 124-129
 - 영향 343, 568-572
 - 책임성 569
- 시장 자유화, 국가의 역할 246-249, 495
- 시장 접근 xiii, 263, 266
 - 장벽 369, 382
 - 저개발국 158, 182, 372
 - 지역 통합 32
- 시장과 시장경제 x, 42, 70, 369
 - 개방 31, 149
 - 글로벌 생산체제 388-392
 - 세계 133, 149, 179, 354
 - 지배적인 영향력 152-154
 - 지원 및 감독 제도 x, xi, 245-249, 251-254
 - 투명성 xiv, 390-392
- 시장실패 226, 249, 282, 354
- 식량안보 609
- 신용(credit)
 - 재산권 265

참조: 소액금융(micro-finance)

신흥공업경제(NIEs) 180, 362

실업

감소 280

완전실업(open unemployment) 195, 197, 그림 13, 그림 14

싱가포르 187

아난, 코피(Annan, Kofi) 28

아동노동 274, 423, 426, 455, 555

아랍 국가 87-90, 324

아르헨티나 97, 100, 102

아시아 91-96, 324, 523

참조: 중앙아시아, 중국, 동아시아, 동남아

아일랜드 187

아태경제협력체(APEC) 324

아프리카 79-86, 376, 479

지역 통합 314, 323

참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아프리카 경제공동체(African Economic Community) 323³⁶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AU) 319, 323

아프리카 발전을 위한 신파트너십(New Partnership for African Development: NEPAD) 323

아프리카연합 의회협회(African Union Parliamentary Assembly) 544

안데스 공동체(Andean Community of Nations: CAN) 322³⁵

알바니아 308

양자간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BITs) 396

양질의 노동(decent work) 100, 280-284, 288, 492-493

글로벌 생산체제 498-501

완전고용 494-497, 502

정책목표 502-510, 594

참조: 노동기준

에리트레아(Eritrea) 272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에 대항하는 글로벌 펀드(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79, 579

- 여론의 힘 15, 343, 454, 515
- 여성 120, 129, 286, 609
 - 교육 270
 - 비공식 경제 261, 264, 268
 - 세계화의 영향 215-217
 - HIV/AIDS 479
- 연대(solidarity) x, 41, 127, 335, 580
 - 민간 이니셔티브 490
 - 세계화 x, 28, 221, 358, 471-472, 633
 - 지방 293, 299
 - 지역 103
- 연방주의(federalism) 296
- 영국 197, 198
- 영어의 지배 575
- 영토 조약(territorial pacts) 304, 304³⁰
- 오염방지(pollution control) 291
- 옥스팜(Oxfam) 464, 471, 568
- 외국인직접투자(FDI) 117, 139-140, 149-150, 162, 186
 - 개발 틀 기반(development framework for) xiii, xiv, 394-499, 616
 - 개발도상국으로의 유입 그림 4, 그림 6
 - 경제성장 186-188
 - 규제 변화 그림 5
 - 사적자본 흐름(private financial flows) 402, 473-475
 - 순 FDI 유입(및 무역) 그림 1
 - 인센티브 경쟁 389, 394
- 외채 위기 127, 151
- 우간다(Uganda) 82, 272
-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xii, 386
- 우루과이(Uruguay) 100
- 유럽 201
 - 세계화에 대한 견해 108-114
- 유럽경제사회위원회(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329
-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75, 105, 296, 320-321

- 공동농업정책 111
- 구조협력기금(Structural and Cohesion Funds) 331
- 제한기준의 사용 380
- 지역 통합 314, 320-321, 326
-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552
-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321, 544
- 유럽이사회(Council of Europe) 319
- 유럽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321
- 유럽헌법, 제안(European Constitution, proposed) 321
- 유엔(United Nations) x, 40, 76, 128, 529
 -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고위급 연구단(High Level Panel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531
 -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478⁹⁰
 - 다국적기업의 윤리규범 394
 - 다자체제 23, 27, 341, 520, 539, 597
 - 미국 222, 296
 - 민간 재단 472
 - 새천년 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xi, xiii, 21, 269, 448, 476(box), 476-81
 - 새천년 선언(2000)(Millennium Declaration, 2000) 40, 358, 476-477, 591, 597
 -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21, 40, 491⁹⁴
 - 세계화에 대한 견해 112-13
 - 소득과 고용 197, 198
 -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478⁹⁰
 - 시민사회단체 572
 -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 347, 521
 - 역할 48, 583, 599
 - 의사결정 521
 - 인권 메커니즘 446
 - 자원 535-536

- 조세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전문가 실무단(International Cooperation on Tax Matters, Ad Hoc Group of Experts on) 465
- 총회 507, 532, 590
- 토착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초안(Draft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311
- 현장 40, 503⁹⁶, 530, 533
- 참조: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유엔인권고등판무관
-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465, 514, 533-534, 582, 610
- 유엔 내부감독서비스국(UN Office for Internal Oversight Services) 529
- 유엔 민간부문 및 개발위원회(UN Commission on the Private Sector and Development) 559
- 유엔 지역경제위원회(UN Regional Economic Commissions) 616
- 유엔개발계획(UNDP) 616
-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553
-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507, 616
-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446, 616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561, 616
-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627¹¹⁷
- 유엔식량농업기구(FAO) 599¹¹⁴
- 유엔에이즈퇴치계획(UNAIDS) 479, 608¹¹⁶
- 유엔여성개발기금(UN Development Fund for Women: UNIFEM) 616
- 유엔인간정주프로그램(UN Human Settlement Programme) 305³¹
- 유엔인권고등판무관(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553, 616
- 발전에 관한 권리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478⁹⁰
- 유엔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602
- 유엔환경개발회의(1992), 리오 선언(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92; Rio Declaration and Agenda 21) 478⁸⁹, 480
- 유엔환경계획(UNEP) 507, 553
- 윤리적 틀(ethical framework) 37-51
- 의사결정
- 개발도상국의 역할 27, 347, 349
- 다자체제 520, 521

의약품.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383, 479

의회

정책 일관성 539-540

책임성 537, 543-545

이집트 66

EU-지중해 간 자유무역지대, 제안(Euro-Mediterranean Free Trade Area, proposed)

326

인간의 존엄성 16, 18, 41

인구 고령화 432

인구개발회의, 카이로(World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Cairo) 478⁸⁹

인권 6, 21, 34, 37, 127, 238, 358

사회보호 491

중심 478

인도 93, 181, 341, 409, 432

경제성과 177, 178

빈곤감소 91, 201

자가고용여성협회(Self-employed Women's Association: SEWA) 308

인신매매 96, 223, 319, 428⁷⁰, 433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AIDS(HIV/AIDS) 85, 273, 319, 455, 479

인터넷 155, 275. 574

네트워크 580

접근 148, 그림 8

일본 197

임금 184, 283

자가고용(self-employment) 196, 261-262, 그림 15

자가고용여성연합(Self-employed Women's Union: SEWU) 308

자가고용여성협회(Self-employed Women's Association: SEWA) 308

자본 자유화(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142, 189-191, 409

자본 흐름 141-145

경제성장 189-191

사적자본(private capital) 163, 402, 473-475

자선기부 471-472

자원

국제 제도 535-536

민간재단 472

새로운 공공재정 463-472

자발적 기부금 471

전지구적 목표 450-475

지방 차원의 통제 303-312

지역 통합 331

참조: 공적개발원조(ODA)

자원생산성 290-292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s) 314

잠비아(Gambia) 272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국제포럼(Group of 20: G20) 406⁵⁶

재산권 242, 265-267

저개발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182, 347, 541

무역 자유화 138, 369

참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저개발국에 관한 3차 회의(2001)(Least Developed Countries, Third Conference, 2001) 450

전지구적 과제(global challenges) 337-338

전지구적 지배구조(global governance) x, xi, 225-232, 515

공정한 규칙 359-360

민족국가의 역할 xi, 340-341, 348-352, 537-542

분석 기반(analytical framework) 335-339

불균형 xi, 353-358

비국가 행위자의 역할(role of non-State actors) xiv, 53-59, 342-346, 542, 545, 559, 586

주요 결합 340-352

참조: 글로벌정책 국제 제도

정보

자유 351

접근 573-577

정보기술(IT)

- 세계화 146-148, 220-221, 310, 342
- 연결성(connectivity) 342, 487
- 인도 93
- 재정 흐름 140, 143
- 정의 운영(justice, administration of) 241
- 정책 일관성 33, 352, 530-531, 593
 - 경제 및 사회적 목표 511-514, 532-534, 606
 - 국가내 539-540
 - 다자체제내 603-611
 - 양질의 노동 502-510
- 정책에 대한 연구지원 623-629
 - 모니터링 및 측정 624-625
 - 프로그램 626-629
- 정책 일관성 이니셔티브, 제안(Policy Coherence Initiatives: PCI, recommended) 608¹¹⁶
 - 외국인직접투자 399
- 제네바 이주 그룹(Geneva Migration Group) 446, 608¹¹⁶
- 제딜로, 어네스토(Zedillo, Ernesto) 531
- 조건(conditionality) 125, 153, 365, 458
- 조세 관련 국제대화(International Tax Dialogue) 465
- 조세제도
 - 비공식 경제 253
 - 세계화의 영향 193
 - 지방 303
- 조화에 관한 로마 선언문(2003)(Rome Declaration on Harmonization, 2003) 458
- 종교에 대한 존중 41, 275
- 중국 92, 181, 341, 409
 - 경제성장 177, 178
 - 빈곤 감축 91, 201
 - 실업 173
 - 외국인직접투자 94
- 중동 갈등 26, 87, 89

- 중미통합체제(Central American Integration System: SICA) 322³⁵, 326
- 중부유럽 245
- 중소기업, 성장정책(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SMEs, policies for growth) 282, 306
- 중앙아시아 104-107, 201
- 지구촌 환경기구(Global Environment Facility) 579
- 지구협약(Global Compact) 427, 553-554, 556, 579
- 지방 경제기반 298, 306-308
- 지방 공동체(local communities) xii, 124, 292
- 가치관 309-312
- 강화 293-301
- 지방 문화유산 299, 301, 309-312
- 지방정부 302-305
- 지방 행위자(local actors) 304, 307
- 지방분권화 294, 300, 539
- 지배구조(governance) 21, 34, 58
- 공적개발원조(ODA) 458
- 국가 차원(national) 233-237, 238-245
- 네트워크화된(networked) 578-582
- 지방 차원(local) 293-301
- 참조 기업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전지구적 지배구조(*global governance*)
- 지속가능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ix, 21, 290-292, 485, 480
- 지식 146, 147, 482, 623
- 지역 공동화폐 316
- 지역 통합 xii, 75, 616
- 경험 320-326
- 라틴아메리카 103
- 사회적 측면 319, 327-331
- 세계화 332-334
- 아시아 324
- 아프리카 86
- 위험 325-326

- 유럽 90, 304, 321
- 제도 331, 333-334
- 중동 90
- 초석 313-319
-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156, 179, 188, 364, 383
- 차별(노동) 423
- 채취산업(extractive industries) 124, 211
- 책임성(accountability)
 - 각국 정부 241, 244
 - 국제 제도 15, 350, 515-519, 526-534
 - 모범적 통치구조(good governance) x, 34
 - 지역 통합(regional integration) 327
- 청년 고용 278
- 청년 고용 네트워크(Youth Employment Network) 579
- 칠레 99, 180, 409
- 카르도스, 페르난도(Cardoso, Fernando Henrique) 572
- 카리브 지역 101-103, 201, 322
 - 실업 195, 그림 13
- 카리브 공동시장(CARICOM) 322, 335
- Calvert-Henderson 지표 475
- 캐나다 198
- 커뮤니케이션 10, 310, 573-577, 그림 9
- 코소보(Kosovo) 308
- 코스타리카(Coasta Rica) 67, 100
- 코코아 375, 555
- 탄자니아 70, 83
- 탈세 223
- 토빈세(Tobin tax) 468
- 토지
 - 사전 권리(prior rights over) 312
 - 재산권 265-267
- 토착민 124, 211, 286
 - 권리 311-312

투명성 350, 390, 392, 398, 527

투자 156, 580

사회책임 이니셔티브(socially responsible initiatives) 474

참조 *외국인직접투자(FDI)*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SDRs) 466

평화를 위한 세계 여성의원연합(World Women Parliamentarians for Peace)

544

폴란드 77, 105, 342

핀란드 110

필리핀 69, 94

한국 181

협동조합(cooperatives) 307

환경 41, 113, 124, 211

지속가능 발전 정책 290, 480

환율 410

회계기준 345

훈련에 대한 투자 275-276